

연구총서 11-27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V)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 -

Studies on the Criminal Justice Policies and Judicial Systems (V)
- Focused on Evaluation Research o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

탁희성 · 최수형

■ 탁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최수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학박사

국민참여재판은 우리 사법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변화이며, 사법민주화의 한 획을 그은 사법개혁의 성과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법개혁 당시 국민의 사법 참여라는 패러다임 그 자체가 중요했던 탓에 참여재판제도를 급격하게 시행하였고, 이는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켜 과도기적 제도로서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원은 2008년에 1년간 시행된 참여재판에 대한 참관을 통한 참여 연구를 수행하여 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과 도입과정에서 우려했던 이론적 쟁점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당시 시행기간이 짧았고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조했던 참여재판의 진행으로 인해 충분한 연구분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 제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참여재판 시행 4년차에 접어들어 제도평가에 필요한 사례수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5년간의 시범실시기간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최종적인 참여재판 형태를 확정하기 전에 참여재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 그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참여재판의 형태가 마련될 수 있는 자료를 뒷받침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사법참여를 구현함과 아울러 우리의 사법환경에 적합한 본격적인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모델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시민사법의 실현으로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가능성을 확인하고, 최종 참여재판 형태를 결정함에 국민참여재판 관여자의 현실적인 수요를 제시함으로써 사법민주화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참여재판제도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탁희성 연구위원과 최수형
부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 있어서 참여재판의 참관과
조사에 협조하여 주신 사법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 일 수

제1부 국민참여재판 시행현황분석

1. 2007년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1월 1일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우리의 사법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변화였으며, 사법민주화의 한 획을 그었다. 다만 이는 우리 사법의 경험적 결과물이 아니라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성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사법현실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은 선 제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시행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법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이루고자 했던 것 보다는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패러다임 자체가 더 중요했던 당시에는, 이와 같은 제도의 급격한 시행이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급격히 저하시켜 제도무용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참여재판은 과도기적 제도로서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시범적으로 5년간 실시되고 그 시행성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제도로 정착될 예정에 있다. 따라서 2012년을 끝으로 5년간의 시범실시가 종료되면 최종적으로 참여재판이 배심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참심제로 갈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우리 사법에 고유한 제3의 참여재판형태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남겨져 있다.¹⁾

이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의 최종적인 도입 형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과도기적 시행단계에 있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평가

1) 김상준, 배심평결과 판사판결의 일치도 및 판단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1, 1면.

하여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제도의 운용이 본래 지향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참여재판 시행 4년차에 접어들어 평가에 필요한 사례수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5년간의 시범실시기간이 마무리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최종적인 참여재판 형태를 확정할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마련되기 이전에 참여재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 그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참여재판의 형태가 마련될 수 있는 자료를 뒷받침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2.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채 4년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속하여 의원입법형태로 국회에 상정되고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실질적인 내용적 변화를 시도했던 입법안은 4개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4개 법률안 모두 의원입법형식이었으며, 3개의 법률안은 대상사건의 확대, 1개의 법률안은 참여재판 배제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불원 의사 반영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안들은 대상사건의 확대를 통한 참여재판의 활성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참여재판의 제한사유 확대에 그 중점이 두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개된 참여재판을 통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상호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법률개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동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호, 제46조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동 법률에 의한 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제한, 법원에 의한 참여재판 배제결정이 피고인의 기본권인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모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3년이 지난 시점에 이와 같이 위헌확인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참여재판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가에 대한 합일된 논의도 없었고, 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제한하고, 포괄적 배제사유를 둠으로 인해 참여재판의 취지가 반감되고 그로 인해 참여재판의 원활한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어느 범위에서 보장되고, 어느 범위에서 침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현재의 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첫해인 2008년도 참여재판 대상사건수는 4,45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2%인 233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접수되었다. 2009년도에는 참여재판 대상사건수가 7,047건으로 이 가운데 4.8%인 336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참여재판 대상사건수가 7,93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5%인 437건이 참여재판으로 접수되었다. 범죄유형별 참여재판 대상사건수 대비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기타 범죄유형을 제외하면 강도살인·강도상해 등의 범죄가 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가장 많이 포함되고 있으며, 대상사건 대비 참여재판 접수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살인·살인미수 등(9.5%) 이고 그 다음이 상해치사·폭행치사 등(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참여재판 신청건수 1,006건 가운데 철회된 경우가 전체의 404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경우는 321건으로 31.9%, 법원의 배제결정이 난 경우는 211건으로 21.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33,532명의 배심원후보자 가운데 송달불능된 자, 출석취소통지를 한 자를 제외하고 출석의무자 17,621명 중 9,891명이 출석하여 56.1%의 실질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 배심원수별 국민참여재판 실시건수를 살펴보면, 7명의 배심원을 선정하는 경우가 52.6%로 가장 많았고, 5명을 선정하는 경우는 11.8%로 가장 적었다. 배심원 구성현황을 보면, 연령별 구성에 있어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에 19.1%였던 것이 2009년- 2010년에 들어서는 25.6%로 증가하는데 비하여,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에 36.7%에서 2009-2010년에는 30.7%로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배심원 평의를 거쳐 나온 평결결과를 살펴보면, 전원일치로 유죄 또는 무죄로 배심원의 의견이 일치한 건수는 208건으로 3년간 진행된 전체

참여재판 가운데 6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유죄 평결이 188건, 무죄 평결이 20건이었다. 한편 다수결에 의하여 유죄 또는 무죄 평결이 나온 경우는 48건으로 14.9%였다. 그리고 한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 두 개 이상의 평결이 내려진 건수는 65건으로 전체의 20.3%로 나타났다. 그리고 3년간 배심원 평결과 법관의 판결이 일치하는 비율은 91%로 매우 높은 일치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백사건을 제외해도 일치율이 89.1%로 큰 차이가 없었다. 판결문에 기재된 배심원 양형의견 중 다수의견과 선고형량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1년 이내로 비슷한 경우는 전체 273건 가운데 256건으로 9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10년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평결과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와 무죄 선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에서 일치하였다.

2008-2010년에 걸쳐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의 양형분포를 살펴보면, 실형율이 74.8%로 나타났고, 집행유예가 15.0%, 무죄율이 8.7%로 나타났다. 참여재판의 항소율은 86.6%로 일반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의 항소율인 66.9%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항소심에서 처리된 사건은 224건이었으며, 그 가운데 169건은 항소기각 되었고, 54건은 파기됨으로써, 기각율은 75.4%, 파기율은 24.1%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판결을 파기한 항소심 판결의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유무죄가 바뀐 경우가 5건(9.3%), 양형이 변경된 경우가 29건(53.7%), 법리판단 내지 사정변경에 의해 파기한 경우가 20건(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조사분석

1. 본 연구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인식 및 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① 일반국민 ②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선고 받은 피고인과 일반재판을 통해 선고 받은 피고인 ③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④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평가를 위해 서울시 및 전국 6대 광역시의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식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에 직접 참여한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참관하면서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귀가하는 배심원후보와 최종판결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배심원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응답 후 반송봉투에 넣어 회수 요청을 하는 우편회수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최종 분석에 사용한 부수는 배심원후보 58부, 배심원 90부이다. 세 번째, 피고인대상 조사는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수용자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지만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방식으로 진행하여 최종 분석에는 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 175부, 비경험 피고인 190부가 사용되었다. 네 번째, 법률전문가의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설문지를 전달하여 우편회수방식을 사용하여 판사는 48부, 검사는 67부, 변호사는 61부로 총 176부를 확보하였다.

2.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제도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47.1%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역시 51.9%로 절반을 겨우 넘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재판의 공정성 향상’, ‘재판의 투명성 향상’, ‘재판결과 신뢰성 향상’, ‘피고인 인권보장’, ‘국민 법지식 향상’, ‘국민 준법정신 함양’이라는 효과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국민이 생각하기에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이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으로서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55.9%로 긍정적인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심원으로서의 참여의사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참여의사가 높았다. 한편, 배심원으로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배심원 출석 관련 어려움’으로 시간을 내서 재판에 참여하고 그로 인하여 생계에 영향을 받을 것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과

연령, 학력별로 배심원으로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응답의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본 결과,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 4년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의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소극적인 배심원 참여도, 제도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나타남에 따라 이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 그리고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도 높아 일반국민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과정이 요구된다. 즉,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홍보는 국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결국 배심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참여율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배심원으로서 예상되는 어려움'이 성별이나 연령, 학력에 따른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상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모색이 시급하다.

3.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배심원(후보)의 인식 및 태도, 배심원으로서 참여한 국민참여재판 운용 과정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 관련 내용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에 대한 배심원(후보)의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90.0%를 차지하였고 배심원이 배심원후보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심원이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할 때 사실관계보다는 학연이나 지연, 정치적 요인, 여론의 향배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이 배심원후보가 배심원에 비해 더 높았다. 한편, 배심원으로서의 참여의사를 살펴본 결과 다시 한 번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전체의 78.0% 이상을 차지하였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도 75.0% 이상이었으나 배심원후보와 배심원간의 응답 차이는 없었다.

이처럼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리과정과 평의·평결 및 양형토의 과정을 경험한 배심원과 배심원 선정기일에만 참여한 배심원후보간의 견해와 시각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의 효과에 대한 기대와 배심원

판단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배심원이 배심원후보에 비해 긍정적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배심원의 국민참여재판과정에 대한 이해 및 평가관련 내용이다. 배심원 출석동기를 살펴보면 ‘재판에 대한 호기심이나 궁금증 때문’이라는 응답이 89.6%로 다른 요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 앞으로는 배심원으로서의 참여가 새로운 재판 형식에 대한 호기심 수준을 넘어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판과정에 대한 이해도는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높았고 유·무죄 평의과정과 양형토의 과정에서의 의견개진 정도와 상호토론 정도에 대해서 충분하였다는 응답이 높아 평의·평결 및 양형 토의과정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역할수행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무죄 판단에 비해 양형결정에 대해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무죄 판단시 영향을 준 주요 요인은 ‘제출된 증거’와 ‘배심원의 의견과 토의내용’,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었고 양형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은 ‘법률기준’, ‘배심원의견과 토의내용’, ‘판사의 의견’ 등이었다. 여러 사람의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올바른 결론으로 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의·평결 및 양형 토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다음은 배심원으로서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다. 배심원으로서 직접 참여하면서 느낀 어려움 가운데 심리 중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거나 장시간 진행 등의 ‘공판 참여 힘들’의 경우 어려웠다는 응답이 46.7%로 다른 요인에 비해 높아 효율적인 공판진행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법률지식 및 이해 관련 어려움’의 경우에는 학력별,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 배심원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배심원 설명서를 제작하거나 공판 과정과 평의 및 양형토의 과정에 대한 모의 영화를 제작하여 보여주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배심원의 충분한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4.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효과에 있어서 피고인의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큼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이 일반형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제도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다른 재소자에게 권하겠느냐고 물어본 결과, ‘다른 재소자에게 권하겠다’는 응답이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70.0%)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경험한 피고인(49.4%)보다 많았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이(55.8%)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보다(43.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심원이 유·무죄 및 양형 판단시 ‘학연이나 지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경험한 피고인에 비해 컸다.

다음은 국민참여재판 신청단계, 재판과정, 그리고 재판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 및 평가이다. 먼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신청이유로는 ‘재판이 공정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35.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이유로는 ‘잘 몰라서’가 전체의 42.0%로 가장 많았다. 한편, 재판과정 중 변호사의 도움이나 상의정도에 있어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경험한 피고인이 그렇지 않은 피고인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경험한 피고인에게 “일반형사재판을 받았다면 재판 결과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라고 물어본 결과, ‘지금보다는 가벼운 형을 받았을 것이다’는 응답이 전체의 40.5%로 가장 많았고, 일반형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면 재판 결과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라고 물어보았더니 ‘지금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는 응답이 전체의 45.3%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지 않고 일반형사재판제도를 경험한 피고인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효과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으며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의 경우 배심원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대한 우려가 적고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신청하는 주된 이유가 ‘재판이 공정할 것 같아서’이며 재판과정 중 변호사와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 사법의 신뢰성 향상 및 정당성 확보라는 맥락에서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발전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 목적, 운용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는 노력과 제도운영 상에서 피고인의 입장과 견해가 무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긍정적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5. 일반국민과 배심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심원의 경우 배심원의 경험이 없는 일반국민과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지니는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많았고,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는 가장 적고,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과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기여하는 측면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일반국민이나 배심원에 비해 가장 많았고, 앞으로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배심원으로서의 참여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어떠한 홍보 효과보다도 높아 배심원의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실질적인 도입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한 반면 피고인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재판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와 맞물린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피고인의 정확한 이해과정과 제도운영 상에서 피고인에 대한 배려와 통합의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피고인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사법참여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세분화하고 극대화시키려는 노력과 배심원으로 참여한 사람의 경험담을 활용하거나 배심원 관련 영화제작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지속적인 홍보가 절실하다. 또한 배심원 집단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대상과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대안마련으로 배심원의 부담과 어려움을 줄여나가는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참여재판제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제도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다.

6.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운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법률전문가 집단인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참여재판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재판의 도입 목적 및 취지로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사법에 대한 신뢰 구축”, “국민의 법의식 향상 및 법교육”에 대해서는 판사와 변호사의 경우 평균은 2 미만으로 대체적으로 현행 참여재판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검사의 경우에는 평균이 거의 2.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기여의 정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대해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평균이 2 이상으로, 참여재판이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있어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3년 반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참여재판이 어떻게 변화되어 오고 있는지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참여재판의 정착 정도”, “배심원의 재판참여의 적극성”, “배심원의 재판참여에의 자부심” 등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5.9%, 50.3%, 5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참여재판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도”, “배심원으로서의 참여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0.6%와 51.5%(평균값은 모두 2.5를 상회)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참여재판의 현장에서 체감되는 일반국민과 배심원의 관심 및 참여도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참여재판에 대한 일반국민과 배심원의 낮은 관심과 참여는 앞으로 완성된 참여재판제도가 우리의 사법체제에 제대로 자리잡는 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향상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현행 참여재판제도에 있어서 지속력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법관의 고유영역으로 성역시 되어 왔던 유무죄와 양형절차에 배심원이 참여하는 것과 지속력 부여에 대하여 판사를 포함하여 전체 법조 직역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판사의 경우 유무죄 판단절차와 양형판단절차에

배심원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2.5%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배심원의 유무죄와 양형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에 대해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7%와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검사의 경우에는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절차에의 참여에 대해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양형판단절차에의 참여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배심원 평결절차 참여에 있어서는 유무죄 평결과 양형평결 모두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37.9%와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변호사의 경우에는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절차에의 참여와 유무죄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5.8%와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양형판단절차 참여와 양형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에 대해서도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47.5%와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의 재판형식과 상이한 참여재판에 대한 법조 직역간의 업무부담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판사, 검사, 변호사 어느 직역에 있어서도 참여재판이 전혀 부담이 안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을 만큼 법조 전 직역에 있어서 큰 업무부담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법률전문가들이 어느 절차를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가에 대해 살펴본 결과, 판사와 검사, 변호사 모두 “장시간의 재판”을 가장 부담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판사64.5%, 검사75.4%, 변호사 55%). 이는 참여재판을 1일 또는 2일 이내에 신속하게 종결하고자 하는 현행 참여재판 진행방식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일반시민에 대한 배려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법률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배심원들의 판단 집중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진행방식이라 할 것이다.

참여재판제도의 내용 가운데 대상사건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법조 직역간의 견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즉 판사의 경우에는 “현행유지” 의견이 43.8%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의 경우에는 “대폭축소” 의견이 30.8%, 변호사의 경우에는 “일부확대” 의견이 55.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참여재판 대상사건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하는 검사들의 의견은 참여재판에 대해서 검사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의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재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배심원 평결과 관련하여 가장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기속력 배제와 항소 허용문제에 대해서, 판사와 검사의 경우 ‘대체로 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변호사의 경우에는 항소 허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타당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배제에 대해서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변호사 집단의 응답평균이 2.86과 2.37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관료 사법에서 시민 사법으로의 전환을 위해 도입된 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이 법관판결의 틀리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을 부여하고 항소를 제한하는 등의 일반시민의 판단에 대한 존중이 우선되어야 하고, 법률전문가들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재판이 우리의 사법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법률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은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였으며, 그 다음이 “공판준비절차의 내실화”, “배심원 선정절차의 개선”순이었다. 그리고 현재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판사와 변호사의 경우에는 “검사와 변호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29.8%와 35.6%로 가장 많았고, 검사의 경우에는 “일반국민에 대한 참여재판의 홍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응답률이 25.8%로 가장 많았다.

제3부 국민참여재판제도 정착을 위한 평가와 제언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조사분석을 시행한 결과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남과 동시에 시범실시단계에서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참여재판 시행성과로는 참여재판의 목적실현, 즉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사법에

대한 신뢰 구축, 피고인의 인권보장, 국민의 법의식 향상에 대하여 일반시민의 80% 이상, 배심원(배심원 후보자 포함)의 90% 이상, 참여재판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법률전문가 집단인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70% 이상이 참여재판의 목적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재판 목적 실현에 대한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는 현행 참여재판이 기초단계로서 어느 정도 성공적이며, 앞으로 보다 완전한 국민에 의한 사법참여제도로써 정착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형성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또한 참여재판에 직접 참여한 경험 여부가 배심원으로서의 참여도뿐만 아니라 배심원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자세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일반시민의 경우 55.9%가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데 비해, 배심원 혹은 배심원후보자로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78.9%가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나타냈다. 배심원으로서의 참여경험은 참여재판이 새로운 형사재판의 모델로서 충분히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재판과정을 통해 인식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참여재판 시행초기에 우려되었던 배심원에 의한 오판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로서 참여재판을 진행했던 법조 전문가들 역시 배심원의 유무죄 및 양형 평의의 합리성 수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한 사람이 한명도 없을 만큼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적어도 참여재판제도의 안착에 있어서 배심원의 판단능력을 문제로 삼을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재판제도의 시행은 국선변호인의 변호의 질과 그들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을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조사에 있어서도 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들에 대해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결과를 보면, 참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던 피고인의 경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70.3%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던 피고인의 응답률인 54%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참여재판을 직접 경험한 피고인들이 국선변호인의 변론활동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여재판에 있어서 변호의 질과 그로 인한 실질적 변호권의 보장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참여재판의 관건은 당사자 대등주의하에서 검사에 대응하여 변호활동의 반경을 확대하고, 설득력있는 변론기법을 개발하여 피고인을 충실히 변론할 변호사 집단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본 조사분석에서 나타난 참여재판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국민에게 있어서 참여재판에 대한 인지도의 하락이 참여재판에 대한 참여의사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그 존립기반으로 하는 참여재판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 및 참여의지의 하락은 참여재판의 안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이다. 또 다른 한계는 피고인 신청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현 참여재판제도의 문제이다. 본 조사결과 피고인의 경우 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오히려 참여재판에 대한 기피원인을 제공함에 따라, 피고인 신청주의가 참여재판제도의 안착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다른 재소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권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0.6%로, 참여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이 “다른 재소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권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70%로 나타난 것과 대조를 이룸을 볼 수 있었다. 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기만 한 제도가 아닌 이상 피고인의 선택에 제도의 운영을 맡기게 되면 본격적인 실시단계에서 이에 걸맞은 수준의 실시율을 담보하는데 한계²⁾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고비용 저효율의 비난에 밀려 시민의 사법참여의 염원은 요원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에서 나타난 현 참여재판제도의 가장 큰 부담은 바로 참여재판 진행시간으로 나타났다. 즉 배심원을 배려한 과도한 집중심리로 인해 피고인과 배심원은 물론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참여재판 진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법조 전문가나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일반시민이나 모두 부담스러워하는 하는 과도한 집중심리 방식을 계속할 것인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여재판은 진행시간은 정상적인 출퇴근 시간의 범위내로 하되,

2) 이동희,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평가와 개선방안”, 전북대 법학연구 통권 제30집, 2010, 242면

불가피하다면 2일 이상 연속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국민참여재판제도가 5년간의 시범실시기간을 마치고, 최종적인 형태의 국민의 사법참여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 연구의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입법적·정책적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먼저 입법적 제언으로는 첫째, 배심원 평결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참여재판제도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법 제정당시 헌법상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위헌논란의 소지를 피하고, 일반국민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안된 상태에서 평결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경우 오판의 위험성이 있음을 우려한 결과였다. 하지만 참여재판의 시범실시기간을 거치면서 배심원 평결에 대한 우려는 대부분 기우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배심원 평결과 판사 판결의 일치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조사에서도 배심원의 유무죄 및 양형판단의 합리성에 대한 법조 전문가들의 신뢰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재판이 단순히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사법의 민주성이 확보되었다는 허울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을 신뢰하고 그에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어야만 할 것이다. 둘째, 사실심리와 양형심리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형사소송법은 유무죄 심리와 양형심리를 절차적으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에 있어서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참여재판이 시작되면서 사실심리와 양형심리의 통합이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보다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유무죄 평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한 사정 즉 전과, 비행전력, 성행 등이 배심원들에게 제출되면서 배심원들로 하여금 유죄의 편견을 갖게 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졌고, 이로 인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졌다. 또한 피고인의 성장배경, 가정환경, 사회적 관계 등과 같은 양형사정들 역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유리 혹은 불리하게 작용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참여재판으로 유무죄에 대한 사실인정절차를 먼저 진행하여 유무죄를 결정하게 한 후, 양형을 위한 기일을 다시 열어 양형자료

심사와 평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의해 사실인정을 위한 절차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배심원들의 연일개정에 대한 부담감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에게도 양형단계에서 고려받을 수 있는 충분한 피해회복과 합의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참여재판제도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적어도 참여재판의 무죄평결 결과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 구조는 사후심적 요소를 가진 속심이고, 참여재판의 경우에도 항소심 구조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과 증거조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참여재판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이 스스로 재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합의를 통해 나온 법적 판단이 직업 법관으로 구성된 항소심에 의해 파기되어지는 현재의 재판구조는 참여재판의 존재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배심원 전원이 무죄평결에 이르렀고 법원 또한 무죄선고를 했다면 검사의 범죄입증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고, 이러한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넷째, 참여재판 희망의사표시 기간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참여재판법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참여재판법률 제8조 제2항 규정이 단지 피고인의 의사확인에만 지나치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7일이라는 기간제한규정을 두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동조항이 피고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법원의 해석에 의존하기 보다는 동조 제3항의 단서규정으로 의사확인서의 미제출이 참여재판 불희망의 사표시가 아니라 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서 미제출이 된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결정 내지 기일 이전까지 참여재판 희망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리행사의 시간적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참여재판 배제사유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참여재판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법원의 참여재판 배제결정이 20%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나자, 대법원은 대법원재판예규를 개정하여 배제사유 가운데 특히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제3호의 사유를 보다 구체화시켜 명문화함으로써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배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하지만 예규의 규정방식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 사유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예규에 규정된 3가지 사유로만 한정해서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배제결정권한을 크게 제약하는 의미는 갖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재판제도의 최종 형태가 결정되어지는 단계에 있어서는 참여재판에 대한 배제사유에 있어서 추상적·포괄적 사유는 삭제되어야 하며, 예외를 인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법률에 열거함으로써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배심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 인식전환을 위한 직·간접 참관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 선택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청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사실상 참여재판의 안착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지난 4년여 동안 참여재판이 진행되어 오면서 피고인들에 의한 참여재판의 기피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참여재판을 신청하게 되면 판사, 검사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아서 자신에게 재판이 불리해질 것으로 생각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 참여재판의 정착은 요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분 전달시 참여재판 홍보책자를 동봉하여 보내거나 구치소나 교도소에 참여재판 관련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참여재판에 대한 직간접적인 체험방식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참여재판에 대해 갖고 있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 참여재판 신청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참여재판 출석을 공가사유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현행 참여재판법률에 의하면 배심원으로 출석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규정³⁾을 두어 일반 시민의 배심원출석에 대한 법률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 의해서 배심원출석을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선언적 규정을 두기 보다는 통상 단체협약 또는 복무규정상 연월차 휴가와 별도의 휴가로 구분되는 유급휴가인 공가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유로서 배심원출석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통상 공가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라는 규정으로 포섭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적어도 병역법상의 동원훈련과 동등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로서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참여재판에 배심원 후보자로 출석통지를 받은 경우를 규정내에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공가규정에 배심원출석을 명시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참여재판의 상당부분을 맡고 있는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참여재판 외에 일반 국선변호업무까지 함께 병행하기 때문에 참여재판에 필요한 변론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선전담변호사 가운데 참여재판 전담 국선변호사를 별도로 지정하여 참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실질적 변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선변호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과도한 집중심리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참여재판 진행시간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하자는 것이다. 즉 참여재판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심원 선정절차에서 배심원후보자들에게 재판이 2일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럼에도 참여의사를 밝힌 후보자 가운데 배심원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여재판 진행기일을 현재 진행방식 보다 좀 더 여유있게 하게 되면 재판 진행시간도 일반 근로시간에 맞추어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재판 진행 관련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재판의 진행에 적합한 절차적 매뉴얼을 개발하자는 것이다. 현행 참여재판은 법률이 통과되고 제도로써 시행되기까지의 기간이 채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참여재판을 준비하는데 그만큼 충분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주어진

3) 참여재판법률 제50조

기간 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기 때문에 참여재판이 어느 정도 시행의 궤도에 올라간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참여재판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부족함은 바로 법원에 따라 참여재판의 진행수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참여재판에 있어서조차 법원간 수준 차이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능력과 열의가 어느 정도 인가에도 있지만, 참여재판의 각 절차를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는 것도 그 이유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배심원 선정절차 매뉴얼, 법관에 의한 법리설명자료 매뉴얼, 검사의 입증절차 매뉴얼 등이 개발되어 참여재판에 활용된다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진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1부

국민참여재판 시행 현황 분석

탁희성 · 최수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7년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우리의 사법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변화이며, 사법민주화의 한 획을 그었다. 이에 의한 국민의 사법참여는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성숙한 법의식을 제고하며, 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⁴⁾ 다만 이는 우리 사법의 경험적 결과물이 아니라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성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사법현실에 있어서는 상당히 낯선 제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법원도 검사도 변호인도 그리고 배심원으로서의 일반국민 및 피고인도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적응해나가는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시행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법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이루고자 했던 것 보다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패러다임이 중요했던 당시에는, 이와 같은 제도의 급격한 시행이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급격히 저하시켜 제도무용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2면

따라서 현행 참여재판은 과도기적 제도로서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시범적으로 5년간 실시되고 그 시행성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제도로 정착될 예정에 있다. 물론 동 법률에서 현행 국민참여재판이 시범모델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명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법률 제55조 제1항에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참여재판의 최종 형태에 대해서는 미확정상태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2012년을 끝으로 5년간의 시범실시가 종료되면 최종적으로 참여재판이 배심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참심제로 갈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우리 사법에 고유한 제3의 참여재판형태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남겨져 있다.⁵⁾

이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의 최종적인 도입 형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과도기적 시행단계에 있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평가하여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제도의 운용이 본래 지향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8년 시행 첫 1년간 시행된 참여재판에 대한 참관을 통한 참여연구를 수행하여 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과 도입과정에서 우려했던 이론적 쟁점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다만 그 당시 시행기간이 짧았고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조했던 참여재판의 진행으로 인해 충분한 분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 제시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재판 시행 4년차에 접어들어 평가에 필요한 사례수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5년간의 시범실시기간이 마무리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최종적인 참여재판 형태를 확정할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마련되기 이전에 참여재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 그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참여재판의 형태가 마련될 수 있는 자료를 뒷받침

5) 김상준, 배심평결과 판사판결의 일치도 및 판단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1, 1면.

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즉 2012년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 평가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제2절 연구내용

『국민의 형사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의하면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두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며, 대법원규칙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2012년으로 시범실시 5년이 마무리 되는데 국민참여재판의 최종모형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적인 준비가 아직까지 미정이라는 것은 늦은 감이 있으며, 시간적 여유 없이 급하게 최종모형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선택을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 확립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특히 현재까지도 법원 및 검찰 등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 확정적인 제도화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견해가 나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명확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참여재판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평가하여 봄으로써 시범실시에 따른 공과 과를 명확히 분석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사법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국민의 사법참여와 사법의 민주화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각 사법기관들이 참여재판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행을 위해 인적·물적·제도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를 살펴보고, 그와 아울러 참여재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규정들을 어떻게 개정해왔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참여재판 시행 이전부터 지적되었던 혹은 시행 이후 제기된 법제도의 쟁점들이 실제 참여재판 운용과정에서 어떻게 문제화되고 있는지 혹은 쟁점

논란이 해소되고 있는지를 검토함과 아울러 시행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운용상의 어려움, 비효율적 운용방식, 제도 운용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지난 3년간 진행되었던 321건의 참여재판을 분석하여, 참여재판의 시행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참여재판대상 피고인 가운데 참여재판을 선택한 피고인과 선택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비교분석해 보고, 특히 법원 역시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피고인들의 참여재판 철회이유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편 참여재판에 있어서 누구보다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배심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재판에 의해 국민의 사법참여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법률전문가인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행 참여재판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제도 운용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이며, 어느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분석해 내고자 한다. 또한 일반국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참여재판 시행 이후 3년 반 동안 어느 정도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조사분석을 토대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모델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과 아울러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2장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및 시행과정 개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및 시행과정 개관

제1절 시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

1. 관료사법에 대한 반성

해방 이후 근대사법이 도입된 이래 독재정권의 횡포로부터 그나마 유일하게 국민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사법이었다. 그래서 정치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의 확보는 사법부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민주화·의지의 실현⁶⁾의 한 부분으로 각인되면서 국민적 뒷받침하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실현되었다.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다른 권력기관으로 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의 독립도 초래하였다. 즉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기능의 확보를 위한 독립이 아니라 국민을 포함한 어느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도 거부하는 사법 자신만을 위한 독립이 되면서, 그들의 독립을 함께 염원했던 국민들로부터도 점점 괴리되어 버렸다. 이러한 사법권력의 폐쇄성은 바로 사법시험에 의해 선택된 소수 엘리트들에 의하여 형성된 집단적·

6) 한인섭, “사법민주화의 과정과 국민에 의한 재판의 탄생: 그 역사적 의미”, 시민의 사법참여, 2008, 75면.

권위적 관료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권력과 국민으로부터 모두 자유로운 사법부는 소수의 사법관료 엘리트에 의한 지배 모습을 띠게 된 것이다.⁷⁾ 이러한 관료적 사법은 사법의 수요자이자 권력행사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사법이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사법으로 존재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평가와 비판도 거부하는 가장 비민주적인 권력형태의 하나라는 비판까지 듣게 되었다.⁸⁾

따라서 기존의 사법에 고착되어 있는 폐쇄성에 기초한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적 요소를 배제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그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민의 사법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였다. 즉 사법의 관료화와 폐쇄성으로 인해 스스로의 변화를 거부하는 사법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민의 사법참여를 강력히 주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국민위에 군림하는 사법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헌법 제1조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권력을 부여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하여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민에 의한 사법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현실화되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2. 사법적 판단에 대한 불신 해소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것이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함으로써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주리라는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는 그 모든 사법불신을 압축시킨 단어로 대변되었다. 즉 사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 판례원칙, 형식적 법논리에 의거하여 국민의 일반적 법감정에 반하는 결과들이 누적되면서 사법에 대한 불만들이 형성되어 왔고, 이와 같은 사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7) 한인섭, 앞의 논문, 76면.

8) 박홍규, 사법의 민주화: 재판을 재판한다, 1994, 151면.

형사사법에서의 정의실현에 대한 불신을 광범위하게 확산시켰다.⁹⁾

2008년 법제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법의식조사 결과에서도 우리사회의 “유전 무죄, 무전유죄”가 통용된다는 것에 대해 65.3%의 국민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동연구원에서 실시한 법전문가대상 법의식조사결과에서도 70.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우리사회에 있어서의 사법불신의 수준이 심각하게 재고해야만 할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법에 대한 불신 해소의 필요성이 시민의 사법참여제도 도입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즉 시민재판관인 배심원 앞에서 법조인들의 담합 유착이 이루어질 여지는 없으며, 전관변호사라 해도 그날 우연히 선정된 배심원들이 그들이 누구인지 알 리가 없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이유도 없고, 미리 알아서 접대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재판에 시민이 참여하여 사실인정자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 법조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¹⁰⁾ 또한 시민이 사법에 참여하는 경우 법조 삼륜내의 네트워크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대신 충분한 증거와 주장을 통해 얼마나 일반시민인 배심원을 잘 설득하느냐가 중요하게 됨으로써 본래의 법조전문가적인 실력에 의한 사법절차의 진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 결국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해 사법절차에 대한 시민의 사법근접성을 높임으로써 사법수요자적 관점에서 사법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재판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던 것이다.¹¹⁾

3. 사법 민주주의의 실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권위적인 관료사법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국민을 위한 사법이 아닌, 사법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사법을 가속화시켰고, 이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 결국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고조시켜 왔다.¹²⁾

9) 한인섭, “법조비리문제와 대안”, 서울대 법학 제39권 제1호, 1998, 164-188면 참조

10) 안경환/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2005, 31면

11) 안경환/한인섭, 앞의 책, 31-32면 참조

하지만 사법권력은 국민주권주의하에서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마련된 국가권력이고, 국가권력에는 주권자인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요구됨이 국민주권주의의 기본원칙이다. 다른 통치권력인 행정부나 입법부는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 권력행사의 정당성에 관한 책임을 묻는 반면, 사법부는 그 구성에 있어서도 그리고 권력행사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국민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¹³⁾ 사법부는 법관직의 전문성과 사법의 독립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스스로를 성역화함으로써 가장 비민주적인 권력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법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민주권주의의 기초하에서 사법에서의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국민의 사법참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법민주주의의 실현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고, 일반국민의 사법에의 참여를 통해 사법권의 남용을 견제함으로써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제도인 것이다.

제2절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과정¹⁴⁾

1.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및 시행과정

참여재판의 도입논의는 1948년 정부수립과정에서 처음 논의되었지만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이후 1999년 대전법조 비리사건¹⁵⁾을 계기로 대통령

12) 윤영철, “사법개혁과 배심제”, 민주법학 제29호, 2005, 2면.

13) 이종수, “주권자의 사법참여가 왜 위험입니까?”, 시민의 사법참여, 2008, 14면.

14)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배경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2008년도 당 연구원 보고서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II”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관계로 본 보고서에는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15) 대전 법조비리사건은 현직 판사·검사를 비롯 검찰과 법원 직원, 경찰관 등 300여 명이 대전지방 검찰청 부장검사출신인 이종기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아온 것이 이종기 변호사의 전 사무장의 폭로로 드러난 사건이다. 검찰의 수사에 의해 25명의 검사들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찰은 검사장 2명을 포함, 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7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http://ko.wikipedia.org>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문제가 주요 안건의 하나로 제기되었고, 2000년 5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활동을 결산하는 최종보고서에서 참여재판제도의 도입의 필요성만을 긍정하는 의견¹⁶⁾을 개진하였다. 이로 인해 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참여재판에 대한 관심과 도입여부가 확대되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2003년 10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사법참여의 도입필요성을 인정하고 2004년 11월 중죄 형사사건에 한하여 배심제와 참심제 요소를 혼용한 절충형태의 “국민사법참여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 안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도입 안에서 제시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3년간 시범실시하여 2010년 1단계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모델을 결정하여 2012년 완성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 실시방안을 제시하였다.¹⁷⁾

사법개혁위원회 활동이 2004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고, 사법개혁위원회 후속 기구이자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2005년 1월 출범하면서 사법개혁위원회의 최종 건의안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성안하였다. 이전의 사법개혁위원회가 설계한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내용을 기본골자로 하여 성안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2005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동년 12월 국회에 제출되어, 2007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동년 6월 법률 제8495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로 제정공포 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경과 및 내용

가. 참여재판법률의 제정 경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2005년 당시 국회에 제출되었던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이 아니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정의결을

16) 대통령 자문위원회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0, 337면.

17)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V), 2005, 869-871면.

거쳐 통과된 법률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원안에서 수정되어 가결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형사소송법 규정과 동일내용 삭제

참여재판 법률 원안에는 참여재판의 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기 규정된 내용 혹은 동년 개정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제267회 국회 본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참여재판 법률 규정 가운데 형사소송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의결하였다.

삭제된 규정을 보면, 공판준비절차와 관련하여 원안에 규정되었던 제36조(의견서 제출), 제37조(공소제기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38조(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제39조(수사서류목록의 작성), 제41조(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제출), 제43조(검사, 변호인 등의 출석), 제44조(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제45조(당사자의 증거신청), 제46조(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제47조(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48조(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제49조(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제50조(준용규정), 제51조(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제52조(열람 등사된 서류 등의 남용금지)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공판절차와 관련하여 삭제된 규정은 제55조(집중심리), 제56조(구두 변론주의), 제57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제61조(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제62조(검사의 모두진술), 제63조(피고인의 모두진술), 제64조(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등이 있다.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삭제된 규정은 제66조(증거조사), 제67조(증거조사의 순서), 제68조(증인의 소환), 제69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70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제71조(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제72조(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제73조(피고인 신문) 등이다.

2) 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 의사 확인 방식 수정

참여재판 법률 원안에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관하여 기일을 열어 그 의사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일에 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를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를 국회 소위 심사에서 수정하여 피고인의 참여재판 진행의사 여부확인을 위한 기일을 여는 대신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 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도록 수정하였다.

참여재판 법률안 원안 규정	수정가결된 참여재판 법률 규정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대상사건의 피고인은 공소장 부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든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피고인이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서면만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기일을 열어 피고인을 출석시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든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피고인이 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은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다. ④피고인은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 또는 제10조제1항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제2항의 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u>피고인 의사의 구체적인 확인방법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u> ②피고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든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할 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피고인이 제2항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④피고인은 제9조 제1항의 배제결정 또는 제10조 제1항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3) 참여재판 소송관계인의 좌석관련 일부 수정

참여재판법률 원안에 있어서는 증인석과 관련한 규정이 별도로 없었는데, 수정가결과정에서 증인석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여 배심원과 마주보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신문시 증인석에 좌석하도록 하여 배심원 등이 피고인의 진술을 명확히 들을 수 있도록 수정 배치하였다. 또한 배심원석의 위치를 재판장, 검사, 변호사 사이 라고만 규정한 원안의 경우 ‘사이’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사이의 왼쪽’이라고 명확히 하였다.

참여재판 법률안 원안 규정	수정가결된 참여재판 법률 규정
제54조(소송관계인의 좌석) ①공판정은 판사·배심원·예비배심원·검사·변호인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②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등하게 마주보고 위치한다. ③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에 위치한다.	제39조(소송관계인의 좌석) ① 공판정은 판사·배심원·예비배심원·검사·변호인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②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등하게 마주보고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위치한다. ③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왼쪽에 위치한다. ④증인석은 재판장과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오른쪽에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마주보고 위치한다

4) 배심원 증거능력 판단 배제규정 신설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참여재판 법률안 원안 규정	수정가결된 참여재판 법률 규정
해당 규정 없음	제44조(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5) 판결선고 관련 규정 수정

참여재판법률 원안에는 판결선고시 배심원 평결결과를 피고인에게 고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그 이유를 고지할 의무를 법관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참여재판의 의미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판결선고시 재판장은 배심원 평결결과를 피고인에게 고지해야 하고,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판결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배심원 평결이 존중되도록 수정하였다.

참여재판 법률안 원안 규정	수정가결된 참여재판 법률 규정
제77조(판결선고기일)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를 선고 후에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49조(판결선고기일)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를 선고 후에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재판장은 판결선고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9조(판결서의 기재사항) ①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6) 배심원 신변보호조치 규정 수정

참여재판법률 원안에는 배심원 신변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일반조항적 규정만을 두었는데 이를 구체화하여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두고 법원의 직권뿐만 아니라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요청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참여재판 법률안 원안 규정	수정가결된 참여재판 법률 규정
제82조(배심원 등의 신변보호)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3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①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검사, 피고인, 변호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7) 참여재판법률 시행일자 수정

법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법시행일을 2007년 3월 1일에서 2008년 1월 1일로 시행일자를 수정하였다.

나. 국민참여재판법률의 주요 내용

형사재판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주된 특징적인 내용만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범위 제한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강도 및 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치사가 결합된 범죄 등 법정형이 3년 이상이 되는 중죄 사건과 합의부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 신청주의에 입각한 선택권 부여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하되,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참여재판 희망의사를 반드시 확인할 의무를 갖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참여재판에 대한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참여재판 신청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조직폭력이나 성범죄 같이 참여재판 진행이 적절치 않은 경우 법원이 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일반시민의 배심원으로서의 참여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배심원이라는 지위는 사법적 판단을 담당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와 제척사유를 정하여 두고 있다. 참여재판에 배석하는 배심원수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5인에서 9인까지 가능하며, 배심원 결원에 대비하여 5인 이내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공판준비절차의 필수적 개시

국민참여재판은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가 요구되므로 이에 따라 공판준비절차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재판장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하고, 이때 법원은 집중심리를 하는데 필요한 심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검사와 변호인은 공판준비절차에서 입증과 주장에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해야 하고, 공판준비기일에 있어서 배심원의 참여는 배제된다.

5) 만장일치와 다수결 방식의 배심원 평결

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단은 판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일치로 평결하도록 하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하도록 되어 있다. 배심원이 유죄평결을 한 경우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배심원 평결에 대한 권고적 효력 부여

배심원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다만 참여재판의 의미를 제고하기 위해 재판장은 판결선고시 피고인에게 배심원 평결결과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배심원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7) 최종적인 참여재판 형태 결정을 위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설치 규정

현행 참여재판은 5년간의 시범실시를 거친 후 최종 형태의 참여재판제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비하여 대법원에 조사와 연구수행을 위한 사법참여기획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결정할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제3장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입법적·사법적 변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입법적·사법적 변화

제1절 입법을 통한 국민참여재판의 변화

1.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연혁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8495호로 2007년 6월 1일 제정되었으며, 이는 다시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는 법률내용의 변화를 가져온 개정이 아니라 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범죄처벌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조문의 순서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에 불과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법률개정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동법률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에서 비판이 적지 않았고, 헌법소원의 제기도 지속적으로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 물론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없다- 단 한차례의 법 개정도 없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범실시 단계에 있는 미완의 참여재판에 대한 탄력적인 수용 보다는 과도한 경직성을 보임으로써 참여재판에 대한 비판의 여지를 더 확대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동법률에 대하여 입법발의된 개정법률안들은 대상사건의 확대를 그 중심으로 하고 있다. 즉 동법률의 제정 당시 예상했던 참여재판 진행건수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참여재판의 시행건수가 저조하게 나타나자 대상사건 제한규정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해자보호적 관점에서 참여재판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한 개정법률안도 있다.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한 참여재판의 변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실질적인 내용적 변화를 시도했던 입법안은 4개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4개 법률안 모두 의원입법형식이었으며, 3개의 법률안은 대상사건의 확대, 1개의 법률안은 참여재판 배제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불원의사 반영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720)¹⁸⁾

1) 제안이유

최근 잔혹한 아동 성폭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법원 내부에서의 양형기준이나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 수준은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어서 사법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의 평결이 상식에 기초하므로 일반인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재판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판결 관행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범죄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보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며 국민의 법감정에 충실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18) 동 개정법률안은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2010년 8월 3일 소관위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94회 국회 제8차, 제9차 검찰관계법심사소위에 상정되어 2011년 7월 11일 소관위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로 계류되어 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동 개정법률안은 제5조에 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규정된 각호 가운데, 현행법상 기 규정된 제2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외에 동법률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대상사건으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동 법률개정안의 의의 및 한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아동성범죄를 포섭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론재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최근 들어 심각한 아동 성범죄의 발생으로 인해 국민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배심원들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정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용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아동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참여재판이 진행되고 해도 피해자가 증인출석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 이와 같이 성범죄와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참여재판을 거부할 권리와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할 권리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적 개선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법률과 같이 피고인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이상, 아동성범죄와 같이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률 개정의 의의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813)¹⁹⁾

1) 제안이유

2009년 전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은 7,047건이나 실제 참여재판이 진행된 사건은 95건에 불과한 실정인 바, 국민참여재판을 피고인의 신청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우 특히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참여재판이 줄어들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에 따라 참여재판 대상사건 중 피고인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사건(미수, 예비, 음모는 제외)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제5조 제2항) 다만,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기 전까지 포기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도록 한다. 또한 신청대상사건의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2) 동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동 개정법률안은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참여재판 대상사건 가운데 “피고인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사건(미수, 예비, 음모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동조 제2항을 신설하고 있다. 또한 개정 법률안이 신설한 제5조 제2항에는 의무적 참여재판 진행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참여재판의 권리에 대한 포기를 인정하여 “다만,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현행 참여재판 법률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참여재판 배제와 관련한 내용은 각각 개정법률안 제5조 제3항과 제4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19) 동 개정법률안은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입법으로 2010년 8월 3일 소관위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4회 정기국회 제8차 제9차 검찰관계법 심사소위에 상정되었으며, 2011년 7월 1일 소관위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된 상태에 있다.

3) 동 개정법률안의 의의 및 한계

동 개정법률안은 일정한 유형의 참여재판 대상사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참여재판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처럼 특정범죄에 대하여는 강제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동 조항이 적용되는 고의살인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규정의 적용을 둘러싸고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포기의사를 요건으로 한 것은 강제주의를 택할 경우 법원의 부담이 될 수 있고,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계에서의 위헌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 참여재판법률상의 신청주의를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의 의무적 강제조항을 두는 것은, 결국 법원으로 하여금 고의살인을 수반하는 대상사건에 대해서만 배제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을 전제로 해당 대상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포기의사를 공판준비기일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참여재판 진행의사를 중복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서 오히려 참여재판의 진행이나 활성화를 억제할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276)²⁰⁾

1) 제안이유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경우 불특정다수의 배심원들에게 피해자의 신원 및 피해사실 등이 노출됨에 따라 2차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게 된다.

20) 동 개정법률안은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2010년 9월 8일 소관위인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2011년 7월 11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소외 현상’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피해자의 명예보호’ 간에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2) 동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동 개정법률안은 참여재판 배제결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9조 제1항 각호 3에 참여재판 대상사건 가운데 성범죄유형에 해당하는 죄 뿐만 아니라, 대법원 규칙 제2237호 제2조(대상사건) 4호에 규정된 범죄, 그리고 그 대상사건과 관련 사건으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의 피해자도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성범죄인 경우에는 기수의 경우는 물론이고, 미수, 교사, 방조, 예비, 음모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도록 동 개정법률안은 규정하고 있다.

3) 동 개정법률안의 의의 및 문제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서 성범죄가 적합한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왔으며, 실제 재판업무에 종사하는 판검사의 경우 참여재판에 부적합한 범죄유형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비록 참여재판 진행과정에서 증인석에 차폐시설을 하여 피고인과 배심원들의 시선으로부터 피해자를 차단해도 다수의 배심원 앞에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적 고려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성범죄 피해자들이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성범죄 피해자 의사를 가능한 반영하여 참여재판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동 개정법률안은 바람직한 제안을 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388)²¹⁾

1) 제안이유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죄명을 당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 이를 위임하는 이원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법원의 재판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성안 과정에서 연간 100-200건 정도의 형사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제도 시행 뒤인 2008년에는 65건, 2009년에는 94건 만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참여재판 대상사건 총 11,498건 중 약 1.4%)됨으로써 당초 예정한 참여재판 시행 사건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재판에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고, 사법신뢰 향상을 위해 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참여재판 대상사건을 1심 합의부 사건으로 확대할 경우 대상 사건은 연간 약 2만 건으로 현재와 같은 시행률인 1.4%를 유지하는 경우 연간 약 280건의 참여재판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등 일정한 범죄유형의 피해자들은 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이러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2차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자 보호의 필요가 큰 경우 및 피해자가 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참여재판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동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참여재판 대상사건을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확대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할 경우 참여재판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전체에 대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재판 대상사건 건수가 거의

21) 동 개정법률안은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2010년 9월 17일 소관위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2011년 7월 11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다.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²²⁾

그리고 동 개정법률안은 참여재판 배제결정 사유에 있어서도 대상사건의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배제의 범위도 확대가능 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즉 참여재판의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성범죄 피해자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대상사건의 피해자가 그 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3) 동 개정법률안 의의 및 문제점

동 개정법률안이 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참여재판을 활성화하고,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대보장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앞으로 참여재판의 정착화를 위해 요구되는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 개정법률안과 같이 합의부 사건 전부를 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확대하는 경우 아직 시범실시단계에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법원과 검찰의 입장에서 이를 모두 수용하여 재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 개정법률안에 의한 대상사건의 확대와 관련하여 법원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법사위에 제출한 것으로 볼 때²³⁾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재판을 진행해 나갈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응이라 할 것이다. 다만 대상사건을 확대해 나감과 함께 현재와 같이 밤늦게 참여재판을 진행하여 하루 내지 이틀 만에 재판을 종결하는 시스템을 정비하여 배심원들이 보다 실효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대상사건의 확대만으로 참여재판이 정착되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동 개정법률안은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22) 동 개정법률안과 같이 개정하는 경우 2009년도 참여재판 대상사건수가 7,047건에서 14,090건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동 개정법률안, 14면 표2 참조

23) 국민일보 2011.8.24자 “국민참여재판 확대, 法은 반기고 檢은 못마땅”;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285734&cp=du>,

원하지 않는 경우 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한 입법취지와 달리 피해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실상 모든 대상사건의 피해자가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참여재판의 배제가 좌우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피고인의 권리로서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피해자에 의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소결 - 개정법률안을 통해서 본 참여재판의 변화 방향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안들은 대상사건의 확대를 통한 참여재판의 활성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참여재판의 제한사유 확대에 그 중점이 두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개된 참여재판을 통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상호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개정입법안들은 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 확대방향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즉 현행 법률과 같이 특정범죄유형을 추가로 규정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유형에 대한 확대방식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제한규정은 시범적 단계에서 택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적 요건이었다면 이제 시범실시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 있어서 대상사건을 어떠한 범위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보호의 충돌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 이미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입법적으로 피해자의 참여재판 반대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현재 참여재판 배제사유 가운데 제9조 제1항 제3호의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되어 법원의 배제결정이 이루어지고는 있다. 즉 모든 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참여재판의 진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사실상 참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는 피해자에 의해 좌우되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범죄와 같이 피해자의 인권과 2차적 피해예방을 무엇보다 우선 고려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참여재판의 진행여부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하는 입법적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현재와 같이 참여재판 배제사유의 해당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일임하는 것이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피해자보호간의 비교형량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 아닐까 한다.

제2절 판례를 통한 국민참여재판의 변화

1.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에 관한 판례 동향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에 의거하여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은 참여재판이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헌법적 논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입안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즉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참여재판 반대론자의 주장을 피하기 위한 시범적인 입법형태인 것이다.

이와 같은 과도기적인 형태의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에 대하여 법원 역시 일관된 해석을 해나가기 보다는 법원에 따라 참여재판의 취지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에 따라 권고적 효력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참여재판의 최종 판결에 있어서 대다수의 법원들은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존중하여 그에 따르는 선고를 하는 반면, 배심원의 평결과는 다른 법적 판단을 한 경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⁴⁾

24) 2011년 6월 1일 광주지법 판결(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 무죄평결과 달리 법원은 살인미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 2011년 7월 6일 대전지법 판결(성폭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상해죄에 대해서는 유죄평결을 내린 배심원 평결과 달리 법원은 공소사실 전체

다만, 이러한 하급심 판결과 달리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 평결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참여재판의 실질적 기속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가. 대전고법 2008.5.28. 선고 2008노123, 2008감노18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절차에 따라 진행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이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에 대한 법원의 견해를 밝힌 첫 번째 판결이라 보여진다. 즉 배심원 평결의 법적 성격은 권고적 효력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의 근본적인 취지에 비추어 배심원 평결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에서 비록 필요적 형감정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심리의 오류를 범하여 파기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배심원의 양형평결이 양형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 민주주의적 이상을 실현하고, 국민의 상식과 경험을 재판절차와 그 결과에 반영하여 사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사법신뢰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웃의 법률문제를 주인 된 입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된 대한민국 국민은 명실상부한 주권자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권고적 효력에 그치고 있는 배심원의 평결이 종국에 가서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심원 평결과 의견의 합리성, 정확성, 적정성 보장이 긴요하다. 이 재판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의 헌신적 노력이 필요하다. 법원은 그 심급을 불문하고 배심원들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제1심 법원은 재판 결과에 상급심에서 무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상급심

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 2011년 9월 15일 울산지법 판결(살인미수에 대해서는 유죄, 상해에 대해서는 무죄평결을 내린 배심원 평결결과와 달리 상해에 대해서도 유죄인정한 판결 선고: 본 판결의 내용은 언론보도를 참조한 것으로 해당 사건의 참여재판 판결문이 아직 어디에도 게재되지 않은 까닭에 정확한 선고일자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로서도 배심원 판단 존중의 기초를 유지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되, 국민참여재판의 적절한 운영을 조력하기 위하여 혹여 생길 수 있는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적 엄정심사를 다할 책무를 부담한다. 이하 중략.

제1심 판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심사를 다하지 못하고 그 형을 정한 잘못이 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배심원들의 양형판단에 있어서 법논리적 차질을 빚게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에서 7년 6월까지이다. 즉, 최대 7년 6개월까지 징역형의 실행 선고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배심원들은 제1심의 미흡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항소심에서 시정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견을 제시하였다. 범행의 동기, 방법 및 수단,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객관적 및 주관적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형량은 결과적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양형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심신미약감경을 하는 외에 거듭 작량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제1심 법원이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한 것은 배심원들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에 기초한 의견을 존중한데 따른 것으로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제1심의 배심원들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 법원의 오류를 그 상식에 기초하여 적정하게 시정하였다고 평가할 것이다.」

나.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14065

이 판결은 참여재판에 대한 존중감을 천명한 판례로서, 대법원은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만장일치의 배심원의 무죄평결 권고가 바탕이 된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일반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의 파기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판시하고 있다.²⁵⁾ 즉, 항소심이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의 권고에 따른 1심의 판결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첫째, 새로운 증거조사를 해야 하고 둘째, 1심과

25) 김상준, “배심평결과 판사판결의 일치도 및 판단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1.2. 8-9면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밝혀져야 한다는 점을 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판단이 반영된 1심 판결을 뒤집으려면 적어도 참여재판에 준하는 수준의 직접적인 증거조사를 거쳐 반대증거를 발견하라고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²⁶⁾ 이러한 새로운 판단기준은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에 대하여 사실심리상 논증적 지속력 정도는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⁷⁾고 할 것이다.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 판결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제1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배심원의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26) 김상준, 앞의 논문, 10면

27) 김상준, 앞의 논문, 11면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다.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4450판결

이 판결은 앞서 기술한 2009도 14065판결의 논지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무죄평결에 대하여 실질적 기속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합부로 뒤집어서는 안될 것이고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하 중략.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함으로써 그 범의의 유무가 공판의 쟁점이 되자, 피해자, 목격자 등 다수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배심원 7명이 만장

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새로운 증거조사도 없이,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이를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실질적인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원칙 아래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형사공판절차를 통해 제1심이 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음으로써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그 결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2. 국민참여재판의 배제 관련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권리로 이해되어야 하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예외적인 사유는 동법률 제5조 제2항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참여재판의 배제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을 요하는 몇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참여재판 신청기간인 7일을 도과한 피고인의 참여재판 신청의 적법성 및 허용성 여부, 그리고 법원의 배제결정 없는 통상재판 진행의 타당성 여부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권리로서 인정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범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가. 대법원 2009.10.23. 자2009모1032 결정

이 결정은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진행결정을 하자, 이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한 사건이다. 검찰은 “참여재판법률 제8조 제2항, 제3항이 피고인의 의사확인기간을 7일로 정하고, 위 기간내에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를 도모함에 있다. 중략...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불변기한인 7일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사안에 이르기까지 회부결정을 하는 것은 창조적 법해석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고, 나아가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에 관한 법원과 검사의 예측가능성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일뿐더러, 배심원 후보자들 역시 피고인의 변심에 따라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소송경제상으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광주고법은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것은 피고인의 엄연한 권리인 것이며, 중략.. 절차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번복시기의 제한은 배제결정 또는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7일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였더라도 번복시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번복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검찰항고를 기각²⁸⁾하였지만 이에 검찰이 대법원에 재항고한 사건이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참여재판 신청확인서의 미제출이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해야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8) 광주고법 2009.8.10. 자2009로1 결정.

「생략... 법에서 정하는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로 보아야 하는 점, 법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는 불복의 방법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중략 .. 위 규정의 취지를 위 기한이 지나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의사를 변경하여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수 있는 것인데,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도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더라도 재판이 지연되는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재판이 더욱 신속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대법원 2011.9.8. 선고 2011도7106

이 판결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인 7일이 되기도 전에 참여재판 배제결정도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참여재판의 권리를 침해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이에 대법원은 배제결정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한 것은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뿐만 아니라 즉시항고권까지 침해한 위법한 공판절차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앞서 본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나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분을 송달한 날로부터 7일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회 공판기일에 앞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사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바로 전날에 구치소장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된 후에야 위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뿐 아니라 제1심 법원이 위 신청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즉시항고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제1심 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제3절 헌법소원을 통한 국민참여재판의 변화

1.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동향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동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호, 제46조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동 법률에 의한 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제한, 법원에 의한 참여재판 배제결정이 피고인의 기본권인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모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가. 2008헌바12, 2009.11.26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2007.2.8.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 계속중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에 법원이 기속되지 않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46조 제5항 및 위 법 시행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만 위 법률이 적용되도록 규정한 같은 법 부칙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8.2.4. 기각되자 2008.2.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당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판사인 경우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재판참여법률 제5조 제1항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한정적으로 열거함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당해 사건과 같은 유형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재판참여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에 법원이 기속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취지를 몰각시킬 뿐 아니라 법관의

황포를 통제할 수 없게 되므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다) 재판참여법률 부칙 제2항은 참여법률 시행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만 위 법률이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시행 이전에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자를 그 이후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요지

(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및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우리 헌법에서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고, 단지 헌법 제 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중략..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서 보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평등권 침해여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규정한 재판참여법률 제5조 제1항의 경우 입법자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형성함에 있어서 주로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이 법정형이 중한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대상 사건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기타의 범죄는 대법원규칙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실제 형사사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범죄 등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범죄에 대하여는 일단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형사재판과 상이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물적, 인적 여건이 처음부터 구비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서 이 조항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조항은 시행초기에 국민참여재판을 어느 정도 선호하고 신청할 것

인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상 사건의 범위만을 확대하여 놓으면 법원의 수용능력을 초과함으로써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일단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중죄 사건에 국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실증적·경험적 연구를 거쳐 대법원규칙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남겨 둔 것으로서, 중죄 사건에 한정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해 본 연후에 그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판참여법률 제5조 제1항은 효율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제한한 재판참여법률 제5조 제1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역시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차별취급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2008헌마312, 2009.7.30.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7. 1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07고단743)에 공소제기되어 2008. 3. 5.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9. 4.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2008노479)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고 상고하였으나 2008. 12. 11. 대법원(2008도8401)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

청구인은 위 공소사실로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08. 4.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법원조직법상 합의부의 심판

권에 해당하는 사건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요지

참여법률은 부칙 제2항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 1. 1.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참여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려면 2008. 1. 1. 이후에 공소제기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7. 7. 1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참여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청구인이 기소된 사건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어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가. 2009헌마162, 2009.3.31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인 강간상해 등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2008. 2. 27. 위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08. 2. 2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법률’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절차에 회부하고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였다. 위 사건을 이송받은 대구지방법원은 2008. 3. 6. 참여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구지방법검찰청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이에 위 검사는 2008. 3. 10.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성명, 연령, 용모, 기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건의 경우도 재판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사실이 공개될 위험이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2008. 3. 12. 위 사건이 참여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여, 위 사건을 통상절차에 회부하였고, 청구인은 1심에서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받고(대구지방법원 2008고합99),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위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의 근거조항들인 참여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성폭법 제21조 제1항, 제3항이 청구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본안판단요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 있었던 2008. 3. 12.경에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9. 3. 1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

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동법률 제46조에 대한 위헌확인소송은 모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²⁹⁾ 즉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던 시점, 늦어도 항소를 제기한 시점에서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한 시점에서 청구된 사건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5. 소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3년이 지난 시점에 이와 같이 위헌확인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참여재판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가에 대한 합일된 논의도 없었고, 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제한하고, 포괄적 배제사유를 둠으로 인한 참여재판의 취지가 반감되고 그로 인해 참여재판의 원활한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어느 범위에서 보장되고 어느 범위에서 침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의 제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법적 논증을 통해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가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일정한 판단기준과 그와 같은 제한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지만, 참여재판의 배제사유와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거나 이론적 검토 없이 단지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들어 헌법소원

29) 2010헌마 156, 2010.3.30, 2010헌마 246, 2010.4.27.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상의 요건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 별도의 심판청구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미완인 제도인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법적 지위와 그 범위 그리고 그 한계 등에 관하여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일정한 법적 판단을 제시한다면 앞으로 참여재판의 완성된 형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보다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현재결정이라 할 것이다.

제4장

국민참여재판 정착을 위한 사법기관의 노력

국민참여재판 정착을 위한 사법기관의 노력

제1절 법원의 노력

1. 참여재판 운영을 위한 노력³⁰⁾

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법원은 참여재판의 절차와 진행을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참여재판의 진행모델을 연구하고, 적절한 홍보, 전담재판부의 확충, 참여재판을 위한 물적, 인적 시설의 완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³¹⁾

한편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별 사건 배당에서도 배심원들의 이해도모와 법적평가에 따른 업무 부담을 감안, 참여재판 1건 처리 시 일반재판 3건을 마친 것과 같은 배당건수를 산정하고 있다. 현재 각 법원별로 참여재판 전담판사가 정해져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참여재판 전담부서를 운영하다 2009년부터 해당 재판부에서 바로 참여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30) 임성근, “국민참여재판 준비상황”, 국민의 사법참여연구회, 2007-2008, 279-288면 참조.

31) 이인석, “국민참여재판의 동향과 양행”, 국민의 사법참여연구회 학술토론회 자료집 10, 2010, 54면.

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및 관련 예규 제정

법과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기관의견조회를 전후하여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자문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반영한 내용을, 2007. 10.4일 대법관 회의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을 반영하여 관련 예규, 즉 배심원 선정절차 등과 관련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예규(예규 1303호), 사법참여기획단 규칙(규칙 2143호) 등을 제정하였다.

나. 국민참여재판 서류양식 제정 및 실무매뉴얼 발간

대법원은 선정기일 통지서, 질문표 등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 관련 서류 양식과 선정기일조서 등 배심원 선정절차 관련 재판양식 등의 서식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실무매뉴얼을 발간하였으며, 실무매뉴얼에는 참여재판 절차진행에 대한 안내, 재판장 설명, 평의절차 진행방법에 대한 안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실제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에 있어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배심원 직무 면제기준, 이유부기피에 대한 판단기준, 선정기일의 효율적 운영방안, 평의절차의 원활한 진행, 판결결과와 다른 판결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개별 재판별로 배심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서를 작성하여 배심원에게 배포하고 있다. 배심원 설명서에는 재판절차의 개요, 배심원 유의사항(재판관련 유의사항과 일반적 유의사항), 해당 사건의 개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핵심쟁점의 설명(쟁점판단을 위한 법리 설명), 증거관계에 관한 설명(증인과 검사제출 증거, 변호인 제출증거,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방법), 판단시 유의사항(무죄추정원칙, 증명정도, 증거재판주의, 증거판단방법과 자유심증주의), 용어 설명, 헌법 및 관련 법률, 평의절차 안내 등이 수록되어 있다.

다. 배심원 관리시스템 개발

대법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송부받은 전산정보를 활용하여 매년 단위로 배심원 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배심원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러한 배심원후보예정자 명부작성 및 배심원후보자 선정 및 관리와 관련한 모든 절차는 대법원에서 개발한 배심원 관리 전산시스템에 의한다. 배심원 관리 전산시스템은 배심원후보예정자 명부선정기일 통지서, 질문표 등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 관련 전산양식, 선정기일 조서 등 배심원 선정절차 관련 재판양식, 배심원 선정 관리 관련한 각종 통계항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 사법참여기획단 구축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시행에 대비하여 검찰, 변협, 학계, 언론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법원에 사법참여기획단을 설립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지원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참여기획단이 설립되어 활동하기 이전에는 준비기구로 ‘사법참여기획단설립준비위원회’를 2007년 6월 18일에 설치하였으며, 위원장 1명(사법정책실장)과 11명의 위원(판사 4명, 검사 2명, 변호사 2명, 대학교수 2명, 기자 1명) 등으로 구성하여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모의재판 준비 및 국민교육 및 홍보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 모의 참여재판 실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실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모의재판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법률 제정 이후에는 18개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구역 주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모의재판을 실시하였다. 모의재판 실시 이후 백서를 발간하고 배심원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규 및 실무 매뉴얼 작성 및 참여재판 시행준비에 반영하였다.

바. 국선전담변호사제 확대

현행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제도가 운영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낮은 보수와 의무적 성격 등으로 인해 변호의 질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법원은 국선변호인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4년 9월부터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정변호사로 하여금 국선변호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통해, 일반적인 국선변호인이 사선변호업무 가운데 국선변호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국선변호업무에 소홀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동 규칙 제15조의 2에 국선전담변호사라는 표제하에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처음에는 11명의 국선전담변호인이 서울중앙, 인천, 수원,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법원에서 시범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2005년 3월 11개 지방법원에 20명이 해당 법원장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였다. 하지만 일부 법원만을 대상으로 국선전담변호사를 실시함으로써 생색용 사법서비스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06년 전국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하여 국선전담변호사를 배치하고, 보수도 월 40건 80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각급 법원장이 위촉하던 것을 법원행정처가 선정하고 각급 법원장이 위촉하고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형태로 바꿔 선정절차 및 변호인의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또 국선전담변호사의 독립된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되 서민들의 소송구조사건이나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을 포함한 국선변호 사건만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에 7인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인위원회가 설치되어 국선전담변호사 선정 및 관리감독을 하며, 각급 법원의 국선변호 감독위원회가 국선전담변호사들의 활동을 평가해 계약을 연장 또는 해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보수를 높이고 그 지위를 보장하는 대신 관리감독을 엄격히 함으로써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처우가 향상되면서 지원자가 점차 증가하여 현재 국선전담변호사 1인당 사건수가 25건 정도로 적절한 수준으로 정착되었으며, 2010년 3월 현재 전국 4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 6개 지원에 135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필요적 변호로 규정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면서 국선전담변호사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법률전문가인 법관을 상대로 변론을 펼쳤던 방식과 달리 일반인인 배심원들에 대하여 법적 쟁점들을 설득해야 새로운 변론 방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참여재판에 있어서의 국선전담변호사의 역할을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원별로 국민참여재판만을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를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³²⁾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한 변호기법을 익히고, 배심원에 대한 설득력있는 변론방식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참여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재판의 활성화 및 정착화에 있어서 국선전담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321건 가운데 82.6%에 해당하는 265건이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이었고, 그 가운데 국선전담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169건으로 전체 참여재판 가운데 52.7%를 차지하는 등 참여재판의 절반 이상을 담당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지탱하고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으로 참여재판을 전담할 수 있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수가 전국적으로 보다 확대되고, 이들의 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참여재판 변론기법과 매뉴얼이 개발되어 제시될 수 있다면 참여재판이 우리 사법에 효과적으로 정착하는데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2)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만을 전담하는 국선변호인 10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창원지법도 국민참여재판을 전담하는 12명의 국선전담변호사를 둬으로써 참여재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일보 2010년 6월 29일자 신문.

사. 참여재판에 대한 홍보

1) 배심원에 대한 홍보

가) 배심원 안내서 발간

2007년 10월 국민참여 재판절차와 배심원 역할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16면의 배심원 안내서 2만부를 발간하였다. 안내서의 내용은 인사말, 질문과 답변,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질문과 답변에는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3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배심원 안내서는 배심원후보자에게 선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함께 송달하여 배심원 후보자에게 자신이 참여할 형사재판절차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여 충분한 이해하여 선정기일에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또한 배심원안내서를 법정에서 지참하게 함으로써 수시로 참고하여 충실한 배심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배심원 오리엔테이션 비디오 제작

배심원 비디오는 판사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10여분 분량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는데,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에게 상영하여 국민참여재판 절차 및 배심원 역할, 유의사항에 관하여 안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재판 오리엔테이션 동영상도 제공되고 있다.³³⁾

2) 참여재판 대상 피고인에 대한 홍보

현행 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개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참여재판 신청이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참여재판의 정착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대상범죄 피고인에 대해 공소장 부분을 송달할 때에만 참여재판 설명 리플렛을 배부했던 것을 확대해 영장실질심사시 대상범죄 피의자에게도 리플렛을

33) mms://wwwmd.scourt.go.kr/scourt/info_high/배심원안내비디오.wmv

교부해 참여재판신청을 유도하고 있다.³⁴⁾ 또한 피고인 접견실에 참여재판 안내문 등 참여재판 설명자료를 상시 비치하여 두고,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해 경찰서 유치장에 참여재판 홍보 만화를 비치하고,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한편, 참여재판의 의미, 내용, 유리한 점에 대해서 담당경찰관이 설명하도록 했다. 그리고 앞으로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에서 참여재판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할 수 있도록 해 피의자와 피고인들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부족한 피고인들을 위한 참여재판 전담 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원 행정처는 전국 법원별로 국선전담변호사를 채용하여 별도 사무실을 제공하고, 보수도 620~800만원 정도로 함으로써 국선변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특히 참여재판 전담변호사를 지정하여 참여재판을 해야 할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³⁵⁾ 그리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선변호인이 1명인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1명을 더 추가로 선정하여 줌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참여재판 진행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³⁶⁾

3) 일반국민에 대한 홍보

법률실무 종사자 및 일반국민에게 참여재판에 관한 개괄적 해설서 형태의 실무매뉴얼 책자를 발간하여 널리 배포하였다. 또한 참여재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만화를 제작하여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하여 비치도록 하였고,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등에 배부하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참여재판 만화과일은 대법원 홈페이지, 사법부 블로그, 법률신문, 변호사신문 등의 협조를 얻어 연재하였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의 홍보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

34) 대법원 사법참여기획단 제11차 회의, 2010.10.29, 3면

35) 2010년 3월 현재 전국법원에 124명의 국선전담변호인이 배치되어 있다.

36) 서울 동부지법 참여재판 전담부 부장판사의 인터뷰 내용 요약.

하여 TV와 라디오를 이용하여 참여재판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일반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대법원은 1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참여재판에 관한 공공광고를 제작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2. 참여재판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 -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 도입

그림자 배심제도는 일반국민에게 배심원이 되어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법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원과 국민의 상호소통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10년 9월 13일 동부지법에서 최초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한양대 법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주배심원단 외의 별도 배심원단들을 구성, 같은 재판에 참관하게 한 뒤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관한 평의·평결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식 배심원단과 동수로 구성된다. 다만 평결 내용은 재판부 판결에 반영되지 않는다. 즉 그림자 배심원제도는 정식 배심원이 아닌 ‘그림자 배심원’이 재판을 참관하고 배심원처럼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등에 관해 평결을 해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배심원의 평결이 재판부에 전달되는 것과 달리 그림자 배심원의 의견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는다.

그림자 배심원 제도는 일반인들에게 재판과정을 알려 사법부 판결의 신뢰도를 높이고 진행 과정을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대학생, 교사, 노인 등 표본이 될 수 있는 집단을 임의로 구성해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림자 배심원 제도는 그룹별로 나타나는 토론, 평결과정의 특징을 면밀히 살핀 뒤, 선정방식을 보완하고 구체화해서 현재는 일반인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제2절 검찰과 법무부의 노력

1. 참여재판 관련 검사들에 대한 교육 실시

검찰은 참여재판 준비를 위해 검찰내 활동으로 법무연수원에서 각종 토론·

스피치 교육은 물론 모두진술, 신문기법, 최후 논고방법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전국 검사를 상대로 교육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재판의 진행을 전담하는 검사들에 대해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13명의 전담 검사가 미국을 방문해 재판을 참관하고, 배심 재판 훈련 전문기관인 미국 NAC(National Advocacy Center)에도 검사 7명을 파견해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8년 10월 8일부터 8주 동안 성균관대에서 전국 부장검사 128명을 대상으로 법정토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 정착을 위한 전국 부장검사 스피치와 토론능력제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민참여 재판제도’ ‘스피치와 토론실행의 기본원리와 실제’ ‘설득스피치 대본 작성기법’ ‘정책/의회식 방송토론의 기법’ ‘방송토론의 실제’ ‘정책/의회식 토론공격과 방어전략 실습’ ‘시사/정치 방송토론 시청 및 전략비평’ 등의 주제로 실습위주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이러닝과 이러닝 보완 체험교육을 통해 스피치, 공판진행기법, 연극기법, 의견진술기법 등 화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심제 미국 전문가 초청 강연 및 강의내용을 검찰통신망 검찰방송 온라인 교육란에 게재하여 상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지검별 모의법정 설치

전국 지방검찰청 별로 국민참여재판정과 동일한 형태의 모의법정을 설치하여 사전에 검사들이 모의법정에서 충분히 리허설을 하고 재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의법정에는 영상녹화시설, 롤스크린, 빔프로젝터, 대형모니터, 유선마이크, 핀마이크 등 첨단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모의법정 내 방청석 뒷편에 모니터링룸을 설치해 전자장비 구동과 영상녹화 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모의법정을 국민참여재판 준비과정에서 리허설 진행, 구체적 시나리오사건을 이용한 모의재판 연습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3. 국민참여재판 대비 현장응용 프로그램 자체개발

참여재판의 도입으로 인한 재판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배심원 대상 스피치 교육 프로그램 및 간부 검사에 대한 미디어 프레이닝 과정을 자체 개발하였다. 또한 검찰 맞춤형 파워포인트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자체 제작 등 법정 증거를 시각화할 수 있는 기법교육 및 각종 자료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검사들의 스피치 능력 향상과정을 도입하고, 검찰 맞춤형 법정증거 시각화 자료 콘텐츠를 보유함으로써 참여재판 대비 공판 능력을 향상시켰다.

4. 국민참여재판 수사공판 업무 및 배심원 선정업무 실무 매뉴얼 발간

대검찰청은 참여재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2007년 국민참여재판 수사·공판업무 실무매뉴얼을, 2008년에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업무 실무매뉴얼을 발간하였다.

2007년 실무매뉴얼에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과정과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참여재판 실시에 따른 검찰의 대응방안으로서 공판에 관여하는 기본적인 자세로서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입증 및 심리계획 수립 및 주장과 입증에 관한 기본적인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반국민인 배심원의 입장에서 용어를 선택하고, 발음 및 발성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각적 효과를 위한 서면, 도표, 프리젠테이션 이용도 권장하고 있다.

참여재판을 위한 증거서류 작성방법으로서 특히 서증의 작성방식과 제출방식을 각 서증유형별로 설명하고 있으며, 증거물인 경우 중요증거의 법정현출방식과 증거물 요약서를 제출하는 방식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서증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서면기재형식이기 때문에 배심원들로 하여금 최대한 이해가 쉽게 도면, 사진 등을 이용한 내용고지나 제시를 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참여재판 공판수행과 관련하여서는 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방식과 질문내용,

질문시 주의해야 할 자세와 용어, 질문을 통한 배심원 자세 및 성향 파악, 배심원 후보자 기피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배심원에 대하여 법률과 증거 관련 설명을 위한 사전준비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배심원 선정절차가 끝난 이후 사실심 심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알기 쉽고 효과적인 모두진술 방법과 유의사항, 증인신문에 대한 사전준비 및 증인의 법정출석 확보방안, 증인신문을 위한 기본적인 신문기술, 주신문 방법 및 순서, 주신문 주요원칙, 반대신문기법, 피고인 신문방법, 영상녹화물의 조사방법, 효과적인 배심원 설득을 위한 시각자료 준비 및 활용방법(지도, 도면, 애니메이션, 입체투시도, 평면도 등 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08년 배심원 선정업무 실무매뉴얼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심원 구성의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구체적으로 참여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배심원 선정절차는 배심원 후보자의 편견과 선입견을 찾아 기피신청을 하고, 검사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배심원후보자를 설득하며, 배심원 후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배심원후보자가 가급적 검사를 선호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배심원 후보자의 편견과 선입견 파악 방법, 배심원 설득을 위한 효과적인 전달방법, 배심원과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방법, 배심원 선정의 일반적 기준, 변호인의 부당한 질문에 대한 이의제기, 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의 예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대국민 홍보활동

법무부는 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5대 도시 지하철에 참여재판의 내용과 취지를 알리는 안내물을 게시하였으며, 만화형식으로 된 홍보 소책자(만화로 보는 국민참여재판) 10만권을 발간해 전국 검찰청 및 경찰서, 주민센터 등 4만6,000여 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전국 대형 전광판 95개에 ‘국민참여재판 시대 개막’이라는 제하의 광고도 게재하였다.

이와 함께 법무부 홈페이지와 전국 검찰청 홈페이지에 국민참여재판 안내창을 마련,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법무부의 만화

홍보물을 전자책 형태의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재판과 관련한 문답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제3절 법조의 노력에 따른 참여재판 실무의 변화

지난 4년여 동안 진행되어온 참여재판은 재판실무를 크게 변화시켜 놓았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일반시민인 배심원이 있다. 법률지식으로 무장된 법조전문가들 간의 공방의 장이었던 법정에서 배심원이 참여하여 사실판단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배심원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기존의 재판에 있어서는 검사나 변호사 모두 법관과 같은 법조인으로서 재판 관행이나 법률적 사고에 대해 공통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감대를 전제로 하여 증거를 제시하고 의견을 피력하는 등의 변론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배심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인식의 공유가 없기 때문에 법관에게 하는 소송행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론을 하게 되면, 배심원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사실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심증을 형성하고 평결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배심원은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자료나 변론자료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인지심리적 메카니즘이 법관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진행해야만 한다.³⁷⁾

따라서 법원은 배심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지휘하고 소송전반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입장에서 중립적인 태도로 사건의 핵심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내용으로 배심원에게 전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시간 지속되는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각 절차에 대한 적절한 시간배분을 해야만 하고, 참여재판이 감성재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검사와 변호사도 배심원을 대상으로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심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각자의 주장과

37) 김현석,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에 따른 공판절차의 변화”, 저스티스 통권 101호, 2007, 122면

반론을 배심원이 이해하기 쉽게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보조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참여재판은 기존의 재판에서 볼 수 없었던 입체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참여재판을 진행하면서 변화된 재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심원을 설득해야 하는 참여재판의 특성상 전문적인 법률용어가 배심원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용어수준으로 순화되고,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나 검사의 고압적인 자세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피고인을 추궁하는 형식의 강압적인 신문도 사라졌다.³⁸⁾

둘째, 무죄평결 및 무죄 선고 이후 참여재판을 준비하는 공판검사 뿐만 아니라 수사검사의 경우도 참여재판 신청이 들어와 그 실시가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 중심이 아닌 배심원 중심으로 철저히 배심원의 시각에 맞추어 모두진술, 증거조사절차, 최후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모두진술에서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공소사실의 요지뿐만 아니라 쟁점까지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증거조사 및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배심원의 시각에서 진행하며, 증거지시 설명도 영상재현기, 파워포인트, 동영상 재생 등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최후변론에서도 쟁점 요약 및 증거정리, 유사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을 제시함에 있어서 파워포인트 이용방식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다.³⁹⁾ 즉 법정에서 정보전달 방식이 글이 퇴화하고 말이나 파워포인트, 사진, 그림, 도표 등 멀티미디어 수단이 발전되어 보다 생생한 재판이 가능하게 되었다.⁴⁰⁾

셋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심원 선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배심원 선정절차에서 배심원 성향파악을 위한 다양한 질문예가 만들어졌다. 질문방식도 배심원 후보자 전체에 대한 질문과 특정후보자 개인에 대한 질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배심원 후보자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노력⁴¹⁾을 기울이게 되었다.

38) 이인석, “국민참여재판의 동향과 양형”, 국민의 사법참여 연구회, 학술토론회 자료집 10, 2010, 23면

39) 황금천, “국민참여재판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민의 사법참여, 2008, 404면

40) 이인석, 앞의 논문, 23면

넷째, 참여재판에 있어서는 배심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그 관건이고, 구술 중심이기 때문에 검사의 진술을 배심원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스피치 교육이 강화되었다. 또한 지검단위 모의법정을 설치하여 참여재판 전 과정에 대한 리허설 장소로 활용하여 배심원의 심증 정도를 사전점검하고 효과적인 증거현출방법 및 의사표현방법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⁴²⁾

여섯째, 검사와 변호인 공개된 법정에서 배심원을 상대로 최선을 다하여 주장과 설득을 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적절한 양형판단을 하고자 고민하는 재판부의 모습이 배심원에게 생생하게 전달됨으로써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등이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⁴³⁾

41) 황금천, 앞의 논문, 404면

42) 황금천, 앞의 논문, 404면

43) 이인석, 앞의 논문, 23면

제5장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현황 분석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현황

분석⁴⁴⁾

제1절 참여재판 접수 및 처리 현황

1. 참여재판 대상사건 대비 접수 현황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첫해인 2008년도 참여재판 대상사건수는 4,45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2%인 233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접수되었다. 2009년도에는 참여재판 대상사건수가 7,047건으로 이 가운데 4.8%인 336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참여재판 대상사건수가 7,93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5%인 437건이 참여재판으로 접수되었다. 참여재판 대상사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실제 참여재판 접수건수를 보면 2008년 시행 이후 참여재판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고,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여 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하

44)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현황 분석을 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raw data를 수집하려고 하였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자료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법원행정처의 자체평가서인 『2008-2010 성과분석보고서』를 활용하였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의 성과분석보고서가 데이터를 제시함에 있어서 연도별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누적데이터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시 재분석하였으며, 연도별 데이터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참여재판 판결문을 분석한 다른 자료에 제시된 데이터를 보충하여 연도별 수치를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였던 2009년에 오히려 접수비율이 4.8%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의외라 보여진다. 그나마 대상사건 확대 이후인 2009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접수된 224건의 사건 중 43.3%인 97건이 규칙개정⁴⁵⁾으로 추가된 사건⁴⁶⁾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참여재판의 위축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행히 2010년도에 들어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규칙 개정⁴⁵⁾에 따른 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확대효과로 인해 접수비율이 5.5%로 높아진 것은 앞으로의 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해 다행한 일이라 할 것이다.

표 1-1 연도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수 대비 신청건수(%)

구분	연도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참여재판 대상사건수	4,451	7,047	7,933	19,431
참여재판 신청건수	233(5.2)	336(4.8)	437(5.5)	1,006(5.2)

한편 범죄유형별 참여재판 대상사건수 대비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기타 범죄유형을 제외하면 강도살인·강도상해 등의 범죄가 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가장 많이 포함되고 있으며, 대상사건 대비 참여재판 접수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살인·살인미수 등(9.5%) 이고, 그 다음이 상해치사·폭행치사 등(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죄와 치사의 경우 그 동기 및 정황과 관련한 법적·사실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우발적 결과로 사망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참여재판을 통해 자신의 양형에 대한 배려를 호소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유형보다 참여재판 접수비율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45)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개정⁴⁵⁾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2,3호(뇌물), 제5조의4 제2항, 제3항, 제6항(상습강도, 절도), 제5조의10 제2항(운전자 등 폭행치사상), 형법 제297조(강간), 제299조(준강간),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등이 대상사건으로 추가되었다.

46) 이인석, “국민참여재판의 동향과 양형”, 국민의 사법참여연구회, 학술토론회자료집 10, 2010, 24면.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8~2009년까지의 2년간 누적 참여재판 접수율 보다 2010년도 접수율이 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으로는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의 참여재판 접수율이 다른 범죄유형보다 2010년 들어 좀 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들의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표 1-2 범죄유형별 참여재판 대상사건수 대비 접수건수(%)

	2009 ⁴⁷⁾		2010		계	
	대상 사건	접수 건수(%) ⁴⁸⁾	대상 사건	접수 건수	대상 사건	접수 건수
살인·살인미수 등	1,634	150 (9.2)	833	85 (10.2)	2,467	235 (9.5)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	421	31 (7.4)	227	25 (11.0)	648	56 (8.6)
강간상해 강간치상 등	1,691	57 (3.4)	1,149	68 (5.9)	2,840	125 (4.4)
강도살인· 강도상해 등	2,966	170 (5.7)	1,795	110 (6.1)	4,761	280 (5.9)
성폭범	2,274	77 (3.4)	518	26 (5.0)	2,792	103 (3.7)
기타	2,512	84 (3.3)	3,411	123 (3.6)	5,923	207 (3.5)
전체	11,498	569 (4.9)	7,933	437 (5.5)	19,431	1,006 (5.2)

한편, 〈그림 1-1〉에서 나타나듯이 월별 참여재판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1월부터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9년 8월 접수건수가 51건으로 급증하고 이후 다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0년 10월 접수건수가 55건에서 2010년 12월 38건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0년도에 들어서는 월별 접수건수가 30건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을 볼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7) 2009년도 통계는 2008.1.1부터 2009.12.31까지의 누적 통계이다.

48) 이 표에서 비율은 범죄유형별 대상사건 대비 접수건수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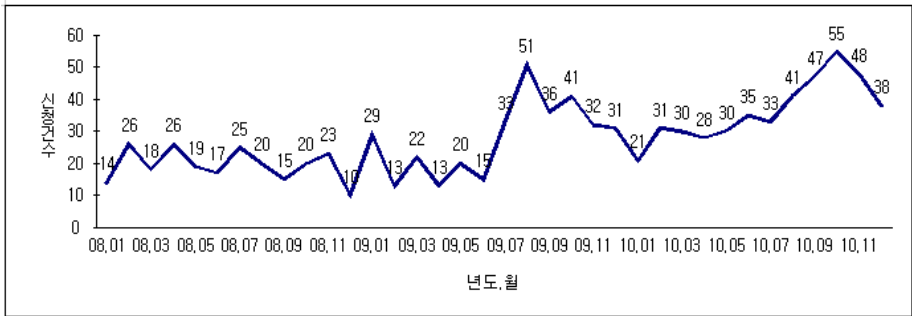


그림 1-1 월별 국민참여재판 신청건수

다음으로 법원별 국민참여재판제도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3년간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98건), 부산지방법원(97건), 수원지방법원(95건), 광주지방법원(73건), 인천지방법원(72건), 서울남부지방법원(64건), 대전지방법원(63건) 등의 순이다.

한편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접수건수의 2008년 대비 증가폭이 가장 큰 법원은 약 3.8배로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이다. 즉,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08년 6건에서 2010년 23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이 4건에서 15건으로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7건에서 24건으로(약 3.4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9건에서 30건으로(약 3.3배) 증가하였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은 오히려 13건에서 10건으로 감소하였으며,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은 2008년도 접수건수 보다 감소한 것은 아니지만 2010년 들어 오히려 그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실제 참여재판을 참관해보면 참여재판의 진행에 법원, 검찰, 변호사 모두 열의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법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법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법조삼륜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따라 참여재판의 활성화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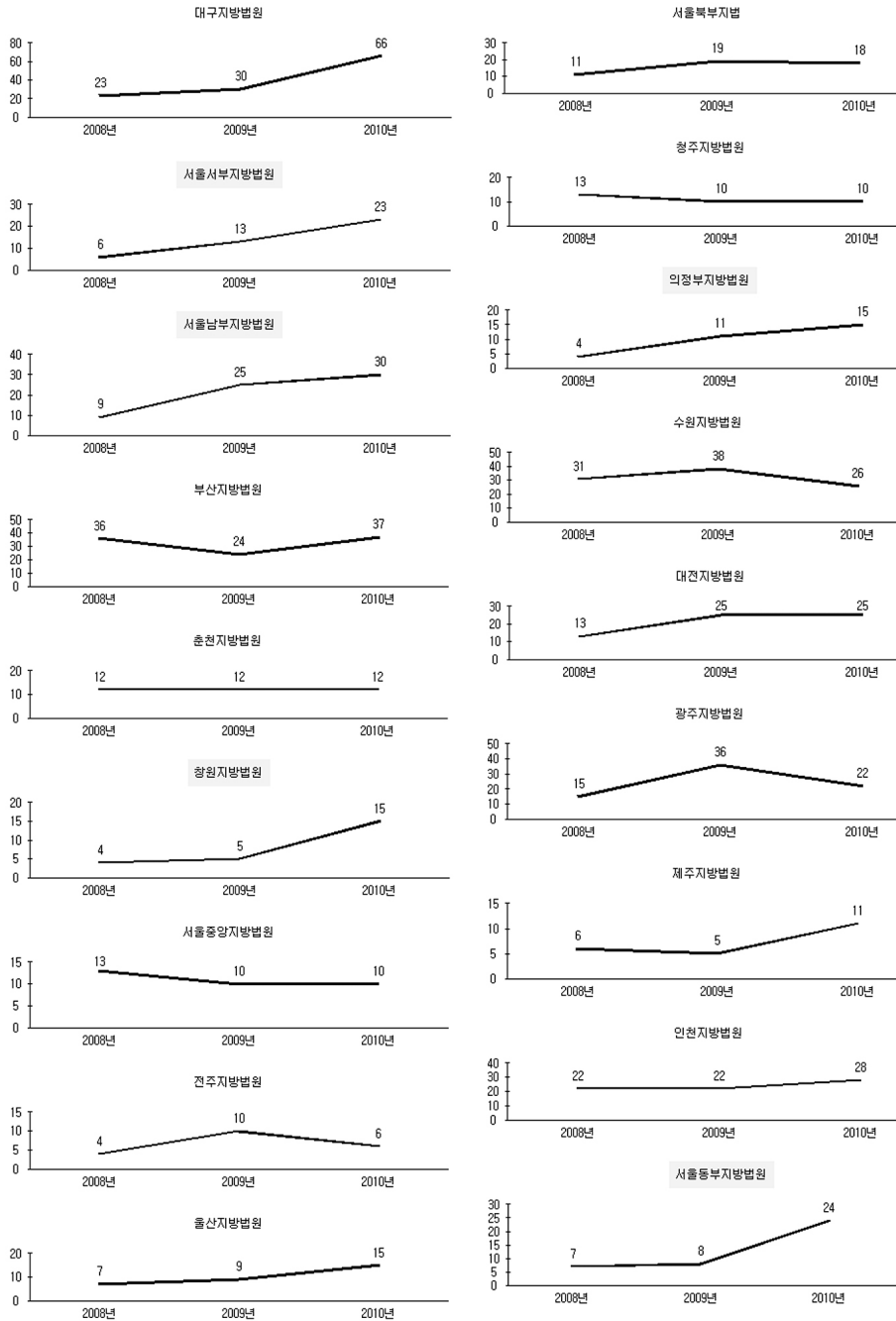


그림 1-2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접수건수(2008년, 2009년, 2010년)

2. 국민참여재판 진행 현황

가.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

국민참여재판의 진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즉 지난 3년간 참여재판 신청건수 1,006건 가운데 철회된 경우가 전체의 404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경우는 321건으로 31.9%, 법원의 배제 결정이 난 경우는 211건으로 2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연도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연도별 경향성을 보면, 법원에 의한 참여재판 배제결정비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피고인에 의한 철회율과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 실시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도에 전체 233건 가운데 64건으로 27.5%였으나 2010년에는 437건 가운데 162건으로 37.1%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표 1-3 연도별 국민참여재판제도 건수 및 비율

(단위 : 건(%))

구분		연도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처리	국민참여재판실시	64(27.5)	95(28.3)	162(37.1)	321(31.9)
	배제	61(26.2)	75(22.3)	75(17.2)	211(21.0)
	철회	90(38.6)	138(41.4)	176(40.3)	404(40.1)
미제		18(7.7)	28(8.3)	24(5.5)	70(7.0)
합계		233(100)	336(100)	437(100)	1,006(100)

출처 : 법원행정처, 「2008-2010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재구성

법원별로 국민참여재판 실시건수를 살펴보면 대구지방법원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지법이 32건,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이 각각 31건으로 다른 법원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건수의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법원별 참여재판 접수건수 대비 참여재판 시행건수를 비교해 보면 서울동부

지법이 참여재판이 접수된 39건 가운데 24건을 참여재판으로 진행함으로써 참여 재판 실시율이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지법은 그 비율이 50.8%, 울산지법은 48.4%, 창원지법이 45.8%, 전주지법이 4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법원에 따른 참여재판 실시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동부지법의 경우 2008년 0%에서 2010년 91.7%(접수건수 24건, 실시건수 22건)로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으며, 대전지법의 경우에도 2008년 38.5%에서 2010년 68%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수원지법은 지속적으로 매년 참여재판 실시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서울북부지법은 2008년 33.3%였던 실시율이 2010년 17.4%로, 인천지법은 31.8%에서 17.9%로, 청주지법은 46.2%에서 30%로, 부산지법은 27.8%에서 21.6%로, 광주지법은 20%에서 18.2%로 오히려 참여재판 실시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나머지 법원들은 매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진행현황 분포

법원	기간	접수	처리						미제
			참여재판		배제		철회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서울 중앙지법	2008년	10	2	20.0	2	20.0	3	30.0	3
	2009년	34	9	26.5	10	29.4	16	47.1	2
	2010년	54	20	37.0	8	14.8	22	40.7	4
	소계	98	31	31.6	20	20.4	41	41.8	6
서울 동부지법	2008년	7	0	0.0	3	42.9	4	57.1	0
	2009년	8	2	25.0	2	25.0	0	0.0	4
	2010년	24	22	91.7	2	8.3	2	8.3	2
	소계	39	24	61.5	10	25.6	6	15.4	2
서울 남부지법	2008년	9	2	22.2	0	0.0	7	77.8	0
	2009년	25	7	28.0	5	20.0	10	40.0	3
	2010년	30	8	26.7	3	10.0	26	86.7	0
	소계	64	17	26.6	8	12.5	43	56.3	3
서울 북부지법	2008년	11	0	0.0	3	27.3	7	63.6	1
	2009년	19	2	10.5	1	5.3	10	52.6	6
	2010년	18	2	11.1	5	27.8	16	88.9	2
	소계	48	4	8.3	9	18.8	33	68.8	2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V)

법원	기간	접수	처리						미제
			참여재판		배제		철회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서울 서부지법	2008년	6	2	33.3	1	16.7	1	16.7	2
	2009년	13	4	30.8	0	0.0	9	69.2	0
	2010년	23	4	17.4	0	0.0	19	82.6	0
	소계	42	10	23.8	1	2.4	29	69.0	2
의정부 지법	2008년	4	1	25.0	1	25.0	2	50.0	0
	2009년	11	4	36.4	2	18.2	5	45.5	0
	2010년	15	6	40.0	3	20.0	2	13.3	4
	소계	30	11	36.7	6	20.0	9	30.0	4
인천지법	2008년	22	7	31.8	4	18.2	9	40.9	2
	2009년	22	6	27.3	7	31.8	10	45.5	1
	2010년	28	5	17.9	4	14.3	14	50.0	5
	소계	72	18	25.0	15	20.8	33	45.8	6
수원지법	2008년	31	7	22.6	6	19.4	15	48.4	3
	2009년	38	10	26.3	3	7.9	19	50.0	6
	2010년	26	14	53.8	6	23.1	9	34.6	0
	소계	95	31	32.6	15	15.8	43	45.3	6
춘천지법	2008년	12	3	25.0	6	50.0	3	25.0	0
	2009년	12	1	8.3	2	16.7	8	66.7	1
	2010년	12	4	33.3	5	41.7	4	33.3	0
	소계	36	8	22.2	13	36.1	15	41.7	0
대전지법	2008년	13	5	38.5	0	0.0	6	46.2	2
	2009년	25	10	40.0	6	24.0	9	36.0	0
	2010년	25	17	68.0	1	4.0	3	12.0	4
	소계	63	32	50.8	7	11.1	18	28.6	6
청주지법	2008년	13	6	46.2	0	0.0	5	38.5	2
	2009년	10	3	30.0	3	30.0	5	50.0	1
	2010년	10	3	30.0	3	30.0	0	0.0	4
	소계	33	12	36.4	6	18.2	10	30.3	5
대구지법	2008년	23	8	34.8	8	34.8	7	30.4	0
	2009년	30	12	40.4	11	36.7	2	6.7	5
	2010년	66	20	30.3	28	42.4	12	18.2	6
	소계	119	40	33.6	47	39.5	21	17.6	11
부산지법	2008년	36	10	27.8	17	47.2	6	16.7	3
	2009년	24	6	25.0	4	16.7	13	54.2	0
	2010년	37	8	21.6	6	16.2	18	48.6	6
	소계	97	24	24.7	27	27.8	37	38.1	9

법원	기간	접수	처리						미제
			참여재판		배제		철회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울산지법	2008년	7	3	42.9	3	42.9	1	14.3	0
	2009년	9	5	55.6	1	11.1	2	22.2	1
	2010년	15	7	46.7	0	0.0	5	33.3	3
	소계	31	15	48.4	4	12.9	8	25.8	4
창원지법	2008년	4	2	50.0	0	0.0	2	50.0	0
	2009년	5	1	20.0	3	60.0	1	20.0	0
	2010년	15	8	53.3	0	0.0	5	33.3	2
	소계	24	11	45.8	3	12.5	8	33.3	2
광주지법	2008년	15	3	20.0	5	33.3	7	46.7	0
	2009년	36	10	27.8	12	33.3	10	27.8	4
	2010년	22	4	18.2	2	9.1	20	90.9	0
	소계	73	17	23.3	19	26.0	37	50.7	0
전주지법	2008년	4	2	50.0	1	25.0	1	25.0	0
	2009년	10	3	30.0	0	0.0	6	60.0	1
	2010년	6	3	50.0	0	0.0	4	66.7	0
	소계	20	8	40.0	1	5.0	11	55.0	0
제주지법	2008년	6	1	16.7	1	16.7	4	66.7	0
	2009년	5	0	0.0	2	40.0	3	60.0	0
	2010년	11	7	63.6	0	0.0	2	18.2	2
	소계	22	8	36.4	3	13.6	9	40.9	2
합계	2008년	233	64	27.5	61	26.2	90	38.6	18
	2009년	103	95	28.3	75	22.3	138	41.1	28
	2010년	437	162	37.1	75	17.2	176	40.3	24
	소계	1,006	321	31.9	211	21.0	404	40.2	70

다음으로 범죄유형별 참여재판 진행현황⁴⁹⁾을 보면 “살인·살인미수”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110건(34.3%)으로 가장 많이 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성폭법”이 20건(6.2%)으로 가장 적게 참여재판이 진행된 범죄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도살인·강도상해”가 89건(27.7), “기타 범죄”⁵⁰⁾가 42건(13.1%), “강간상해·강간

49) 법원행정처, 2008년도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5면, 2009년도 성과분석 16면, 2010년도 성과분석 16면 자료 재구성.

50)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자료에 의하면 기타 범죄에는 방화치상과 특가법상 위반죄 중 참여재판 대상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치상”이 35건(10.9%), “상해치사·폭행치사”가 25건(7.8%)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도별로 범죄유형에 따른 참여재판의 진행건수가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보면, 다른 모든 범죄유형은 매년 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성폭법”은 오히려 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건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참여재판 진행사건 가운데 “성폭법”으로 인한 참여재판 진행 비율은 2008년 10.9%에서 2010년 3.7%로 1/3수준으로 감소하는데 비해, “강간상해·강간치상”의 경우에는 오히려 매년 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2008년 3.1%에서 2010년 13.6%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라 보여진다. 즉 성범죄에 대한 참여재판이 대체적으로 기피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가운데서도 피고인들이 참여재판을 선호하는 범죄유형과 기피하는 범죄유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참여재판이 진행된 성폭법위반 사건의 구체적인 범죄내용이 강간상해, 강간치상과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2008년과 2009년에는 “살인·살인미수”가 참여재판으로 가장 많이 진행되는 범죄유형이었는데 비해, 2010년에는 “강도살인·강도상해”가 “살인·살인미수”보다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비율이 높았다. 이에 비해 2008년도에 참여재판 진행 비율이 가장 낮았던 범죄유형은 “강간상해·강간치상”이었는데, 2009년에는 “상해치사·폭행치사”, 2010년에는 “성폭법”이 가장 낮은 참여재판 진행률을 보였다.

표 1-5 연도별/범죄유형별 국민참여재판 진행건수

(단위 : 건수(%))

년도	접수 건수	범죄 유형별 참여재판 진행건수						진행 건수 합계
		살인·살인미수	상해치사·폭행치사	강간상해·강간치상	강도살인·강도상해	성폭법	기타	
2008	233	29 (45.3)	6 (9.4)	2 (3.1)	20 (31.3)	7 (10.9)	0 (0)	64 (100)
2009	336	38 (40.0)	4 (4.2)	11 (11.6)	24 (25.3)	7 (7.4)	11 (11.6)	95 (100)
2010	437	43 (26.5)	15 (9.3)	22 (13.6)	45 (27.8)	6 (3.7)	31 (19.1)	162 (100)
계	1,006	110 (34.3)	25 (7.8)	35 (10.9)	89 (27.7)	20 (6.2)	42 (13.1)	321 (100)

나. 법원의 배제결정 현황

앞에 제시한 <표 1-4>를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3년간 국민참여재판 신청 접수건수 1,006건 가운데 법원에 의한 참여재판 배제건수는 211건, 배제율은 21.0%로 나타났다. 법원에 의한 참여재판 배제결정비율은 2008년 26.2%에서 2009년 22.3%, 2010년에는 17.2%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10년 4월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예규”를 통해 배제사유를 규정 한 참여재판 법률 제9조 제1항 3호의 포괄적 배제사유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함에 따라 2010년 들어 배제결정비율이 대부분의 법원에서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은 2010년 들어 단 한건도 배제결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동부지법은 2008년 배제율이 42.9%에서 2010년 8.3%로 1/5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서울 서부지법은 16.7%에서 0%로, 부산지법은 47.2%에서 16.2%로, 울산지법은 42.9%에서 0%로, 광주지법은 33.3%에서 9.1%로, 전주지법은 25%에서 0%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법원에 의한 참여재판의 배제결정비율을 낮추기 위해 예규까지 개정하여 배제사유를 구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법은 2008년 34.8%였던 배제율이 2010년 42.4%로 오히려 높아졌으며, 수원지법과 춘천지법은 2009년에 배제율이 잠깐 낮아졌다가 2010년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범죄유형별⁵¹⁾ 배제율을 보면, 성범죄의 경우 접수건수 228건 가운데 63건이 배제됨으로써 배제율이 27.6%로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높은 배제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강도강간, 강도살인, 강도상해를 포함하는 ‘강도 등’의 배제율이 23.2%, 특가법위반이나 방화치사 등을 포함한 기타범죄유형의 배제율이 20.3%, 상해치사와 폭행치사의 배제율이 17.9%의 순으로 나타났고, 살인과 살인미수의 배제율이 13.2%로 가장 낮았다. 특가법위반이나 방화치사 등 기타범죄의 경우 2008-2009년도 배제율이 27.4%였는데 2010년도에는 그 비율이 15.4%로 낮아짐으로써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배제율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51) 범죄유형에서 ‘살인 등’은 살인과 살인미수가, ‘강도 등’은 강도강간,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강도상해가, ‘상해치사 등’은 상해치사, 폭행치사가, ‘성범죄’는 성폭법위반과 강간치사가 ‘기타’에는 방화치사와 특가법위반이 포함됨.

한편 살인 등의 범죄에 대한 참여재판 배제율은 13.9%에서 11.9%로, 상해치사 등 범죄의 경우에는 19.4%에서 16.0%로, 강도 등 범죄의 경우에는 26.8%에서 17.9%로 감소했다.

표 1-6 범죄유형별 접수건수 대비 배제건수

(단위 : 건(%))

범죄 유형	연도						합계		
	2008-2009			2010					
	접수	배제	배제율	접수	배제	배제율	접수	배제	배제율
살인 등	151	21	13.9	84	10	11.9	235	31	13.2
강도 등	168	45	26.8	112	20	17.9	280	65	23.2
상해치사 등	31	6	19.4	25	4	16.0	56	10	17.9
성범죄	135	41	30.4	93	22	23.7	228	63	27.6
기타	84	23	27.4	123	19	15.4	207	42	20.3
합계	569	136	23.9	437	75	17.2	1,006	211	21.0

다음으로 법원에 의한 배제결정에 적용된 참여재판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의 배제사유를 보면, 각호 1인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적용된 배제결정은 지난 3년간 한 건도 없었으며, 각호 2인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적용된 배제결정은 2008-2009년의 경우 32건, 2010년의 경우에는 6건으로 총 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원에 의한 배제결정이 이루어진 대부분의 참여재판사건은 각호 3인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배제사유로 적용되었다. 즉 2008~2009년에 동조 제3호가 적용되어 배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104건, 2010년에는 69건으로, 전체 배제결정사건의 82%에 해당하는 173건이 동조 제3호의 배제사유를 적용한 것이었다.

표 1-7 법원에 의한 배제사유별 건수

적용 법조		배제현황		
		년도	건수	비율
제9조 제1항 제1호	배심원 안전 위협 · 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2008-2009년	0	0.0
		2010년	0	0.0
		소계	0	0.0
제9조 제1항 제2호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2008-2009년	32	23.5
		2010년	6	8.0
		소계	38	18.0
제9조 제1항 제3호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	2008-2009년	104	76.5
		2010년	69	92.0
		소계	173	82.0

이와 같이 법원에 의한 참여재판 배제결정사유로 제시되고 있는 참여재판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9>와 같다.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는 크게 ‘피고인측의 사정’, ‘증인측의 사정’, ‘사건의 특성’으로 구분된다. ‘피고인측 사정’ 가운데서는 ‘피고인측이 철회의를 표시한 경우’가 54건으로 가장 많이 제시된 이유였으며⁵²⁾, ‘증인측의 사정’ 가운데서는 ‘증인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가 21건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마지막으로 ‘사건의 특성’ 가운데서는 ‘자백한 사건이거나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건의 경우’가 37건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52) 공판준비기일이 경과되었거나 지원 이송 사건 등의 경우가 배제로 포함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철회로 처리하면 되나, 시행초기에는 추가로 배제 결정을 하는 사례가 있었음.

표 1-8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

배제사유 구분 ⁵³⁾		연도		합계
		2008-2009년	2010년	
피고인 측의 사정	피고인 측이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	29	25	54
	피고인이 정신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	10	0	10
	추가기소가 예상되는 경우	6	0	6
	구속기간의 만료나 장기화가 우려되는 경우	5	1	6
	피고인에게 질병이 있는 경우	3	5	8
	불구속 피고인의 출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2	1	3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한 경우	1	1	2
	의사확인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경우	1	1	2
	소계	57	34	91
증인측 사정	증인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14	7	21
	친족 간 범행인 경우(유족의 명예감정을 배려함)	4	1	5
	기타	17	3	20
	소계	35	11	46
사건의 특성	전부 혹은 대부분 자백한 사건, 기타 심리할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건의 경우	24	13	37
	신문할 증인이 너무 많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심리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10	8	18
	경미한 사건의 경우	5	0	5
	공소장 변경 등으로 혹은 애초부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3	6
	지나치게 잔인한 사건의 경우	2	0	2
	일부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아닌 경우(관련사건으로 병합하여 대상사건이 된 경우 제외)	1	0	1
	공소기각 대상 등(고소취하 포함)	0	6	6
	통상회부결정 ⁵⁴⁾	0	3	3
	소계	45	33	78

53) 배제결정의 사유 가운데 주된 사유만 포함하였고 주된 사유가 복수인 경우에는 모두 표시하였음. 그리고 피고인도 미성년자이고 피해자도 미성년자인 성폭력 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국민참여재판이 곤란한 점도 있으나 증인을 출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어 증인 측 사정으로 분류함.

54) 참여법률 제11조에 따른 통상절차회부 결정임.

다. 피고인에 의한 참여재판 철회 현황

지난 3년간(2008-2010) 피고인이 신청한 참여재판을 스스로 철회한 건수를 보면, 404건으로 전체 참여재판 신청사건 대비 철회율이 40.1%에 이르고 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8년의 경우 90건, 2009년의 경우 138건, 2010년에는 17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참여재판 신청건수 대비 철회건수 비율은 2009년 41.1%에서 2010년 40.3%로 조금 낮아졌다. 이와 같이 높은 참여재판 철회율은 참여재판의 활성화에 가장 장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재판에 대한 비관적 전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참여재판 철회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한편 앞에 제시된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법원별로 참여재판 철회율을 보면, 서울 서부지법의 철회율이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북부지법 철회율이 68.8%, 서울 남부지법 철회율이 56.3%, 전주지법 철회율이 55%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들어 참여재판 철회율이 급격히 높아진 법원들이 있었는데, 광주지법의 경우 2010년 철회율이 90.9%로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서울북부지법의 경우 2010년 철회율이 88.9%,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각각 그 비율이 86.7%, 82.6%로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참여재판 철회율이 오히려 낮아진 법원들도 있었는데, 서울동부지법의 경우 2008년도에 57.1%였던 철회율이 2010년에 8.3%로 낮아짐으로써 철회율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3년간 전체 철회율도 15.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구지법의 참여재판 철회율이 2008년 30.4%에서 2010년 18.2%로 낮아져서 3년간 철회율이 17.6%로 나타났으며, 대전지법의 참여재판 철회율도 2008년 46.2%에서 2010년 12%로 1/3 이상 감소하여 3년간 철회율이 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법의 경우 2008년 참여재판 철회율이 66.7%였던 것이 2010년 18.2%로 1/3 이상 감소하였지만 지난 3년간 철회율은 40.9%로 여전히 전체 평균 철회율을 상회하고 있다.

다음으로 범죄유형별로 참여재판 철회율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기타 범죄’ 유형으로 분류된 ‘방화치사와 특가법위반’의 철회율이 48.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성범죄’ 철회율이 44.3%, ‘강도 등의 철회율이 38.6%, ‘살인 등의 철회율이

32.8%, ‘상해치사 등’의 철회율이 32.1%의 순이다. 연도별로 범죄유형에 따른 철회율의 변화를 보면, ‘상해치사 등’의 경우 2008-2009년 41.9%였던 철회율이 2010년에 20%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으므로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기타 범죄’로 분류된 ‘방화치사와 특가범위반’의 철회율은 2008-2009년에 38.1%였던 것이 2010년에 55.3%로 거의 20%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범죄유형별 접수건수 대비 철회건수

(단위 : 건, %)

구분	연도						합계		
	2008-2009			2010					
	접수	철회	철회율	접수	철회	철회율	접수	철회	철회율
살인 등	151	55	36.4	84	22	26.2	235	77	32.8
강도 등	168	67	39.9	112	41	36.6	280	108	38.6
상해치사 등	31	13	41.9	25	5	20.0	56	18	32.1
성범죄	135	61	45.2	93	40	43.0	228	101	44.3
기타	84	32	38.1	123	68	55.3	207	100	48.3
합계	569	228	40.1	437	176	40.3	1,006	404	40.1

한편, 참여재판을 철회한 사유를 보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거나 착오로 신청하였다가 철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가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 같아 철회”, “피고인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였다가 생각을 바꾸어 철회”,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회”, “추가 기소사건이 있거나 증인이 여러 명 있는데 소환 여부가 불투명하는 등 절차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철회” 등이 그 사유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철회하는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도별로 구체적인 철회사유를 조사한 자료는

없다. 다만 대법원이 2009년 5월 9개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약 2주간 국민참여재판 대상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2010년 5월 17일부터 2010년 6월 4일까지 3주간 전국법원을 대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참여재판에 대한 철회사유가 제시되어 있어서 이를 제시해 보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조사대상이 된 피고인 가운데 참여재판에 대한 철회의사를 표명한 사람의 수가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부적절할 만큼 적었기 때문에 단순 건수와 빈도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009년도에는 “잘 모르고 신청했다가 철회”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추가로 병합할 사건 등이 있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2명, “배심원들 앞에서 재판받는 것이 부담되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명이었다. 그리고 2010년도 조사에서는 “잘 모르고 착오로 신청했다가 철회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11명, “배심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부담되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5명, “동료재소자들이 참여재판을 하면 좋지 않다고 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4명, “검사가 참여재판을 하는 것을 싫어하여 불이익이 있을까봐”로 응답한 경우가 3명 등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공소장 부분과 함께 참여재판 신청서를 받지만, 참여재판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전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일단 법원에서 온 신청서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에 앞서서 무작정 작성해서 보내고 나서 변호사나 검사를 통해 참여재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기 전에 오히려 동료재소자들의 부정적인 견해에 휩쓸려 참여재판을 쉽게 철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볼 때, 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해서는 신청권자인 피고인에 대해 참여재판에 대한 단순한 홍보책자를 보내는 것 보다는 참여재판에 대한 절차와 내용, 배심원에 의한 재판의 의미 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보장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표 1-10 연도별 참여재판 철회사유 분포빈도

(단위: 명)

철회사유	2009	2010
잘 모르고 착오로 신청했다가 철회하였다	11	5
판사가 참여재판을 하는 것을 싫어하여 불이익이 있을까봐	2	.
검사가 참여재판을 하는 것을 싫어하여 불이익이 있을까봐	3	.
추가로 병합할 사건 등이 있어서	1	2
변호인이 철회할 것을 권유해서	2	(신규)
배심원들 앞에서 재판 받는 것이 부담되서	5	1
동료 재소자들이 참여재판을 하면 좋지 않다고 해서	4	
형이 더 높게 나올 것 같아서	3	(신규)
여차피 최종판결은 판사가 하고 판사의 판결이 배심원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1	
무응답	.	6
계	28	14

제2절 참여재판 공판 현황

1. 공판준비기일 소요현황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필요적으로 공판준비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판준비기일도 반드시 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⁵⁵⁾ 공판준비절차란 법원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수소법원이 주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⁵⁶⁾ 이러한 공판준비절차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조기에 확인함으로써 법원의 심리계획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도 공소장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할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그

5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56)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2010, 422면.

필요성이 인정된다.⁵⁷⁾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관여하고, 수사 및 증거서류 등을 충분히 열람할 기회가 없고 오직 공판정에 출석한 증인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만을 관찰하여 유무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배심원들로 하여금 참여재판이 진행되는 단기간 내에 사건의 내용을 최대한 정확히 이해하고, 증거 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 이전 단계에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쟁점과 증거가 정리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는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은 모든 쟁점이 드러날 때까지 준비기일을 속행하고, 속행기일은 1주일 이내로 지정하여 신속을 도모하고 있다.

단기간 내에 변론을 종결하여야 하는 참여재판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인을 통해 입증할 사항과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고, 사실조치나 감정축탁신청 등에 대하여도 공판기일까지 회신여부를 고려하고, 증거채택시 회신도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문제되는 경우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위한 영상녹화물 조사도 원칙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서 하고 있다.⁵⁸⁾

이와 같이 참여재판에 있어서 공소제기일로부터 첫 공판준비기일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적으로 보면, 2008년의 경우 42.2일, 2008-2009년 평균 41.2일, 2008-2010년 평균 36.3일로 해를 거듭할수록 공판준비기일까지의 소요시간이 단축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기간인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지방법원 본원의 형사합의부 구속사건의 공소제기일로부터 첫 공판기일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26.9일로 참여재판보다 소요시간이 짧다. 이와 같은 소요시간의 차이는 참여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참여재판희망 확인서 제출시기와 전담재판부 재배당 내지 지방법원 본원으로의 이송 등에 걸리는 시간이 필요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⁵⁹⁾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접수일로

5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II), 2008, 92면

58) 최재혁, “국민참여재판의 운영현황과 평가”, 경기법조 제16호, 2009, 426면

59)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2010, 11면

부터 첫 공판준비기일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경우 피고인의 참여재판 의사 철회율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공판준비기일은 의사확인서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⁶⁰⁾

2. 배심원 선정 현황

가. 배심원 선정기일 출석현황

지난 3년간 33,532명의 배심원후보자 가운데 송달불능된 자, 출석취소통지를 한 자를 제외하고 출석의무자 17,621명 중 9,891명이 출석하여 56.1%의 실질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연도별로 살펴보면, 실질 출석률의 경우 2008년 58.4%, 2009년 57.3%, 2010년 54.2%로 점차 감소하고 있어 이는 시행초기에 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결과가 아닌가 한다.

표 1-11 배심원후보자 출석률

항목	연도	인원	비고
배심원 통지(A)	2008년	7,682명	
	2009년	9,742명	
	2010년	16,098명	
	소계	33,522명	
송달불능(B)	2008년	1,810명	송달불능률 23.6%
	2009년	2,157명	송달불능률 22.1%
	2010년	4,104명	송달불능률 25.4%
	소계	8,071명	송달불능률 24.1%
출석취소통지(C)	2008년	1,872명	출석취소통지율 24.4%
	2009년	2,204명	출석취소통지율 22.6%
	2010년	3,754명	출석취소통지율 23.3%
	소계	7,830명	출석취소통지율 23.4%

60) 법원행정처, 앞의 성과분석, 11면.

항목	연도	인원	비고
출석의무자 (D=A-B-C)	2008년	4,000명	
	2009년	5,381명	
	2010년	8,240명	
	소계	17,621명	
출석자(E)	2008년	2,335명	출석률(E/A) : 30.4% 실질 출석률(E/D) : 58.4%
	2009년	3,084명	출석률(E/A) : 31.6% 실질 출석률(E/D) : 57.3%
	2010년	4,472명	출석률(E/A) : 27.8% 실질 출석률(E/D) : 54.2%
	소계	9,891명	출석률(E/A) : 29.5% 실질 출석률(E/D) : 56.1%

나. 배심원수에 따른 출석현황

배심원수별 국민참여재판 실시건수를 살펴보면, 7명의 배심원을 선정하는 경우가 52.6%로 가장 많았고, 5명을 선정하는 경우는 11.8%로 가장 적었다. 한편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에는 9명의 배심원을 선정하는 경우가 45.3% 가장 많았지만, 전체적으로는 7명의 배심원을 선정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2008년 대비 2010년에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5명의 배심원과 9명의 배심원을 선정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약 1/2 수준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12 배심원수별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

(단위 : 건(%))

배심원수	연도			합계
	2008	2009	2010	
5명	14(21.9)	12(12.6)	12(7.4)	38(11.8)
7명	21(32.8)	40(42.1)	108(66.7)	169(52.6)
9명	29(45.3)	43(45.3)	42(25.9)	114(35.5)
합계	64(100.0)	95(100.0)	162(100.0)	321(100.0)

그리고 지난 3년간(2008-2010) 배심원수별 배심원후보자 소환인원과 출석인원을 살펴보면, 배심원수가 5인인 경우 평균 배심원후보자 소환인원은 81명이었으며, 평균 출석인원은 22.6명이고, 배심원수가 7명인 경우 배심원후보자 소환인원은 97.3명, 평균출석인원은 28.7명, 배심원수가 9명인 경우 배심원후보자 소환인원은 135명, 평균출석인원은 4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08년도 참여재판 시행 첫째 배심원수에 따른 배심원후보자 소환인원 및 출석인원과 비교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소환인원도 적어지고, 출석률도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2008년도를 보면, 배심원 5인의 경우 배심원후보자 소환인원 89명, 출석인원 26.1명, 배심원 7인의 경우 배심원후보자 소환인원 112.8명, 출석인원 36.6명, 배심원 9인의 경우 배심원후보자 소환인원 172명, 출석인원 50.5명으로 2010년까지 누적된 데이터 결과⁶¹⁾ 보다 훨씬 높은 출석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행 첫째 참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호기심과 의욕에서 비롯된 단기적인 현상에서 비롯된 차이일 수 있지만, 참여재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배심원 출석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참여재판의 안정적인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1-13 배심원수별 소환/출석 배심원후보자 인원수

(단위 : 명, %)

2008.1.1.-2008.12.31				
배심원수	평균 배심원후보자 소환인원	최대 소환인원	최저 소환인원	평균 출석인원(%)
5명(14건)	89.0	100	66	26.1(29.3)
7명(21건)	112.8	180	80	36.6(32.4)
9명(29건)	172.3	250	100	50.5(29.3)
계(64건)	134.6	250	66	40.6(30.2)
2008.1.1.-2010.12.31				
배심원수	평균 배심원후보자 소환인원	최대 소환인원	최저 소환인원	평균 출석인원
5명(38건)	81.0	120	50	22.6(27.9)
7명(169건)	97.3	180	55	28.7(29.5)
9명(114건)	135.0	500	84	40.2(29.8)
계(321건)	108.7	-	-	32.0(29.5)

61)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2008.1.1. -2010.12.31까지 3년간 누적 데이터만을 제시하고 있다.

법원별로 배심원후보자의 출석률을 보면, 실질출석률을 기준으로 춘천지법이 74.9%로 가장 높으며, 서울서부지법과 창원지법이 73%, 대구지법이 72.7%순이었으며, 실질출석률이 가장 낮은 법원은 대전지법과 전주지법으로 41.3%였으며, 부산지법이 42.9%, 제주지법이 45.2%순이었다.

표 1-14 법원별 배심원후보자 출석률

법원명	연도	소환인원 (A)	송달불능 (B)	출석취소통지 (C)	출석의무자 (D=A-B-C)	출석자 (E)	출석률 (E/A), %	실질출석률 (E/D), %
서울 중앙지법	2009년	1,192	347	354	491	268	22.5%	54.6%
	2010년	1,880	533	573	774	411	21.9%	53.1%
소계		3,072	880	927	1,265	679	22.1%	53.7%
서울 동부지법	2009년	220	67	62	91	59	26.8%	64.8%
	2010년	1,740	495	508	737	453	26.0%	61.5%
소계		1,960	562	570	828	512	26.1%	61.8%
서울 남부지법	2009년	1,025	256	298	471	300	29.3%	63.7%
	2010년	716	160	213	343	189	26.4%	55.1%
소계		1,741	416	511	814	489	28.1%	60.1%
서울 북부지법	2009년	200	32	45	123	84	42.0%	68.3%
	2010년	191	38	65	88	57	29.8%	64.8%
소계		391	70	110	211	141	36.1%	66.8%
서울 서부지법	2009년	650	169	147	334	256	39.4%	76.6%
	2010년	420	126	120	174	115	27.4%	66.1%
소계		1,070	295	267	508	371	34.7%	73.0%
의정부지법	2009년	620	137	101	382	203	32.7%	53.1%
	2010년	1,138	152	72	294	131	11.5%	44.6%
소계		1,138	289	173	676	334	29.3%	49.4%
인천지법	2009년	1,460	382	330	748	495	33.9%	66.2%
	2010년	2,070	165	154	291	204	9.8%	70.1%
소계		2,070	547	484	1,039	699	33.8%	67.3%
수원지법	2009년	1,740	384	536	820	474	27.2%	57.8%
	2010년	3,085	330	435	580	291	9.4%	50.2%
소계		3,085	714	971	1,400	765	24.8%	54.6%
춘천지법	2009년	550	113	236	201	141	25.6%	70.1%
	2010년	598	139	321	138	113	18.9%	81.9%
소계		1,148	252	557	339	254	22.1%	74.9%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V)

법원명	연도	소환인원 (A)	송달불능 (B)	출석취소통지 (C)	출석의무자 (D=A-B-C)	출석자 (E)	출석률 (E/A), %	실질출석률 (E/D), %
대전지법	2009년	1,380	327	18	1,035	433	31.4%	41.8%
	2010년	1,758	425	0	1,333	546	31.1%	41.0%
소계		3,138	752	18	2,368	979	31.2%	41.3%
청주지법	2009년	876	175	288	413	227	25.9%	55.0%
	2010년	308	68	48	192	99	32.1%	51.6%
소계		1,184	243	336	605	326	27.5%	53.9%
대구지법	2009년	1,969	413	402	1,154	808	41.0%	70.0%
	2010년	1,549	334	367	848	647	41.8%	76.3%
소계		3,518	747	769	2,002	1,455	41.4%	72.7%
부산지법	2009년	2,139	430	333	1,376	650	30.4%	47.2%
	2010년	890	194	36	660	224	25.2%	33.9%
소계		3,029	624	369	2,036	874	28.9%	42.9%
울산지법	2009년	914	189	307	418	241	26.4%	57.7%
	2010년	750	190	75	485	244	32.5%	50.3%
소계		1,664	379	382	903	485	29.1%	53.7%
창원지법	2009년	370	62	114	194	123	33.2%	63.4%
	2010년	1,393	413	508	472	363	26.1%	76.9%
소계		1,763	475	622	666	486	27.6%	73.0%
광주지법	2009년	1,480	330	370	780	505	34.1%	64.7%
	2010년	399	99	82	218	121	30.3%	55.5%
소계		1,879	429	452	998	626	33.3%	62.7%
전주지법	2009년	539	129	99	311	125	23.2%	40.2%
	2010년	314	61	83	176	76	24.2%	43.2%
소계		859	190	182	487	201	23.4%	45.2%
제주지법	2009년	100	25	36	39	27	27.0%	69.2%
	2010년	713	182	94	437	188	26.4%	43.0%
소계		813	207	130	476	215	26.4%	45.2%
합계	2009년	17,424	3,967	4,076	9,381	5,419	31.1%	57.8%
	2010년	16,098	4,104	3,754	8,240	4,472	27.8%	54.3%
	소계	33,522	8,071	7,830	17,621	9,891	29.5%	56.1%

다. 배심원 선정기일 소요시간

배심원 선정기일에 있어서 소요된 시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이 자백한 사건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소요했고, 배심원의 수가

많을수록 소요시간이 더 길었다. 한편 범죄유형별로 보면, 성범죄 등이 1시간 31분으로 가장 소요시간이 길었고, 상해치사 등이 1시간 18분으로 가장 짧았다. 이러한 배심원 선정기일 소요시간은 해를 거듭할수록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8년에 비하여 최대 12분 최소 2분 정도 배심원 선정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배심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참여재판의 효과적인 진행방법을 찾아나간 결과가 아닌가 한다.

표 1-15 선정기일 소요 시간

기준		최대 소요시간	최저 소요시간	평균 소요시간
자백 여부	자백(82건)	2시간 35분	35분	1시간18분
	부인(239건)	3시간 30분	30분	1시간28분
배심원 수	5명(38건)	2시간	50분	1시간18분
	7명(169건)	3시간	30분	1시간20분
	9명(114건)	3시간30분	58분	1시간36분
범죄 유형	살인 등(110건)	3시간30분	35분	1시간26분
	강도 등(89건)	3시간	30분	1시간25분
	상해치사 등(25건)	2시간	50분	1시간18분
	성범죄 등(55건)	3시간	45분	1시간31분
	기타(42건)	2시간30분	50분	1시간21분
합계		-	-	1시간 26분

라. 배심원 기피절차 현황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결격·제척·제외·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불선정 결정을 한다.⁶²⁾ 이 경우 결격·제척·제외·면제사유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 기피사유인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현실이다.

6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다만, 참여재판 참관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측과 검찰측 각각의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배심원들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경우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은, 배심원 후보자가 자신의 선입견으로 인하여 재판장의 설명과 선서에 따른 배심원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⁶³⁾

이러한 배심원기피방식에는 이유부기피⁶⁴⁾와 무이유부 기피⁶⁵⁾가 있는데, 이유부기피의 경우에는 앞서 기술한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라고 하는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각할 수 있다. 단 이유부기피에 있어서는 기피인원의 제한이 없다. 이에 반해 무이유부 기피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지만, 기피인원에 있어서 법률상 제한을 두고 있다. 즉 배심원이 9인인 경우에는 5인, 배심원이 7인인 경우에는 4인, 배심원이 5인인 경우에는 3인까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배심원 기피방식 가운데 이유부 기피방식은 그 판단기준이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라는 추상적·일반적 사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법원이 이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법원이 이유부기피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무이유부 기피제도를 통해 해당 배심원후보자를 배제시킬 수 있다는 점, 이유부기피방식에 의하는 경우 법원에 그 이유를 고지하는 등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에 선정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⁶⁶⁾

실제로 참여재판에 있어서 1건당 이유부 기피신청은 평균 0.43명에 대해서 이루어지며, 지난 3년간 행해진 321건의 참여재판 가운데 76건에 있어서만 이유부 기피신청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유부 기피신청은 거의 기각되고 있다.

63) 최재혁, 앞의 논문, 429면

6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

6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

66) 이인석, “국민참여재판 시행 2년의 현황 및 과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 13면

표 1-16 이유부 기피신청 인원별 참여재판건수(2008.1.1-2010.12.31)

이유부 기피신청인원	참여재판 건수
1	45
2	15
3	8
4	2
5	4
6	2

다음으로 배심원에 대한 무이유부 기피신청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참여재판 1건당 5.0명에 대하여 무이유부 기피신청이 행해졌으며, 자백사건 보다 부인 사건에서 무이유부 기피신청된 배심원 후보자의 수가 평균 1.3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범죄유형별로는 성범죄 사건에서 무이유부 기피신청이 평균 6.4명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검사와 변호인이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행사가능한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모두 행사한 사건은 3년간 행해진 참여재판 321건 가운데 13%인 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⁷⁾

표 1-17 무이유부 기피인원(2008.1.1.-2010.12.31)

구분		평균 무이유부 기피인원
자백여부	자백(82건)	4.0
	부인(239건)	5.3
배심원 수	5명(38건)	3.2
	7명(169건)	4.3
	9명(114건)	6.5
범죄유형	살인 등(110건)	5.2
	강도 등(89건)	4.8
	상해치사 등(25건)	4.2
	성범죄 등(55건)	6.4
	기타(42건)	3.3
전체 평균		5.0

67)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성과분석, 2010, 15면

마. 배심원(예비배심원 포함)의 구성현황

참여재판은 배심원의 평의가 핵심이기 때문에 배심원이 얼마나 그 사회의 일반적인 구성원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 즉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평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가 다양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난 3년간 배심원 구성현황을 보면, 매년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치우치지 않은 구성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연령별 구성에 있어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에 19.1%였던 것이 2009년-2010년에 들어서는 25.6%로 증가하는데 비하여,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에 36.7%에서 2009-2010년에는 30.7%로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배심원에 있어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현상이라 보여진다.

표 1-18 배심원·예비배심원 구성 비율

구분			비율(%)
성별	남	2008년	54.1
		2009·2010년	52.2
	여	2008년	45.9
		2009·2010년	47.8
연령별	20대	2008년	17.0
		2009·2010년	17.4
	30대	2008년	27.2
		2009·2010년	26.5
	40대	2008년	19.1
		2009·2010년	25.6
	50대 이상	2008년	36.7
		2009·2010년	30.7
직업별	회사원	2008년	34.8
		2009·2010년	31.5
	자영업	2008년	17.4
		2009·2010년	15.5
	주부	2008년	18.9
		2009·2010년	18.3
	학생	2008년	6.9
		2009·2010년	7.6
	기타	2008년	25.4
		2009·2010년	27.1

3. 공판진행 현황

가. 국민참여재판 소요일수

현행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으로 참석해야 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단기간 내에 재판을 종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판이 밤 10시를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고 배심원 평의까지 마치면 12시 가까이 되어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배심원들 스스로 늦은 시간까지 재판을 하더라도 당일 재판을 끝내기를 원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참여재판은 1일내에 종결되는 사건이 대부분이고, 늦어도 2일 이내에는 모두 사건이 종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단기간 내에 재판이 종결될 수 있는 것은 공판전준비절차에서 이미 쟁점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되고, 증인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배제결정을 통해 참여재판을 시행하지 않는 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지난 3년간 진행된 참여재판 가운데 하루 만에 종결된 경우가 전체 참여재판의 90%에 달하는 289건이었으며, 10%만이 2일에 걸쳐 참여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⁶⁸⁾ 이를 연도별로 보면, 1일에 종결된 참여재판 비율은 2009년도에 만 잠깐 낮아졌지만 전체적으로 1일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9 연도별 국민참여재판 소요일수

구분	연도	건수	비율(%)
하루 만에 마친 경우	2008	58	90.6
	2009	83	87.4
	2010년	148	91.4
소계		289	90.0
이틀 만에 마친 경우	2008	6	9.4
	2009	12	12.6
	2010	14	8.6
소계		32	10.0

68) <표1-19>는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2008, 2009, 2010년도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나. 변호인 선정 현황

국민참여재판은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진행해야 하는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다.⁶⁹⁾ 즉 변호인 없이는 참여재판 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든 변호인이 선임되어야만 한다. 형사피고인의 특성상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여재판에 있어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3년간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비율은 82.6%로 대다수의 참여재판이 국선변호인에 의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연도별로 볼 때 2010년도의 경우 사선변호인 선임률이 21%로 높아진 것을 볼 때, 참여재판에 있어서 변호인의 변론능력에 의해 배심원의 평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피고인들의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⁷⁰⁾

한편 국선변호인 가운데는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 국선변호사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선전담변호사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08년도의 경우 참여재판에 선임된 국선변호인 가운데 국선전담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는 44.2%에 불과했는데, 2010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69.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채용인원을 확대한 것뿐만 아니라, 국선전담변호사들에 대한 참여재판 교육프로그램 실시 및 참여재판 매뉴얼 등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재판에 대한 국선전담변호사의 변론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6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70) 로펌들도 참여재판 수임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소속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배심재판 세미나를 개최하고, 서구식 공판매너와 구술변론기법과 자세를 강의하는 등 배심원 설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2008.2.18자.

표 1-20 연도별 변호인 선정 현황

(단위 : %)

구분	국선번호인 선임						사선번호인 선임	
	국선전담		일반 국선번호		소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8	23	44.2	29	55.8	52	81.3	12	18.7
2009	57	67.1	28	32.9	85	89.5	10	10.5
2010	89	69.5	39	30.5	128	79.0	34	21.0
계	169	—	96	—	265	82.6	56	17.4

다. 자백사건과 부인사건

참여재판에 있어서 자백사건과 부인사건의 분포를 보면, 자백사건이 82건, 부인사건이 239건으로 전체 참여재판사건의 3/4이 부인사건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백사건과 부인사건의 분포비율은 연도별로 거의 차이가 없으며, 다만 2009년도에 자백사건비율이 약간 증가하였으나 2010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표 1-21 자백/부인 사건

(단위 : 건, %)

연도	자백	부인	계
2008	18(28.1)	46(71.9)	64(100.0)
2009	28(29.5)	67(70.5)	95(100.0)
2010	36(28.6)	126(77.8)	162(100.0)
계	82(25.5)	239(74.5)	321(100)

라. 참여재판 전체절차 소요기간

참여재판이 진행되는 전체적인 절차 즉 참여재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공판기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보면, 지난 3년간 평균 84.9일이 걸렸으며, 이 가운데 구속사건은 평균 87.3일, 불구속사건은 평균 122.9일로 피고인의 구속여부에 따라

소요기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⁷¹⁾

그리고 접수일로부터 첫 공판기일까지의 평균 처리 기간은 <표 1-22>에서 나타나듯이 84.9일로 형사합의부 구속사건 평균처리기간인 87.3일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참여재판의 진행으로 인해 오히려 재판이 지연 될 것이라는 우려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표 1-22 국민참여재판 평균처리기간(2008.1.1-2010.12.31)

(단위 : 일)

구분	국민참여재판 평균 처리기간			형사합의부 구속사건 평균처리기간
	접수 ~ 공판준비기일	공판준비기일 ~ 첫 공판기일	접수~ 첫 공판기일	
일수	36.3	48.6	84.9	87.3

4. 배심원 평의평결 현황

평의는 배심원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에 이르기 위하여 진행하는 협의를 의미하고, 평결은 당해사건에 대한 배심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의미한다. 현행 참여 재판 법률 제46조에 따라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를 진행하고, 전원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에 따라 평결하게 된다.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평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평의 소요시간

배심원 평의시간은 평균 1시간 41분 정도이며, 죄명별 평의소요시간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자백여부와 배심원수에 따라 평의시간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백사건이고 배심원수가 5명인 경우에는 평의소요시간 1시간

71)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성과분석, 2010, 18-19면 참조

20분대인데, 부인사건이고 배심원수가 9명인 경우에는 평의소요시간이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심원 평의시간에 있어서 연도별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강도 등’의 경우로, 2008-2009년 2년간 누적 데이터에 따른 평균 평의시간은 2시간 57분⁷²⁾으로 거의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8-2010년 3년간 누적 데이터에 따른 평균 평의시간은 1시간 47분으로 거의 1시간 10분 정도 단축된 것을 볼 때, 2010년 들어 해당 범죄유형에 대한 평의소요시간이 상당히 단축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⁷³⁾ 한편 배심원수가 7명과 9명인 경우 평의소요시간을 보면 2008-2009년까지는 최대 소요시간이 3시간 30분대였는데, 2008-2010년 까지 누적데이터에 의하면 최대 소요시간이 4시간 10분과 4시간 30분으로 거의 1시간 가까이 더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범죄유형에 있어서 ‘성범죄’와 ‘강도 등’의 경우에도 최대 평의소요시간이 3시간 30분대에서 4시간 10분과 4시간 30분대로 늘어났다.

표 1-23 배심원 평의 소요 시간(2008.1.1-2010.12.31)

	기준	최대 소요시간	최저 소요시간	평균 소요시간
자백 여부	자백(82건)	3시간 30분	20분	1시간 29분
	부인(239건)	3시간 30분	20분	1시간 45분
배심원수	5명(38건)	2시간 30분	40분	1시간 20분
	7명(169건)	4시간 10분	20분	1시간 39분
	9명(114건)	4시간 30분	30분	1시간 50분
죄명별	살인 등(110건)	3시간 30분	30분	1시간 38분
	강도 등(89건)	4시간 30분	20분	1시간 47분
	상해치사 등(25건)	2시간 25분	45분	1시간 33분
	성범죄 등(55건)	4시간 10분	40분	1시간 47분
	기타(42건)	3시간 25분	35분	1시간 39분
합계		-	-	1시간 41분

72)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업무성과분석, 2009, 21면.

73) 배심원 평의시간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누적 데이터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서 연도별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배심원 평결 현황

배심원 평의를 거쳐 나온 평결결과를 살펴보면, 전원일치로 유죄 또는 무죄로 배심원의 의견이 일치한 건수는 208건으로 3년간 진행된 전체 참여재판 가운데 6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유죄 평결이 188건, 무죄 평결이 20건이었다. 한편 다수결에 의하여 유죄 또는 무죄 평결이 나온 경우는 48건으로 14.9%였다. 그리고 한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 두 개 이상의 평결이 내려진 건수는 65건으로 전체의 20.3%로 나타났다.⁷⁴⁾

범죄유형별로 평결분포를 보면, 기타 범죄로 분류된 방화치사나 특가법위반의 경우 전원일치 유죄로 배심원의 의견이 일치한 비율이 78.6%(전체건수 42건 가운데 33건)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살인이 72.7%로 유죄 전원일치 평결 비율이 높았다. 한편 무죄 전원일치 평결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강도 등으로 무죄평결이 내려진 5건 모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었다.

표 1-24 배심원평결분포

죄명	연도	인원수	유죄			무죄			유죄+무죄 ⁷⁵⁾			
			소계	전원 일치	다수결	소계	전원 일치	다수결	소계	경합범	주위적/ 예비적	축소 사실
살인 등	2009 ⁷⁶⁾	67	56	50	6	3	2	1	8	2	2	6
	2010	43	34	30	4	2	1	1	7	1	0	6
	소계	110	90	80	10	5	3	2	15	1	2	12
강도 등	2009	44	20	15	5	5	5	0	19	10	3	11
	2010	45	29	24	5	0	0	0	16	11	2	9
	소계	89	49	39	10	5	5	0	35	21	5	9
상해치사 등	2009	10	4	4	0	3	2	1	3	1	0	1
	2010	15	12	11	1	2	1	1	1	1	0	1
	소계	25	16	15	1	5	3	2	4	2	0	2
성범죄 등	2009	27	17	12	5	6	5	1	4	2	0	2
	2010	28	17	9	8	7	2	5	4	3	0	1
	소계	55	34	21	13	13	7	6	8	5	0	3
기타	2009	11	11	9	2	0	0	0	0	1	0	0
	2010	31	26	24	2	2	2	0	3	2	0	0
	소계	42	37	33	4	2	2	0	3	3	0	0

74) ①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평결, 일부 무죄 평결한 경우 ②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인 경우 ③ 공소사실을 무죄 평결하고 축소사실을 유죄 평결한 경우

죄명	연도	인원수	유죄			무죄			유죄+무죄 ⁷⁵⁾			
			소계	전원 일치	다수결	소계	전원 일치	다수결	소계	경합범	주의적/ 예비적	축소 사실
누적합계	2009	159	108	89	19	17	14	3	34	16	5	20
	2010	162	118	99	19	13	6	7	31	16	2	6
	전체	321	226 (70.4)	188	38	30 (9.3)	20	10	65 (20.3)	32	7	26

출처 : 법원행정처, 「2008-2010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다. 평결과 판결의 일치 현황

현행 국민참여재판법률상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을 갖기 때문에,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관은 자신의 판단과 배심원의 평결이 상이한 경우 배심원 평결결과와 상반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다만, 참여재판이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법관도 배심원의 평결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합의가 존재하고는 있다.

따라서 지난 3년간 배심원 평결과 법관의 판결이 일치하는 비율은 91%로 매우 높은 일치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백사건을 제외해도 일치율이 89.1%로 큰 차이가 없었다.⁷⁷⁾ 이와 같이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는 사건일수록 배심원 평결의 만장일치 비율도 높았다.⁷⁸⁾

표 1-25 배심원 평결과 법관 판결의 일치 현황

(단위 : 건, %)

연도	평결/판결 일치		평결/판결 불일치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8	56	87.5	8	12.5	64	100
2009	88	92.6	7	7.4	95	100
2010	148	91.4	14	8.6	162	100.0
합계	291	91.0	29	9.0	321	100.0

75) 전원일치, 다수결 구분하지 않음

76) 2009년도 수치는 2008.1.1.부터 2009.12.31까지 누적된 데이터이다.

77) 김상준, 배심평결과 판사판결의 일치도 및 판단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1, 133면.

78) 김상준, 앞의 논문, 133면.

한편 평결과 판결이 불일치한 29건 가운데 배심원 무죄평결이 재판부 유죄판결로 변경된 경우가 26건이었으며, 배심원 유죄평결이 재판부 무죄판결(이유부 무죄판결 포함)로 변경되는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배심원 평결과 법관의 판결이 불일치한 사건은 전부 부인사건이며,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도가 10건, 살인 등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건이 8건, 강간 등 성폭력사건이 5건, 절도 2건, 폭력 2건, 횡령 1건 등이다.⁷⁹⁾ 불일치 쟁점별로 보면, 고의 및 범의 등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에 관한 것이 12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거나 행위가 구성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객관적 행위태양에 대한 것이 11건, 상해법리에 관한 쟁점이 3건, 심신미약 등 정신장애에 관한 쟁점이 2건 등이었다.⁸⁰⁾

표 1-26 연도별 평결과 판결 불일치 사건의 분포 현황

(단위 : 건, %)

연도	배심원 무죄평결 ⇒ 재판부 유죄판결		배심원 유죄평결 ⇒ 재판부 무죄판결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8	7	87.5	1	12.5	8(100)
2009	6	85.7	1	14.3	7(100)
2010	13	92.9	1	7.1	14(100)
계	26	89.7	3	10.3	29(100)

라. 배심원 양형의견과 법관의 선고형량의 일치 현황

지난 3년간 판결문에 기재된 배심원 양형의견 중 다수의견과 선고형량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1년 이내로 비슷한 경우는 전체 273건 가운데 256건으로 9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10년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평결과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와 무죄 선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에서 일치하였다. 이는 재판부와 배심원이 함께 양형토의를 거치면서 양형

79) 김상준, 앞의 논문, 128면.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참여재판 업무성과분석에 있어서는 배심원 평결과 법관 판결의 불일치사건이 29건이었지만, 김상준 판사가 논문에서 밝힌 불일치사건은 28건이었다. 나머지 불일치사건 1건에 대해서는 달리 찾아볼 자료가 없었다.

80) 김상준, 앞의 논문, 128-129면.

의견과 선고형량이 같아진 결과로 보인다. 한편 배심원의 양형의견과 법관의 선고형량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대체로 2년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⁸¹⁾

표 1-27 배심원 양형의견(다수의견)과 선고형량 분포

(단위 : 건, %)

연도	양형의견<선고형량		양형의견≠선고형량 ⁸²⁾		양형의견<선고형량 ⁸³⁾		계 ⁸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8	1	1.7	50	84.7	8	13.6	59	100
2009	4	5.0	72	90.0	4	5.0	80	100
2010	0	0.0	134	100.0	0	0.0	134	100
계	5	1.8%	256	93.8	12	4.4	273	100

제3절 참여재판 양형 및 항소 현황

1. 참여재판 양형분포 현황

지난 3년간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의 양형분포를 살펴보면, 실형률이 74.8%로 나타났고, 집행유예가 15.0%, 무죄율이 8.7%이다. 무죄율의 경우 같은 기간 전국 법원 형사합의사건 1심 무죄율인 3.1%보다 높게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실형률을 보면, 기타 범죄유형에 속하는 방화치사나 특가법위반에서 88.1%로 가장 높았고, 살인의 경우 81.8%, 성범죄는 70.9%, 상해치사는 64.0%, 강도는 65.2%의 순으로 나타났고 살인을 제외한 범죄의 실형률은 매년

81)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업무성과분석, 2010, 25면.

82) 양형의견≠선고형량 ⇒ 양형의견과 선고형량의 차이가 ±1년 이내인 경우

83)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업무성과분석을 보면, 2008년도 분석자료에서 양형의견<선고형량에 해당하는 경우가 8건이었으며, 2008.1.1.-2009.12.31 2년간 누적데이터를 제시한 2009년 분석자료에서는 4건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2008.1.1.-2010.12.31.3년간 누적 데이터를 제시한 2010년 분석자료에서는 12건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를 모두 참고하여 볼 때 2009년도 분석자료에 2008년도 데이터를 뺀 2009년도 자료만 표기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의할 경우 2010년에는 양형의견<선고형량에 해당하는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이를 토대로 표로 제시하였다.

84) 평결과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 및 무죄 선고된 경우는 제외함.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실행률이 2008년도에 88.9%에서 2010년도에 64.3%로 24.6%나 크게 감소하였으며, 강도죄의 경우에도 실행률이 2008년도 80%에서 2010년도에 60%로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살인죄의 경우에는 2008년에 실행률이 75.9%였던 것이 2010년에는 그 비율이 83.7%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유형별 집행유예율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참여재판이 진행된 사건의 평균 집행유예율은 15%이지만, 강도죄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 집행유예율을 상회하는 23.6%로 가장 높았고, 상해치사 등이 16%, 살인이 14.5%, 성범죄가 9.1%, 기타 범죄가 4.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8 참여재판 양형분포 현황

죄명	연도	인원수	자유형					재산형	무죄	기타
			사형	징역형		실행률	집행유예			
				무기	유기					
살인 등	2008	29	－	1	21	75.9	5	－	2	－
	2009	38	－	0	32	84.2	4	－	1	－
	2010	43	－	0	36	83.7	7	－	1	－
소계		110	－	1	89	81.8	16	－	4	－
강도 등	2008	20	－	1	15	80.0	4	－	－	－
	2009	24	－	1	14	62.5	4	2	3	－
	2010	45	－	0	27	60.0	13	－	5	－
소계		89	－	2	56	65.2	21	2	8	－
상해치사 등	2008	6	－	－	4	66.7	－	－	2	－
	2009	4	－	－	3	75.0	－	－	1	－
	2010	15	－	－	9	60.0	4	－	1	1
소계		25	－	－	16	64.0	4	－	4	1
성범죄 등	2008	9	－	－	8	88.9	1	－	－	－
	2009	18	－	1	12	72.2	1	－	4	－
	2010	28	－	0	18	64.3	3	1	5	1
소계		55	－	1	38	70.9	5	1	9	1
기타	2008	0	－	0	0	0	0	－	0	0
	2009	11	－	－	10	90.9	－	－	1	－
	2010	31	－	－	27	87.1	2	－	2	－
소계		42	－	0	37	88.1	2	－	3	－

죄명	연도	인원수	자유형				재산형	무죄	기타	
			사형	징역형		실행률				집행 유예
				무기	유기					
합계	2008	64	－	2	48	78.1	10	－	4	－
		(100)	－	(3.1)	(75.0)		(15.6)	－	(6.3)	－
	2009	95	－	2	71	76.8	9	2	10	－
		(100)	－	(2.1)	(74.7)		(9.5)	(2.1)	(10.5)	－
	2010	162	－	－	117	72.2	29	1	14	1
		(100)	－	－	(72.2)		(17.9)	(0.6)	(8.6)	(0.6)
	전체	321	－	4	236	74.0	48	3	28	2
		(100)	－	(1.2)	(73.5)		(15.0)	(0.9)	(8.7)	(0.6)

2. 참여재판 항소심 현황

가. 참여재판 항소율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선고결과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참여재판의 항소율은 86.6%로 일반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의 항소율인 66.9%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항소율을 비교해 보면, 2008년의 경우 64건 가운데 55건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됨으로써 항소율이 85.9%에 이르렀으며, 2009년도에는 그 비율이 88.4%로 높아졌지만, 2010년에는 다시 85.9%로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의 항소가 제기되었다.

참여재판에 있어서는 소송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의 쌍방 항소율이 33.3%로 가장 높았지만, 2008년 대비 2010년에 있어서는 오히려 쌍방 항소율은 거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검사단독 항소율과 피고인 단독 항소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검사의 항소율은 쌍방항소까지 포함하게 되면, 지난 3년간 평균 항소율이 53.6%로 일반재판(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의 검사항소율인 19.6%에 비하여 2.7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율은 쌍방항소까지 포함하면 66.4%로 일반재판(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의 항소율인 59.8%에 비하여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9 참여재판 항소율

(단위 : 건, %)

연도	판결		항소								미항소	
			소계		쌍방		검사 단독		피고인 단독			
	건수	비율	소계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8	64	100	55	85.9	29	45.3	9	14.1	17	26.6	9	14.1
2009	95	100	84	88.4	35	36.8	20	21.0	29	30.5	11	11.5
2010	162	100	139	85.8	43	26.5	36	22.2	60	37.0	23	14.2
합계	321	100	278	86.6	107	33.3	65	20.2	106	33.0	43	13.4

나. 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심 처리 현황

참여재판이 진행되어왔던 2008.1.1.부터 2010. 12.31까지 3년 동안 항소심에서 처리된 사건은 224건이었으며, 그 가운데 169건은 항소기각 되었고, 54건은 파기됨으로써, 기각률은 75.4%, 파기율은 24.1%로 나타났다.⁸⁵⁾ 이는 동 기간 동안 각급 고등법원 원심 파기율 40.6%의 절반수준으로 일반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참여재판의 결과를 법원이 가능한 존중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한편 참여재판 항소심 처리 결과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참여재판 항소심 기각률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파기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2008년의 경우 참여재판 항소심 기각률은 69.2%, 파기율은 30.7%였으며, 2009년의 경우 기각률은 73.9%, 파기율은 26.1%, 2010년의 경우 기각률은 78.3%, 파기율은 20.8%로 나타났다.

표 1-30 참여재판 항소심 처리현황

연도	접수 (인원)	처리(인원)									미제
		소계 (%)	파기						항소 기각 (%)	항소 취하 (%)	
			사형	자유형			재산형 (%)	무죄 (%)			
			무기	유기 (%)	집행 유예(%)						
2008	49	39 (100)	-	-	10 (25.6)	2 (5.1)	-	-	27 (69.2)	-	10

85)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2010, 26면.

연도	접수 (인원)	처리(인원)									미제
		소계 (%)	파기						항소 기각 (%)	항소 취하 (%)	
			사형	자유형			재산형 (%)	무죄 (%)			
				무기	유기 (%)	집행 유예(%)					
2009	90	65 (100)	0	0	14 (21.5)	1 (1.5)	1 (1.5)	1 (1.5)	48 (73.9)	-	25
2010	124	120 (100)	-	-	18 (15.0)	6 (5.0)	0	1 (0.8)	94 (78.3)	1	4
합계	263	224 (100)	-	-	42 (18.8)	9 (4.0)	1 (0.5)	2 (0.9)	169 (75.4)	1 (0.4)	39

표 1-31 참여재판 항소심 파기현황

연도	항소심 파기 현황				전국고등법원 파기율(%) ⁸⁶⁾
	처리건수	판결건수	파기건수	파기율(%)	
2008	39	39	12	30.7	40.9
2009	65	65	17	26.1	42.1
2010	120	119 ⁸⁷⁾	25	20.8	38.8
계	224	223	54	24.1	40.6

다. 항소심 양형변경 현황

지난 3년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판결을 파기한 항소심 판결의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유무죄가 바뀐 경우가 5건(9.3%), 양형이 변경된 경우가 29건(53.7%), 법리판단 내지 사정변경에 의해 파기한 경우가 20건(37%)인 것으로 나타났다.

86) 전국 고등법원 파기율은 2010년 사법연감 27. 항소심 형사공판사건 항소인별 파기인원수 누년비교 표의 통계를 토대로 한 것이다.

87) 2010년의 경우 항소취하가 1건이 있어서 전체 판결건수는 223건이 되었다.

표 1-32 참여재판 항소심 파기결과

(단위 : 건, %)

연도	항소심 파기 결과						계
	유무죄가 바뀐 경우		양형변경		법리판단/사정변경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8 ⁸⁸⁾	1	8.3	5	41.7	6	50.0	12(100)
2009	3	17.7	10	58.8	4	23.5	17(100)
2010	1	4.0	14	56.0	10	40.0	25(100)
계	5	9.3	29	53.7	20	37.0	54(100)

그리고 지난 3년간 항소가 제기된 263건 가운데 미제로 처리된 39건을 제외한 224건 가운데 양형이 변경된 경우는 43건으로 전체 항소심 처리사건의 19.2%였으며, 그 가운데 특히 형이 감경되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가 34건으로 15.2%였다. 하지만 연도별로 참여재판 항소심 양형변경현황을 보면, 참여재판에 있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을 변경하여 선고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양형이 1심 양형보다 감경되어 선고되는 비율도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참여재판 항소심 양형변경률과 감경률은 일반 재판에 있어서 전국 고등법원의 양형변경률과 감경률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는 1심인 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존중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88) 2008년도 통계는 2009.1.10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업무성과분석, 2008, 10면

표 1-33 참여재판 항소심 양형 변경 현황

(단위 : 건, %)

연도	전체 처리건수	항소심 양형현황				전국고등법원 양형현황 ⁸⁹⁾	
		양형변경		양형감경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양형변경률	양형감경률
2008	39	9	23.1	8	20.5	32.6	25.2
2009	65	13	20.0	10	15.4	—	—
2010	120	21	17.5	16	13.3	—	—
계	224	43	19.2	34 ⁹⁰⁾	15.2	32.3	24.4

3. 참여재판 상고심 현황

지난 3년간 참여재판에 대한 상고율은 45.3%로 동 기간 동안 각급 고등법원의 상고율인 3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한 101건에 대한 상고심 처리결과를 보면 파기환송이 1건, 상고기각이 41건, 상고취하가 5건으로 상고가 제기된 사건의 대부분이 상고기각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파기환송된 1건은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한 결과를 받아들여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사안을 항소심이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재판의 결과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다.⁹¹⁾

89) 전국 고등법원 양형변경률과 양형감경률은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8년도 참여재판 업무성과분석자료 11면에 제시된 데이터와 2010년 동자료에 3년 누적데이터로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2009년과 2010년의 각각의 개별적인 데이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90) 법원행정처가 2008.1.1.-2010.2.1.까지의 참여재판 업무성과분석자료 26-30면에서 제시하고 있는 3년간 항소심 파기사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0년도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감경된 경우는 16건이었고, 이를 합산한 양형감경 사례수는 동자료 31면에서 제시하고 있는 36건이 아닌 34건이었다.

91) 대법원 2010.3.25. 2009도 14065.

표 1-34 참여재판 상고현황

구분	항소심 상고 현황				고등법원 상고율
	처리건수	판결건수	상고건수 ⁹²⁾	상고율	
건수(비율)	224	223	101	45.3	34.3

표 1-35 참여재판 상소심 처리현황

(단위:%)

연도	접수 (인원)	처리(인원)										미제
		소계	파기							상고 기각	상고취하	
			사형	자유형		재산형	무죄	파기 환송				
				실형					집행 유예			
				무기	유기							
2009	47 ⁹³⁾	41 (100)	0	0	0	0	0	0	0	41 (100)		6
2010	54	47 (100)	-	-	-	-	-	-	1 (1.1)	41 (87.2)	5 (10.6)	7
합계	101	88 (100)	-	-	-	-	-	-	1 (1.1)	82 (93.2)	5 (5.7)	13

92) 국민참여재판 항소심 판결결과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 이송되기 전에 상고접수를 취하여 상소심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은 상고건수에서 제외하였다.

93) 2009년도 자료는 2008.1.1.-2009.12.31까지의 누적데이터이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2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조사분석

최수형 · 탁희성

제1장

조사설계 및 방법

조사설계 및 방법

2008년부터 시행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참여재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에 관한 인식 및 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즉,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조사는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이론 검증이 아닌,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조사대상자의 견해와 시각을 파악하여 제시하는 실태 분석을 위함이다. 200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I) - 사법개혁과 형사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사법개혁 사안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2008년에는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II)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관 및 조사연구」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1년차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다.⁹⁴⁾ 본 연구는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4년차 평가로 기존의 조사결과와의 비교·분석 뿐 아니라 조사대상 및 내용을 보다 확장하여 다양한 집단의 의견과 각 집단 간 의견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① 일반국민 ②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선고 받은 피고인과

94) 박미숙 외, 2008,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II)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관 및 조사연구」. 이 연구에서는 실제 재판 진행과정을 참관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별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을 살펴보기 위해 배심원과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진행하였음. 배심원 대상 조사의 경우 실제 분석사례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설문지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적극 반영하였음.

일반재판을 통해 선고 받은 피고인 ③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④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성된 네 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파악하고자 한다.⁹⁵⁾ 조사대상자에 따른 조사목적과 조사방법,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 조사 설계 및 조사대상자의 성격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가. 일반국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평가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및 전국 6대 광역시의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⁹⁶⁾ 본 조사의 실사는 2011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회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는 2010년 12월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만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별 인구에 비례 할당하여 배분하였고 해당지역에서 면접원의 임의 할당표집에 의해 최종 선정하였다.⁹⁷⁾ 모집단과 표본 분포는 다음의 <표 2-1>과 같다.

95) 일반국민, 피고인, 배심원에 대한 조사분석은 최수형 부연구위원이 수행하였으며, 법률전문가에 대한 조사분석은 탁희성 연구위원이 수행하였다.

96)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2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한 이유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배심원의 연령이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70세 이상인 경우는 면제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배심원 가능 연령대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제한하였음.

97) 본 조사의 비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엄격한 비례할당 후 면접원의 임의 표집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효한 표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최종 대상자 선정 시 면접원의 임의 표집 방법을 택했음. 임의 표집 시 세부기준으로는 ① 동일 가구에서 2인 이상 표집 금지 ② 서울특별시의 경우 각 기초자치단체(구)당 20~30인 이내 표집, 기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각 기초자치단체(구, 군)당 10~20인 이내 표집 ③ 동일 지역(행정동)에서 6인 이상 표집 금지 ④ 기타 동일 단체(학급, 대학, 직장, 복지시설, 동호회 및 종교단체 등)에서 3인 이상 표집 금지 등이 있음.

표 2-1 모집단 및 표본 분포표

	모집단			표본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전 체	16,734,691	8,369,577	8,365,114	1,300	650	650
20대	3,387,948	1,732,014	1,655,934	264	135	129
30대	3,958,103	2,004,575	1,953,528	308	155	153
40대	4,072,027	2,036,551	2,035,476	314	156	158
50대	3,385,403	1,664,305	1,721,098	263	130	133
60대	1,931,210	932,132	999,078	151	74	77
서울						
20대	1,583,684	788,804	794,880	124	62	62
30대	1,869,447	950,258	919,189	146	74	72
40대	1,749,548	876,076	873,472	136	68	68
50대	1,497,689	723,834	773,855	117	57	60
60대	895,164	432,585	462,579	70	34	36
부산						
20대	500,512	260,635	239,877	39	20	19
30대	542,464	275,735	266,729	42	21	21
40대	609,508	299,971	309,537	47	23	24
50대	597,874	292,193	305,681	47	23	24
60대	352,195	170,634	181,561	27	13	14
대구						
20대	341,356	182,495	158,861	26	14	12
30대	395,480	196,274	199,206	30	15	15
40대	459,649	227,600	232,049	35	17	18
50대	365,036	179,572	185,464	28	14	14
60대	206,121	96,714	109,407	16	8	8
인천						
20대	390,083	201,300	188,783	31	16	15
30대	464,855	238,319	226,536	37	19	18
40대	518,744	263,009	255,735	40	20	20
50대	383,375	196,979	186,396	29	15	14
60대	193,642	94,300	99,342	16	8	8
광주						
20대	204,897	104,898	99,999	16	8	8
30대	243,803	121,488	122,315	19	9	10
40대	248,416	124,386	124,030	20	10	10
50대	179,498	87,816	91,682	14	7	7
60대	107,408	50,732	56,676	8	4	4

	모집단			표본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대전						
20대	214,984	111,680	103,304	17	9	8
30대	254,932	127,647	127,285	20	10	10
40대	266,336	133,411	132,925	20	10	10
50대	201,951	101,143	100,808	16	8	8
60대	106,172	51,390	54,782	8	4	4
울산						
20대	152,432	82,202	70,230	11	6	5
30대	187,122	94,854	92,268	14	7	7
40대	219,826	112,098	107,728	16	8	8
50대	159,980	82,768	77,212	12	6	6
60대	70,508	35,777	34,731	6	3	3

나. 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에 직접 참여한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국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후보)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 배심원 선정기일에서 기피대상이 되어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배심원후보를 조사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배심원과의 배심원 선정기일에 대한 의견 차이, 더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집단의 의사반영을 위함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해 배심원후보 및 배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명단을 입수하여 전수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문제로 인하여 신상정보 공개수락동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사 진행상 물리적인 시간과 경제적 여건의 한계로 불가능하였고 해당부처의 실질적인 조사협조도 기대할 수 없었다. 이에 배심원후보 및 배심원대상 설문조사는 연구진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참관하면서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귀가하는 배심원후보와 최종판결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배심원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응답 후 반송봉투에 넣어 회수 요청을 하는 우편회수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편회수방식은

낮은 응답률, 오랜 회수기간은 물론 대리응답 등의 주변적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편향이 있는 표본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 조사의 특성상 장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재판 후 현장에서 설문조사에 응해줄 가능성이 아주 낮고 응답을 해준다면 하더라도 응답의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편회수방식을 선택하였다. 또한, 조사와 동시에 참관일지를 기록하여 설문조사 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조사기간은 4월 말부터 7월 초까지로 정하고 조사기간 내에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확인하고 범죄유형과 해당 재판부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 참관일정표를 작성하였다. 다만, 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일정은 한 달 단위로 확인할 수 있었고 제한적인 조사기간으로 인해 범죄유형과 해당재판부를 고려함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었다. <표 2-2>에 나타나듯이 2011년 4월 2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을 시작으로 해서 2011년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을 마지막으로 하여 총 30건의 재판에 대한 참관 및 조사가 이루어져 배심원후보 228명, 배심원 231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 가운데 회수된 설문지는 배심원후보가 65명, 배심원이 92명으로 무응답이 연속으로 5문항 이상 등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한 최종 부수는 배심원후보 58부(회수율 25.4%), 배심원 90부(회수율 38.9%)이다.⁹⁸⁾

표 2-2 배심원후보 및 배심원대상 배포 및 회수 설문지수

순번	공판날짜	법원	설문지 배포수		회수 (최종분석 설문지수)	
			배심원 후보	배심원	배심원 후보	배심원
1	4월 26일	대전지방법원	0	7	0	2
2	4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6	7	3	2
3	5월 2일	전주지방법원	8	7	2	2

98) 배심원 대상 설문조사의 회수율이 배심원후보에 비해 높은 이유는 배심원의 경우 해당법원의 협조로 장소와 (제한적이기는 하였지만)시간이 제공되어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조사 응답자 스스로도 재판에 직접 참여한 배심원으로서 응답의 사명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또한 조사 진행을 위해 공판시작에서부터 끝날 때 까지 기다린 연구원과 조사원의 열정 역시 응답자가 설문지를 반송하는 데 작용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사료됨.

순번	공판날짜	법원	설문지 배포수		회수 (최종분석 설문지수)	
			배심원 후보	배심원	배심원 후보	배심원
4	5월 3일	대구지방법원	8	7	4	2
5	5월 16일	전주지방법원	8	8	4	3
6	5월 16일	수원지방법원	8	7	2	2
7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8	8	4	2
8	5월 23일	의정부지방법원	8	8	2	6
9	5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8	0	4	0
10	5월 24일	대전지방법원	8	8	5	4
11	5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8	8	0	3
12	5월 30일	의정부지방법원	8	6	2	3
13	5월 30일	전주지방법원	8	8	3	4
14	5월 31일	울산지방법원	6	10	2	3
15	6월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8	9	3	5
16	6월 3일	춘천지방법원	8	6	0	1
17	6월 7일	대전지방법원	8	9	0	0
18	6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8	7	3	2
19	6월 13일	대전지방법원	8	10	1	9
20	6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8	10	1	3
21	6월 20일	인천지방법원	8	8	4	2
22	6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8	8	2	5
23	6월 27일	부산지방법원	8	8	0	0
24	6월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8	8	0	0
25	6월 28일	대전지방법원	8	8	0	4
26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8	8	1	1
27	7월 1일	춘천지방법원	8	6	1	6
28	7월 4일	전주지방법원	8	8	3	5
29	7월 4일	수원지방법원	8	10	1	2
30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8	9	1	7
합계			228	231	58	90

다. 피고인

피고인신청제로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특성상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과 대상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즉,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집단을

분석함에 있어서 비경험 피고인집단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두 집단 간의 인식과 견해의 차이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신청하였거나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받아들이는 피고인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볼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로서 참여한 집단의 조사대상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선고를 받은 321명 가운데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이미 형기가 종료되어 출소한 경우는 제외하고 현재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이다. 한편, 1심에서 일반형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의 경우는 2009년 이후 교정시설에 입소한 자들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죄명을 가진 자들이다.⁹⁹⁾ 이처럼 피고인집단의 경우 조사 여건상의 문제로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을 함에 있어서 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살펴볼 것이다.

조사는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수용자 199명, 대상사건이지만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수용자 199명을 대상으로 해당 교정시설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321명 가운데 현재 교정시설에 있는 자들을 추적하여 199명에 대해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로 조사 요청을 하였으나 조사를 준비하는 기간 중에 가석방이 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된 경우가 발생하였고 해당 수용자가 조사를 거부하기도 하여 179부가 회수되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수용자의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수용자가 있는 교정시설내 국민참여재판 경험 수용자의 수와 죄명,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197부가 회수되었다.¹⁰⁰⁾ 그 가운데 불성실

99) 국민참여재판제도 최초 시행년도인 2008년도 이후 입소자가 아니라 2009년도 이후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된 기간에 1심을 받은 자를 조사하기 위해서임. 즉, 2008년도 입소자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1심 재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100) 국민참여재판 비경험 수용자를 무작위 추출할 때 국민참여재판 경험 수용자의 죄명과 동일한 자가 없을 경우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죄명을 중심으로 조사하도록 함. 국민참여재판 비경험 수용자의 회수 설문지가 더 많은 것은 해당 교정시설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국민참여재판 경험 수용

한 설문지와 국민참여재판대상 사건이 아닌 응답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는 국민참여재판 경험 수용자 175부, 비경험 수용자 190부가 사용되었다.

표 2-3 피고인 대상 교정시설별 배포 및 회수 설문지수

번호	기 관 명	설문지 배포수		회수(최종분석 설문지수)	
		국민참여재판 경험 수용자	국민참여재판 비경험 수용자	국민참여재판 경험 수용자	국민참여재판 비경험 수용자
1	경북북부제1교도소	6	6	4	5
2	경북북부제2교도소	4	4	3	4
3	경북북부제3교도소	3	3	2	3
4	경북직업훈련교도소	1	1	1	1
5	경주교도소	4	4	4	4
6	공주교도소	5	5	5	4
7	광주교도소	13	13	12	12
8	군산교도소	1	1	1	1
9	김천소년교도소	2	2	2	2
10	대구교도소	20	20	19	20
11	대전교도소	18	18	17	18
12	목포교도소	1	1	1	1
13	밀양구치소	5	5	5	5
14	부산교도소	10	10	10	10
15	부산구치소	4	4	2	4
16	서울구치소	7	7	7	7
17	서울남부교도소	5	5	4	5
18	서울남부구치소	2	2	1	1
19	성동구치소	1	1	1	1
20	소망교도소	1	1	1	1
21	수원구치소	3	3	2	4
22	순천교도소	8	8	7	8
23	안동교도소	4	4	4	4
24	안양교도소	6	6	4	6
25	여주교도소	1	1	1	1
26	원주교도소	9	9	9	8

자의 수까지 고려하여 비경험집단의 조사수를 맞추었기 때문임.

번호	기 관 명	설문지 배포수		회수(최종분석 설문지수)	
		국민참여재판 경험 수용자	국민참여재판 비경험 수용자	국민참여재판 경험 수용자	국민참여재판 비경험 수용자
27	의정부교도소	2	2	2	2
28	인천구치소	2	2	2	1
29	전주교도소	5	5	4	5
30	제주교도소	6	6	5	6
31	진주교도소	9	9	7	6
32	창원교도소	3	3	3	3
33	천안교도소	1	1	1	1
34	청주교도소	5	5	5	4
35	청주여자교도소	3	3	2	3
36	춘천교도소	4	4	4	4
37	통영구치소	1	1	1	1
38	포항교도소	5	5	4	5
39	해남교도소	1	1	1	1
40	화성직훈교도소	8	8	5	8
계		199	199	175	190

라.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은 기존의 형사재판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관여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는 기존의 업무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업무의 틀을 만들어가야 할 의무를 안고 있다. 즉, 형사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세 축이었던 판사, 검사, 변호사는 서로 법률전문가 대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각자의 주장과 항변, 그리고 법적 판단을 제시하면서 재판을 진행하여 왔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면서 일반 시민인 배심원이 새로운 사실판단자의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검사와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판사를 대상으로 주장과 항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을 대상으로 주장과 항변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즉 전문적인 법적 지식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일반시민의 상식을 바탕으로 범죄성립의 주장과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진행해야만 한다. 또한 검사와 변호사 뿐만 아니라 판사도 배심원을 중심으로 한 참여재판을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배심원들이 어떠한 편견도 없이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과 변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판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형사재판인 국민참여재판으로 인해 변화된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 각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변화된 틀에 적합한 새로운 유형의 재판진행과 사실판단, 공소사실 입증과 변론 방식 등을 만들어서 참여재판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참여재판의 질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지난 3년간의 참여재판 진행과정에서 확인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참여재판에 대한 조사연구의 한축으로서 법률전문가인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한 조사는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조사에서 법률전문가 집단의 표본은 각 집단별로 100명씩 총 300명을 선정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였다. 제대로 된 표집을 위해서는 본래 모집단의 규모에 비례하는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법률전문가 집단에 대하여 기관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사를 행하는 경우에 접근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표본수를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 확률표집 대신에 임의표집 방식을 택하였다. 또한 판사, 검사, 변호사 세 집단의 경우에 있어서 참여재판의 진행경험에 대한 질문문항이 있기 때문에 참여재판 진행경험이 있는 사람을 조사분석대상으로 가능한 많이 포섭할 필요가 있는데, 확률표집에 의할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임의표집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판사와 검사는 각 지법과 지청에서 참여재판을 전담하는 사람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판사의 경우 법원별로 참여재판 전담 재판부 판사 3명(배석판사 포함)만 있거나 전담재판부가 없는 법원에서도 참여재판에 관여하는 판사가 6명 이상인 경우를 찾기 힘들었다. 마찬가지로 검사의 경우도 지청별로 공판송무과에 참여재판 전담검사 1명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많아야 2명 정도였다. 참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 법원과 지청을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해도 조사표본수를 모두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와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사법기관에 대한 조사는 중앙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데, 두 기관 모두 조사협조에 난색을 표한 관계로 개별적으로 각 법원과 지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을 취했다. 따라서 조사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법원과 지청의 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가능한 한 조사대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법원과 검찰에 조사협조를 구할 때 전담판사와 전담검사 외에 현재는 다른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이전에 참여재판의 진행 경험이 있는 판사나 검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다음으로 변호사는 현재 참여재판의 80% 이상을 맡고 있는 국선변호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국선전담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였다. 일반 국선변호인은 정확한 인적사항과 소재지 파악이 불가능한 반면, 국선전담변호사는 별도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조사협조를 구하는데 용이했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 참여재판을 참관하면서 재판이 끝난 후, 재판진행에 관여한 판사, 검사, 변호사들에게 직접 조사협조를 구하는 방식도 병행하였다.

전문가 조사에 있어서는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례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관건이기 때문에, 조사기간을 특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조사협조에 응하는 기관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조사를 진행하고, 우편으로 회수하는 것도 달리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6월초부터 8월말까지에 걸쳐 조사가 오래 진행되었다.

먼저 판사의 경우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에 소재하는 16개 법원들을 중심으로 협조요청을 한 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설문지를 전달하고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검사의 경우에도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하는 8개 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전달하고 우편으로 회수하였으며, 지방에 소재하는 7개 지청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변호사의 경우 2010년 3월 현재 전국적으로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134명에 대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다시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이렇게 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판사 48부, 검사 67부, 변호사 61부로 총 176부로, 처음에 계획했던 사례표본수인 300개의 58.6%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다행인 점은 2명¹⁰¹⁾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전문가들은 모두 참여재판을 직접 진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101) 여기서 2명은 참여재판 경험유무에 대한 문항에 무응답처리한 조사대상자이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일반국민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2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30대(23.7%), 20대(20.3%), 50대(20.2%)의 순이다. 최종학력은 고졸인 경우가 51.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직업의 경우에는 서비스판매직이 29.5%, 전업주부가 23.4%, 사무직이 20.1%로 나타났으며 근로조건으로는 정규직이 37.2%로 가장 많았다. 한편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는 300~400만원 미만이 33.3%, 400~500만원 미만이 20.6%, 200~300만원 미만이 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심원집단의 경우 여성이 전체의 52.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연령별로 보면 40대(30.4%), 30대(25.0%), 20대(18.9%)의 순으로 일반국민집단에서 보이는 연령별 분포와 비슷하다. 최종학력의 경우 대졸 이상인 경우가 전체 148명 가운데 85명으로 57% 이상이며 직업의 경우 관리 및 전문직의 비율이 20.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사무직(17.6%)이며 서비스판매직(13.5%)과 전업주부(13.5%)는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근로조건에서도 정규직의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월평균 가구수입의 경우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가 전체의 2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0~400만원 미만(17.6%), 100~200만원 미만(16.9%), 500만원 미만 (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심원(후보)집단의 경우 우편회수방식이라는 조사방법의 특성상 편향된 표본이 뽑힐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국민의 분포와 비교해 볼 때 절대적으로 상이한 분포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배심원(후보)의 경우 학력수준과 관리직이나 전문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에서 본 조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응답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분석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도 이러한 조사대상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해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다른 조사대상에 비해 피고인집단의 경우 집단의 특성상 사회인구학적 특성상 분포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성별 분포와 최종학력별 분포,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그러하다. 즉, 남성이 전체의 97.5%를 차지하고 있고 최종학력의 경우 고졸이 365명 가운데 161명(44.1%)이고 중졸 이하의 경우가 159명

(43.6%)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 그리고 수용생활 전 월평균 가구수입은 100~200만원 미만이 20.5%, 200~300만원 미만이 20.3%,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13.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가 전체의 30.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40대(22.5%), 20대(21.6%), 50대(18.1%) 등의 순이다. 수용생활 전의 직업분포를 보면, 기술/기능직이 25.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직(23.6%), 단순노무직(14.8%), 무직(9.9%), 관리 및 전문직(8.8%)의 순이고, 고용상의 형태를 보면 자영업이 22.2%, 정규직이 19.2%, 일용직이 15.9% 등이다.

표 2-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 명, %)

		조사대상		
		일반국민	배심원(후보) ¹⁰²⁾	피고인 ¹⁰³⁾
성별	남성	650(50.0)	70(47.3)	356(97.5)
	여성	650(50.0)	78(52.7)	9(2.5)
연령대	10대	-	-	7(1.9)
	20대	264(20.3)	28(18.9)	79(21.6)
	30대	308(23.7)	37(25.0)	110(30.1)
	40대	314(24.2)	45(30.4)	82(22.5)
	50대	263(20.2)	23(15.5)	66(18.1)
	60대 이상	151(11.6)	15(10.2)	21(5.8)
최종학력	중졸 이하	74(5.7)	11(7.4)	159(43.6)
	고졸	670(51.5)	52(35.1)	161(44.1)
	대졸 이상	556(42.8)	85(57.4)	43(11.8)
직업	관리 및 전문직	63(4.8)	31(20.9)	32(8.8)
	사무직	261(20.1)	26(17.6)	17(4.7)
	서비스판매직	384(29.5)	20(13.5)	86(23.6)
	농/어/임업	2(0.2)	5(3.4)	25(6.8)
	기술/기능직	118(9.1)	14(9.5)	94(25.8)
	단순노무직	31(2.4)	8(5.4)	54(14.8)
	직업군인	1(0.1)	-	-
	전업주부	304(23.4)	20(13.5)	1(0.3)
	학생	98(7.5)	11(7.4)	10(2.7)
	기타	-	-	9(2.5)
	무직	38(2.9)	13(8.8)	36(9.9)

		조사대상		
		일반국민	배심원(후보) ¹⁰²⁾	피고인 ¹⁰³⁾
근로조건	정규직	484(37.2)	46(31.1)	70(19.2)
	비정규직	85(6.5)	22(14.9)	46(12.6)
	자영업	253(19.5)	18(12.2)	81(22.2)
	자유직(프리랜서)	27(2.1)	7(4.7)	49(13.4)
	일용(임시)직	11(0.8)	8(5.4)	58(15.9)
	기타	—	3(2.0)	11(3.0)
	해당없음 ¹⁰⁴⁾	440(33.8)	44(29.7)	47(12.9)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1(0.8)	6(4.1)	50(13.7)
	100~200만원 미만	86(6.6)	25(16.9)	75(20.5)
	200~300만원 미만	232(17.8)	36(24.3)	74(20.3)
	300~400만원 미만	433(33.3)	26(17.6)	39(10.7)
	400~500만원 미만	268(20.6)	19(12.8)	29(7.9)
	500만원 미만	222(17.1)	24(16.2)	49(13.4)
	모름	48(3.7)	12(8.1)	49(13.4)
전체		1,300(100.0)	148(100.0)	365(100.0)

마지막으로 법률전문가 집단인 판사, 검사, 변호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남성이 70.3%, 여성이 29.7%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직업별로 보면, 판사의 경우 남성이 77.1%, 여성이 23.9%, 검사의 경우 남성이 65.2%, 여성이 34.8%, 변호사의 경우 남성이 70.5%, 여성이 29.5%로 나타났다. 즉 검사의 경우에만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20대(30세 미만)가 10.8%, 30대(40세 미만)가 54.5%, 40대(50세 미만)가 28.7%, 50대 이상(50세 이상)이 6%로 나타났다. 또한 법률전문가 직역군별로 현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판사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근무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7.8%로 가장 높았고, 검사와 변호사는 5-10년 근무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9.4%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 직역군별로 복무경력기간을 평균해서 보면, 판사의 경우 86.8개월(약 7년 2개월), 검사의 경우 66.6개월

102)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103) 국민참여재판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임. 또한 최종학력에서 무응답인 경우가 2건(0.5%), 직업에서는 1건(0.3%), 근로조건에서는 3건(0.8%)으로 나타남.

104) ‘해당사항없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하지않거나 전업주부, 학생을 의미함

(약 5년 5개월), 변호사의 경우 79.7개월(약 6년 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참여재판에 관여하는 법률전문가 집단의 중심을 이루는 군은 연령 별로는 30대와 40대 그리고 근무경력으로는 5년에서 10년 사이로, 이는 기존의 형사재판과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참여재판에 필요한 법조 연륜과 활동력,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적응력을 갖춘 연령대라는 점에서 이들이 참여재판의 진행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판사와 검사와 같이 국가 사법기관에 소속된 경우와 달리 변호사는 사선 변호인도 있을 수 있고, 국선변호인이라 하더라도 국선전담, 법률구조공단, 공익 법무관 소속 변호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참여재판 진행당시 변호사의 지위를 조사해본 결과, 국선전담변호사가 8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사선변호인과 기타 국선변호인이 각각 6.4%로 나타났다.

표 2-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법률전문가 집단)

(단위 : 명, %)

		조사대상			
		판사	검사	변호사	계
성별	남성	37(77.1)	43(65.2)	43(70.5)	123(70.3)
	여성	11(23.0)	23(34.8)	18(29.5)	52(29.7)
연령대	20대	9(20)	4(6.3)	5(8.5)	18(10.8)
	30대	18(40)	43(68.3)	30(50.8)	91(54.5)
	40대	17(37.8)	16(25.4)	15(25.4)	48(28.7)
	50대 이상	1(2.2)	-	9(15.3)	10(6.0)
현직업 복무기간	1년 미만	5(11.1)	2(3.0)	4(6.7)	11(6.4)
	1-3년 미만	15(33.3)	18(27.3)	13(21.7)	46(26.9)
	3-5년 미만	6(13.3)	10(15.2)	12(20.0)	28(16.4)
	5-10년 미만	2(4.4)	26(39.4)	20(33.3)	48(28.1)
	10년 이상	17(37.8)	10(15.2)	11(18.3)	38(22.2)

표 2-6 국민참여재판 참여지위_변호사

	인원	%
사선변호인	3	6.4
국선전담변호인	40	85.1
법률구조공단 국선변호인	1	2.1
공익법무관 국선변호인	-	-
기타 국선변호인	3	6.4
계	47	100.0

무응답 : 13명

제2절 주요 변인의 측정

본 연구에서 일반국민을 비롯하여 국민참여재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민참여재판제도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으로 조사대상자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제도 운영에 대한 견해 및 시각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조사표는 크게 일반국민, 배심원(후보), 피고인, 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구분되며, 배심원과 피고인의 경우에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배심원(후보)의 경우 배심원후보용과 배심원용으로, 피고인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용과 비경험 피고인용으로 나누었다. 전문가용 조사표는 판사, 검사, 변호사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조사항목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등에 대한 문항은 일반국민과 배심원(후보), 그리고 피고인 대상 조사표의 공통된 것으로 세 집단간 차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국민참여재판 경험과 관련된 문항은 세 집단마다 경험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따라 별도로 측정하였다. 한편, 전문가 대상 조사표 역시 집단간 동일문항과 고유업무와 관련한 문항으로 구분된다. 조사대상에 따른 주요변인은 다음과 같다. 단, 공통된 조사항목의 경우는 중복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1. 일반국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일반국민 대상 조사에서 주요 항목은 ‘법관에 대한 신뢰’,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 ‘배심원으로서의 참여의사’,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 등이다. 각 변수의 구체적인 문항과 응답척도는 다음과 같다.

가. 법관에 대한 신뢰도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신뢰회복이라는 목적아래 시행된 제도로 먼저, 법관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법관에 대한 신뢰도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측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형사사법 운용실태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일반국민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 및 관련기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전국 7대 도시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여를 모집단으로 한 2,000명의 표본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수행하였다(정진수 외,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조사내용 가운데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라는 개념을 수정·보완하여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고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견해와 시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볼 것이다.¹⁰⁵⁾

본 연구에서는 ‘법관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7가지 하위개념을 설정하여 각각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여 분석한 후 하나의 복합지수로 사용할 것이다. 각 하위개념의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우리나라 법관들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피고인들을 평등하게 대우한다’, ‘우리나라 법관들은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관들은 정치권이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

105) 물론 2004년도 조사연구와 본 연구의 표본과 조사항목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모집단과 조사방식의 유사성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향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음.

법관들은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관들은 증거나 증인들의 진술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결한다’, ‘우리나라 법관들은 재판을 진행할 만한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법관들의 판결은 믿을 만하다’이다. 이에 각 응답범주는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의 4점까지이다. 한편, 다음의 표(2-7)는 ‘법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도계수이다.

표 2-7 ‘법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도

		성분 1	공통성	신뢰도계수 (Cronbach ‘α)
법관에 대한 신뢰	우리나라 법관들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피고인들을 평등하게 대한다	.808	.609	.866
	우리나라 법관들은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781	.577	
	우리나라 법관들은 정치권이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763	.544	
	우리나라 법관들은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다	.760	.582	
	우리나라 법관들은 증거나 증인들의 진술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결한다	.749	.561	
	우리나라 법관들은 재판을 진행할만한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738	.404	
	우리나라 법관들의 판결을 믿을 만 하다	.635	.652	
고유치(eigenvalue)		3.930		

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 관련

시행 4년째를 넘어서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재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의 1점에서 ‘전혀 모른다’의 4점까지의 응답척도를 사용하였으나 실제 분석에서는 재부호화를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일반국민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알게 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어떻게 아시게 되셨습니까?”란 질문에 ‘TV 신문 등 언론보도를 통해’가 1번, ‘라디오나 지하철의 광고를 통해’가 2번, ‘주변 사람들과 대화중’이 3번, ‘인터넷 검색을 통해’가 4번, ‘기타’가 5번으로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인지경로의 응답범주의 경우 대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홍보방법을 고려하여 구성한 것이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와는 별개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지식정도를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인지도’가 추상적인 변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지식정도’는 보다 구체화된 변수로 일반인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이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거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대강의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귀하는 귀하가 배심원에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귀하는 만일 선정된 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서 통지한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이다. 응답범주는 ‘알고 있다’와 ‘모른다’이며 각 1번과 2번으로 실제 분석에서는 재부호화하여 ‘모른다’가 1번, ‘알고 있다’가 2번으로 사용되었다.

다.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관심도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현재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활성화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변수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알고 싶으십니까?”라고 질문하였고 ‘전혀 알고 싶지 않다’의 1번에서부터 ‘매우 많이 알고 싶다’의 4번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일반국민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이다.

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로 인한 다양한 맥락의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조사에서 사용한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¹⁰⁶⁾ 이 변수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내용으로 본 연구에서는 질문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조사 대상 집단의 공통된 질문으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질문형태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될 것이다”라는 서술에 대해 ‘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부터 ‘전혀 아니다’의 4점까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재판이 보다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재판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재판 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피고인의 인권이 더 잘 보장될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법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더 높아질 것이다”의 6가지이다.

마.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일반국민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배심원 판단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들을 선정하여 조사한 바 있다.¹⁰⁷⁾ 이에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흐른 지금 일반인의 견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과 배심원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 판단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배심원 판단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에 대한 기존의 조사항목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즉, 배심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학연이나 지연’, ‘금전적 혹은 정치적 영향’, ‘여론의 향배’, ‘개인적/종교적 편견이나 선입견’을 지적하고 각 항목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4가지의 요인이

106) 최인섭·황지태, 2007,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Ⅰ) - [1] 사법개혁과 형사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38면; 박미숙 외, 2008, 이전 책, 407면.

107) 최인섭·황지태, 2007, 이전 책, 38면; 박미숙 외, 2008, 이전 책 407면.

배심원의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여 ‘전혀 없다’면 1점, ‘별로 없다’면 2점, ‘약간 있다’면 3점, ‘매우 크다’면 4점을 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변수 역시 배심원과 피고인대상 조사표에서 포함하여 조사대상별 인식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배심원 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판단은 권고적 효력만을 지니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배심원 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즉, 참여재판의 존재 의의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배심원 평결에 실질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 그리고 시범운영 중이라도 배심원 무죄평결에 기속력이 있도록 하는 등의 제한적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김병수, 2010; 이금옥, 2008). 이러한 상황에서 배심원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대한 기속력 문제에 대해 일반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배심원 판단에 대한 기속력 문제에 대해 유·무죄 판단과 형량판단을 구분하여 물어보았다.¹⁰⁸⁾ 먼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대한 기속력 문제는 “현재 국민참여재판제도하에서는 배심원들은 유죄인가 무죄인가의 의견만을 제시하고 판사가 이를 참고로 최종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가요?”라는 질문에 ‘현행방식이 타당하다’의 1번, ‘배심원들이 합의한 의견을 판사는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의 2번, ‘판사는 배심원들이 합의한 의견을 고려할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평결해야 한다’의 3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배심원의 형량판단에 대한 기속력 문제는 “현재 배심원들이 적정한 형량을 제시하면 판사는 이를 참고로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대한 기속력질문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현행방식이 타당하다’의 1번, ‘배심원들이 합의한 의견을 판사는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의 2번, ‘판사는 배심원들이 합의한 의견을 고려할 필요 없이 독자적

108) 2008, 박미숙 외, 배심원 대상 심층면접과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된 조사표를 참고하여 구성함.

으로 평결해야 한다'의 3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변수 역시 배심원과 피고인의 조사항목으로 포함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 배심원 일당 수준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에는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심원들에게 하루 일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금액 수준에 대해 일반인의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과 안정적인 참여율을 유지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 일당의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원에서는 배심원들에게는 하루 일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의 일당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적다’의 1점에서부터 ‘많다’의 3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은 배심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에도 포함하여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배심원 일당 10만원을 받은 배심원과 일반인 사이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참여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는지 살펴볼 것이다.

아. 배심원으로서의 참여 의사 및 참여가능 기간과 종료시간, 참여이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전국법원의 배심원후보자 송달 및 출석현황을 살펴보면 송달 불능된 자와 출석취소통지를 한 자를 제외한 실질 출석률이 2008년에는 58.4%, 2009년에는 57.3%, 2010년에는 54.2%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¹⁰⁹⁾ 이처럼 아직까지는 배심원 실질 출석률의 감소율이 크지 않지만 안정적인 출석률의 확보는 국민참여재판제도 활성화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일반국민의 참여의사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참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를 측정하기 위해 “만약 귀하가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따라 특정 재판의 배심원으로 출석하라는 법원의

109) 대법원 2008, 『2008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대법원 2009, 『2008-2009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대법원 2010, 『2008-2010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을 재구성한 결과임.

통보를 받았을 경우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라고 물어 보고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의 1번에서부터 ‘꼭 참여하고 싶다’의 4번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사법개혁과 형사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한국형 배심원제도¹¹⁰⁾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살펴 보면서 배심원 참여 의사를 측정하였다(최인섭·황지태, 2007). 이에 본 조사결과와 2007년도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 전과 후의 참여의사 변화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또 다른 조사 대상으로 배심원용 조사표에서도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를 질문하여 직접 국민 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으로서의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자들 가운데 참여가능 기간과 종료시간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200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내용에서 참여가능 기간에 대한 변수는 있지만 참여가능 종료시간에 대한 별도의 질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국민참여재판은 1일 내에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차영민, 2011). 이처럼 참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처럼 다음 공판기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없고 하루 만에 선고를 제외한 모든 절차를 마치므로 신속하게 처리된다(김병수, 2010). 하지만 하루 만에 공판 절차를 끝내기 위해 늦은 저녁까지 심지어는 새벽까지 공판이 이어져 장시간 진행되는 공판의 피곤함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간혹 재판이 밤늦게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만약 참여하신다면 언제까지 재판진행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에 대해 ‘오후 6시정도’, ‘오후 8시 정도’, ‘자정까지’, ‘시간에 상관없다’ 가운데 응답하도록 하고 “간혹 재판이 하루에 끝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참여하신다면 며칠이나 재판진행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에 대해 ‘하루만’, ‘2일 정도’, ‘3일 정도’, ‘기간에 상관없다’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태도가 절실한 만큼 참여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향후 국민참여재판의 올바른 제도

110) 2007년도 연구수행 당시에는 ‘국민참여재판제도’라는 명칭이 결정되기 이전으로 ‘한국형 배심원 제도’라 칭함.

정착 방안 마련에 필요하다. 배심원으로서 참여 동기에 해당하는 요인들은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배심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예비 설문 조사¹¹¹⁾를 통해 구성된 항목을 일반인의 참여의사 결정 요인으로 사용할 것이다. 즉, 일반인 가운데 배심원으로서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들에 대해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식”, “민주 시민으로서의 사명감”, “불출석 시의 과태료에 대한 부담감”, “재판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라는 네 가지 각각의 요인들이 참여 결정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질문하고 ‘전혀 없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크다’의 4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나 ‘재판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인한 높은 참여율은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이 될 수 없다. 즉,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참여가 많을수록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배심원으로서 예상되는 어려움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에 있어서 국민의 사법참여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왔다. 이러한 시각의 출발은 일반인의 잘못된 판단 가능성이라는 문제 이전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분명히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반인 참여가 필수적인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일 것이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미와 공판진행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막연하게나마 어려움을 것 같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홍보 내용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져 배심원후보의 출석률에 긍정적으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이 배심원 대상으로 ‘배심원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¹¹²⁾와 앞서 언급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배심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예비 설문 조사로 구성된 항목¹¹³⁾을 재구성하여

111) 박미숙 외, 2008, 이전 책, 399면

112) 법원행정처, 2011, 『2008년-2010년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40면

113) 박미숙 외, 2008, 이전 책 405면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배심원으로서 예상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병렬적으로 나열된 항목을 재분류하여 세 요인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하위문항을 만들었다. 먼저, ‘배심원으로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세 가지 요인은 ‘법률지식 및 이해 관련 어려움’, ‘배심원 역할에 대한 부담’, ‘배심원 출석관련 어려움’이며 각각의 세부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즉, ‘배심원역할에 대한 부담’의 경우, 공판과정 중 피고인과의 직접 대면에 대한 두려움과 배심원으로서 피고의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한다는 부담, 그로 인하여 신변의 위협이나 보복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포함된다. ‘법률지식 및 이해 관련 어려움’은 법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의미하고 배심원으로 출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원이라는 곳의 특성상 권위적 태도로 힘들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포함한다. 한편, ‘배심원출석 관련 어려움’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와 별도의 시간을 내야하는 출석 자체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응답척도는 참여 동기와 마찬가지로 각 항목에 대해 그 영향력이 ‘전혀 없다’의 1점에서 ‘매우 크다’의 4점까지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배심원으로서 참여하게 되었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이 큰 것이다.

표 2-8 배심원으로서 예상되는 어려움 주성분 요인분석 및 신뢰도

		성분			공통성	신뢰도계수
		1	2	3		
배심원 역할에 대한 부담감	신변의 위협이나 보복가능성	.829			.723	.759
	피고인과의 직접대면	.777			.661	
	피고인의 유무죄, 형량 결정에 대한 부담	.754			.684	
법률지식 및 이해 관련 어려움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834		.717	.817
	재판내용이나 법률용어의 어려움		.808		.719	
	재판부나 법원의 권위적 태도		.624		.504	
출석 관련 어려움	시간내서 출석해야 하는 부담			.869	.738	.681
	출석으로 인한 생업에 지장			.824	.717	
고유치(eigenvalue)		2.038	1.945	1.542		

차.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

일반인의 기준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귀하의 생각에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까?”라고 질문하고 ‘가능성이 아주 낮다’ 1점,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2점,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3점, ‘가능성이 아주 높다’ 4점 가운데 응답하도록 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이다. 이 항목 역시 이전 조사결과¹¹⁴⁾와 비교가능하며 본 연구에서 실시한 피고인과 배심원과의 시각 차이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배심원 후보 및 배심원 대상 조사항목은 크게 두 축으로 구분되는데, 그 첫 번째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이고, 두 번째가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 및 평가’이다. 즉,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는 일반인과 피고인 대상 조사표와 공통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 및 평가’는 배심원(후보)으로서 참여한 재판운영절차에 따라 ‘배심원 선정기일에 대한 이해 및 평가’, ‘공판과정에 대한 이해 및 평가’, ‘유무죄 평의 및 양형 토의과정에 대한 이해 및 평가’로 구분되며 200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연구에서 제안한 문항을 수정·보완한 것이다.¹¹⁵⁾ 이와 더불어 ‘배심원으로서 어려움’이라는 변수를 통해 배심원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면서 어렵거나 부담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로 어렵다고 느끼고 부담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배심원 선정기일에만 참여하는 배심원후보의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태도’ 관련 항목과 ‘국민참여재판과정에 대한 이해와 평가’ 가운데

114) 최인섭·황지태, 2007 이전 책 40면

115) 박미숙 외, 2008, 이전 책

‘배심원 선정기일에 대한 이해 및 평가’ 관련 항목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배심원 대상 조사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일반인 대상 조사표와 공통한 항목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관련 변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가. 배심원 선정기일에 대한 이해 및 평가

1) 배심원 선정기일 출석 동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배심원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실제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의 의견이 중요하다. ‘배심원 선정기일 출석 동기’는 일반국민대상 조사표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배심원으로서 출석통보를 받지 않은 일반인과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서 참여하겠다고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귀하가 이번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겠다고 결정하는 데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한 가지씩 평가해 주십시오”라는 지시문을 주고 네 가지 항목을 나열하였다. 네 가지 항목은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사명감”, “불출석 시의 과태료에 대한 부담감”, “재판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며 이에 대해 각각 ‘전혀 없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크다’의 4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즉, 배심원 역할 수행을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받아들이어 실질적인 출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성공적인 ‘한국형 배심원제도’가 될 것이다.

2)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불편함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이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불편한 점을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진은 직접 배심원 선정기일을 참관하면서¹¹⁶⁾ 여섯 가지 항목을 구성하였다. “선정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11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절 배심원의 선정에서 제24조 2항에 의하면 선정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해당 재판부에 연구의 목적으로 참관을 신청하고 허락이 있는

주었다”, “선정과정에서 검사나 변호사의 질문이 적절했다”, “선정과정에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질문들이 있었다”, “배심원 선정을 위해 너무 기다렸다”, “배심원 선정과정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배심원 선정과정 자체가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었다”의 각 문항들에 대해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실제분석에서는 “선정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었다”, “선정과정에서 검사나 변호사의 질문이 적절했다”의 문항을 재부호화하여 점수가 높다는 것은 배심원 선정과정이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공판과정에 대한 이해 및 평가

1) 공판과정에 대한 이해도

공판과정에서 배심원의 이해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여섯 가지 항목을 사용하면서 “귀하는 ~~~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고 “귀하가 재판을 이해하는데 ~~~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였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왜냐하면 이해도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방식은 응답자로 하여금 본인이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지만, 본인의 이해보다 상대방의 설명력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하면 보다 정확한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진행과 관련된 판사의 설명”, “사건의 죄명이나 죄명의 내용에 대한 설명”, “사건에 대한 판사의 설명”, “검사의 입증과 주장”, “변호인의 변론 내용”, “재판 중 사용된 법률 용어에 대한 설명”이 이해하는데 충분하였는지 질문하였고, ‘매우 부족’의 1번부터 ‘매우 충분’의 4번까지 응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평가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공판이 시작되면서부터 판사는 배심원에게 재판진행방식과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 가운데 혼란을 주는 부분을 다시 설명하도록 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하지

경우는 참관이 가능하였음.

않도록 하는 등 공판진행을 한다. 한편 검사와 변호사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배심원을 설득시키는 노력을 한다. 이들의 역할에 대해 배심원은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판사의 경우에는 “재판을 위한 사전 준비”,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등의 노력”, “사건에 대한 중립적인 자세”, “재판 시간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해 물어보았고 검사와 변호사의 경우에는 “재판을 위한 사전 준비”, “배심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 “입증방식의 다양화 노력(시각자료 활용 등)”이라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매우 부족’의 1점에서부터 ‘매우 충분’이라는 4점까지 응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평가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다. 유·무죄 평의 및 양형 토의과정에 대한 이해 및 평가

현행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의 판단이 최종판결에 구속력을 지니지는 못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무죄 평의와 형량 토의과정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이에 ‘유·무죄 평의 및 양형 토의과정에 대한 이해 및 평가’에서는 배심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며 충분한 토론을 하는지, 그리고 유·무죄를 결정하거나 형량을 결정할 때 법률기준이나 토의내용,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 등의 요인이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실제 조사표에서 ‘유·무죄 평의 및 양형 토의과정에 대한 이해 및 평가’항목은 유·무죄 평의단계와 양형토의단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지만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수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유·무죄 평의 및 양형 토의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밝혔는지 살펴보기 위해 “귀하는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밝히셨습니까?”라고 질문하면서 ‘전혀 밝히지 못했다’의 1점에서부터 ‘아주 충분히 밝혔다’의 4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귀하는 배심원들이 충분히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함으로써 유·무죄 평의 및 양형 토의과정에서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각 질문에 대해 ‘매우 부족했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충분했다’의 4점까지 응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상호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유·무죄 판단과 형량판단의 결정요인을 제시하면서 각 요인들이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요인으로는 “제출된 증거(유·무죄 판단시)”, “법률기준(형량 판단시)”, “배심원들의 의견과 토의 내용”, “배심원 중 주도적인 특정인의 의견”, “판사의 의견(형량 판단시)”,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 “피고인 측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피해자가 처한 상황”, “장시간 재판으로 인한 피로감”을 제시하였고 ‘전혀 없음’의 1점에서부터 ‘매우 큼’의 4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라. 배심원으로서 어려움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이 재판참여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고 어려움을 어느 정도 겪고 있는지,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네 가지 차원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하위문항을 구성하였다. 즉, “법률지식 및 이해 관련 어려움”, “배심원 역할에 대한 부담”, “배심원 출석관련 어려움”, “공판진행방식의 힘들”이라는 요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하위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2-9 ‘배심원으로서 어려움’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성분				공통성	신뢰도 계수
		1	2	3	4		
법률지식 및 이해 관련 어려움	재판과정 이해의 어려움	.826				.766	.706
	증거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790				.646	
	재판내용이나 법률용어의 어려움	.753				.633	
배심원역할에 대한 부담감	피고인과의 직접대면		.847			.754	.665
	신변의 위협이나 보복가능성		.838			.717	
	피고인의 유무죄, 형량 결정에 대한 부담		.552			.415	
배심원 출석관련 어려움	출석으로 인한 생업에 지장			.895		.828	.808
	시간내서 출석해야 하는 부담			.853		.801	
공판진행 방식의 힘듦	똑같은 내용 반복				.834	.734	.709
	장시간 진행				.819	.771	
고유치(eigenvalue)		1.927	1.809	1.716	1.615		

3. 피고인

피고인 신청주의로 이루어지는 국민참여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역할과 그 주체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태도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이유와 신청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재판 신청단계, 그리고 피고인 입장에서 경험한 재판내용과 과정,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 간의 차이, 그리고 일반인과 배심원과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피고인 대상 조사항목은 크게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인식’과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용 절차에 대한 이해 및 평가’로 구분된다.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용 절차에 대한 이해 및 평가’는 다시 ‘국민참여재판 신청단계’, ‘피고인으로서 경험한 재판 내용·과정·결과’에 관한 것으로 구분된다. 배심원(후보) 대상 조사와 마찬가지로 일반국민대상 조사항목과 동일한 변수에 대한 설명은 제외하기로 한다.

가. 국민참여재판 신청단계

피고인대상 조사표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용과 국민참여재판대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즉,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를 묻고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을 대상으로는 왜 신청하지 않았는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가 철회하였다면 왜 철회하였는지 물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에 중죄형사피고인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 선호도 연구를 진행하였다.¹¹⁷⁾ 이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기 전 조사한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를 포함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때 제시된 항목과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와 신청하지 않은 이유(철회한 이유)에

117)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 「중죄형사피고인과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선호도 연구」.

해당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로는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량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서”, “피고인의 권리가 잘 보호될 것 같아서”, “재판이 공정할 것 같아서”, “변호사의 권유로”, “같은 재소자들의 권유로”라는 다섯 가지를 지적하였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철회한 이유)로는 “유죄가 되거나 형량이 높게 나올까봐”, “배심원 판결을 믿을 수 없어서”, “변호사의 권유로”, “동료 재소자들이 좋지 않다고 해서”, “판사나 검사 등 관련 업무 부담감 등으로 불이익이 있을까봐”,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 앞에서 재판받기 싫어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잘 몰라서”라는 일곱 가지를 지적하였다. 이들 이유들 가운데 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혹은 신청하지 않은(철회한) 이유를 중복선택 하도록 하였다.

나. 재판내용 관련 변수

재판내용 관련 변수로는 ‘사건죄명’과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다. 이 변수는 국민참여재판 경험여부에 상관없이 공통된 질문으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 가운데에서도 죄명과 1심 판결에 따라 인식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내 차이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과거 다른 죄로 복역한 적이 있는지도 살펴봄으로써 보다 다양한 차원의 결과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 재판과정 관련 변수

재판과정 중 변호사의 도움은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귀하는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얼마나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의 1번부터 ‘무척 많은 도움이 되었다’의 4번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약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5번을 선택하도록 하여 분석과정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와 상의는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변호사와 어느 정도 상의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고 ‘전혀 상의하지 못했다’의 1번부터 ‘충분히 상의했다’의 4번까지 응답하도록 하고

이 항목 역시 재판과정에서 변호사가 없었다면 5번을 선택하도록 하여 분석과정에서 제외하였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판사와 검사에 비해 변호사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관계에 주목하였고 과연 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과 비경험 피고인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라. 재판결과 관련 변수

본 연구에서는 재판결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먼저,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에게는 “만약 지난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고 일반형사재판을 받았다면 결과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라고 묻고 일반형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에게는 “만약 지난 재판에서 일반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면 결과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무죄로 풀려났을 것이다’ 1번, ‘지금보다는 더 가벼운 형을 받았을 것이다’ 2번, ‘지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을 것이다’ 3번, ‘지금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4번 가운데 응답하도록 하였다. 즉, 이러한 질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만족도와 일반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만족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판결과에 대한 태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1심 판결의 유죄선고에 승복하십니까?”, “귀하는 1심 판결의 형량수준에 대해 승복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1심 판결에 대한 승복정도를 묻고 ‘전혀 승복하지 못한다’의 1점에서부터 ‘전적으로 승복한다’의 4점까지의 응답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승복여부와는 별개로 “귀하는 1심 판결의 형량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지나치게 낮다’ 1점, ‘대체로 낮은 편이다’ 2점, ‘대체로 높은 편이다’ 3점, ‘지나치게 높다’ 4점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항소 여부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하였다.

표 2-10 조사대상에 따른 주요 조사항목(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조사항목 ¹¹⁸⁾	일반 국민	배심원	피고인
사회인구학적 변인	• 성별 • 연령 • 최종학력 • 직업 및 근로형태 • 월평균 가구 소득 • 거주 지역	○ ○ ○ ○ ○ ○	○ ○ ○ ○ ○	○ ○ ○ ○ ○
법관에 대한 신뢰	• 피고인의 지위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우함 • 금품 등 유혹에 흔들리지 않음 • 정치권, 부당한 압력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음 • 사회여론에 흔들리지 않음 • 증거나 증인진술에 대해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 • 판결에 위한 충분한 지식과 능력보유 • 판결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 ○ ○ ○ ○ ○ ○		○ ○ ○ ○ ○ ○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지	•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인지도 •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경로	○ ○	○	○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지식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 귀하가 배심원에 선정될 수 있다는 걸 아는지 • 선정기일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아는지	○ ○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도	•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알고 싶으십니까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긍정적 효과	• 재판의 공정성 향상 • 재판의 투명성 향상 • 재판결과 신뢰성 향상 • 피고인 인권보장 • 국민 법지식 향상 •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	○ ○ ○ ○ ○ ○	○ ○ ○ ○ ○ ○	○ ○ ○ ○ ○ ○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	• 학연이나 지연 • 금전적 혹은 정치적 영향 • 여론의 항배 • 개인적이나 종교적 편견(선입견)	○ ○ ○ ○	○ ○ ○ ○	○ ○ ○ ○
배심원의 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	• 배심원의 유무죄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 • 배심원의 형량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	○ ○	○ ○	○ ○
배심원 일당의 수준	• 배심원 일당의 수준	○	○	
배심원으로서의 참여도	• 배심원으로서 참여할 의사 여부 • 배심원으로서 재판참여가능 시간(24시간 기준) • 배심원으로서 재판참여가능 일수	○ ○ ○	○ ○ ○	
배심원으로서의 참여 이유	•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식 • 민주주의식으로서의 사명감 • 불출석 시의 과태료에 대한 부담감 • 재판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	○ ○ ○ ○	○ ○ ○ ○	

	조사항목 ¹¹⁸⁾	일반 국민	배심원	피고인
배심원으로서 예상되는 어려움	• 법률지식 및 이해 관련 어려움 • 배심원 역할에 대한 부담 • 배심원 출석 관련 어려움	○ ○ ○		
성공적인 정착가능성	•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	○	○	○
배심원 선정기일에 대한 이해 및 평가	• 배심원 선정기일 출석 동기 •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불편함		○ ○	
공판과정에 대한 이해 및 평가	• 공판과정에 대한 이해도 • 판사, 검사, 변호사 역할에 대한 평가 • 공판 중 적극적 의사표현 여부		○ ○ ○	
유·무죄 평의평결 및 양형토의에 대한 이해 및 평가	• 유·무죄 평의과정시 의견개진 및 상호토론 정도 • 유·무죄에 대한 최종판단의 어려움 • 유·무죄에 대한 최종판단의 결정요인 • 양형토의시 판사 설명에 대한 이해도 • 양형토의시 의견개진 및 상호토론 정도 • 양형에 대한 최종판단의 어려움 • 양형에 대한 최종판단의 결정요인		○ ○ ○ ○	
배심원으로서 어려움	• 법률지식 및 이해 관련 어려움 • 배심원 역할에 대한 부담 • 배심원 출석관련 어려움 • 공판진행 방식의 힘들		○ ○ ○ ○	
국민참여재판 신청단계	• 국민참여재판 신청이유 • 국민참여재판 신청하지 않은(철회한) 이유			○ ○
재판 내용 및 과정, 결과 관련 요인	• 사건죄명 및 선고형량(1심) • 변호사의 도움정도 및 상의정도 •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았다면/받았다면 결과 예상 • 1심 판결에 대한 승복 등 •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			○ ○ ○ ○ ○

4.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참여재판에 있어서 법률전문가들은 일반시민인 배심원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녀왔던 일반시민에 대한 우월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판단을 이끌어내야만 하는 것이다. 즉 참여재판에 있어서 국민이 사실판단자이고,

118) 전문가집단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보다 복잡한 질문들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음.

법률전문가는 사실판단자로서의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와 정당한 근거를 체계적이고 설득력있게 제시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¹¹⁹⁾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체화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참여재판을 실질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하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이 일반시민인 배심원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 참여재판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동의, 참여재판에 적합한 공판진행·범죄사실 입증·변론 방식 등을 고민하고 개발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참여재판제도는 그저 명목상 존재하는 시민사법의 한 형태로 언급되는데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참여재판이 시범실시 되어온 지 만 3년이 지난 현재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참여재판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참여재판 진행을 해오면서 법률상 혹은 실무운영상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배심원 평결에 대한 신뢰는 어떠한지, 시범실시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참여재판이 과연 우리의 사법체계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2013년 마련될 국민참여재판의 밑그림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 각각의 법률전문가 직역군에 있어서 참여재판을 보는 관점과 수용하는 방식, 그동안의 참여재판 시행성과에 대한 평가의 차이 등을 분석해 봄으로써 참여재판에 있어서 직역간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참여재판에 대한 인식, 공판준비절차를 포함한 재판절차, 배심원 선정절차, 배심원 평결, 국민참여재판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등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봄으로써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참여재판이 어떻게 인식되고 수용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 일반적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 관련 변수

법률전문가인 판사, 검사, 변호사가 참여재판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전제로서, 조사대상자들의 참여재판 경험과 관련된 질문을

119) 박근용, “배심재판제도에 대한 두려움과 생소함 극복하기”, 국민의 사법참여, 2010, 17면

하였다. 즉 “실제 참여재판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가”,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범죄유형이었으며, 그 횟수는 어느 정도 였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법률전문가 집단의 참여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 정도를 측정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법률전문가로서 직접 참여재판을 진행해본 경험을 통해서만 정확한 문제의식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문가 직역의 특성상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참여재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문제의식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가능한 한 참여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법률전문가들의 인식과 평가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법률전문가들의 참여재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참여재판이 우리 사법체제에 적합한 재판방식이 될 수 있는가”, “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한 인식”, “참여재판제도의 목적 및 도입취지에 대한 인식 정도”, “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평가”, “배심원의 공판절차 참여에 대한 인식”,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허용범위” 등과 관련한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각 사법기관이 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해 어느 정도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국민참여재판 전담부서 설치”, “소속기관의 참여재판 홍보활동”, “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수단” 등과 관련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나. 공판준비절차 등 재판과정과 관련한 변수

참여재판은 단기간의 기일내에 재판을 종결지어야 하기 때문에 집중심리를 위한 공판전 준비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판전 준비절차에서는 당사자간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며, 증인출석을 담보해야 한다. 참여재판은 1일 또는 2일 내에 종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 현재로서는 - 가능한 한 양 당사자의 쟁점을 명확히 하여야만 절차의 지연을 피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 밤늦게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감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무리한 재판진행은 배심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장기간의 재판참여는 배심원의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안에 재판을 종결짓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참여재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판에 관련된 법률전문가들로 하여금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결코 쉽지 않은 재판형식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참여재판을 위한 공판절차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갖고 있는지, 참여재판제도의 법제화된 내용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며, 참여재판의 현재 진행방식이 타당한가 등을 살펴봄으로써 참여재판이라고 하는 새로운 재판형식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법률전문가들이 참여재판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통상 공판절차에 비해 참여재판이 갖는 업무부담의 정도”, “참여재판의 각 절차에 따른 업무부담의 정도” 등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현행 참여재판 시행과 관련하여 규정된 법제상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참여재판 대상사건 범위확대에 대한 의견”, “참여재판에 새로운 대상사건으로 포함시켜야 할 범죄유형과 대상사건에서 제외해야 할 범죄유형이 무엇인가”, “참여재판 피고인 신청제도와 배제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참여재판에 대한 항소 허용여부의 타당성”, “참여재판 진행시간의 적정성” 등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다. 배심원 선정과 관련한 변수

현행 참여재판은 배심원 후보자를 공판정에 출석시킨 후 배심원 선정절차를 거쳐 최종 배심원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배심원 후보자들에 대하여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이 행해지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배심원의 대답을 토대로 배심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이루어지면서 최종 배심원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심원 선정절차가 합리적일수록 참여재판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직접 배심원 선정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현행 배심원 선정절차와 방식이 합리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배심원 선정이 진행되는 절차와 방식이 참여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는지,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내용들이 배심원 선정에 적합한 방식인지, 현재의 순차기피방식과 혼합기피방식의 효과성은 어떠한지, 적정배심원 수는 얼마라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 및 기피방식에 대한 필요성”, “배심원 및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질문내용의 타당성과 배심원 선정시간의 적정성”, “배심원 선정절차의 개선방안”, “참여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기여 정도”, “적정 배심원수” 등에 대한 질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라. 배심원 평결과 관련한 변수

참여재판의 마지막 단계인 배심원 평의 및 평결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판사도 배석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즉 비공개로 별도 평의실에서 배심원들끼리 토의하고 얻어낸 평결을 토대로 법관은 형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현행법상 배심원 평결결과가 법관을 구속하지는 않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시민을 대표하는 배심원의 평결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배심원 평결과 관련하여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한 설문내용에 차이가 있다. 배심원 평결과 관련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은 현행 배심원 평결절차의 적정성, 배심원 판단의 합리성, 배심원에 의한 양형수준의 적정성, 배심원 평결절차의 개선방안을 평가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제시했으며, 판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심원 평결과의 일치 내지 불일치 경험, 배심원 평결 결과의 배제 내지 존중 경험 등을 측정하는 질문문항을 구성하였다.

현행 배심원 평결절차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1차 평의시 만장일치방식과 2차 평의시 다수결 방식의 타당성 정도”,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배제의 타당성 정도”,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허용의 타당성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배심원 판단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인식을 보기 위해서 “배심원 유무죄 판단의 합리성 여부”와 “배심원 양형판단의 합리성 여부”를 묻는 질문문항을 구성하였고, 배심원에 의한 양형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유무죄 평결결과의 만족도”, “배심원 평결결과에 대한 불만족 이유” 등으로 구성된 질문문항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배심원 평결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문항으로는 “유무죄 평의시 중다수결로 일원화”, “유무죄 평의시 만장일치제로 일원화”,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부여”,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제한” 등에 대한 타당성 정도를 기재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한편 판사에게만 제시한 배심원 평결과 관련한 경험측정지표는 “배심원 평결과 본인 판단의 불일치 경험 유무”, “배심원 1차 평결과 본인 판단의 일치 경험 횟수”, “배심원 1차 평결과 본인 판단의 불일치 경험”, “본인의 판단과 불일치한 배심원 평결에 대한 존중 내지 배제 경험”, “유무죄 판단 불일치시 법관으로서의 선택” 등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 국민참여재판 정착을 위한 고려 변수

법률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참여재판을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에 정착화 시키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변수로는, “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해 현행 사법시스템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사항”, “참여재판 전 과정에 있어서 배심원들의 이해정도”, “참여재판에 대한 판사의 진행방식의 적정성”, “참여재판에 대한 검사의 입증방식의 적정성”, “참여재판에 대한 변호사의 변론방식의 적정성”,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입증 내지 변론에 의한 배심원들의 영향 정도”, “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등에 관한 질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2-11 조사대상에 따른 주요 조사항목(판사, 검사, 변호사)

	조사항목 ¹²⁰⁾	판사	검사	변호사
사회인구학적 변인	• 성별 • 연령 • 근무경력 • 근무지역	○ ○ ○ ○	○ ○ ○ ○	○ ○ ○ ○
국민참여재판진행 경험	• 참여재판 경험횟수 • 연도별 담당 참여재판의 사건 죄명과 횟수 • 참여재판 참여당시 변호인의 유형	○ ○	○ ○	○ ○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홍보	• 참여재판 전담부서 설치여부 • 소속기관의 참여재판 홍보활동 • 참여재판 활성화에 효과적인 홍보수단 • 참여재판 홍보내용 접촉 경험 • 참여재판 활성화에 대한 홍보활동의 기여정도	○ ○ ○	○ ○ ○	○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 참여재판이 우리 사법체계에 적합한 재판방식인가 • 참여재판이 현 사법체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인가 • 참여재판의 목적 및 도입취지에의 기여정도	○ ○ ○	○ ○ ○	○ ○ ○

제2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조사분석

	조사항목 ¹²⁰⁾	판사	검사	변호사
	• 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인식 • 배심원의 공판절차 참여에의 인식 •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에 대한 인식	○	○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부담	• 통상 공판절차에 비해 참여재판이 갖는 업무부담 • 참여재판 절차에 따른 업무부담의 정도	○	○	○
현행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제도적 내용의 타당성	• 참여재판제도의 기본적 요건(신청제도, 대상사건 등)의 타당성 • 참여재판 대상범위의 개선방안 • 피고인 신청제도의 개선방안 • 참여재판 배제결정의 개선방안 • 참여재판 배제결정 사유의 유형분류 • 참여재판 항소의 개선방안 • 참여재판 전체적인 절차의 개선방안	○	○	○
참여재판 운영방식의 적정성	• 참여재판 진행의 적정시간(1일 기준) • 참여재판 진행의 적정기간 • 참여재판 신속종결방식과 실제적 진실발견과의 일치여부에 대한 의견 • 사실심 심리와 양형심리 분리에 관한 인식	○	○	○
배심원 선정절차	• 배심원 기피방식에 대한 인식 • 배심원 선정절차의 참여재판 공정성에의 기여정도 • 배심원 선정과정의 타당성 • 배심원 선정절차의 개선방안 • 참여재판 운영에 필요한 적정 배심원수	○	○	○
배심원 평결절차	• 배심원 평결과 불일치 경험 및 회수 • 배심원 평결 관련 규정(평결방식, 권고적 효력등)의 타당성 • 배심원 유무죄 및 양형판단의 합리성 • 배심원 양형평결 수준의 적정성 및 만족여부 • 배심원 평결절차의 개선방안	○	○	○
국민참여재판 정착을 위한 고려사항	• 참여재판이 현 사법시스템에 정착하기 위한 개선방안 • 참여재판 진행과정에서 배심원들의 이해 정도 • 판사의 재판진행방식의 적정성 • 검사의 입증방식의 적정성 • 변호사의 변론방식의 적정성 • 검사의 입증 또는 변호사의 변론방식이 배심원에 미치는 영향 정도 • 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	○	○

120) 전문가집단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보다 복잡한 질문들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음.

제2장

일반국민 대상 조사결과 분석

일반국민 대상 조사결과 분석

제1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인식 및 태도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배심원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4년차 평가작업을 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이 장에서는 일반국민 대상 조사결과를 주요변인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법관에 대한 신뢰

일반국민의 법관에 대한 신뢰를 살펴보기 위해 7가지 하위차원의 문항을 사용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2-12>과 같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관에 대한 신뢰 가운데 ‘법관의 능력과 지식수준’에 대한 믿음이 다른 신뢰 항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법관은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에 대해 ‘비교적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58.3%이고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7.1%로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2 참고). 반면, ‘법관들은 정치권이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전체의 34.6%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04년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법관이 사건 처리 시에 정치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20%로 나타났다(정진수 외, 2004)¹²¹⁾.

표 2-12 '법관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응답 분포(일반국민)

(단위 : 명, %)

구분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비교적 그렇다	정말 그렇다	전체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판결	98(7.5)	551(42.4)	595(45.0)	66(5.1)	1,300 (100.0)
금품제공 등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음	160(12.3)	554(42.6)	458(35.2)	128(9.8)	1,300 (100.0)
정치권이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음	254(19.5)	596(45.8)	328(25.2)	122(9.4)	1,300 (100.0)
사회적 여론에 흔들리지 않음	113(8.7)	569(43.8)	497(38.2)	121(9.3)	1,300 (100.0)
증거, 증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	64(4.9)	404(31.1)	663(51.0)	169(13.0)	1,300 (100.0)
법관의 충분한 지식과 능력	35(2.7)	285(21.9)	758(58.3)	222(17.1)	1,300 (100.0)
판결에 대한 신뢰	40(3.1)	465(35.8)	723(55.6)	72(5.5)	1,300 (100.0)

한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법관에 대한 신뢰'의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 보았다. 먼저, 성별에 따른 법관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법관에 대한 신뢰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3 참고). 특히, '우리나라 법관들은 증거나 증인들의 진술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결한다'에 대해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21) 2004년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형사사법제도의 개혁방향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함과 동시에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였음. 이 조사는 전국 7대 광역시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2,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조사목적 및 조사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진수 외, 2004,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I) -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법서비스 개선방안』을 참고하기 바람.

16.8% 남성이 9.2%로 응답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법관의 충분한 지식과 능력’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도 그 비율이 각 19.7%(여성), 14.5%(남성)로 차이가 크다. 한편 항목별 신뢰의 정도를 보면 남녀간 동일한 분포를 가진다. 즉, ‘우리나라 법관들은 재판을 진행할만한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법관에 대한 신뢰에 해당하는 다른 항목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높아 우리나라 법관들에 대한 능력에 대한 신뢰는 다른 항목의 신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 74.0% 여: 76.8%). 그 다음으로는 남녀 모두 ‘우리나라 법관들은 증거나 증인들의 진술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결한다’, ‘우리나라 법관들의 판결을 믿을 만하다’, ‘우리나라 법관들은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다’의 순이며 ‘우리나라 법관들은 정치권이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에 대한 항목에서 남성이 31.7% 여성이 37.5%로 다른 신뢰항목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성별에 따른 ‘법관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응답 차이

구분		성별				(df) χ^2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판결	전혀 아니다	60	9.2	38	5.8	(df=3) 14.774**
	별로 아니다	296	45.5	255	39.2	
	비교적 그렇다	261	40.2	324	49.8	
	정말 그렇다	33	5.1	33	5.1	
전체		650	100.0	650	100.0	
금품제공 유혹에 흔들리지 않음	전혀 아니다	101	15.5	59	9.1	(df=3) 12.842**
	별로 아니다	271	41.7	283	43.5	
	비교적 그렇다	218	33.5	240	36.9	
	정말 그렇다	60	9.2	68	10.5	
전체		650	100.0	650	100.0	
정치권외부 압력 흔들리지 않음	전혀 아니다	145	22.3	109	16.8	(df=3) 8.378*
	별로 아니다	299	46.0	297	45.7	
	비교적 그렇다	149	22.9	179	27.5	
	정말 그렇다	57	8.8	65	10.0	
전체		650	100.0	650	100.0	

구분		성별				(df)χ ²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사회적 여론에 흔들리지 않음	전혀 아니다	73	11.2	40	6.2	(df=3) 12.335**
	별로 아니다	287	44.2	282	43.4	
	비교적 그렇다	236	36.3	261	40.2	
	정말 그렇다	54	8.3	67	10.3	
전체		650	100.0	650	100.0	
증거 증인 진술 충분한 검토	전혀 아니다	42	6.5	22	3.4	(df=3) 25.078***
	별로 아니다	223	34.3	181	27.8	
	비교적 그렇다	325	50.0	338	52.0	
	정말 그렇다	60	9.2	109	16.8	
전체		650	100.0	650	100.0	
법관의 충분한 지식과 능력	전혀 아니다	23	3.5	12	1.8	(df=3) 9.174*
	별로 아니다	146	22.5	139	21.4	
	비교적 그렇다	387	59.5	371	57.1	
	정말 그렇다	94	14.5	128	19.7	
전체		650	100.0	650	100.0	
판결에 대한 신뢰	전혀 아니다	27	4.2	13	2.0	(df=3) 11.027*
	별로 아니다	250	38.5	215	33.1	
	비교적 그렇다	342	52.6	381	59.6	
	정말 그렇다	31	4.8	41	6.3	
전체		650	100.0	650	100.0	

* $p < .05$ ** $p < .01$ *** $p < .001$

두 번째, 연령에 따른 법관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법관들은 재판을 진행할 만한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의 항목에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14 참고). 즉, 20대의 긍정적인 응답이 8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대(78.1%), 50대(76.8%), 40대(74.8%), 30대(69.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4 연령별 ‘법관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응답 차이

구분		연령										(df) χ^2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판결	전혀 아니다	20	7.6	25	8.1	24	7.6	24	9.1	5	3.3	(df=12) 12.166 n.s
	별로 아니다	115	43.6	133	43.2	138	43.9	108	41.1	57	37.7	
	비교적 그렇다	118	44.7	139	45.1	136	43.3	113	43.0	79	52.3	
	정말 그렇다	11	4.2	11	3.6	16	5.1	18	6.8	10	6.6	
전체		264	100.0	308	100.0	314	100.0	263	100.0	151	100.0	
금품제공 유혹에 흔들리지 않음	전혀 아니다	35	13.3	37	12.0	39	12.4	37	14.1	12	7.9	(df=12) 10.327
	별로 아니다	121	45.8	141	45.8	127	40.4	104	39.5	61	40.4	
	비교적 그렇다	84	31.8	101	32.8	120	38.2	94	35.7	59	39.1	
	정말 그렇다	24	9.1	29	9.4	28	8.9	28	10.6	19	12.6	
전체		264	100.0	308	100.0	314	100.0	263	100.0	151	100.0	
정치권외부 압력 흔들리지 않음	전혀 아니다	49	18.6	69	22.4	60	19.1	58	22.1	18	11.9	(df=12) 15.258 n.s
	별로 아니다	125	47.3	143	46.4	145	46.2	119	45.2	64	42.4	
	비교적 그렇다	69	26.1	68	22.1	78	24.8	65	24.3	49	32.5	
	정말 그렇다	21	8.0	28	9.1	31	8.4	22	8.4	20	13.2	
전체		264	100.0	308	100.0	314	100.0	263	100.0	151	100.0	
사회적 여론에 흔들리지 않음	전혀 아니다	21	8.0	27	8.8	30	9.6	25	9.5	10	6.6	(df=12) 17.389 n.s
	별로 아니다	112	42.4	156	50.6	136	43.3	112	42.6	53	35.1	
	비교적 그렇다	106	40.2	96	31.2	119	37.9	107	40.7	69	45.7	
	정말 그렇다	25	9.5	29	9.4	29	9.2	19	7.2	19	12.6	
전체		264	100.0	308	100.0	314	100.0	263	100.0	151	100.0	
증거 증인 진술 충분한 검토	전혀 아니다	7	2.7	18	5.8	16	5.1	16	6.1	7	4.6	(df=12) 13.533 n.s
	별로 아니다	78	29.5	105	34.1	98	31.2	87	33.1	36	23.8	
	비교적 그렇다	144	54.5	148	48.1	165	52.5	123	46.8	83	55.0	
	정말 그렇다	35	13.3	37	12.0	35	11.1	37	14.1	25	16.6	
전체		264	100.0	308	100.0	314	100.0	263	100.0	151	100.0	
법관의 충분한 지식과 능력	전혀 아니다	6	2.3	9	2.9	9	2.9	8	3.0	3	2.0	(df=12) 25.448*
	별로 아니다	47	17.8	85	27.6	70	22.3	53	20.2	30	19.9	
	비교적 그렇다	153	58.0	176	57.1	189	60.2	161	61.2	79	52.3	
	정말 그렇다	58	22.0	38	12.3	46	14.6	41	15.6	39	25.8	
전체		264	100.0	308	100.0	314	100.0	263	100.0	151	100.0	
판결에 대한 신뢰	전혀 아니다	9	3.4	7	2.3	11	3.5	10	3.8	3	2.0	(df=12) 14.516 n.s
	별로 아니다	90	38.3	118	38.3	114	36.3	99	37.6	44	29.1	
	비교적 그렇다	154	55.2	170	55.2	174	55.4	136	51.7	89	58.9	
	정말 그렇다	11	4.2	13	4.2	15	4.8	18	6.8	15	9.9	
전체		264	100.0	308	100.0	314	100.0	263	100.0	151	100.0	

n.s.= not significant * $p < .05$

세 번째, 학력에 따라서는 법관에 대한 신뢰의 차이가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¹²²⁾ 네 번째, 가구수입에 대한 법관에 신뢰에 있어서는¹²³⁾ ‘우리나라 법관들은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와 ‘우리나라 법관들은 정치권이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관들의 판결을 신뢰할 만하다’의 세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2-15 참고). 즉, ‘우리나라 법관들이 금품제공 등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에 대해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구수입이 300-4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3.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200-300만원 미만(9.5%), 200만원 미만(9.3%), 400-500만원 미만(7.8%), 500만원 이상(7.7%)의 순으로 가구수입이 500만원 이상의 경우에서 우리나라 법관들이 금품유혹에 대한 신뢰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낮았다. 또한 정치권이나 외부압력에 대한 유혹이나 판결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도 500만원 이상인 경우의 긍정적인 응답이 각 22.1%, 57.7%로 가장 낮았다. 수입이 많을수록 우리나라 법관들에 대한 신뢰가 낮다고는 없지만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법관에 대한 신뢰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이 낮았다.

표 2-15 가구수입별 ‘법관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응답 차이

구분		수입					(df) χ^2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판결	전혀 아니다	12(12.4)	18(7.8)	33(7.6)	14(5.2)	15(6.6)	(df=12)
	별로 아니다	40(41.2)	97(41.8)	157(36.3)	117(43.7)	111(50.0)	19.085
	비교적 그렇다	12(12.4)	105(45.3)	215(49.7)	125(46.6)	89(40.1)	n.s

122)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판결’(df=6, $\chi^2=7.420$), ‘금품제공 등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음’(df=6, $\chi^2=7.803$), ‘정치권이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음’(df=6, $\chi^2=2.452$), ‘사회적 여론에 흔들리지 않음’(df=6, $\chi^2=3.412$),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대한 충분한 검토’(df=6, $\chi^2=5.629$), ‘법관의 충분한 지식과 능력’(df=6, $\chi^2=7.857$)의 모든 항목이 학력별 응답 차이가 .05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음.

123) 조사대상자의 수입 분포에 따라 재분류하였음.

제2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조사분석

구분		수입					(df) χ^2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정말 그렇다	12(12.4)	12(5.2)	28(6.5)	12(4.5)	7(3.2)	
전체		97(100.0)	232(100.0)	433(100.0)	268(100.0)	222(100.0)	
금품제공 유혹에 흔들리지 않음	전혀 아니다	15(15.5)	24(10.3)	52(12.0)	27(10.1)	23(10.4)	(df=12) 30.001*
	별로 아니다	36(37.1)	87(37.5)	163(37.6)	132(49.3)	118(53.2)	
	비교적 그렇다	37(38.1)	99(42.7)	160(37.0)	88(32.8)	64(28.8)	
	정말 그렇다	9(9.3)	22(9.5)	58(13.4)	21(7.8)	17(7.7)	
	전체	97(100.0)	232(100.0)	433(100.0)	268(100.0)	222(100.0)	
정치권외부 압력 흔들리지 않음	전혀 아니다	18(18.6)	38(16.4)	88(20.3)	44(16.4)	57(25.7)	(df=12) 33.825*
	별로 아니다	42(43.3)	110(47.4)	167(38.6)	129(48.1)	116(52.3)	
	비교적 그렇다	24(24.7)	58(25.0)	129(29.8)	73(27.2)	40(18.0)	
	정말 그렇다	13(13.4)	26(11.2)	49(11.3)	22(8.2)	9(4.1)	
	전체	97(100.0)	232(100.0)	433(100.0)	268(100.0)	222(100.0)	
사회적 여론에 흔들리지 않음	전혀 아니다	8(8.2)	13(5.6)	42(9.7)	18(6.7)	23(10.4)	(df=12) 19.901 n.s
	별로 아니다	40(41.2)	107(46.1)	170(39.3)	109(40.7)	114(51.4)	
	비교적 그렇다	40(41.2)	86(37.1)	177(40.9)	117(43.7)	68(30.6)	
	정말 그렇다	9(9.3)	26(11.2)	44(10.2)	24(9.0)	17(7.7)	
	전체	97(100.0)	232(100.0)	433(100.0)	268(100.0)	222(100.0)	
증거 증인 진술 충분한 검토	전혀 아니다	10(10.3)	9(3.9)	23(5.3)	10(3.7)	8(3.6)	(df=12) 14.218 n.s
	별로 아니다	29(29.9)	72(31.0)	126(29.1)	83(31.0)	78(35.1)	
	비교적 그렇다	44(45.4)	125(53.9)	225(52.0)	132(49.3)	111(50.0)	
	정말 그렇다	14(14.4)	26(11.2)	59(13.6)	43(16.0)	25(11.3)	
	전체	97(100.0)	232(100.0)	433(100.0)	268(100.0)	222(100.0)	
법관의 충분한 지식과 능력	전혀 아니다	6(6.2)	3(1.3)	11(2.5)	7(2.6)	6(2.7)	(df=12) 14.340 n.s
	별로 아니다	14(14.4)	54(23.3)	92(21.2)	67(25.0)	46(20.7)	
	비교적 그렇다	57(58.8)	137(59.1)	260(60.0)	143(53.4)	137(61.7)	
	정말 그렇다	20(20.6)	38(16.4)	70(16.2)	51(19.0)	33(14.9)	
	전체	97(100.0)	232(100.0)	433(100.0)	268(100.0)	222(100.0)	
판결에 대한 신뢰	전혀 아니다	5(5.2)	5(2.2)	14(3.2)	8(3.0)	3(1.4)	(df=12) 24.658*
	별로 아니다	30(30.9)	87(37.5)	145(33.5)	92(34.3)	91(41.0)	
	비교적 그렇다	51(52.6)	127(54.7)	243(56.1)	155(57.8)	126(56.8)	
	정말 그렇다	11(11.3)	13(5.6)	31(7.2)	13(4.9)	2(0.9)	
	전체	97(100.0)	232(100.0)	433(100.0)	268(100.0)	222(100.0)	

n.s. not significant * $p < .05$

사회인구학적 변인 다섯 번째로 직업¹²⁴⁾에 따른 법관에 대한 신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여론에 흔들리지 않음’을 제외하고 6가지 항목에서 직업별 신뢰항목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16 참고). ‘우리나라 법관들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피고인들을 평등하게 대한다’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이 관리직 및 전문가 집단이 58.8%로 가장 그 다음이 전업주부, 기타, 기술 및 기능직 종사자 등의 순이었다. ‘금품제공 등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기타(73.5%), 관리직 및 전문가(60.3%), 기술 및 기능직종사자(49.0%), 판매서비스직(44.9%점) 등의 순이다. ‘정치권이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다’ 역시 기타가 47.0%로 가장 높고 두 번째로 사무직(39.8%)과의 차이도 크다. 그 다음으로는 전업주부(36.5%), 관리직 및 전문가(34.9%)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 법관들이 증거나 증인들의 진술을 충분히 검토 한 후 공정하게 판결한다’의 경우도 기타가 73.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관리직 및 전문직(69.8%), 전업주부(69.4%), 사무직(65.1%) 등의 순이다.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할 만한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관리직 및 전문가집단이 81.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무직(77.8%), 전업주부(76.6%)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 법관들의 판결은 신뢰할 만하다’는 관리직 및 전문가(74.6%), 기타(73.5%), 전업주부(68.1%), 사무직(6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6 직업별 ‘법관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직업								(df) χ^2
		관리직 전문가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기술 기능직	전업주부	학생	기타	무직	
피고인 사회적지위 관계없이 판결	전혀 아니다	2(3.2)	15(5.7)	40(10.4)	13(11.0)	9(3.0)	12(12.2)	2(5.9)	5(13.2)	(df=21) 45.943*
	별로 아니다	24(38.1)	117(44.8)	173(45.1)	44(37.3)	120(39.5)	44(44.9)	13(38.2)	16(42.1)	
	비교적 그렇다	34(54.0)	118(45.2)	156(40.6)	56(47.5)	156(51.3)	36(36.7)	13(38.2)	16(42.1)	
	정말 그렇다	3(4.8)	11(4.2)	15(3.9)	5(4.2)	19(6.2)	6(6.1)	6(17.6)	1(2.6)	
전체		63(100.0)	261(100.0)	384(100.0)	118(100.0)	304(100.0)	98(100.0)	34(100.0)	38(100)	
금품제공	전혀 아니다	3(4.8)	34(13.0)	56(14.6)	20(16.9)	25(8.2)	14(14.3)	2(5.9)	6(15.8)	

124) 직업을 재분류하였음. 기타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직(31명), 농어임업(2명), 직업군인(1명)이 포함됨.

제2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조사분석

구분		직업								(df) χ^2
		관리직 전문가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기술 기능직	전업주부	학생	기타	무직	
유혹 흔들리지 않음	별로 아니다	22(34.9)	115(44.1)	163(42.4)	45(38.1)	130(42.8)	52(53.1)	7(20.6)	20(52.6)	(df=21) 45.538***
	비교적 그렇다	31(49.2)	81(31.0)	122(31.8)	47(39.8)	122(40.1)	25(25.5)	18(52.9)	12(31.6)	
	정말 그렇다	7(11.1)	31(11.9)	43(11.2)	6(5.10)	27(8.9)	7(7.1)	7(20.6)	—	
	전체	63(100.0)	261(100.0)	384(100.0)	118(100.0)	304(100.0)	98(100.0)	34(100.0)	38(100)	
정치권 외부 압력 흔들리지 않음	전혀 아니다	7(11.1)	51(19.5)	87(22.7)	24(20.3)	48(15.8)	22(22.4)	3(8.8)	12(31.6)	(df=21) 31.318*
	별로 아니다	34(54.0)	106(40.6)	172(44.8)	59(50.0)	145(47.7)	51(52.0)	15(44.1)	14(36.8)	
	비교적 그렇다	20(31.7)	76(29.1)	88(22.9)	22(18.6)	86(28.3)	20(20.4)	8(23.5)	8(21.1)	
	정말 그렇다	2(3.2)	28(10.7)	37(9.6)	13(11.0)	25(8.2)	5(5.1)	8(23.5)	4(10.5)	
전체		63(100.0)	261(100.0)	384(100.0)	118(100.0)	304(100.0)	98(100.0)	34(100.0)	38(100)	
사회적 여론 흔들리지 않음	전혀 아니다	3(4.8)	19(7.3)	47(12.2)	8(6.8)	14(4.6)	15(15.3)	2(5.9)	5(13.2)	(df=21) 30.851 n.s
	별로 아니다	28(44.4)	109(41.9)	172(44.8)	57(48.3)	132(43.4)	43(43.9)	11(32.4)	17(44.7)	
	비교적 그렇다	23(36.5)	109(41.9)	132(34.4)	43(36.4)	127(41.8)	33(33.7)	16(47.1)	14(36.8)	
	정말 그렇다	9(14.3)	24(9.2)	33(8.6)	10(8.5)	31(10.2)	7(7.1)	5(14.7)	2(5.3)	
전체		63(100.0)	261(100.0)	384(100.0)	118(100.0)	304(100.0)	98(100.0)	34(100.0)	38(100)	
증거 증인 진술 충분한 검토	전혀 아니다	2(3.2)	9(3.4)	22(5.7)	12(10.2)	10(3.3)	4(4.1)	3(8.8)	2(5.3)	(df=21) 36.836*
	별로 아니다	17(27.0)	82(31.4)	134(34.9)	39(33.1)	83(27.3)	30(30.6)	6(17.6)	13(34.2)	
	비교적 그렇다	6(1.9)	137(52.5)	191(48.7)	54(45.8)	155(51.0)	53(54.1)	16(47.1)	18(47.4)	
	정말 그렇다	5(7.9)	33(12.6)	37(9.6)	13(11.0)	56(18.4)	11(11.2)	9(26.5)	5(13.2)	
전체		63(100.0)	261(100.0)	384(100.0)	118(100.0)	304(100.0)	98(100.0)	34(100.0)	38(100)	
법관의 충분한 지식과 능력	전혀 아니다	3(4.8)	5(1.9)	18(4.7)	2(1.7)	1(0.3)	2(2.0)	2(5.9)	2(5.3)	(df=21) 33.948*
	별로 아니다	9(14.3)	55(20.3)	86(22.4)	32(27.1)	70(23.0)	21(21.4)	6(17.6)	8(21.1)	
	비교적 그렇다	41(65.1)	165(63.2)	226(58.9)	67(56.8)	171(56.2)	51(52.0)	18(52.9)	19(50.0)	
	정말 그렇다	10(15.9)	38(14.6)	54(14.1)	17(14.4)	62(20.4)	24(24.5)	8(23.5)	9(23.7)	
전체		63(100.0)	261(100.0)	384(100.0)	118(100.0)	304(100.0)	98(100.0)	34(100.0)	38(100)	
판결에 대한 신뢰	전혀 아니다	2(3.2)	6(2.3)	15(3.9)	8(6.8)	2(0.7)	3(3.1)	2(5.9)	2(5.3)	(df=21) 50.909***
	별로 아니다	14(22.2)	92(35.2)	169(44.0)	40(33.9)	95(31.2)	34(34.7)	7(20.6)	14(36.8)	
	비교적 그렇다	43(68.3)	152(58.2)	181(47.1)	67(56.8)	185(60.9)	56(57.1)	19(55.9)	20(52.6)	
	정말 그렇다	4(6.3)	11(4.2)	19(4.9)	3(2.5)	22(7.2)	5(5.1)	6(17.6)	2(5.3)	
전체		63(100.0)	261(100.0)	384(100.0)	118(100.0)	304(100.0)	98(100.0)	34(100.0)	38(100)	

***p<.001 * p< .05 n.s.=not significant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운데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법관에 대한 신뢰가

다른지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 2-17>과 같다. 즉, 모든 신뢰 항목에서 지역별 차이가 .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고 ‘법관의 충분한 지식과 능력’에 대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광주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판결한다’는 광주(83.1%), 대전(61.7%), 대구(51.9%), 서울(51.3%), 부산(47.0%) 등의 순이고 ‘금품제공 등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와 ‘정치권이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광주(항목 순으로 88.3%, 74.1%)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광주가 70.2%, 대전이 64.2%, 울산이 57.7%, 부산이 48.0%, 서울이 44.9% 등의 순이고,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대해 충분한 검토로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결한다’는 광주(81.8%), 울산(71.2%), 서울(68.5%), 부산(6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법관은 재판을 진행할만한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서울이 81.6%로 가장 높고, 울산이 81.3%, 광주가 80.5%, 대구가 73.3% 등의 순이다. ‘판결에 대한 신뢰’는 광주가 84.4%, 울산이 61.0%, 서울이 64.6%, 대구가 59.4%, 부산이 58.4% 등의 순이다.

표 2-17 거주지역별 ‘법관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거주지역							(df)χ ²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판결	전혀 아니다	27(4.6)	19(9.4)	14(10.40)	26(17.0)	2(2.6)	4(4.9)	6(10.2)	(df=18) 104.279***
	별로 아니다	262(44.2)	88(43.6)	51(37.8)	86(56.2)	11(14.3)	27(33.3)	26(44.1)	
	비교적 그렇다	277(46.7)	83(41.1)	63(46.70)	38(24.8)	61(79.2)	43(53.1)	20(33.9)	
	정말 그렇다	27(4.6)	12(5.9)	7(5.20)	3(2.0)	3(3.9)	7(8.6)	7(11.9)	
전체		593(100.0)	202(100.0)	135(100.0)	153(100.0)	77(100.0)	81(100.0)	59(100.0)	
금품제공 유혹에 흔들리지 않음	전혀 아니다	69(11.6)	33(16.3)	16(11.9)	23(15.0)	3(3.9)	9(11.1)	7(11.9)	(df=18) 97.126***
	별로 아니다	271(45.7)	84(41.6)	61(45.2)	77(50.3)	6(7.8)	31(38.3)	24(40.7)	
	비교적 그렇다	199(33.6)	65(32.2)	47(34.8)	47(30.7)	43(55.8)	37(45.7)	20(33.9)	
	정말 그렇다	54(9.1)	20(9.9)	11(8.1)	6(3.9)	25(32.5)	4(4.9)	8(13.6)	
전체		593(100.0)	202(100.0)	135(100.0)	153(100.0)	77(100.0)	81(100.0)	59(100.0)	

제2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조사분석

구분		거주지역							(df) χ^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정치권 외부 압력 흔들리지 않음	전혀 아니다	128(21.6)	43(21.3)	26(19.3)	36(23.5)	3(3.9)	10(12.3)	8(13.6)	(df=18) 189.007***
	별로 아니다	272(45.9)	86(42.6)	74(54.8)	86(56.2)	17(22.1)	34(42.0)	27(45.8)	
	비교적 그렇다	151(25.5)	60(29.7)	31(23.0)	24(15.7)	19(24.7)	26(32.1)	17(28.8)	
	정말 그렇다	42(7.1)	13(6.4)	4(3.0)	7(4.6)	38(49.4)	11(13.6)	7(11.9)	
전체		593(100.0)	202(100.0)	135(100.0)	153(100.0)	77(100.0)	81(100.0)	59(100.0)	
사회적 여론에 흔들리지 않음	전혀 아니다	40(6.7)	28(13.9)	12(8.9)	26(17.0)	2(2.6)	2(2.5)	3(5.1)	(df=18) 108.999***
	별로 아니다	287(48.4)	77(38.1)	61(45.2)	74(48.4)	21(27.3)	27(33.3)	22(37.3)	
	비교적 그렇다	212(35.8)	84(41.6)	53(39.3)	51(33.3)	29(37.7)	43(53.1)	25(42.4)	
	정말 그렇다	5(9.1)	13(6.4)	9(6.7)	2(1.3)	25(32.5)	9(11.1)	9(15.3)	
전체		593(100.0)	202(100.0)	135(100.0)	153(100.0)	77(100.0)	81(100.0)	59(100.0)	
증거 증인 진술 충분한 검토	전혀 아니다	17(2.9)	9(4.5)	10(7.4)	19(12.4)	2(2.6)	6(7.4)	1(1.7)	(df=18) 67.884***
	별로 아니다	170(28.7)	68(33.7)	42(31.1)	65(42.5)	12(15.6)	31(38.3)	16(27.1)	
	비교적 그렇다	314(53.0)	102(50.5)	68(50.4)	63(41.2)	46(59.7)	37(45.7)	33(55.9)	
	정말 그렇다	92(15.5)	23(11.4)	15(11.1)	6(3.9)	17(22.1)	7(8.6)	9(15.3)	
전체		593(100.0)	202(100.0)	135(100.0)	153(100.0)	77(100.0)	81(100.0)	59(100.0)	
법관의 충분한 지식과 능력	전혀 아니다	9(1.5)	5(2.5)	5(3.7)	10(6.5)	2(2.6)	2(2.5)	2(3.4)	(df=18) 63.838***
	별로 아니다	100(16.9)	70(34.7)	31(23.0)	37(24.2)	13(16.9)	25(30.9)	9(15.3)	
	비교적 그렇다	369(62.2)	93(46.0)	77(57.0)	86(56.2)	52(67.5)	50(61.7)	31(52.5)	
	정말 그렇다	115(19.4)	34(16.8)	22(16.3)	20(13.1)	10(13.0)	4(4.9)	17(28.8)	
전체		593(100.0)	202(100.0)	135(100.0)	153(100.0)	77(100.0)	81(100.0)	59(100.0)	
판결에 대한 신뢰	전혀 아니다	12(2.0)	7(3.5)	7(5.2)	11(7.2)	—	2(2.5)	1(1.7)	(df=18) 94.098***
	별로 아니다	198(33.4)	77(38.1)	48(35.6)	77(50.3)	12(15.6)	31(38.3)	22(37.3)	
	비교적 그렇다	365(61.6)	99(49.0)	68(50.4)	62(40.5)	58(75.3)	46(56.8)	25(42.4)	
	정말 그렇다	18(3.0)	19(9.4)	12(8.9)	3(2.0)	7(9.1)	2(2.5)	11(18.6)	
전체		593(100.0)	202(100.0)	135(100.0)	153(100.0)	77(100.0)	81(100.0)	59(100.0)	

*** $p < .001$

2.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 관련

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

시행 4년째인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일반인은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대강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1,300명 가운데 555명으로 4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이름만 들어 본 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1.0%, ‘전혀 모른다’ 21.9%,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다(표 2-18 참고).

표 2-18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응답분포(일반국민)

(단위 : 명, %)

응답 범주	빈도	백분율
전혀 모른다	285	21.9
이름만 들어본 적 있다	403	31.0
대강 알고 있다	555	42.7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	57	4.4
전체	1,300	100.0

즉, ‘제도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7.1%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되기 전 200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인 44.3%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이지만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의 비율이 전체의 21.9%로 2007년 조사결과인 18.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²⁵⁾ 이에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125) 2007년 조사연구에 의하면 ‘구체적인 내용도 알고 있다’의 응답이 4.2%였고 ‘대강의 내용은 알고 있다’가 40.1%, ‘이름만 들어 본 적이 있다’의 응답은 36.8%, ‘이름조차도 들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18.9%로 나타남. 보다 자세한 연구결과는 최인섭·황지태, 2007, 『형사정책과 사법 개혁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Ⅰ) - [1] 사법개혁과 형사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참고하기 바람. 물론 2007년 조사연구 대상자와 이번 조사대상이 동일한 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변화의 폭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파악할 수 있음.

방안 모색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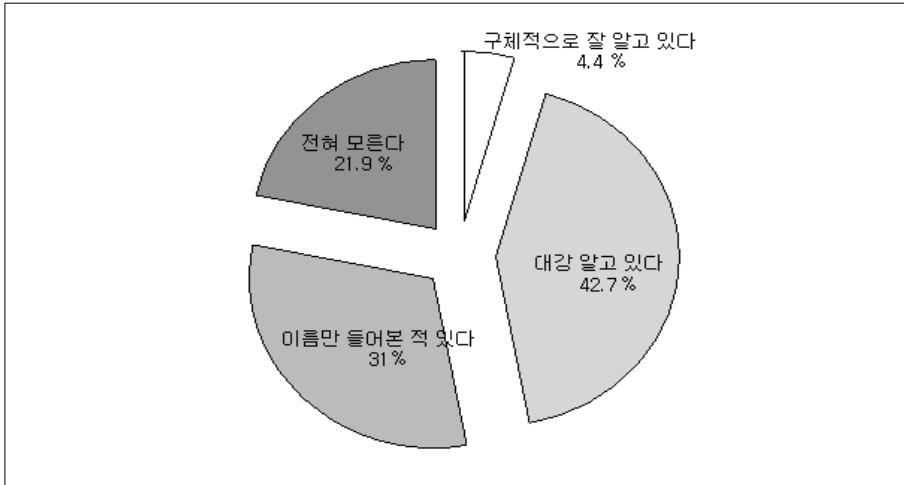


그림 2-1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일반국민)

다음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표 2-19>와 같이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이다. 즉, 남자의 경우가 여자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자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내용을 대강 알고 있다’의 응답이 52.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다’는 27.1%, ‘전혀 모른다’는 14.5%,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6.5%의 순이며, 여자의 경우는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다’는 34.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강 알고 있다’(33.4%), ‘전혀 모른다’(29.4%),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내용을 대강이라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약 33%에 그치고 있다.

표 2-19 성별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

(단위 : 명, %)

구분	성별				(df) χ^2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	42	6.5	15	2.3	(df=3) 78.638***
대강 알고 있다	338	52.0	217	33.4	
이름만 들어본 적 있다	176	27.1	227	34.9	
전혀 모른다	94	14.5	191	29.4	
전체	650	100.0	650	100.0	

*** $p < .001$

두 번째, 연령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에도 역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2-20 참고). 연령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을 대강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0대: 41.3%, 30대: 48.7%, 40대: 46.2%, 50대: 39.9%). 한편, 60대에서는 ‘전혀 모른다’의 응답이 전체의 43.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강 알고 있다’가 30.5%, ‘이름만 들어본 적 있다’가 24.5% 등의 순이었다. 즉, 30대의 경우 전체의 48.7%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내용을 대강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심원 평결이 가지는 최대의 장점은 다양한 집단의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0 연령별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 차이

(단위 : 명, %)

구분	연령					(df) χ^2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	8 (3.0)	11 (3.6)	22 (7.0)	13 (4.9)	3 (2.0)	(df=12) 64.965***
대강 알고 있다	109 (41.3)	150 (48.7)	145 (46.2)	105 (39.9)	46 (30.5)	
이름만 들어본 적 있다	89 (33.7)	103 (33.4)	94 (29.9)	80 (30.4)	37 (24.5)	
전혀 모른다	58 (22.0)	44 (14.3)	53 (16.9)	65 (24.7)	65 (43.0)	
전체	264 (100.0)	308 (100.0)	314 (100.0)	263 (100.0)	151 (100.0)	

*** $p < .001$

세 번째, 학력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21 참고). 즉, 대졸 이상인 경우 ‘대강 알고 있다’의 응답이 50.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름만 들어본 적 있다’가 31.7%, ‘전혀 모른다’가 11.3%,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가 6.5%의 순이다. 고졸인 경우에도 ‘대강 알고 있다’의 응답이 39.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이름만 들어본 적 있다’가 31.2%, ‘전혀 모른다’의 응답이 26.7% 등의 순이었다. 한편 중졸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전체의 5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이름만 들어본 적 있다’가 24.3%, ‘대강 알고 있다’가 17.6%,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의 응답은 없었다.

표 2-21 학력별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 차이

(단위 : 명, %)

구분	학력			(df) χ^2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	0(0.0)	21(3.1)	36(6.5)	(df=6) 113.148***
대강 알고 있다	13(17.6)	261(39.0)	281(50.5)	
이름만 들어본 적 있다	18(24.3)	209(31.2)	176(31.7)	
전혀 모른다	43(58.1)	179(26.7)	63(11.3)	
전체	74(100.0)	670(100.0)	556(100.0)	

*** $p < .001$

네 번째, 가구 수입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지 살펴본 결과 <표 2-22>과 같다. 즉,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마찬가지로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내 수입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대강 알고 있다’의 응답이 50.5%로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름만 들어본 적 있다’가 27.0%, ‘전혀 모른다’가 15.8%,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가 6.8%의 순으로 나타났다.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는 각 항목별로 42.5%, 34.0%, 20.1%, 3.4%의 순이고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는 44.1%, 33.5%, 17.6%, 4.8%이고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는 36.6%, 30.6%, 29.7%, 3.0%였다. 한편,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을 ‘대강 알고 있다’의 응답이 3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혀 모른다’의 응답이 36.1%로 다른 연령층과는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500만원 이상의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내용을 대강이라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낮았으며, ‘전혀 모른다’의 응답의 경우는 200만원 미만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2-22 가구수입별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 차이

(단위 : 명, %)

구분	수입 ¹²⁶⁾					(df) χ^2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	2 (2.1)	7 (3.0)	21 (4.8)	9 (3.4)	15 (6.8)	(df=12) 40.082***
대강 알고 있다	38 (39.2)	85 (36.6)	191 (44.1)	114 (42.5)	112 (50.5)	
이름만 들어본 적 있다	22 (22.7)	71 (30.6)	145 (33.5)	91 (34.0)	60 (27.0)	
전혀 모른다	35 (36.1)	69 (29.7)	76 (17.6)	54 (20.1)	35 (15.8)	
전체	97 (100.0)	232 (100.0)	433 (100.0)	268 (100.0)	222 (100.0)	

*** p<.001

직업에서 따라서도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표 2-23 참고). 즉, 직업이 없는 경우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내용을 대강 알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8.5%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직업이 없는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무직’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즉, ‘무직’ 집단의 구성을 보면 ‘60대 이상’인 경우가 60% 이상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남성’이 84%, ‘대졸 이상’인 경우가 40%이고 ‘월평균가구소득’이 300만원~4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0% 이상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결과에 따라 다른 집단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2-20, 표 2-21, 표 2-22, 표 2-23 참고). 한편, 전업주부와 학생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내용을 대강이라도 알고 있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다른 직업군과는 달리 ‘국민참여재판제도라는 이름만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업주부: 36.5%, 학생: 35.3%).

126) 조사대상자의 수입 분포에 따라 재분류하였음.

또한 ‘전혀 모른다’의 응답이 전업주부와 학생의 경우 차지하는 비율이 각 33.9%, 32.4%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3 직업별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 차이

(단위 : 명, %)

구분	직업 ¹²⁷⁾								(df) χ^2
	관리직 전문가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기술 기능직	전업 주부	학생	기타	무직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	5 (7.9)	9 (3.4)	18 (4.7)	7 (5.9)	5 (1.6)	3 (8.8)	5 (5.1)	5 (13.2)	(df=12) 109.055***
대강 알고 있다	30 (47.6)	141 (54.0)	187 (48.7)	47 (39.8)	85 (28.0)	8 (23.5)	36 (36.7)	21 (55.3)	
이름만 들어본 적 있다	23 (36.5)	85 (32.6)	90 (23.4)	41 (34.7)	111 (36.5)	12 (35.3)	34 (34.7)	7 (18.4)	
전혀 모른다	5 (7.9)	26 (10.0)	89 (23.2)	23 (19.5)	103 (33.9)	11 (32.4)	23 (23.5)	5 (13.2)	
전체	63 (100.0)	261 (100.0)	384 (100.0)	118 (100.0)	304 (100.0)	34 (100.0)	98 (100.0)	38 (100.0)	

*** $p < .001$

거주지역별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2-24 참고). 대전지역에서는 ‘이름만 들어본 적 있다’의 응답이 42.0%로 가장 많았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대강 알고 있다’의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44.9%, 부산: 34.2%, 대구: 45.2%, 인천: 47.1%, 광주: 42.9%, 울산: 45.8%). 거주지역별 인지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해당 지역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접수건수나 진행건수의 절대적인 양이 많다고 해서 인지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¹²⁸⁾ 국민참여재판 진행건수가 많다는 것은 일반 시민이 국민참여재판을 접할

127) 직업을 재분류한 결과 기타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직(31명), 농어임업(2명), 직업군인(1명)이 포함됨.

128) 법원행정처의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결과, 접수건수의 경우 대구지방법원이 11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98건, 부산이 97건, 수원이 95건, 광주가 7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실시건수의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으로 해당 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적극적인 방청유도를 통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24 거주지역별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 차이

(단위 : 명, %)

구분	거주지역							(df) χ^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모른다	110 (18.5)	65 (32.2)	29 (21.5)	32 (20.9)	19 (24.7)	18 (22.2)	12 (20.3)	(df=18) 44.886***
이름만 들어본 적 있다	183 (30.9)	64 (31.7)	43 (31.9)	45 (29.4)	16 (20.8)	34 (42.0)	18 (30.5)	
대강 알고 있다	266 (44.9)	69 (34.2)	61 (45.2)	72 (47.1)	33 (42.9)	27 (33.3)	27 (45.8)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	34 (5.7)	4 (2.0)	2 (1.5)	4 (2.6)	9 (11.7)	2 (2.5)	2 (3.4)	
전체	593 (100.0)	202 (100.0)	135 (100.0)	153 (100.0)	77 (100.0)	81 (100.0)	59 (100.0)	

*** $p < .001$

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경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이름만이라도 들어본 적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고 물어본 결과, 'TV나 신문 등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84.5%로 1,015명 가운데 858명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6.0%), '주변사람과 대화' 중에(5.3%), '라디오나 지하철 광고'를 통해(3.3%), 기타의 순이었다(표 2-25 참고).¹²⁹⁾ 즉, TV나 신문 등의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들어보거나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대부분으로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방식을 개발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경우에도 인지도 순과는 차이가 있음.

129) 기타의 의견으로는 법학 관련 수업 중에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음.

표 2-25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경로(일반국민)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TV나 신문 등 언론보도를 통해	858	84.5
라디오나 지하철의 광고를 통해	34	3.3
주변 사람들과 대화 중에	54	5.3
인터넷 검색을 통해	61	6.0
기타	8	0.8
전체	1,015	100.0

다.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지식정도

앞서 살펴본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인지도’가 추상적인 질문이었다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지식정도’는 보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일반인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이름만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와 제도의 내용에 대해 대강 알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포함하여 살펴본 결과,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25.8%, 본인이 배심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58.7%,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85.2%로 나타났다(표 2-26 참고).

표 2-26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지식정도(이름만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포함)

(단위 : 명, %)

		빈도	퍼센트
제도 시행 여부	알고 있다	753	74.2
	모른다	262	25.8
본인이 배심원으로 선정될 가능성 여부	알고 있다	419	41.3
	모른다	596	58.7
불출석시 과태료 여부	알고 있다	150	14.8
	모른다	865	85.2
전체		1,015	100.0

하지만 이는 ‘이름만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도의 ‘이름만 아는 경우’는 제외하고 제도의 내용을 대강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27>과 같다.

표 2-27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지식정도(이름만 아는 경우는 제외)

(단위 : 명, %)

		빈도	퍼센트
제도 시행 여부	알고 있다	536	87.6
	모른다	76	12.4
본인이 배심원으로 선정될 가능성 여부	알고 있다	329	53.8
	모른다	283	46.2
불출석시 과태료 여부	알고 있다	128	20.9
	모른다	484	79.1
전체		612	100.0

<표 2-27>에서 나타나듯이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는 12.4%, 본인이 배심원으로 직접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는 46.2%, 배심원으로서 불출석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79.1%로 나타나 배심원으로 불출석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3.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관심도

실제로 현재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은 향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일반인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관심정도를 살펴본 결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별로 알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약간 알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44.6%로 동일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참여

재판제도에 대해 많이 알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7%,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전혀 알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3.8%로 일반인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28 참고).

표 2-28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관심도

(단위 : 명, %)

질문항목	빈도	백분율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전혀 알고 싶지 않다	49	3.8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별로 알고 싶지 않다	580	44.6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약간 알고 싶다	580	44.6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많이 알고 싶다	91	7.0
전체	1,300	100.0

4.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의도한 목적달성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는지 알아본 결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모든 항목에서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2-29 참고).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재판결과 신뢰성 향상'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전체의 87.5%를 차지하여 다른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높았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피고인 인권보장'이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부정적인 응답이(20.4%) 다른 효과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응답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국민이 생각하기에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이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과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는 응답의 차이가 없었다.

표 2-29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에 대한 응답분포

(단위 : 명, %)

구분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재판의 공정성 향상	4(0.3)	174(13.4)	913(70.2)	209(16.1)	1,300(100.0)
재판의 투명성 향상	9(0.7)	189(14.5)	723(55.6)	379(29.2)	1,300(100.0)
재판결과 신뢰성 향상	15(1.2)	147(11.3)	745(57.3)	393(30.2)	1,300(100.0)
피고인 인권보장	16(1.2)	250(19.2)	696(53.5)	338(26.1)	1,300(100.0)
국민들 법지식 향상	14(1.1)	155(11.9)	771(59.3)	360(27.7)	1,300(100.0)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	11(0.8)	192(14.8)	792(60.9)	305(23.5)	1,300(100.0)

5.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

일반국민이 생각하기에 배심원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할 때 '학연이나 지연', '금전적 혹은 정치적 요인', '여론의 향배', '개인적 편견이나 선입견'이라는 요인들이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 2-30>과 같다. 즉, 네 가지의 요인 모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여론의 향배'의 경우 58.4%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응답해 다른 요인에 비해서 배심원의 유·무죄 및 영향판단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30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

(단위 : 명, %)

구분	전혀 영향주지 않을 것이다	별로 영향주지 않을 것이다	약간 영향 줄 것이다	많이 영향 줄 것이다	전체
학연이나 지연	140(10.8)	407(31.3)	640(49.2)	113(8.7)	1,300(100.0)
금전적 혹은 정치적 요인	180(13.8)	470(36.2)	463(35.6)	187(14.4)	1,300(100.0)
여론의 향배	125(9.6)	415(31.9)	632(48.6)	128(9.8)	1,300(100.0)
개인적 편견	176(13.5)	429(33.0)	610(46.9)	85(6.5)	1,300(100.0)

200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배심원들이 학연, 지연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전체의 58.1%, “배심원들이 금전적, 정치적 유혹이나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높다”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은 55.8%, 그리고 “배심원들이 사건의 진위보다는 여론의 향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62.3%로 나타났다.¹³⁰⁾ 하지만 이 응답척도에는 ‘모르겠다’가 포함되어 있어서 ‘모르겠다’의 응답을 제외하면 각 항목별로 63.7%, 61.2%, 68.1%로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여론의 영향에 의해 배심원 판단이 흐려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의 차이가 성별이나 연령, 학력, 거주지역, 직업별로 다른지 살펴본 결과, 성별과 연령별, 직업에 따라서는 응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학연이나 지연’이 다른 항목과는 달리 응답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2-31 참고). 즉, 중졸 이하의 경우 배심원이 유·무죄나 형량 판단시 학연이나 지연의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 학력별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 차이

(단위 : 명, %)

구분		학력						(df) χ^2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연이나 지연	전혀 없음	5	6.8	77	11.5	58	10.4	(df=12) 21.269*
	별로 없음	12	16.2	218	32.5	177	31.8	
	약간 있음	50	67.6	322	48.1	268	48.2	
	매우 큼	7	9.5	53	7.9	53	9.5	
전체		74	100.0	670	100.0	556	100.0	
금전적 혹은 정치적 영향	전혀 없음	6	8.1	94	14.0	80	14.4	(df=12) 4.139 n.s.
	별로 없음	32	43.2	236	35.2	202	36.3	
	약간 있음	27	36.5	237	35.4	199	35.8	
	매우 큼	9	12.2	103	15.4	75	13.5	
전체		74	100.0	670	100.0	556	100.0	

130) 최인섭·황지태, 2007, 이전 책, 80면.

구분		학력						(df) χ^2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여론의 향배	전혀 없음	7	9.5	69	10.3	49	8.8	(df=12) 1.032 n.s.
	별로 없음	23	31.1	213	31.8	179	32.2	
	약간 있음	36	48.6	325	48.5	271	48.7	
	매우 큼	8	10.8	63	9.4	57	10.3	
전체		74	100.0	670	100.0	556	100.0	
개인적 종교적 편견	전혀 없음	10	13.5	89	13.3	77	13.8	(df=12) 4.028 n.s.
	별로 없음	19	25.7	230	34.3	180	32.4	
	약간 있음	38	51.4	305	45.5	267	48.0	
	매우 큼	7	9.5	46	6.9	32	5.8	
전체		74	100.0	670	100.0	556	100.0	

* p<.001 n.s.=not significant

한편, 가구수입에 따라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가 달리 나타났는데 모든 항목에서 '200만원~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32 참고).

표 2-32 가구수입별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 차이

(단위 : 명, %)

구분		수입 ¹³¹⁾					(df) χ^2
		200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500 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연이나 지연	전혀 없음	10(10.3)	12(5.2)	46(10.6)	38(14.2)	29(13.1)	(df=12) 21.269*
	별로 없음	24(24.7)	68(29.3)	148(34.2)	86(32.1)	66(29.7)	
	약간 있음	51(52.6)	126(54.3)	207(47.8)	125(46.6)	104(46.8)	
	매우 큼	12(12.4)	26(11.2)	32(7.4)	19(7.1)	23(10.4)	
전체		97(100.0)	232(100.0)	433(100.0)	268(100.0)	222(100.0)	
금전적 혹은 정치적 영향	전혀 없음	12(12.4)	22(9.5)	54(12.5)	49(18.3)	36(16.2)	(df=12) 23.109*
	별로 없음	35(36.1)	74(31.9)	172(39.7)	98(36.6)	68(30.6)	
	약간 있음	37(38.1)	100(43.1)	147(33.9)	89(33.2)	75(33.8)	
	매우 큼	13(13.4)	36(15.5)	60(13.9)	32(11.9)	43(19.4)	
전체		97(100.0)	232(100.0)	433(100.0)	268(100.0)	222(100.0)	

구분		수입 ¹³¹⁾					(df) χ^2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여론의 향배	전혀 없음	16(16.5)	13(5.6)	53(12.2)	27(10.1)	12(5.4)	(df=12) 31.579*
	별로 없음	24(24.7)	58(25.0)	140(32.3)	98(36.6)	76(34.2)	
	약간 있음	50(51.5)	130(56.0)	201(46.4)	118(44.0)	112(50.5)	
	매우 큼	7(7.2)	31(13.4)	39(9.0)	25(9.3)	22(9.9)	
전체		97(100.0)	232(100.0)	433(100.0)	268(100.0)	222(100.0)	
개인적 종교적 편견	전혀 없음	17(17.5)	20(8.6)	59(13.6)	47(17.5)	28(13.1)	(df=12) 26.741*
	별로 없음	26(26.8)	65(28.0)	158(38.5)	81(30.2)	75(33.6)	
	약간 있음	47(48.5)	124(53.6)	195(45.0)	129(48.1)	98(44.1)	
	매우 큼	7(7.2)	23(9.9)	21(4.8)	11(4.1)	20(9.0)	
전체		97(100.0)	232(100.0)	433(100.0)	268(100.0)	222(100.0)	

* $p < .001$

거주지역별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응답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2-33>와 같다. 즉, ‘학연이나 지연’, ‘금전적 혹은 정치적 요인’이 배심원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대전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론의 향배’와 ‘개인적(종교적) 편견이나 선입견’의 경우는 광주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33 거주지역별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 차이

(단위 : 명, %)

구분		거주지역							(df) χ^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연이나 지연	전혀 없음	71 (12.0)	40 (19.8)	6 (4.4)	12 (7.8)	-	-	11 (18.6)	(df=18) 130.765***
	별로 없음	225 (37.9)	56 (27.7)	40 (29.6)	33 (21.6)	31 (40.3)	5 (6.2)	17 (28.8)	
	약간 있음	263 (44.4)	85 (42.1)	77 (57.0)	95 (62.1)	39 (50.6)	54 (66.7)	27 (45.8)	

131) 조사대상자의 수입 분포에 따라 재분류하였음.

구분		거주지역							(df) χ^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큼	34 (5.7)	21 (10.4)	12 (8.9)	13 (8.5)	7 (9.1)	22 (27.2)	4 (6.8)	
전체		593 (100.0)	202 (100.0)	135 (100.0)	153 (100.0)	77 (100.0)	81 (100.0)	59 (100.0)	
금전적 혹은 정치적 영향	전혀 없음	92 (15.5)	48 (23.8)	11 (8.1)	11 (7.2)	-	-	18 (30.5)	(df=18) 130.128***
	별로 없음	233 (39.3)	62 (30.7)	55 (40.7)	47 (30.7)	43 (55.8)	10 (12.3)	20 (33.9)	
	약간 있음	194 (32.7)	53 (26.2)	48 (36.3)	76 (49.7)	25 (32.5)	50 (61.7)	16 (27.1)	
	매우 큼	74 (12.5)	39 (19.3)	20 (14.8)	19 (12.4)	9 (11.7)	21 (25.9)	5 (8.5)	
전체		593 (100.0)	202 (100.0)	135 (100.0)	153 (100.0)	77 (100.0)	81 (100.0)	59 (100.0)	
여론의 향배	전혀 없음	51 (8.6)	37 (18.3)	8 (5.9)	10 (6.5)	-	3 (3.7)	16 (27.1)	(df=18) 77.991***
	별로 없음	194 (32.7)	67 (33.2)	36 (26.7)	48 (31.4)	23 (28.9)	24 (29.6)	23 (39.0)	
	약간 있음	294 (49.6)	74 (36.6)	74 (54.8)	78 (51.0)	47 (61.0)	51 (63.0)	14 (23.7)	
	매우 큼	54 (9.1)	24 (11.9)	17 (12.6)	17 (11.1)	7 (9.1)	3 (3.7)	6 (10.2)	
전체		593 (100.0)	202 (100.0)	135 (100.0)	153 (100.0)	77 (100.0)	81 (100.0)	59 (100.0)	
개인적 종교적 편견	전혀 없음	73 (12.3)	56 (27.7)	16 (11.9)	9 (5.9)	-	1 (1.2)	21 (35.6)	(df=18) 131.655***
	별로 없음	196 (33.1)	68 (33.7)	44 (32.6)	36 (23.5)	26 (33.8)	44 (54.3)	15 (25.4)	
	약간 있음	293 (49.4)	66 (32.7)	66 (48.9)	90 (58.8)	41 (53.2)	36 (44.4)	18 (30.5)	
	매우 큼	31 (5.2)	12 (5.9)	9 (6.7)	18 (11.8)	10 (13.0)	-	5 (8.5)	
전체		593 (100.0)	202 (100.0)	135 (100.0)	153 (100.0)	77 (100.0)	81 (100.0)	59 (100.0)	

*** $p < .001$

6. 배심원의 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

현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는 배심원의 판단이 최종판결에 권고적 효력만을 지닌다. 과연, 일반국민이 판단하기에 배심원의 판단에 대한 기속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 2-34>와 같다.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이 생각하기에 ‘배심원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의 응답이 60.5%로 가장 많았고 ‘배심원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의 의견이 35.1%,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이어야 한다’는 의견은 4.5%로 나타났다. 한편,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참고만 해야 한다’가 63.8%, ‘배심원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가 30.8%,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이어야 한다’가 5.5%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반국민의 경우 유·무죄나 양형선고에 있어서 배심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배심원의 판단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판사가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만 하는 현행 국민참여재판형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2-34 배심원 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일반국민)

(단위 : 명, %)

구분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		형량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배심원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	786	60.5	829	63.8
배심원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456	35.1	400	30.8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이어야 한다	58	4.5	71	5.5
전체	1,300	100.0	100.0	100.0

한편, 배심원 판단에 대한 기속력문제에 있어서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결과,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형량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에 있어서는 학력에 따라 그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형량에 대한 배심원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는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형량에 대한 배심원 의견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표 2-35 참고).

표 2-35 학력에 따른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 차이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 χ^2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배심원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	39	52.7	344	60.1	446	68.2	(df=4) 13.526**
배심원 의견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31	41.9	191	33.4	178	27.2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이어야 한다	4	5.4	37	6.5	30	4.6	
전체	74	100.0	572	100.0	654	100.0	

** $p < .01$

7. 배심원일당 수준

법원에서는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심원에게 하루 일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과연 이 금액이 배심원으로서 참여를 활성화하고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지급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2-36>에서 나타나듯이 '적당하다'의 의견이 전체의 71.8%, '적다'는 의견이 20.7%, '많다'의 의견이 7.5%이다. 2005년도에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배심원의 하루 최소 수당으로 얼마가 적당한지를 물어본 결과, '5만원'이 28.3%로 가장 많았고 '10만원'이 20.9%, '전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도 16.9%로 나타났다(구자숙, 2009: 69면). 물론 본 조사에서는 '전혀 받지 않아도 된다'의 응답 척도는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 결과와 비교해보면 이번 조사에서는 배심원일당에 대해 '적당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해 6년이 지난 지금의 일반국민들의 경우 10만원 정도는 적당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에 10만원이라는 배심원일당이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표 2-36 ‘배심원일당 수준’에 대한 응답분포(일반국민)

(단위 : 명, %)

	빈도	백분율
적다	269	20.7
적당하다	934	71.8
많다	97	7.5
전체	1,300	100.0

8. 배심으로서 참여의사 및 참여가능 기간과 시간, 참여이유

가.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직접 배심원으로서의 참여의향을 물어본 결과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14.4%),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41.5%)로 부정적인 의견이 55.9%로 ‘꼭 참여하고 싶다’(6.3%), ‘가급적 참여하고 싶다’(37.8%)의 긍정적 의견인 44.1%보다 높았다(표 2-37 참고).

표 2-37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에 대한 응답분포(일반국민)

(단위 : 명, %)

	빈도	백분율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187	14.4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539	41.5
가급적 참여하고 싶다	492	37.8
꼭 참여하고 싶다	82	6.3
전체	1,300	100.0

이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배심원으로서의 참여 의향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즉, 2003년 법원

행정처에서 실시한 ‘시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심원으로서의 참여의향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65.2%, 부정적인 응답이 34.8%로 나타나 직접 배심원으로서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³²⁾

또한 2005년도 실시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역시 ‘가능한 참여하겠다’와 ‘반드시 참여한다’의 긍정적 응답이 83.5%로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와 ‘가능한 참여하지 않는다’의 부정적 응답은 16.5%에 불과했다.¹³³⁾ 그리고 200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주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살펴보면 배심원 참여 의사를 물어본 결과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58.0%였다.¹³⁴⁾ 물론, 이러한 차이는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등의 차이와 다양한 맥락의 사회적 변수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 4년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 ‘배심원으로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일반인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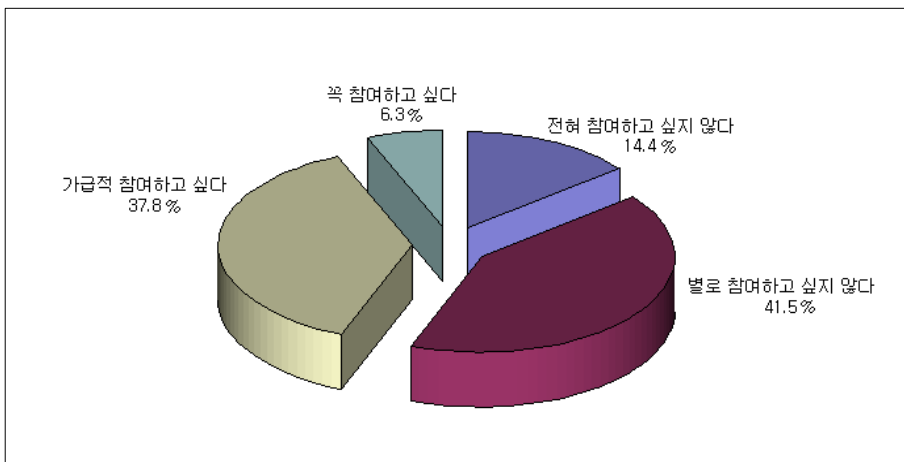


그림 2-2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에 대한 응답분포(일반국민)

132) 법원행정처, 2003, 『사법서비스·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 293면.

133) 구자숙, 2005,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59면.

134) 최인섭·황지태, 2007,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Ⅰ) - [1] 사법개혁과 형사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6면.

한편, 배심원으로서의 참여의사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과 연령, 학력, 직업에 따라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거주지역과 가구수입에 따라서는 참여의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8 성별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에 대한 응답 차이

(단위 : 명, %)

구분	성별				(df) χ^2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83	12.8	104	16.0	(df=3) 12.078***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265	40.8	274	42.2	
가급적 참여하고 싶다	247	38.0	245	37.7	
꼭 참여하고 싶다	55	8.4	27	4.1	
전체	650	100.0	650	100.0	

** $p < .01$

먼저, 성별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으로서의 참여의사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결과는 앞의 <표 2-38>에서 나타나듯이 남성이 여성보다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서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전체의 46.5%, 여성의 경우는 41.8%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이전 연구결과들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 연령에 따라서는 참여의사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 2-39>에서 나타나듯이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서 ‘가급적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각 45.5%와 39.0%로 가장 많았으나 다른 연령대인 40대와 50대, 60대의 경우는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의 응답이 각 43.6%, 44.5%, 41.7%로 가장 많았다. 즉, 배심원으로서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의 비율을 보면 20대가 53.5%, 30대가 45.5%, 40대가 43.0%, 50대가 41.1%, 60대 이상이 33.1%로 나타나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참여의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9 연령별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에 대한 응답 차이

(단위 : 명, %)

구분	연령					(df) χ^2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20 (7.6)	49 (15.9)	42 (13.4)	38 (14.4)	38 (25.2)	(df=12) 36.385***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103 (39.0)	119 (38.6)	137 (43.6)	117 (44.5)	63 (41.7)	
가급적 참여하고 싶다	120 (45.5)	120 (39.0)	120 (38.2)	93 (35.4)	39 (25.8)	
꼭 참여하고 싶다	21 (8.0)	20 (6.5)	15 (4.8)	15 (5.7)	11 (7.3)	
전체	264 (100.0)	308 (100.0)	314 (100.0)	263 (100.0)	151 (100.0)	

*** $p < .001$

세 번째, 학력별 참여의사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대졸 이상인 경우는 ‘가급적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42.4%로 가장 높았으나 중졸 이하와 고졸인 집단에서는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의 응답이 각 39.2%, 45.3%로 높았다(표 2-40 참고).

표 2-40 학력별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에 대한 응답 차이

(단위 : 명, %)

구분	학력			(df) χ^2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25(33.8)	90(15.7)	72(11.0)	(df=6) 46.219***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29(39.2)	259(45.3)	251(38.4)	
가급적 참여하고 싶다	17(23.0)	198(34.6)	277(42.4)	
꼭 참여하고 싶다	3(4.1)	25(4.4)	54(8.3)	
전체	74(100.0)	572(100.0)	654(100.0)	

*** $p < .001$

네 번째 직업별 참여의사를 살펴보면, 판매서비스직과 기술 및 기능직, 전업주부, 학생의 경우는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의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 42.4%, 42.4%, 46.1%, 50.0%로 가장 높았고, 사무직과 단순노무직과 같은 기타, 무직의 경우에는 ‘가급적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각 44.1%, 52.0%, 36.8%로 가장 높았다(표 2-41 참고). 여기서 전업주부와 학생의 참여의사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사회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주변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는 가사 및 육아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¹³⁵⁾ 또한 단순노무직의 경우 생계문제와 직결되거나 농·어업하는 경우는 시간을 잠시라도 비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표 2-41 직업별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에 대한 응답 차이

(단위 : 명, %)

구분	직업 ¹³⁶⁾								(df)χ ²
	관리직 전문가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기술 기능직	전업 주부	학생	기타	무직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7 (11.1)	26 (10.0)	67 (17.4)	19 (16.1)	52 (17.1)	5 (14.7)	4 (4.1)	7 (18.4)	(df=21) 55.334***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26 (41.3)	101 (38.7)	163 (42.4)	50 (42.4)	140 (46.1)	17 (50.0)	33 (33.7)	9 (23.7)	
가급적 참여하고 싶다	26 (41.3)	115 (44.1)	133 (34.6)	41 (34.7)	102 (33.6)	10 (29.4)	51 (52.0)	14 (36.8)	
꼭 참여하고 싶다	4 (6.3)	19 (7.3)	21 (5.5)	8 (6.8)	10 (3.3)	2 (5.9)	10 (10.2)	8 (21.1)	
전체	63 (100.0)	261 (100.0)	384 (100.0)	118 (100.0)	304 (100.0)	34 (100.0)	98 (100.0)	38 (100.0)	

*** p<.001

135) 실제 배심원후보 및 배심원대상 조사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할 때 배심원으로 참여한 주부의 경우 “아이를 옆집에 맡기고 왔다”며 재판이 언제 끝나냐며 질문하기도 하였다. 배심원의 참여도가 필수적인 만큼 전업주부의 참여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해 기초적인 논의부터 시작해야 할 것임.

136) 직업을 재분류하여 기타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직(31명), 농어업(2명), 직업군인(1명)이 포함됨.

표 2-42 가구수입별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에 대한 응답 차이

(단위 : 명, %)

구분	수입 ¹³⁷⁾					(df) χ^2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22 (22.7)	45 (19.4)	49 (11.3)	32 (11.9)	26 (11.7)	(df=12) 24.088*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39 (40.2)	89 (38.4)	197 (45.5)	121 (45.1)	84 (37.8)	
가급적 참여하고 싶다	29 (29.9)	84 (36.2)	160 (37.0)	104 (38.8)	94 (42.3)	
꼭 참여하고 싶다	7 (7.2)	14 (6.0)	27 (6.2)	11 (4.1)	18 (8.1)	
전체	97 (100.0)	232 (100.0)	433 (100.0)	268 (100.0)	222 (100.0)	

* p<.05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가 가구수입과 거주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2-42>와 <표 2-43>과 같다. <표 2-42>에서 나타나듯이 가구수입의 경우 ‘500만원 이상’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배심원으로서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전체의 50.4%를 차지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만원 미만’에서는 37.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직업별 참여의사를 나타낸 <표 2-41>에서 처럼 자신의 사회적 여건이라는 변수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다음의 <표 2-43>에서 나타나듯이 지역별 참여의사를 살펴보면 울산의 경우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57.6%를 차지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7) 조사대상자의 수입 분포에 따라 재분류하였음.

표 2-43 거주지역에 따른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에 대한 응답 차이

(단위 : 명, %)

구분	거주지역							(df) χ^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83 (14.0)	24 (11.9)	20 (14.8)	35 (22.9)	5 (6.5)	7 (8.6)	13 (22.0)	(df=18) 52.459***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265 (44.7)	84 (41.6)	59 (43.7)	49 (32.0)	31 (40.3)	39 (48.1)	12 (20.3)	
가급적 참여하고 싶다	213 (35.9)	82 (40.6)	50 (37.0)	55 (35.9)	35 (45.5)	34 (42.0)	23 (39.0)	
꼭 참여하고 싶다	32 (5.4)	12 (5.9)	6 (4.4)	14 (9.2)	6 (7.7)	1 (1.2)	11 (18.6)	
전체	593 (100.0)	202 (100.0)	135 (100.0)	153 (100.0)	77 (100.0)	81 (100.0)	59 (100.0)	

*** p<.001

이처럼 일반국민의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가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는 앞서 살펴본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관심도의 결과로 판단된다(표 2-18, 표 2-28 참고). 즉,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은 상황에서 배심원으로서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정도에 따라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가 달라지는지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아는 집단과 모르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참여의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44>와 같다. 여기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국민참여재판을 아는 집단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국민참여재판을 알고 있는 집단의 경우 ‘가급적 참여하고 싶다’의 응답률이 41.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가 39.5%,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가 11.5%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을 모르고 있는 경우는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의 응답이 48.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가 24.6%, ‘가급적 참여하고 싶다’가 2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 참여재판제도를 알고 있는 일반국민의 경우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에 대한 긍정

적인 응답이 49.0%를 차지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해 모르는 일반국민의 경우는 참여의사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27.0%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배심원으로서의 참여의사가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표 2-44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부에 따른 참여의사 차이(일반국민)

(단위 : 명, %)

구분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부				(df) χ^2
	제도를 알고 있다		제도를 모른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117	11.5	70	24.6	(df=3) 54.905***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401	39.5	138	48.4	
가급적 참여하고 싶다	425	41.9	67	23.5	
꼭 참여하고 싶다	72	7.1	10	3.5	
전체	1,015	100.0	285	100.0	

*** $p < .001$

나. 배심원으로서 참여이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으로서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574명을 대상으로 참여이유를 살펴본 결과 ‘국민으로서의 권리의식 때문에’라는 이유가 다른 이유에 비해 ‘그렇다’란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권리의식 때문에’가 94.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에’(92.3%), ‘불출석시 과태료’(91.8%), ‘재판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 때문에’(90.9%)의 순이다(표 2-45 참고). 이처럼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과태료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한 참여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심원으로서의 참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표 2-45 ‘배심원으로서 참여 이유’에 대한 응답분포(일반국민 가운데 참여 의사 표시한 경우) (단위 : 명, %)

구분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국민으로서의 권리의식 때문에	4(0.7)	28(4.9)	390(67.9)	152(26.5)	574(100.0)
민주시민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2(0.3)	42(7.3)	314(54.7)	216(37.6)	574(100.0)
불출석 시 과태료 때문에	22(3.8)	140(24.4)	277(48.3)	135(23.5)	574(100.0)
재판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 때문에	2(0.3)	50(8.7)	328(57.1)	194(33.8)	574(100.0)

다. 배심원으로서 참여 가능 기간 및 종료시간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대부분 배심원에게 하루 이상의 시간을 재판에 소요되지 않도록 밤늦게까지라도 진행하여 하루 만에 모든 공판절차를 끝낸다. 하지만 과연 배심원의 입장에서든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 동안 줄곧 진행되는 공판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실제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보았다. 그 결과, ‘하루’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5.8%로 가장 높다 (표 2-46 참고). 그 다음으로 ‘2일 정도’가 28.9%이고 ‘기간에 상관없다’는 응답이 16.0%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2-46 ‘재판진행 참여 가능 기간’에 대한 응답분포(일반국민) (단위 : 명, %)

	빈도	백분율
하루만	263	45.8
2일 정도	166	28.9
3일 정도	53	9.2
기간에 상관없음	92	16.0
전체	574	100.0

한편, 하루 동안 재판이 진행된다면 몇 시간이나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47>과 같다. 즉, ‘오후 6시 정도’가 전체 574명 가운데 273명으로 47.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오후 8시 정도’가 27.4%, ‘시간에 상관없다’는 응답이 19.0%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참여가능 기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참여 가능시간에서 역시 ‘시간에 상관없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2-47 ‘재판진행 참여 가능 기간’에 대한 응답분포(일반국민)

(단위 : 명, %)

	빈도	백분율
오후 6시 정도	273	47.6
오후 8시 정도	157	27.4
자정까지	35	6.1
시간에 상관없음	109	19.0
전체	574	100.0

앞서 살펴본 <표 2-46>에서처럼 ‘하루’ 정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고 하여 재판에 밤늦게까지 참여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이에 재판 참여가능 기간과 종료시간을 조합하여 살펴보면 <표 2-48>과 같다.

표 2-48 재판진행 참여 가능 기간별 종료시간에 대한 응답분포(일반국민)

(단위 : 명, %)

		빈도	백분율
하루만	오후 6시 정도	169	29.4
	오후 8시 정도	62	10.8
	자정까지	11	1.9
	시간에 상관없음	21	3.7
2일 정도	오후 6시 정도	64	11.1
	오후 8시 정도	60	10.5
	자정까지	14	2.4
	시간에 상관없음	28	4.9

		빈도	백분율
3일 정도	오후 6시 정도	23	4.0
	오후 8시 정도	17	3.0
	자정까지	4	0.7
	시간에 상관없음	9	1.6
기간에 상관없음	오후 6시 정도	17	3.0
	오후 8시 정도	18	3.1
	자정까지	6	1.0
	시간에 상관없음	51	8.9
합계		574	100.0

즉, 참여가능 기간에 따른 참여가능 종료시간대 분포를 살펴본 결과, ‘당일 오후 6시까지’ 참여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29.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2일 동안 참여하되 오후 6시까지’가 11.1%, ‘당일 오후 8시까지’ 10.8%, ‘2일 동안 참여하되 오후 8시 정도’ 10.5%, ‘기간이나 시간에 상관없다’는 응답이 8.9% 등의 순이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하루 정도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많기는 하지만 공판 종료시간에 있어서 일정 한계는 있어 보인다. 한편, ‘기간이나 시간에 상관없다’는 응답이 8.9%로 절대적으로 응답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배심원으로서 참여 시간에 대한 물리적 측면보다는 재판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 배심원의 편의를 위해 무조건 하루 만에 재판을 끝내려 하기 보다는 공판종료시간을 분명히 하는 등의 효율적인 공판진행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9. 배심원으로서 예상되는 어려움

우리나라 일반국민이 생각하기에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서 참여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2-49〉에서 나타나듯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배심원 출석 관련 어려움’에 대해 ‘약간 그렇다’가 46.7%, ‘매우 그렇다’가

11.5%로 ‘그렇다’의 응답이 58.2%를 차지하여 다른 어려움 요인에 비해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심원 역할에 대한 어려움’의 경우에는 ‘그렇다’의 응답이 56.5%이며 ‘법률지식 및 이해관련 어려움’은 55.0%이다. 이처럼 배심원의 경험이 없는 일반국민의 경우 배심원으로 참여함에 있어서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거나 생계지장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2-49 ‘배심원으로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응답분포

(단위 : 명, %)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법률지식 및 이해관련 어려움	65 (5.0)	519 (39.9)	661 (50.8)	55 (4.2)	1,300 (100.0)
배심원 출석 관련 어려움	99 (7.6)	444 (34.2)	607 (46.7)	150 (11.5)	1,300 (100.0)
배심원역할에 대한 어려움	74 (5.7)	491 (37.8)	658 (50.6)	77 (5.9)	1,300 (100.0)

성별에 따라 ‘배심원으로서 예상되는 어려움’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50>에서 나타나듯이 ‘법률지식 및 이해관련 어려움’과 ‘배심원 역할에 대한 어려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법률지식 및 이해관련 어려움’에서는 남자는 ‘약간 그렇다’의 응답이 45.7%,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4.5%,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0%,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3.8%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약간 그렇다’의 응답이 56.0%,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5.4%,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4.6%,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0 성별에 따른 ‘배심원으로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성별				(df) χ^2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법률지식 및 이해관련 어려움	전혀 아님	39	6.0	26	4.0	(df=3) 16.553*
	별로 아님	289	44.5	230	35.4	
	약간 그러함	297	45.7	364	56.0	
	매우 그러함	25	3.8	30	4.6	
전체		650	100.0	650	100.0	
배심원 출석 관련 어려움	전혀 아님	44	6.8	55	8.5	(df=3) 6.141 n.s.
	별로 아님	206	31.7	238	36.6	
	약간 그러함	323	49.7	284	43.7	
	매우 그러함	77	11.8	73	11.2	
전체		650	100.0	650	100.0	
배심원역할에 대한 어려움	전혀 아님	41	6.3	33	5.1	(df=3) 12.638*
	별로 아님	270	41.5	221	34.0	
	약간 그러함	310	47.7	348	53.5	
	매우 그러함	29	4.5	48	7.4	
전체		650	100.0	650	100.0	

* $p < .05$ n.s.=not significant

한편, ‘배심원역할에 대한 어려움’에서는 남자는 ‘약간 그렇다’의 응답이 47.7%,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1.5%,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3%,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4.5%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약간 그렇다’의 응답이 53.5%,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4.0%,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7.4%,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배심원으로서 참여함에 있어서 법률지식 및 이해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배심원 역할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연령에 따라 배심원으로서 예상되는 어려움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결과 모든 요인에서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51 참고). ‘60대 이상’의 경우 ‘법률지식 및 이해관련 어려움’과 ‘배심원역할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배심원출석관련 어려움’의 경우에는 ‘50대’가 가장 컸다. 즉, 연령에 따라 배심원참여로 예상되는 어려움이 다르게 나타나 배심원으로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의 특징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표 2-51 연령별 ‘배심원으로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연령										(df) χ^2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법률지식 및 이해관련 어려움	전혀 아님	18	6.8	15	4.9	17	5.4	12	4.6	3	2.0	(df=12) 33.956*
	별로 아님	127	48.1	120	39.0	131	41.7	95	36.1	46	30.5	
	약간 그러함	105	39.8	167	54.2	155	49.4	144	54.6	90	59.6	
	매우 그러함	14	5.3	6	1.9	11	3.5	12	4.6	12	7.9	
전체		264	100.0	308	100.0	314	100.0	263	100.0	151	100.0	
배심원 출석 관련 어려움	전혀 아님	19	7.2	16	5.2	21	6.7	21	8.0	22	14.6	(df=12) 24.738*
	별로 아님	90	34.1	124	40.3	99	31.5	77	29.3	54	35.8	
	약간 그러함	125	47.3	132	42.9	151	48.1	137	52.1	62	41.1	
	매우 그러함	30	11.4	36	11.7	43	13.7	28	10.3	13	8.6	
전체		264	100.0	308	100.0	314	100.0	263	100.0	151	100.0	
배심원역할에 대한 어려움	전혀 아님	19	7.2	16	5.2	19	6.1	13	4.9	7	4.6	(df=12) 21.437*
	별로 아님	112	42.4	106	34.4	130	41.4	92	35.0	51	33.8	
	약간 그러함	126	47.7	168	54.5	150	47.8	137	52.1	77	51.0	
	매우 그러함	7	2.7	18	5.8	15	4.8	21	8.0	16	10.6	
전체		264	100.0	308	100.0	314	100.0	263	100.0	151	100.0	

* p<.01

세 번째, 배심원으로서 예상되는 어려움이 학력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결과 ‘법률 지식 및 이해관련 어려움’에서만 학력차이가 나타나 중졸 이하의 경우 ‘그렇다’의 응답이 전체의 83.8%로 나타나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2-52 참고).

표 2-52 학력별 ‘배심원으로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학력						(df) χ^2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법률지식 및 이해관련 어려움	전혀 아님	1	1.4	27	4.0	37	6.7	(df=6) 56.683***
	별로 아님	11	14.9	254	37.9	254	45.7	
	약간 그러함	53	71.6	351	52.4	257	46.2	
	매우 그러함	9	12.2	38	5.7	8	1.4	
전체		74	100.0	670	100.0	556	100.0	
배심원 출석 관련 어려움	전혀 아님	7	9.5	53	7.9	39	7.0	(df=6) 6.361 n.s.
	별로 아님	23	31.1	212	31.6	209	37.6	
	약간 그러함	37	50.0	320	47.8	250	45.0	
	매우 그러함	7	9.5	85	12.7	58	10.4	
전체		74	100.0	670	100.0	556	100.0	
배심원역할에 대한 어려움	전혀 아님	4	5.4	41	6.1	29	5.2	(df=6) 5.592 n.s.
	별로 아님	26	35.1	245	36.6	220	39.6	
	약간 그러함	36	48.6	342	51.0	280	50.4	
	매우 그러함	8	10.8	42	6.3	27	4.9	
전체		74	100.0	670	100.0	556	100.0	

*** p<.001 n.s.=not significant

10.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53>과 같다. 즉, 전체 1,300명 가운데 620명이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전체 47.7%로 가장 높기는 하지만 그 다음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4%로 나타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의 의견에 비해 5.3%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아주 낮다’의 응답이 5.8%로 ‘가능성이 아주 높다’의 응답(4.2%)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53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한 응답분포(일반국민)

(단위 : 명, %)

응답 범주	빈도	백분율
가능성이 아주 낮다	75	5.8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551	42.4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620	47.7
가능성이 아주 높다	54	4.2
전체	1,300	100.0

다시 말해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즉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응답과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는 응답을 합하여 살펴보더라도 50%를 겨우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0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시행 4년째인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만을 할 수는 없음을 보여준다. 2007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기 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참여재판제도의 성공 가능성을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2007년도에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1,308명 가운데 '모름/무응답'을 제외하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성공할 것이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051명으로 전체의 80.3%로 나타났다.¹³⁸⁾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미래에 대한 일반국민의 기대는 높았으나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중인 현 시점에 있어서는 그 기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한 응답이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과 연령별, 직업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학력과 가구수입, 그리고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표 2-54, 표 2-55, 표 2-56 참고). 여기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응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국민참여

138) 최인섭·황지태, 2007, 이전 책, 93면.

재판제도의 성공적 정착가능성에 대한 학력별 응답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응답의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대졸 이상의 경우가 57.1%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졸이하의 경우는 46.0%, 고졸인 경우는 48.2%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표 2-54 참고).

표 2-54 학력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학력						(df) χ^2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능성이 아주 낮다	6	8.1	49	7.3	20	3.6	(df=6) 19.107*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34	45.9	298	44.5	219	39.4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31	41.9	304	45.4	285	51.3	
가능성이 아주 높다	3	4.1	19	2.8	32	5.8	
전체	74	100.0	670	100.0	556	100.0	

* $p < .05$

다음으로 가구수입별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한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55>와 같다. 즉, 200만원 미만인 경우와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는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과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응답한 비율 즉,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집단의 경우에는 국민 참여재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55 참고).

표 2-55 가구수입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수입 ¹³⁹⁾					(df) χ^2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능성이 아주 낮다	14 (14.4)	10 (4.3)	19 (4.4)	16 (6.0)	7 (3.2)	(df=12) 40.384***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40 (41.2)	114 (49.1)	187 (43.2)	114 (42.5)	76 (34.2)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39 (40.2)	100 (43.1)	212 (49.0)	130 (46.5)	120 (54.1)	
가능성이 아주 높다	4 (4.1)	8 (3.4)	15 (3.5)	8 (3.0)	19 (8.6)	
전체	97 (100.0)	232 (100.0)	433 (100.0)	268 (100.0)	222 (100.0)	

*** $p < .001$

한편, 거주지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을 살펴 보면 <표 2-56>에서 나타나듯이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응답이 64.9%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광주, 울산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많았고, 부산, 대구와 인천, 대전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139) 조사대상자의 수입 분포에 따라 재분류하였음.

표 2-56 거주지역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거주지역							(df) χ^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능성이 아주 낮다	30 (5.1)	12 (5.9)	6 (4.4)	10 (6.5)	3 (3.9)	4 (4.9)	10 (16.9)	(df=18) 62.509***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227 (38.3)	91 (45.0)	66 (48.9)	88 (57.5)	24 (31.2)	39 (48.1)	16 (27.1)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310 (52.3)	91 (45.0)	60 (44.4)	50 (32.7)	48 (62.3)	36 (44.4)	25 (42.4)	
가능성이 아주 높다	26 (4.4)	8 (4.0)	3 (2.2)	5 (3.3)	2 (2.6)	2 (2.5)	8 (13.6)	
전체	593 (100.0)	202 (100.0)	135 (100.0)	153 (100.0)	77 (100.0)	81 (100.0)	59 (100.0)	

*** $p < .001$

한편, 앞서 살펴본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듯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이 인지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표 2-44 참고). 이에 <표 2-57>에서 나타나듯이 국민참여재판제도라는 이름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알고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거나 아주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5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는 36.1%에 그치고 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57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부에 따른 성공적인 정착가능성

(단위 : 명, %)

구분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부				(df) χ^2
	제도를 모른다		제도를 알고 있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능성이 아주 낮다	23	8.1	52	5.1	(df=3) 36.200***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159	55.8	392	38.6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95	33.3	525	51.7	
가능성이 아주 높다	8	2.8	46	4.5	
전체	285	100.0	1,015	100.0	

*** $p < .001$

11. 국민참여재판제도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경험 및 대처방법

오늘날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법원을 사칭하고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ARS 전화 등으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좌로 납부하라는 등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수법의 범죄피해경험이 결코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없다. 이에 실제 이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살펴보고 대처방식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58>에서 나타나듯이 1,300명 가운데 14명(1.2%)이 법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본 경험이 있었다. 본 조사가 전국단위 조사이기는 하지만 표본수가 작고 무엇보다 본 조사의 목적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을 사칭하고 배심원 선정과 관련한 보이스피싱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정착하는 현 시점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진행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표 2-58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련 보이스피싱 전화경험 여부

(단위 : 명, %)

응답 범주		빈도	백분율
없음		1,284	98.8
있음	한두 번	14	1.1
	서너 번	2	0.1
합계		1,300	100.0

한편, 피싱경험이 있는 16명 가운데 실제로 속아서 피해를 본 경우는 없었고 ‘속지 않고 그냥 무시했다’는 응답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표 2-59 참고).

표 2-59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련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단위 : 명, %)

응답 범주	빈도	백분율
속아서 피해를 봄	0	0.0
속아서 피해볼 뻔함	2	12.5
속지 않고 무시함	13	81.2
속지 않고 법원이나 경찰 등에 신고	1	6.2
합계	16	100.0

제2절 소결

지금까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일반국민의 ‘법관에 대한 신뢰’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법관의 능력과 지식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75.0% 이상을 차지하였고 법관에 대한 신뢰 항목 가운데 ‘정치권이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2 참고).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제도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47.1%로 2007년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44.3%)에 비해 약간 높아진 수치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조사결과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의 비율이 21.9%로 2007년 조사결과인 18.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8 참고). 한편,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을 ‘대강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과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과연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지식정도를 알아본 결과 현재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중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12.4%였고 본인이 배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는 46.2%를 차지하였다(표 2-27 참고).

세 번째, 일반국민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알고 싶냐?”에 대해 ‘약간 알고 싶다’와 ‘별로 알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44.6%로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8 참고).

네 번째,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재판의 공정성 향상’, ‘재판의 투명성 향상’, ‘재판결과 신뢰성 향상’, ‘피고인 인권보장’, ‘국민 법지식 향상’, ‘국민 준법정신 함양’이라는 효과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약 80.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9 참고). 이는 일반국민이 생각하기에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이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일 것이다.

다섯 번째, 배심원이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할 때 ‘학연이나 지연’, ‘금전적 혹은 정치적 요인’, ‘여론의 향배’, ‘개인적 편견’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 결과 ‘여론의 향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58.4%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2-30 참고).

여섯 번째, 배심원의 판단에 대한 기속력 문제에 있어서 일반국민은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있어서 ‘배심원의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다(표 2-34 참고).

일곱 번째, 법원에서 배심원 일당으로 지급하는 금액 수준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70% 이상으로 일반국민의 경우 1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표 2-36 참고).

여덟 번째,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의 경우 ‘참여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표 2-37 참고). 이는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던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이러한 낮은 참여도는 앞서 살펴본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관련이 된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라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를 살펴본 결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 비해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44 참고). 즉,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결국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참여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 배심원으로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배심원 출석 관련 어려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높았고 유·무죄와 양형 판단 등과 같은 ‘배심원 역할에 대한 부담’이 56.5%, ‘법률지식 및 이해 관련 어려움’이 55.0%로 나타났다(표 2-49 참고). 또한 성별이나 연령, 학력별로 배심원으로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응답의 차이가 나타났다(표 2-50, 표 2-51, 표 2-52 참고). 특히,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심원 출석 관련 어려움’은 자신이 처한 상황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배심원으로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열 번째, 일반국민에게 향후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겨우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53 참고). 이러한 조사결과 역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80% 이상이었던 이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상당히 차이가 있다. 즉,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미래에 대한 일반국민의 기대는 높았으나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중인 현 시점에 있어서는 그 기대 낮아졌다는 것이다.

한편, 일반국민의 ‘법관에 대한 신뢰’는 기존의 조사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 하지만 일반국민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배심원으로서 참여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이전 연구조사결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다른 사회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본 결과 일반국민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 4년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의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소극적인 배심원 참여도, 제도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태도 등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 그리고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도 높아 일반국민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적극적인 방청유도와 같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배심원으로서 예상되는 어려움’이 성별이나 연령, 학력에 따른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상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모색이 시급하다.

제3장

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대상 조사결과 분석

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대상 조사결과 분석

이 장에서는 연구진이 참관한 국민참여재판의 내용과 형식 등과 같은 전반적인 특성을 정리하고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의 조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배심원(후보) 조사는 우편회수방식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배심원후보 및 배심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해석을 위해서는 조사대상이 참여한 해당 재판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대상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에 앞서 참관재판의 형태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제1절 참관재판 정리 및 분석

1. 참관재판의 일반적 특성

이 절에서는 앞서 〈표 2-2〉에서 정리한 연구진 참관재판 가운데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의 설문지가 회수되지 않은 3건은 제외하고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의 설문이 회수된 27건에 대해 재판의 형태를 살펴본다.¹⁴⁰⁾ 다음의 〈표 2-60〉은 참관

140) 6월 7일 대전지방법원 제 11형사부(강도상해), 6월 27일 부산지방법원 제 7형사부(특정범죄가중

재판의 일반적 특성으로 해당법원과 사건번호, 공판날짜, 그리고 죄명을 정리한 것이다.¹⁴¹⁾ 표에서 제시한 사건죄명은 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죄명을 기준으로 하였고 병합사건의 경우에는 중한 죄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2-60 참관재판의 일반적 특성

순번	법원	사건번호	공판기일	죄명	공소사실
1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18	2011. 04.26	특가법위반(절도) 142)	'교차로' 광고 이용 피해자에게 접근, 절취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2010고합1699	2011. 04.27	존속살해미수	정신질환 피고인, 둔기로 아버지 살인
3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1고합15	2011. 05.02	준강도미수	장애인인 피해자를 1. 화장실간 틈 이용 지갑절취 2. 넘어트리고 지갑절취시도(지갑을 찾지 못함)
4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61	2011. 05.03	살인미수	어머니의 남자친구를 아들이 칼로 목 찌름
5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0고합262	2011. 05.16	강간미수	내연녀의 전동서인 동료무속인, 강간 시도 시간이 없어 멈춤
6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1고합107	2011. 05.16	강간치상	두 번째 만남 음주·노래방 후, 집으 로 유인 핸드폰 빼앗음 얼굴 때리며 강간
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2011고합258	2011. 05.17	강도상해	절도, 동국대체육관 침입, 피해자를 수상하게 여긴 '체육관조교(피해자)'를 피해 도주 중 각목으로 가격
8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76	2011. 05.23	강도상해	피해자(1) - 몸을 밀친 후 구타 피해자(2, 농아자) - 폭행 피해자(3) - 스마트폰을 절취 ※ 공소장변경 - 피해자(1) 폭행부 분 '재물강취목적여부' 강도상해 ⇒ 단순상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6월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 11형사부(강간치상)에 해당하는 재판은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의 회수된 설문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참관자료 분석시에는 제외함.

141) <표 2-60>, <표 2-61>, <표 2-62>, <표 2-63>의 순번은 공판날짜순으로 모두 동일함.

제2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조사분석

순번	법원	사건번호	공판기일	죄명	공소사실
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2011고합244	2011. 05.24	폭행치사	몸싸움 중에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폭행 후, 사망
10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73	2011. 05.24	준강도	절도 목적, 보일러실 유리창 깨고 침입 피해자가 발견/다툼/제압, 피해자 신고 중 밀치고 도주
1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2011고합190	2011. 05.26	특가법위반(절도)	각기 다른 날, 테크노마트 택배차량 노트북 등 절취, 가산디지털단지 택배차량 카메라 등 절취, 노상주차 택배차량 카메라 등 절취
12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84	2011. 05.30	강도상해	음주 후, 택시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상해 입힌 후, 택시를 빼앗아 도주
13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1고합31	2011. 05.30	상해치사	10년간 알콜중독 아내를 골목길/집에서 수차례 상해, 하루 후 피해자 사망
14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1고합61	2011. 05.31	살인미수	교통사고 합의금 무리한 요구, 격분하여 화칼로 목을 찌름
15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84	2011. 06.01	존속살해	정신분열병, 불상의 이유 피해자 칼로 찌름, 사망
16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1고합29	2011. 06.03	강간상해	술값문제로 다툼 피해자 폭행, 강간 시도, 피해자가 대변을 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2011고합202	2011. 06.08	강도	1. 피해자와 음주 중, 피해자의 돈을 강취 2. 포장마차에서 시비 중, 피해자를 칼로 위협
18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1고합105	2011. 06.13	강간상해	노래방에서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 수회 폭행, 피해자가 에이즈라는 말에 범행을 멈춤.
1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16	2011. 06.14	강도상해	양수 받은 채권을 직접 회수하려던 중 피해자에게 폭행, 욕설, 강제로 차에 태워 이동
20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0고합893	2011. 06.20	성폭법위반 (특수강간 등) ¹⁴³⁾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수의 성폭법 위반과 상해로 고소.
2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1고합119	2011. 06.22	특가법위반(절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밤색지갑 절취.

순번	법원	사건번호	공판기일	죄명	공소사실
22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27	2011. 06.28	강제추행치상	이웃인 피해자와 출입로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와중에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만지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힘.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2011고합432	2011. 06.30	특가법위반(절도)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 + 기타 등이 든 지갑을 절취
24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1고합21	2011. 07.01	살인미수	공사일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가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욕을 하자 망치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공사현장 인부인 홍○이 범행을 제지, 미수에 그침.
25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1고합4	2011. 07.04	상해치사	망상에 잡혀 있는 피고가 평소 자기를 해코지 한다며 경비원을 불러내어 피해자를 구둑발로 수십회 걷어차고 발아 사건 다음 날 사망에 이르게 함.
26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1고합136	2011. 07.04	강도살인	1. 대출금을 마련할 목적을 교묘동창과 노래방에 침입 노래방 주인 성폭행 돈을 강취함 2. 납치하여 강도살인 후 시체유기
27	서울중앙 (제21형사부)	2011고합448	2011. 07.05	존속살해	정신분열증 아들이 아버지와의 다툼 중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떨어트려 사망하게 함.

참관재판을 사건죄명별로 살펴보면 ‘강도 등’이 전체의 29.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살인 등(22.2%), 성범죄(22.2%), 특가법위반절도(14.8%), 상해치사 등(11.1%)로 나타났다(그림 2-3 참고).¹⁴⁴⁾

14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이하 특가법위반.

1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이하 성폭법위반.

144) ‘강도 등’에는 강도, 강도살인, 강도상해, 준강도, 준강도미수가 포함되며 ‘살인 등’에는 살인미수,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가, ‘상해치사 등’은 상해치사, 폭행치사가 ‘성범죄’는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강제추행치상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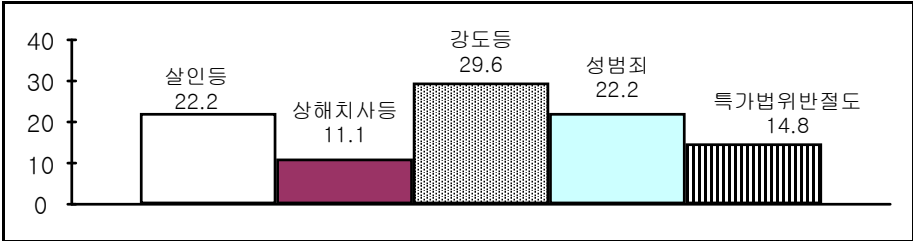


그림 2-3 참관재판 사건죄명별 분포

2. 참관재판의 배심원 선정기일 및 공판 소요시간 관련

다음의 <표 2-61>는 참관재판 배심원후보 출석수와 배심원수, 성별에 따른 배심원수가 정리되어 있다. <그림 2-4>에 따르면 배심원의 수는 5명인 경우가 3건으로 11.1%, 7명인 경우가 18건으로 66.7%, 9명인 경우가 6건으로 22.2%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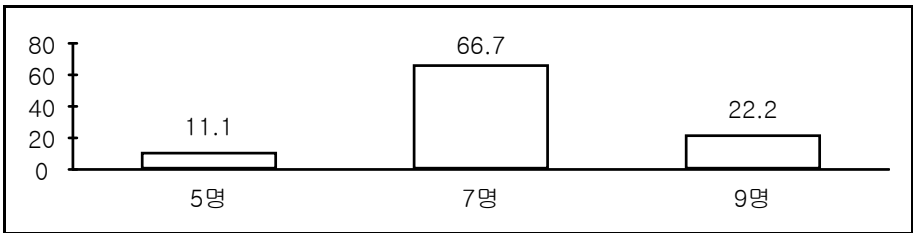


그림 2-4 참관재판 배심원수(예비배심원제외) 분포

표 2-61 참관재판 배심원 수 및 배심원후보출석수

순번	죄명	배심원수 +예비배심원수	배심원 (남자)	배심원 (여자)	배심원후보출석수 14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7명+1	3명	5명	미상
2	존속살해미수	7명+1	5명	3명	16명
3	준강도미수	7명+1	2명	6명	24명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V)

순번	죄명	배심원수 +예비배심원수	배심원 (남자)	배심원 (여자)	배심원후보출석수 145)
4	살인미수	7명+1	4명	4명	32명
5	강간미수	7명+1	4명	4명	23명
6	강간치상	7명+1	2명	6명	22명
7	강도상해	7명+1	5명	3명	29명
8	강도상해	7명+1	3명	5명	20명
9	폭행치사	7명+1	4명	4명	26명
10	준강도	7명+1	3명	5명	20명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7명+1	3명	5명	20명
12	강도상해	5명+1	1명	5명	33명
13	상해치사	7명+1	4명	4명	22명
14	살인미수	9명+1	6명	4명	30명
15	존속살해	9명	5명	4명	19명
16	강간상해	5명+1	5명	—	24명
17	강도	7명+1	4명	4명	19명
18	강간상해	9명+1	6명	4명	26명
19	강도상해	9명+1	7명	3명	22명
2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7명+1	4명	4명	41명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7명+1	5명	3명	36명
22	강제추행치상	7명+1	5명	3명	33명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7명+1	6명	2명	21명
24	살인미수	5명+1	2명	4명	19명
25	상해치사	7명+1	5명	3명	24명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강간등)	9명+1	6명	4명	21명
27	존속살해	9명+1	5명	5명	34명

145)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의 수는 해당 재판 담당 사무관에게 직접 확인한 수치임.

성별에 따른 배심원수를 살펴보면 남자가 더 많은 경우가 12건으로 44.4%, 여자가 더 많은 경우는 8건으로 29.6%, 남녀비율이 동일한 경우는 7건으로 2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61, 그림 2-5 참고). 즉, 배심원단 구성에 있어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높았던 재판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법원에서 배심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 성별 분포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법원행정처 『2008-2010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가운데 배심원관련 내용에서 성별분포를 보면 남성이 52.2%, 여성이 47.8%로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법원행정처, 2011).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인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회 일반의 보편적 정서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배심원 구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즉, 배심원 구성에 있어서는 성별 뿐 아니라 연령, 직업 등의 고른 분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심원 구성에 대한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제 배심원후보로 출석한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뿐 아니라 해당 재판의 사건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하지만 본 연구진의 참관자료로는 불가능하다. 이에 배심원 구성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조사연구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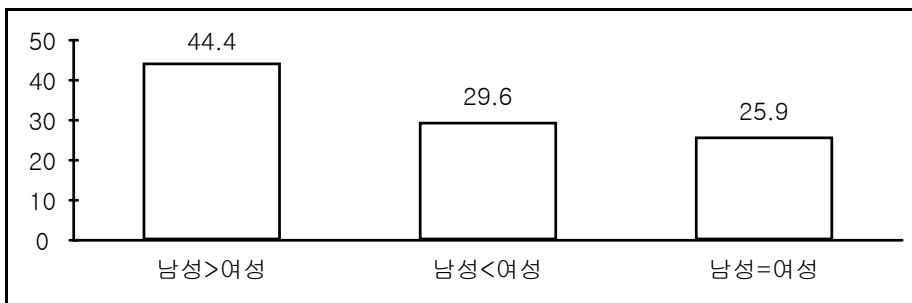


그림 2-5 참관재판 배심원 성별 분포

표 2-62 참관사건 배심원 선정기일 소요시간 및 공판진행 시간

순번	배심원 선정소요시간	공판 진행 일수	공판시작 ¹⁴⁶⁾	배심원 유·무죄평의 및 형량토의시간	최종 선고기일 ¹⁴⁷⁾
1	100분	1일	11:15	60분	18:30
2	85분	1일	11:10	45분	17:55
3	70분	1일	11:00	70분	20:40
4	90분	1일	11:15	120분	19:30
5	100분	9일 ¹⁴⁸⁾	11:20	180분	22:00
6	90분	1일	11:00	120분	18:30
7	130분	1일	11:50	200분	22:15
8	110분	1일	11:00	30분	16:35
9	70분	1일	11:00	150분	20:50
10	100분	1일	10:53	130분	20:50
11	90분	1일	11:15	80분	18:30
12	27분	1일	10:51	60분	15:50
13	110분	1일	11:20	60분	22:20
14	130분	1일	11:40	150분	20:30
15	105분	1일	11:00	120분	20:30
16	120분	1일	11:00	60분	18:00
17	110분	1일	11:00	70분	20:40
18	60분	1일	10:45	30분	23:15
19	75분	1일	11:00	120분	23:50
20	120분	2일	11:50	180분	22:15
21	90분	1일	11:00	180분	22:20
22	60분	1일	11:00	120분	23:00
23	100분	1일	11:25	180분	21:20
24	75분	1일	11:00	150분	19:30
25	90분	1일	11:10	60분	21:30
26	110분	2일	11:10	180분	20:30
27	105분	1일	11:00	120분	22:30

146) 2일 이상 공판이 진행되는 경우 첫 공판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함.

147) 2일 이상 공판이 진행되는 경우 공판 마지막 날 최종판결 후 시간을 기준으로 함.

148)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선고기일이 연기됨.

한편, 참관사건의 배심원 선정기일 소요시간과 공판진행일수, 배심원 유·무죄평의 및 형량토의 시간, 그리고 최종선고시간은 <표 2-62>와 같다. 배심원 선정 시간의 경우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가 전체 27건 가운데 15건(55.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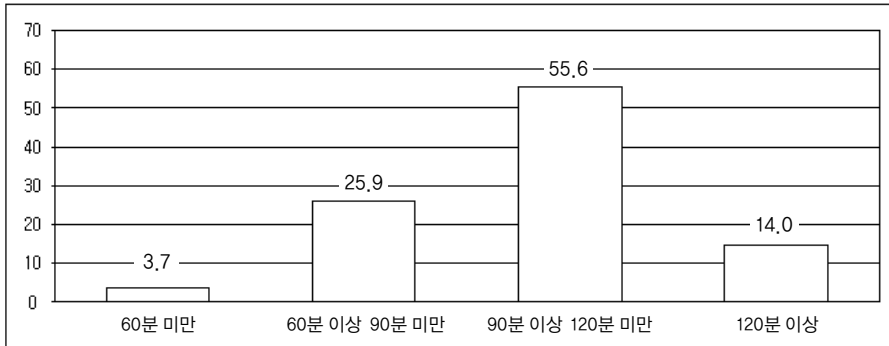


그림 2-6 참관재판 배심원 선정소요시간 분포

공판진행일수는 참관사건 대부분이 하루 만에 최종선고까지 마치는 경우가 27건 가운데 24건(88.9%)이었고, 배심원 유·무죄평의 및 형량토의 시간은 120분 이상인 경우가 16건(59.3%)으로 가장 많았고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경우가 8건으로 29.6%를 차지하고 있다(표 2-62, 그림 2-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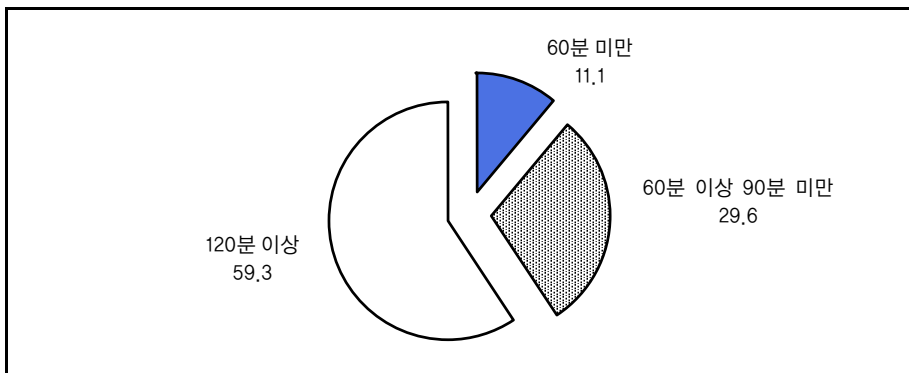


그림 2-7 참관재판 배심원 평의 및 형량토의 시간분포

공판종료시간을 보면 저녁 8시 이후에 끝나는 경우가 66% 이상이었다(표 2-62, 그림 2-8 참고). 즉, 참관재판의 60% 이상이 공판진행시간이 하루 9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배심원 선정기일이 당일 오전 9시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11시간 동안 계속해서 배심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진행되는 공판진행방식은 배심원뿐 아니라 피고인, 재판 부, 재판 진행 관련자 모두에게 과연 효율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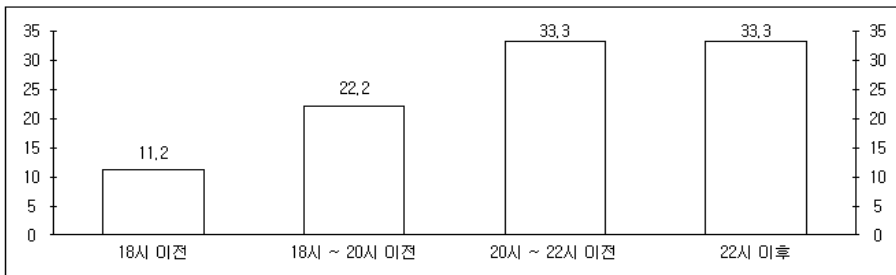


그림 2-8 참관재판 공판종료시간 분포

한편, 아래의 〈그림 2-9〉에서 나타나듯이 참관재판에서 사선변호사와 국선변호사 비율을 살펴보면 국선변호사인 경우가 전체의 27건 가운데 23건으로 85.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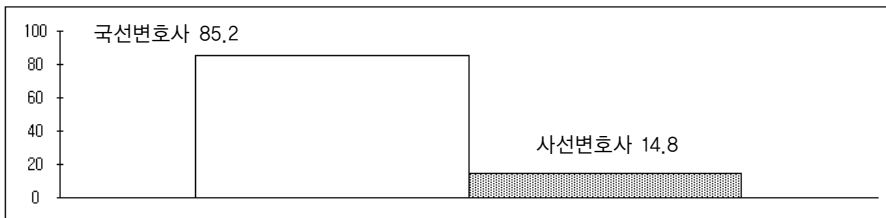


그림 2-9 참관재판 사선변호인 선임/국선변호인 선정 비율

참관재판의 항소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사건 27건 가운데 10건(37.0%)이 항소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는 10건(37.0%), 검사가 항소한 경우는 3건

(11.1%), 쌍방이 항소한 경우는 4건(14.8%)으로 나타났다.¹⁴⁹⁾

3. 참관재판의 평결/판결 일치 및 양형의견/선고형량 분포

〈표 2-63〉에서 나타나듯이 참관사건에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여 유·무죄 판단이 바뀐 사례는 없었다. 또한 양형의견과 선고형량 분포를 살펴보면 27건 가운데 24건이 배심원의 양형의견 중 다수의견과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근접했다.¹⁵⁰⁾ 법원행정처의 『2008-2010 국민참여재판 성과와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321건 가운데 91.0%에 해당하는 사건이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였고 93.8%가 배심원의 양형의견 중 다수의견과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근접하였고, 이는 재판부와 배심원이 형량토의를 함께 하면서 선고형량에 대한 의견이 유사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법원행정처, 2010).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양형토의과정에서 배심원의 양형의견이 판사의 의견에 따라 변화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 절에서 배심원 대상 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표 2-63 참관재판의 배심원 의견 및 판결

순번	죄명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선고	항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	유죄(만장일치) 징역 3년(다수)	징역 3년	피고인
2	존속살해미수	유죄(만장일치) 징역 2년 6월(다수)	징역 2년 6월 치료감호	피고인
3	준강도미수	유죄(만장일치) 징역 6월~1년 6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사회봉사 160시간	검사

149) 참관재판의 항소여부의 경우는 참관조사가 종료된 후 추가적으로 항소진행여부를 확인한 결과임.

150) 양형의견과 선고형량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1년임.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V)

순번	죄명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선고	항고
4	살인미수	유죄(만장일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5	강간미수	1. 강간미수 - 무죄(만장일치) 2. 강제추행 - 유죄(만장일치) 벌금 1천500만원		징역 1년	쌍방
6	강간치상	소년부송치결정			×
7	강도상해	1. 강도상해무죄(다수결) 2. 건조물침입유죄(다수결) 3. 폭처법유죄(만장일치) 징역 1년 6월(다수)		징역 1년 6월	쌍방
8	강도상해	유죄(만장일치)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피고인
9	1. 폭행치사	1. 유	폭행치사 - 유죄(만장일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1.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2. 벌금 100만원	×
	2. 폭행	2. 남	폭행 - 유죄(만장일치) 벌금형		
10	준강도	1. 준강도 - 무죄(만장일치) 2. 야간주거침입절도 - 유죄(다수) 징역 2년(다수)		징역 2년	피고인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	유죄(만장일치) 징역 3년(다수)		징역 3년	피고인
12	강도상해	유죄(만장일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다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
13	상해치사	유죄(만장일치)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5년		징역 2년 6월	쌍방
14	살인미수	유죄(만장일치) 징역 2년(집행유예 5년)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검사
15	존속살해	유죄(다수) 징역 7년~10년		징역 8년 치료감호	피고인

순번	죄명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선고	항고
16	강간상해	유죄(만장일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검사
17	강도	1. 강도죄 - 유죄(만장일치) 2. 폭처법 - 유죄(만장일치) 징역 3년(다수)		징역 2년 6월	피고인
18	강간상해	유죄(다수) 징역 3년(다수)		징역 3년	피고인
19	강도상해	박	유죄(만장일치) 징역 4년	징역 4년	피고인
		민	유죄(만장일치) 징역 3년 6월	징역 3년 6월	
		유			
		이			
2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간)	1. 상해 - 유죄(다수) 2. 특수강제추행, 흥기휴대폭행, 특수강간, 상해, 특수강간, 강간 - 무죄(만장일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쌍방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	유죄(만장일치) 징역 4년(다수)		징역 4년	×
22	강제추행치상	1. 재물손괴 - 무죄(만장일치) 2. 강제추행치상 - 유죄(만장일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다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시간	×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	유죄(만장일치) 징역 3년		징역 3년	×
24	살인미수	유죄(만장일치) 징역 3년(다수)		징역3년	×
25	상해치사	유죄(만장일치) 징역 6년(다수)		징역 5년 치료감호	피고인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유죄(만장일치) 징역 10년(다수)		징역 10년 벌금 30만원	×
		유죄(만장일치) 징역 15년(다수)		징역 11년	
27	존속살해	유죄(다수결) 징역 12년(다수)		징역 12년 치료감호	×

제2절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배심원(후보) 대상 조사의 경우 우편회수방식으로 자료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의 성격을 미리 파악하여 조사결과 해석에 대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의 일반적인 특징의 분포가 비슷해야만 집단간 비교 분석이 유효할 것이다. 이에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의 성별이나 연령, 학력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표 2-64>에서 나타나듯이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기는 하지만 배심원후보의 경우 여성이 전체의 60.3%로 남성(39.7%)에 비해 많았고 배심원은 남성이 52.2%로 여성(47.8%)보다 많았다. 또한 연령대는 배심원후보의 경우 40대가 전체의 31.0%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30대가 각각 25.9%, 40대가 10.3% 등의 순이며 배심원은 40대가 30.0%, 30대가 24.4%, 50대가 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는 배심원후보와 배심원 모두 대졸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배심원후보: 56.9%, 배심원: 57.8%). 직업별로 살펴보면 배심원후보의 경우 관리 및 전문직이 전체의 22.4%로 가장 많았고 배심원은 관리 및 전문직과 사무직이 각각 20.0%로 동일한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근로조건에서 배심원후보의 경우는 전업주부나 학생, 무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직(25.9%)이 가장 많았고 배심원도 역시 정규직(34.4%)이 가장 많았다.¹⁵¹⁾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도 배심원후보의 경우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전체의 27.6%로 가장 많고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22.4%,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배심원의 경우에는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22.2%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이 20.0%, '400만원~500만원 미만'이 16.7%,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15.6% 등의 순이다.

151) '해당사항없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하지 않거나 전업주부, 학생을 의미함

표 2-64 국민참여재판 경험여부에 따른 일반적인 성격(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단위 : 명, %)

		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배심원후보	배심원	(df) χ^2
성별	남성	23(39.7)	47(52.2)	(df=1) 2.235 n.s.
	여성	35(60.3)	43(47.8)	
연령대	20대	15(25.9)	13(14.4)	(df=5) 10.322 n.s.
	30대	15(25.9)	22(24.4)	
	40대	18(31.0)	27(30.0)	
	50대	6(10.3)	17(18.9)	
	60대	2(3.4)	11(12.2)	
	70대 이상	2(3.4)	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4(6.9)	7(7.8)	(df=2) .073 n.s.
	고졸	21(36.2)	31(34.4)	
	대졸 이상	33(56.9)	52(57.8)	
직업	관리 및 전문직	13(22.4)	18(20.0)	(df=8) 9.698 n.s.
	사무직	8(13.8)	18(20.0)	
	서비스판매직	7(12.1)	13(14.4)	
	농/어/임업	2(3.4)	3(3.3)	
	기술/기능직	2(3.4)	12(13.3)	
	단순노무직	2(3.4)	6(6.7)	
	전업주부	11(19.0)	9(10.0)	
	학생	6(10.3)	5(5.6)	
근로조건	무직	7(12.1)	6(6.7)	(df=6) 8.840 n.s.
	정규직	15(25.9)	31(34.4)	
	비정규직	7(12.1)	15(16.7)	
	자영업	8(13.8)	10(11.1)	
	자유직(프리랜서)	2(3.4)	5(5.6)	
	일용(임시)직	2(3.4)	6(6.7)	
	기타	0(0.0)	3(3.3)	
가구소득	해당 없음	24(41.4)	20(22.2)	(df=6) 6.910 n.s.
	100만원 미만	3(5.2)	3(3.3)	
	100~200만원 미만	11(19.0)	14(15.6)	
	200~300만원 미만	16(27.6)	20(22.2)	
	300~400만원 미만	13(22.4)	13(14.4)	
	400~500만원 미만	4(6.9)	15(16.7)	
	500만원 미만	6(10.3)	18(20.0)	
	모름	5(8.6)	7(7.8)	

n.s.=not significant

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대상 조사결과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여러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면서 공판에 직접 참여한 배심원과 그렇지 않은 배심원후보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배심원으로서 참여한 경험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진행방식과 내용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을 정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인지도

배심원(후보)로 참여하기 전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 2-65>과 같다. 즉,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대강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41.2%이고 ‘이름만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35.8%, ‘전혀 모른다’의 응답이 20.9%로 나타나 비교적 높지 않은 인지도임을 알 수 있다.¹⁵²⁾

표 2-65 배심원(후보) 참여 전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단위 : 명, %)

응답 범주	빈도	백분율
전혀 모른다	31	20.9
이름만 들어본 적 있다	53	35.8
대강 알고 있다	61	41.2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	3	2.0
전체	148	100.0

152) 실제 배심원 선정기일에 참석한 배심원후보의 경우 법원출석통지를 받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는 경우가 많았음.

2.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 2-66>에서 나타나듯이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아 약 90.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 법지식 향상’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1.4%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다른 효과요인에 대한 응답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재판 투명성 향상’(48.3%),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44.6%), ‘재판결과 신뢰성 향상’(4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66 참고). 이처럼 직접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해보면서 실제 법지식이 향상되었다는 판단아래 이러한 응답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실제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배심원 후보와 배심원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표 2-66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에 대한 응답분포(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단위 : 명, %)

구분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재판의 공정성 향상	1 (0.7)	6 (4.1)	87 (58.8)	54 (36.5)	148 (100.0)
재판의 투명성 향상	1 (0.7)	6 (4.1)	69 (46.9)	71 (48.3)	147 (100.0)
재판결과 신뢰성 향상	—	13 (8.8)	70 (47.3)	65 (43.9)	148 (100.0)
피고인 인권 보장	1 (0.7)	15 (10.2)	85 (57.8)	46 (31.3)	147 (100.0)
국민의 법지식 향상	—	10 (6.8)	62 (41.9)	76 (51.4)	148 (100.0)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	—	13 (8.8)	69 (46.6)	66 (44.6)	148 (100.0)

다음의 <표 2-67>에서 나타나듯이 국민참여재판 효과에 대해 배심원의 응답이 배심원후보의 응답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재판의 공정성 향상’을 제외하고 5가지 효과에 있어서는 응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면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지니는 장점을 직접 경험한 결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한 기초단계 성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항목별 응답 차이를 살펴보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재판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의 경우 배심원후보의 경우는 84.7%, 배심원은 95.6%이며, 재판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응답은 배심원후보가 89.7%, 배심원이 92.2%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인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에 있어서는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이 87.9%로 동일하지만 ‘매우 그렇다’의 비율을 보면 배심원후보는 15.5%에 불과하지만 배심원은 41.6%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 법지식 향상’의 경우에는 ‘정말 그렇다’의 응답이 배심원이 61.1%, 배심원후보가 36.2%였으며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에 대한 ‘정말 그렇다’의 응답은 배심원이 53.3%, 배심원후보가 31.0%로 나타났다.

표 2-67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 χ^2
		배심원후보		배심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재판의 공정성 향상	매우 그렇다	15	25.9	39	43.3	(df=3) 5.571 n.s.
	약간 그렇다	40	69.0	47	52.2	
	별로 아니다	3	5.2	3	3.3	
	전혀 아니다	—	—	1	1.1	
전체		58	100.0	90	100.0	
재판의 투명성 향상	매우 그렇다	19	33.3	52	57.8	(df=3) 9.419*
	약간 그렇다	35	61.4	34	37.8	
	별로 아니다	3	5.3	3	3.3	
	전혀 아니다	—	—	1	1.1	
전체		57	100.0	90	100.0	

구분		조사대상				(df) χ^2
		배심원후보		배심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재판결과 신뢰성 향상	매우 그렇다	18	31.1	47	52.2	(df=3) 6.455*
	약간 그렇다	34	58.6	36	40.0	
	별로 아니다	6	10.3	7	7.8	
	전혀 아니다	—	—	—	—	
전체		58	100.0	90	100.0	
피고인 인권 보장	매우 그렇다	9	15.5	37	41.6	(df=3) 12.124*
	약간 그렇다	42	72.4	43	48.3	
	별로 아니다	7	12.1	8	9.0	
	전혀 아니다	—	—	1	1.1	
전체		58	100.0	89	100.0	
국민의 법지식 향상	매우 그렇다	21	36.2	55	61.1	(df=3) 10.444*
	약간 그렇다	60	51.7	32	35.6	
	별로 아니다	7	12.1	3	3.3	
	전혀 아니다	—	—	—	—	
전체		58	100.0	90	100.0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	매우 그렇다	18	31.0	48	53.3	(df=3) 7.264*
	약간 그렇다	33	56.9	36	40.0	
	별로 아니다	7	12.1	6	6.7	
	전혀 아니다	—	—	—	—	
전체		58	100.0	90	100.0	

* $p < .05$ n.s.=not significant

3.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적(종교적) 편견이나 선입견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9.9%로 다른 우려에 비해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여론의 향배’(34.0%), ‘금전적 혹은 정치적 영향’(17.6%), ‘학연이나 지연’(15.0%)의 순이다(표 2-68 참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는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접 심리에 참여하면서 유·무죄와 양형 판단이 해 본 경험이 있는 배심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표 2-68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단위 : 명, %)

구분	전혀 영향없음	별로 영향없음	약간 영향있음	많이 영향있음	전체
학연이나 지연	78 (53.1)	47 (32.0)	21 (14.3)	1 (0.7)	147 (100.0)
금전적 혹은 정치적 영향	87 (28.8)	35 (23.6)	21 (14.2)	5 (3.4)	148 (100.0)
여론의 향배	55 (37.4)	42 (28.6)	40 (27.2)	10 (6.8)	147 (100.0)
개인적(종교적) 편견이나 선입견	56 (37.8)	33 (22.3)	50 (33.8)	9 (6.1)	148 (100.0)

그렇다면 배심원후보와 배심원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서 응답의 차이가 .0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고 배심원후보의 경우 배심원에 비해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69 참고). 앞서 언급했듯이 조사에 응한 배심원의 경우 직접 유·무죄 평의와 양형 토의 등을 통해 자신 뿐 아니라 다른 배심원의 판단과정을 경험하였기에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실관계 이외의 외부적 요인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2-69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의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 χ^2
		배심원후보		배심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연이나 지연	전혀 없음	14	24.6	64	71.1	(df=3) 31.276***
	별로 없음	28	49.1	19	21.1	
	약간 있음	14	24.6	7	7.8	
	매우 큼	1	1.8	—	—	
전체		57	100.0	90	100.0	

구분		조사대상				(df) χ^2
		배심원후보		배심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금전적 혹은 정치적 영향	전혀 없음	20	34.5	67	74.4	(df=3) 25.582***
	별로 없음	19	32.8	16	17.8	
	약간 있음	15	25.9	6	6.7	
	매우 큼	4	6.9	1	1.1	
전체		58	100.0	90	100.0	
여론의 향배	전혀 없음	8	14.0	47	52.2	(df=3) 25.112***
	별로 없음	21	36.8	21	23.3	
	약간 있음	20	35.1	20	22.2	
	매우 큼	8	14.0	2	2.2	
전체		57	100.0	90	100.0	
개인적(종교적) 편견이나 선입견	전혀 없음	9	15.5	47	52.2	(df=3) 21.550***
	별로 없음	20	34.5	13	14.4	
	약간 있음	24	41.4	26	28.9	
	매우 큼	5	8.6	4	4.4	
전체		58	100.0	90	100.0	

*** p<.001

4. 배심원 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

배심원의 유·무죄판단과 양형판단이 최종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2-70>과 같다. 즉,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과 ‘형량에 대한 배심원 의견’ 모두 최종판결에 참고만 하는 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형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만 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89.1%)이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에서 ‘참고만 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8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형량 판단에 있어서는 유·무죄의 판단보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표 2-70 배심원 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단위 : 명, %)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		형량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배심원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	118	80.3	131	89.1
배심원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25	17.0	13	8.8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이어야 한다	4	2.7	3	2.0
전체	147	100.0	147	100.0

한편, 이러한 배심원 판단의 기속력 여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배심원후보와 배심원간의 응답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던지 형량에 대한 판단이던지 모든 항목에 있어서 응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2-71, 표 2-72 참고). 하지만 <표 2-71>에서 나타나듯이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에 있어서 배심원 후보의 경우에는 ‘배심원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86.0%, ‘배심원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10.5%,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3.5%였고 배심원의 경우는 각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76.7%, 21.1%, 2.2%였다. 배심원의 경우 배심원 후보에 비해 ‘배심원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2-71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 χ^2
	배심원후보		배심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배심원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	49	86.0	69	76.7	(df=2) 2.887 n.s.
배심원 의견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6	10.5	19	21.1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이어야 한다	2	3.5	2	2.2	
전체	57	100.0	90	100.0	

n.s.=not significant

〈표 2-72〉에서 나타나듯이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대한 기속력에 있어서는 배심원후보의 경우 ‘배심원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91.2%, ‘배심원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5.3%,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3.5%였고 배심원의 경우는 각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87.8%, 11.1%, 1.1%였다. 앞서 살펴본 배심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의 기속력 여부에서도 나타나듯이 배심원이 배심원후보에 비해 배심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표 2-71 참고)

표 2-72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의 ‘양형 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 χ^2
	배심원후보		배심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배심원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	52	91.2	79	87.8	(df=2) 2,379 n,s
배심원 의견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3	5.3	10	11.1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이어야 한다	2	3.5	1	1.1	
전체	57	100.0	90	100.0	

n.s.=not significant

5. 배심원일당 수준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하루 일당(10만원)에 대해 그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는지 많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적당하다’는 응답이 전체 147건 가운데 103건으로 전체의 7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73 참고).

표 2-73 ‘배심원일당 수준’에 대한 응답분포(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단위 : 명, %)

	빈도	백분율
적다	42	28.6
적당하다	103	70.1
많다	2	1.4
전체	147	100.0

한편, 국민참여재판에 늦은 시간까지 참여하여 배심원 일당을 지급받은 배심원과 그렇지 않은 배심원후보간의 응답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배심원의 경우 지급금액이 ‘적다’는 응답이 34.4%로 배심원후보(19.3%)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2-74 참고).

표 2-74 배심원 후보와 배심원의 ‘배심원일당 수준’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χ ²
	배심원후보		배심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적다	11	19.3	31	34.4	(df=2) 3.956 n.s.
적당하다	45	78.9	58	64.4	
많다	1	1.8	1	1.1	
전체	57	100.0	90	100.0	

n.s.=not significant

6. 배심원으로서의 참여의사 관련

가.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

다음에 또 배심원으로 참여할 기회가 온다면 참여하겠느냐고 물어본 결과 ‘꼭 참여하고 싶다’가 전체의 4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급적 참여하고 싶다’가 38.8%,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가 18.4%,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가

2.7%로 나타났다(표 2-75 참고). 즉, 배심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78%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의 모든 절차에 참여했던 배심원과 배심원 선정기일에만 참여했던 배심원후보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표 2-75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에 대한 응답분포(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단위 : 명, %)

	빈도	백분율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4	2.7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27	18.4
가급적 참여하고 싶다	57	38.8
꼭 참여하고 싶다	59	40.1
전체	147	100.0

배심원후보와 배심원간의 응답차이를 살펴본 결과 배심원후보의 참여의사가 배심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2-76 참고). 물론, 응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배심원후보의 참여의사가 배심원에 비해 높은 이유는 배심원 선정기일에서 기피대상으로 되어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다음 기회에는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76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의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χ ²
	배심원후보		배심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1	1.8	3	3.3	(df=3) 1.332 n.s.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9	15.8	18	20.0	
가급적 참여하고 싶다	25	43.9	32	35.6	
꼭 참여하고 싶다	22	38.6	37	41.1	
전체	57	100.0	90	100.0	

n.s.=not significant

나. 배심원으로서 참여가능 시간

재판진행 참여 가능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 결과 <표 2-77>에서 나타나듯이 ‘2일 정도’란 응답이 전체의 3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하루만’(27.7%), ‘기간에 상관없음’(20.5%) 등의 순이다.

표 2-77 ‘배심원으로서 재판진행 참여 가능 기간’에 대한 응답분포(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단위 : 명, %)

	빈도	백분율
하루만	31	27.7
2일 정도	43	38.4
3일 정도	15	13.4
기간에 상관없음	23	20.5
전체	112	100.0

한편, 재판진행 참여가능 기간에 있어서 배심원후보와 배심원간 의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고 배심원후보와 배심원 모두 ‘2일 정도’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표 2-78 참고).

표 2-78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의 ‘배심원으로서 재판진행 참여 가능 기간’에 대한 응답 차이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χ ²
	배심원후보		배심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하루만	9	19.6	22	33.3	(df=3) 4.285 n.s.
2일 정도	19	41.3	24	36.4	
3일 정도	9	19.6	6	9.1	
기간에 상관없음	9	19.6	14	21.2	
전체	46	100.0	66	100.0	

n.s.=not significant

〈표 2-79〉에서 나타나듯이 재판진행 참여가능 종료시간에 있어서는 ‘오후 8시 정도’란 응답이 전체의 37.4%로 가장 많았고 ‘오후 6시 정도’가 33.9%, ‘시간에 상관없음’이 22.6% 등의 순이다.

표 2-79 ‘재판진행 참여 가능 종료시간’에 대한 응답분포(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단위 : 명, %)

	빈도	백분율
오후 6시 정도	39	33.9
오후 8시 정도	43	37.4
자정까지	7	6.1
시간에 상관없음	26	22.6
전체	115	100.0

재판진행 참여가능시간에 있어서 배심원후보와 배심원간의 의견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배심원후보의 경우에는 ‘오후 6시 정도’의 응답이 전체의 39.1%로 가장 많았고 배심원은 ‘오후 8시 정도’의 응답이 39.1%로 가장 많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표 2-80 참고). 배심원의 경우 ‘오후 8시 정도’의 응답이 많은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참관재판의 60% 이상이 저녁 8시 이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그림 2-8 참고) 그 한계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 예상된다.

표 2-80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의 ‘재판진행 참여 가능 종료시간’에 대한 응답 차이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 χ^2
	배심원후보		배심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오후 6시 정도	18	39.1	21	30.4	(df=3) 1.162 n.s.
오후 8시 정도	16	34.8	27	39.1	
자정까지	2	4.3	5	7.2	
시간에 상관없음	10	21.7	16	23.2	
전체	46	100.0	69	100.0	

n.s.=not significant

재판진행 참여 가능기간별 종료시간을 조합하여 살펴본 결과 ‘2일 정도/오후 8시 정도’란 응답이 19.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하루만 오후 6시 정도’(14.4%), ‘2일 정도/오후 6시 정도’(10.8%), ‘기간/시간에 상관없음’(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81 참고).

표 2-81 재판진행 참여 가능 기간별 종료시간(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단위 : 명, %)

		빈도	백분율
하루만	오후 6시 정도	16	14.4
	오후 8시 정도	10	9.0
	자정까지	2	1.8
	시간에 상관없음	3	2.7
2일 정도	오후 6시 정도	12	10.8
	오후 8시 정도	22	19.8
	자정까지	2	1.8
	시간에 상관없음	6	5.4
3일 정도	오후 6시 정도	5	4.5
	오후 8시 정도	4	3.6
	자정까지	2	1.8
	시간에 상관없음	4	3.6
기간에 상관없음	오후 6시 정도	5	4.5
	오후 8시 정도	6	5.4
	자정까지	1	0.9
	시간에 상관없음	11	9.9
합계		111	100.0

한편,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이 참여가능 기간별 종료시간이 다른지 살펴보면, 배심원 후보와 배심원 모두 이틀정도 오후 8시까지 참여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심원후보의 경우는 ‘2일 정도/오후 8시까지’(22.2%), ‘하루만/오후 6시까지’(15.6%), ‘2일 정도/오후 6시까지’(11.1%), ‘3일 정도/오후 6시까지’(11.1%), ‘기간/시간에 상관없음’(8.9%) 등의 순이다. 배심원의

경우는 ‘2일 정도/오후 8시까지’(18.2%), ‘하루만 오후 6시 정도’(13.6%), ‘하루만 오후 8시 정도’(13.6%), ‘2일 정도 오후 6시 정도’(10.6%), ‘기간/시간에 상관없음’(10.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응답의 차이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표 2-82 참고).

표 2-82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의 ‘재판진행 참여 가능 기간별 종료시간’에 대한 응답 차이

(단위 : 명, %)

		조사대상				(df) χ^2
		배심원후보		배심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하루만	오후 6시 정도	7	15.6	9	13.6	(df=15) 17.780 n.s.
	오후 8시 정도	1	2.2	9	13.6	
	자정까지	0	0.0	2	3.0	
	시간에 상관없음	1	2.2	2	3.0	
2일 정도	오후 6시 정도	5	11.1	7	10.6	
	오후 8시 정도	10	22.2	12	18.2	
	자정까지	0	0.0	2	3.0	
	시간에 상관없음	3	6.7	3	4.5	
3일 정도	오후 6시 정도	5	11.1	0	0.0	
	오후 8시 정도	2	4.4	2	3.0	
	자정까지	1	2.2	1	1.5	
	시간에 상관없음	1	2.2	3	4.5	
기간에 상관없음	오후 6시 정도	1	2.2	4	6.1	
	오후 8시 정도	3	6.7	3	4.5	
	자정까지	1	2.2	0	0.0	
	시간에 상관없음	4	8.9	7	10.6	
합계		45	100.0	66	100.0	

n.s.=not significant

7.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6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20.5%), ‘가능성이 아주 높다’(8.2%), ‘가능성이 아주 낮다’(4.1%)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83 참고). 즉,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75% 이상이었다.

표 2-83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한 응답분포(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단위 : 명, %)

응답 범주	빈도	백분율
가능성이 아주 낮다	6	4.1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30	20.5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98	67.1
가능성이 아주 높다	12	8.2
전체	146	100.0

〈표 2-84〉에서 나타나듯이 배심원후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이 배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표 2-84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한 응답 차이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χ ²
	배심원후보		배심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능성이 아주 낮다	3	5.4	3	3.3	(df=3) .727 n.s.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10	17.9	20	22.2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38	67.9	60	66.7	
가능성이 아주 높다	5	8.9	7	7.8	
전체	56	100.0	90	100.0	

n.s.=not significant

제3절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용 절차에 대한 이해 및 평가

1. 배심원 선정기일에 대한 이해 및 평가

가. 배심원 선정기일 출석 동기

배심원으로서 참여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표 2-85>에서 나타나듯이 ‘재판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 때문에’ 참여하였다는 응답이 8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국민으로서의 권리의식 때문에’(88.5%), ‘민주시민으로서의 사명감’(84.3%), ‘불출석시 과태료 때문에’(69.5%)의 순이다. 이처럼 배심원후보로 출석한 이유가 재판에 대한 호기심이나 궁금증 때문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지 새로운 재판형식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 2-85 ‘배심원 선정기일 출석 동기’에 대한 응답분포(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단위 : 명, %)

구분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약간 있음	매우 큼	전체
국민으로서의 권리의식 때문에	1 (0.7)	16 (10.9)	68 (46.3)	62 (42.2)	147 (100.0)
민주시민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	23 (15.6)	69 (46.9)	55 (37.4)	147 (100.0)
불출석시 과태료 때문에	15 (10.1)	30 (20.3)	68 (45.9)	35 (23.6)	148 (100.0)
재판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 때문에	2 (1.4)	13 (9.0)	57 (39.6)	72 (50.0)	144 (100.0)

한편, <표 2-86>에서 나타나듯이 배심원후보와 배심원간의 응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표 2-86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의 ‘배심원 선정기일 출석 동기’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 χ^2
		배심원후보		배심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국민으로서의 권리의식 때문에	전혀 없음	1	1.8	—	—	(df=3) 5.933 n.s.
	별로 없음	4	7.0	12	13.3	
	약간 있음	32	56.1	36	40.0	
	매우 큼	20	35.1	42	46.7	
전체		57	100.0	90	100.0	
민주시민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전혀 없음	—	—	—	—	(df=3) .723 n.s.
	별로 없음	10	17.5	13	14.4	
	약간 있음	28	49.1	41	45.6	
	매우 큼	19	33.3	36	40.0	
전체		57	100.0	90	100.0	
불출석 시 과태료 때문에	전혀 없음	4	6.9	11	12.2	(df=3) 1.427 n.s.
	별로 없음	13	22.4	17	18.9	
	약간 있음	26	44.8	42	46.7	
	매우 큼	15	25.9	20	22.2	
전체		58	100.0	90	100.0	
재판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 때문에	전혀 없음	1	1.8	1	1.1	(df=3) 4.130 n.s.
	별로 없음	3	5.5	10	11.2	
	약간 있음	27	49.1	30	33.7	
	매우 큼	24	43.6	48	53.9	
전체		55	100.0	89	100.0	

n.s.=not significant

나. 배심원 선정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불편함

배심원 선정기일은 공정한 재판이 되기 위한 1차 단계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배심원의 의무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고 해당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배심원을 선정해야 한다. 향후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심원 선정기일에 대한 전문성확보가 우선이다.¹⁵³⁾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심원 선정기일에 참석한 배심원후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어떠한 점을 어려워하고 불편해하

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표 2-87>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배심원 선정기일에 참석한 배심원(후보)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선정대기시간과 배심원 선정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는 응답이 각각 2.18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

표 2-87 배심원 선정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불편함(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단위 : 명, %)

구분	전혀 아님	별로 아님	약간 맞음	매우 맞음	전체
선정과정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93 (62.8)	42 (28.4)	10 (6.8)	3 (2.0)	148 (100.0)
선정과정동안 부적절한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	45 (30.4)	85 (57.4)	17 (11.5)	1 (0.7)	148 (100.0)
사생활침해에 해당되는 배심원 선정질문	69 (46.9)	48 (32.7)	29 (19.7)	1 (0.7)	147 (100.0)
선정과정까지 오랜 대기시간	31 (21.4)	61 (42.1)	48 (33.1)	5 (3.4)	145 (100.0)
오래 진행된 배심원 선정	29 (20.0)	65 (44.8)	46 (31.7)	5 (3.4)	145 (100.0)
올바르지 않은 배심원 선정 방식	71 (48.3)	57 (38.8)	15 (10.2)	4 (2.7)	148 (100.0)

한편, 배심원 선정기일에서 기피대상이 된 배심원후보와 배심원 선정기일에서 선정된 배심원간의 의견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 2-88>에서 나타나듯이 ‘사생활에 해당되는 배심원 선정질문’과 ‘오래 진행된 배심원 선정과정’이라는 항목에서 배심원후보와 배심원간의 의견 차이가 .05수준에서 유의미하여 배심원후보가 배심원에 비해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사생활에 해당되는 질문을 받았다거나 배심원 선정과정이 오래 진행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배심원 선정과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다른 항목의 경우 두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153) 본 연구진이 참관한 배심원 선정기일과 『국민참여재판 백서』에 나타난 배심원 선정 질문내용을 정리해본 결과, 정형화된 질문양식이 부재하여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배심원에 비해 배심원후보의 경우 배심원 선정과정에 대한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배심원 선정에서 기피된 후보자들에게 배심원 선정기일 및 배심원 기피과정 관련 설명을 보다 충분하게 하여 배심원 선정기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줄여야 할 것이다.¹⁵⁴⁾

표 2-88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의 ‘배심원 선정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불편함’ 차이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 χ^2
		배심원후보		배심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선정과정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전혀 아님	34	58.6	59	65.6	(df=3) 1.920 n.s.
	별로 아님	20	34.5	22	24.4	
	약간 맞음	3	5.2	7	7.8	
	아주 맞음	1	1.7	2	2.2	
전체		58	100.0	90	100.0	
선정과정동안 부적절한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	전혀 아님	17	29.3	28	31.1	(df=3) 2.116 n.s.
	별로 아님	32	55.2	53	58.9	
	약간 맞음	8	13.8	9	10.0	
	아주 맞음	1	1.7	—	—	
전체		58	100.0	90	100.0	
사생활침해에 해당되는 배심원 선정질문	전혀 아님	19	33.3	50	55.6	(df=3) 10.230*
	별로 아님	20	35.1	28	31.1	
	약간 맞음	17	29.8	12	13.3	
	아주 맞음	1	1.8	—	—	
전체		57	100.0	90	100.0	
선정과정까지 오랜 대기시간	전혀 아님	7	12.3	24	27.3	(df=3) 4.661 n.s.
	별로 아님	27	47.4	34	38.6	
	약간 맞음	21	36.8	27	30.7	
	아주 맞음	2	3.5	3	3.4	
전체		57	100.0	88	100.0	

154) 실제 배심원 선정기일에서 기피대상이 되어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고 귀가하는 배심원후보 가운데 “오기 전에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하지 않냐”, “내가 왜 배심원이 안되냐” “아침 일찍부터 왔더니 또 바로 가야되냐” 등의 항의가 많았음.

구분		조사대상				(df) χ^2
		배심원후보		배심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오래 진행된 배심원 선정	전혀 아님	5	8.6	24	27.6	(df=3) 8.599*
	별로 아님	32	55.2	33	37.9	
	약간 맞음	19	32.8	27	31.0	
	아주 맞음	2	3.4	3	3.4	
전체		58	100.0	87	100.0	
올바르지 않은 배심원 선정 방식	전혀 아님	26	44.8	45	50.6	(df=3) 2.376 n.s.
	별로 아님	23	39.7	34	38.2	
	약간 맞음	6	10.3	9	10.1	
	아주 맞음	3	5.2	1	1.1	
전체		58	100.0	89	100.0	

* p<.05 n.s.=not significant

2. 공판과정에 대한 이해 및 평가

가. 공판과정에 대한 이해도

배심원이 공판과정에 참여하면서 재판진행 및 사건관련 이해 내용과 정도를 살펴보면 <표 2-89>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항목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항목별로 보면 ‘사건에 대한 판사의 설명’에 대해 완전히 이해되었다는 응답이 7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재판진행에 대한 판사의 설명’(71.1%), ‘사건죄명이나 죄명’(66.7%), ‘검사의 입증과 주장’(43.3%), ‘법률용어’(41.1%), ‘변호인의 변론내용’(34.8%)의 순이다. 즉, 배심원의 경우 재판진행방식이나 사건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는 잘하고 있는 반면 검사의 입증과정이나 변호사의 변론의 내용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워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공판과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서 배심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공판과정에 대한 이해정도에 있어서 성별, 연령, 학력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¹⁵⁵⁾

표 2-89 공판과정에 대한 이해도

(단위 : 명, %)

구분	전혀 이해 못함	약간 이해 못함	약간 이해됨	완전히 이해됨	전체
재판진행에 대한 판사의 설명	1 (1.1)	5 (5.6)	20 (22.2)	64 (71.1)	90 (100.0)
사건죄명이나 죄명	1 (1.1)	6 (6.7)	23 (25.6)	60 (66.7)	90 (100.0)
사건에 대한 판사의 설명	1 (1.1)	5 (5.6)	18 (20.2)	65 (73.0)	89 (100.0)
검사의 입증과 주장	1 (1.1)	15 (16.7)	35 (38.9)	39 (43.3)	90 (100.0)
변호인의 변론내용	2 (2.2)	20 (22.5)	36 (40.4)	31 (34.8)	89 (100.0)
법률 용어	2 (2.2)	13 (14.4)	38 (42.2)	37 (41.1)	90 (100.0)

나. 공판과정에서의 판사·검사·변호사 역할 평가

먼저, 공판과정에서 판사 역할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표 2-90>에서 나타나듯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항목별로 ‘매우 충분했다’는 응답률을 살펴보면 ‘배심원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등의 노력’은 70.0%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건에 대한 중립적인 자세’는 67.8%, ‘재판을

- 155) 성별, 연령, 학력별 공판과정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성별의 경우, ‘재판진행과 관련된 판사의 설명’(df=3, $\chi^2=1.087$), ‘사건의 죄명이나 죄명의 내용’(df=3, $\chi^2=1.535$), ‘사건에 대한 판사의 설명’(df=3, $\chi^2=1.461$), ‘검사의 입증과 주장’(df=3, $\chi^2=1.479$), ‘변호사의 변론내용’(df=3, $\chi^2=2.328$), ‘재판 중 사용된 법률용어’(df=3, $\chi^2=1.881$)로 나타남. 연령의 경우는 ‘재판진행과 관련된 판사의 설명’(df=12, $\chi^2=10.826$), ‘사건의 죄명이나 죄명의 내용’(df=12, $\chi^2=12.877$), ‘사건에 대한 판사의 설명’(df=12, $\chi^2=14.296$), ‘검사의 입증과 주장’(df=12, $\chi^2=16.675$), ‘변호사의 변론내용’(df=12, $\chi^2=14.929$), ‘재판 중 사용된 법률용어’(df=12, $\chi^2=8.689$)로 나타남. 학력의 경우는 ‘재판진행과 관련된 판사의 설명’(df=6, $\chi^2=5.466$), ‘사건의 죄명이나 죄명의 내용’(df=6, $\chi^2=8.332$), ‘사건에 대한 판사의 설명’(df=6, $\chi^2=8.332$), ‘검사의 입증과 주장’(df=6, $\chi^2=10.915$), ‘변호사의 변론내용’(df=6, $\chi^2=13.239$), ‘재판 중 사용된 법률용어’(df=6, $\chi^2=5.518$)로 .05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위한 사전준비'는 61.1%, '공판시간의 효율적인 배분'은 42.2%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범운영 중으로 배심원에 대한 판사의 배려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며, '공판시간의 효율적인 배분'에 대한 항목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배심원의 입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표 2-90 공판과정에서 판사 역할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부족	약간 부족	약간 충분	매우 충분	전체
재판을 위한 사전준비	1 (1.1)	8 (8.9)	26 (28.9)	55 (61.1)	90 (100.0)
배심원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등의 노력	-	6 (6.7)	21 (23.3)	63 (70.0)	90 (100.0)
사건에 대한 중립적인 자세	-	6 (6.7)	23 (25.6)	61 (67.8)	90 (100.0)
공판시간의 효율적인 배분	2 (2.2)	11 (12.2)	39 (43.3)	38 (42.2)	90 (100.0)

다음으로 공판과정에서의 검사 역할에 대한 평가도 판사 역할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응답이 많았다. 공판과정에서의 검사역할에 대해 '매우 충분했다'는 응답률을 보면 '재판을 위한 사전준비', '배심원 설득을 위한 노력'이 각 50.0%로 동일하였고 '입증방식의 다양화'는 47.8%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배심원이 판단하기에 재판을 위한 검사의 사전준비에 대해 매우 충분했다는 응답 50.0%는 앞서 살펴본 판사의 사전준비에 대한 응답(61.1%)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이다(표 2-90, 표 2-91 참고). 즉, 이는 공판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살펴본 <표 2-89>에서 나타나듯이 검사의 입증 및 주장에 대한 이해가 판사의 설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과 맞물려 이해할 수 있다.

표 2-91 공판과정에서 검사 역할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부족	약간 부족	약간 충분	매우 충분	전체
재판을 위한 사전준비	1 (1.1)	11 (12.2)	33 (36.7)	45 (50.0)	90 (100.0)
배심원 설득을 위한 노력	1 (1.1)	12 (13.3)	32 (35.6)	45 (50.0)	90 (100.0)
입증방식의 다양화	1 (1.1)	13 (14.4)	33 (36.7)	43 (47.8)	90 (100.0)

세 번째로 공판과정에서의 변호사역할에 대한 평가를 보면 다음의 <표 2-89>와 같다. 공판과정에서의 변호사 역할에 대해 ‘매우 충분했다’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배심원 설득을 위한 노력’이 42.7%로 가장 높았고 ‘재판을 위한 사전준비’가 33.7%, ‘입증방식의 다양화’가 23.6%의 순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판사와 검사에 비해 그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92 참고). 이러한 결과 역시 앞서 살펴본 <표 2-89>에서 나타나듯이 배심원의 ‘변호사의 변론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낮았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배심원의 이해와 평가를 높이기 위해 ‘입증방식의 다양화’ 등의 변호사 노력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표 2-92 공판과정에서 변호사 역할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부족	약간 부족	약간 충분	매우 충분	전체
재판을 위한 사전준비	1 (1.1)	14 (15.7)	44 (49.4)	30 (33.7)	89 (100.0)
배심원 설득을 위한 노력	5 (5.6)	14 (15.7)	32 (36.0)	38 (42.7)	89 (100.0)
입증방식의 다양화	7 (7.9)	28 (31.5)	33 (37.1)	21 (23.6)	89 (100.0)

다. 배심원으로서 공판 중 적극적 의사표현

공판 중 배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공판도중 궁금한 점을 메모로 적어 판사에게 제시하거나 직접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결과 <표 2-93>에서 나타나듯이 전체 배심원 90명 가운데 ‘있다’는 응답이 16명으로 17.8%를 차지하고 있다. 공판과정 중 배심원의 능동적 참여는 법원이나 판사로 부터의 교육과 함께 배심원의 판단능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논의를 통해 제도의 허용범위 내에서 공판 중 배심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2-93 공판 중 적극적 의사표현

(단위 : 명, %)

	있다		없다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배심원의 적극적 행동	16	17.8	74	82.2	90	100.0

3. 유·무죄 평의 및 양형 토의과정에 대한 이해 및 평가

본 조사에 응답한 배심원 90명 가운데 9명(10.0%)이 예비배심원으로 평의·평결 및 형량토의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무죄평의 및 형량 토의과정 관련 항목에서는 예비배심원 9명을 제외한 배심원 81명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가. 유·무죄 평의에 대한 이해 및 평가

1) 유·무죄 평의시 판사의 법률적 의견 제시 필요성

심리에 참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판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박미숙 외 2008). 만일, 과반수의

배심원의 요청이 있을 때나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해당 재판의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이때에도 판사는 유·무죄에 관한 의견이 아닌 법률적인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다. 유·무죄 평의과정에 있어서 판사의 법률적인 의견을 들었던 조사응답자 가운데 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우선 유·무죄 평의결과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응답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표 2-94>에서 나타나듯이 전체 81명 가운데 38명으로 절반이 넘지 않았다.

표 2-94 ‘유·무죄 최초 평의 결과’에 대한 응답분포

(단위 : 명, %)

	만장일치		만장일치 아님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평의결과	43	53.1	38	46.9	81	100.0

한편, 배심원의 유·무죄 평의결과가 만장일치가 아니어서 판사의 의견 제시가 있었을 때 자신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느냐”의 질문에 ‘약간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의 전체의 39.5%로 가장 많았으나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응답도 36.8%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2-95 참고).

표 2-95 유·무죄 평의과정에서 유·무죄 평의에서 최초의견이 유무죄 대립인 경우 판사의 의견의 영향력

(단위 : 명, %)

구분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약간 있음	많이 있음	전체
판사의견의 영향력	4 (10.5)	14 (36.8)	15 (39.5)	5 (13.2)	38 (100.0)

<표 2-96>은 유·무죄 평의과정에서 판사의 의견 제시로 인하여 배심원의 의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즉, 앞의 <표 2-95>에서 나타나

듯이 ‘판사의 의견이 약간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판사의견과 달랐다가 동일해지는 경우’는 13.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판사의견과 계속 달랐다’는 의견도 21.1%로 나타나 판사의 의견개진 정도가 배심원의 의사판단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주도적인 배심원 평의과정을 통한 결과로 해석가능 할 것이다.

표 2-96 유·무죄 평의과정에서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 최초의견이 최종의견과 판사의견과의 차이

(단위 : 명, %)

구분	처음부터 판사의견과 동일	판사의견과 동일했다가 달라짐	판사의견과 달랐다가 동일	판사의견과 계속 다름	전체
최초의견과 최종의견의 변화	23 (60.5)	2 (5.3)	5 (13.2)	8 (21.1)	38 (100.0)

한편,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의과정에서 판사의 의견제시에 대한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유·무죄 평결이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 판사의 법률적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과연 배심원의 입장에서도 유·무죄 평의과정에서 판사의 법률적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에 배심원에게 유·무죄 평의 및 평결을 할 때 판사의 의견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필요없다’는 의견이 전체의 66.2%로 나타났다(표 2-97 참고). 이러한 판사의견의 필요성에 대해 유·무죄 평의결과가 만장일치가 아니어서 판사의견을 들었던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의견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표 2-98>과 같다.

표 2-97 유·무죄 평의에서 처음부터 판사 의견의 필요성

(단위 : 명, %)

	필요없다		필요있다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판사의견의 필요성	53	66.2	27	33.8	80	100.0

즉, <표 2-98>에서 나타나듯이 판사개입 경험에 따라 판사 개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판사개입 경험에 있는 응답자의 경우 유·무죄 평의과정에서 판사 개입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전체의 73.0%로 판사개입 경험이 없는 응답자(60.5%)보다 응답률이 높다.

표 2-98 판사개입 경험별 유·무죄 평의 중 판사 의견의 필요성

(단위 : 명, %)

	판사 개입 경험		(df) χ^2
	무	유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필요없다	26(60.5)	27(73.0)	(df=1) 1.392 n.s.
필요있다	17(39.5)	10(27.0)	
전체	43(100.0)	37(100.0)	

n.s.=not significant

또한 사건죄명별로 판사의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2-99>와 같다. 즉, 성범죄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유·무죄 평의가 시작될 때부터 판사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2.1%로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높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판사의 개입을 통해서도 의견변화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유·무죄 평의과정에서 판사의 법률적 의견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9 죄명별 유·무죄 평의에서 처음부터 판사 의견의 필요성

(단위 : 명, %)

	사건죄명					(df) χ^2
	살인 등	상해치사 등	강도 등	성범죄	기타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필요없다	18(75.0)	6(75.0)	11(64.7)	11(57.9)	7(58.3)	(df=4) 2.043 n.s.
필요있다	6(25.0)	2(25.0)	6(35.3)	8(42.1)	5(41.7)	
전체	24(100.0)	8(100.0)	17(100.0)	19(100.0)	12(100.0)	

n.s.=not significant

2) 유·무죄 평의과정에서의 의견개진 및 상호토론 정도

배심원의 유·무죄 평의과정에서 의견개진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00 참고). 즉, 응답척도의 비율로 ‘매우 충분했다’는 응답의 전체의 58.0%를 차지하여 유·무죄 평의과정에서 배심원들은 유·무죄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00 유·무죄 평의과정에서 의견개진 정도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부족	약간 부족	약간 충분	매우 충분	전체
평의과정에서 의견개진정도	-	4 (4.9)	30 (37.0)	47 (58.0)	81 (100.0)

한편, 평의과정시 상호토론 정도를 보면 역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음을 예상할 수 있다(표 2-101 참고). 즉, 평의과정에서 상호토론이 ‘약간 충분하였다’의 응답이 51.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매우 충분하였다’는 응답이 34.6%, ‘약간 부족하였다’는 응답(13.6%) 순이었다.

표 2-101 유·무죄 평의과정에서 상호토론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부족	약간 부족	약간 충분	매우 충분	전체
평의과정에서 상호토론정도	-	11 (13.6)	42 (51.9)	28 (34.6)	81 (100.0)

3) 유·무죄에 대한 최종판단의 어려움

유·무죄 최종결정의 어려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약간 어려웠다’는 응답이 35.8%, ‘별로 어렵지 않았다는 응답이 32.1%, ‘전혀 어렵지 않았다는 응답이 18.5%로 ‘어렵지 않았다는 응답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02 참고).

유·무죄 평의과정에서 최종결정의 어려움을 성별, 연령별, 학력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¹⁵⁶⁾

표 2-102 유·무죄에 대한 최종판단의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전체
유·무죄 최종결정의 어려움	15 (18.5)	26 (32.1)	29 (35.8)	11 (13.6)	81 (100.0)

사건죄명별로 유·무죄에 대한 최종판단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유·무죄 판단이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표 2-103 참고). 이는 앞서 살펴본 <표 2-99>에서처럼 성범죄의 경우 유·무죄 평의 시작단계에서부터 판사 의견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2 이상을 차지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표 2-103 사건죄명별 ‘유·무죄 최종판단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사건죄명					(df) χ^2
	살인 등	상해치사 등	강도 등	성범죄	기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어려웠다	4 (16.7)	1 (12.5)	1 (5.6)	4 (21.1)	1 (8.3)	(df=12) 31.339*

156) 성별에 따른 유·무죄 판단의 어려움 인식의 차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무죄 판단의 어려움을 느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기는 했지만 그 차이가 .05수준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df=3, $\chi^2=7.69$). 또한 연령별로 살펴보면 2,30대보다는 40대 이상이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df=12, $\chi^2=10.094$). 최종학력간 차이에 있어서는 중졸 이하인 경우가 고졸 이상이 경우보다 ‘매우 어려웠다’는 응답이 많기는 했지만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df=6, $\chi^2=10.128$).

구분	사건죄명					(df) χ^2
	살인 등	상해치사 등	강도 등	성범죄	기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약간 어려웠다	8 (33.3)	1 (12.5)	4 (22.2)	10 (52.6)	6 (50.0)	
별로 어렵지 않았다	10 (41.7)	2 (25.0)	12 (66.7)	2 (10.5)	-	
전혀 어렵지 않았다	2 (8.3)	4 (50.0)	1 (5.6)	3 (15.8)	5 (41.7)	
전체	24 (100.0)	8 (100.0)	18 (100.0)	19 (100.0)	12 (100.0)	

* $p < .05$

4) 유·무죄에 대한 최종판단의 결정요인

유·무죄의 최종판단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2-104〉와 같다. 즉, 유·무죄의 최종판단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영향이 있었다는 응답률을 비교해보면 ‘제출된 증거’는 91.4%로 가장 높았고 ‘배심원 의견과 토의내용’이 72.9%,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 64.2%, ‘배심원 중 주도적 주장’과 ‘장시간 재판으로 인한 피로감’이 각각 48.2% 등으로 나타났다. 즉, 유·무죄 최종판단 결정에 있어서 ‘제출된 증거’와 ‘배심원의견과 토의내용’, 그리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의 주요 요인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나 ‘배심원 중 주도적 주장’과 ‘장시간으로 인한 피로감’ 역시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높아 특정인의 의견만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원활한 토론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장시간 진행을 요하는 1일 공판주의가 과연 효율적일 수 있을까란 우려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2-104 유·무죄에 대한 최종판단의 결정요인

(단위 : 명, %)

구분	전혀 영향없음	별로 영향없음	약간 영향있음	매우 영향 큼	전체
제출된 증거	3(3.7)	4(4.9)	28(34.6)	46(56.8)	81 (100.0)
배심원의견과 토의내용	3(3.7)	19(23.5)	43(53.1)	16(19.8)	81 (100.0)
배심원 중 주도적 주장	25(30.9)	34(42.0)	19(23.5)	3(3.7)	81 (100.0)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	13(16.0)	29(35.8)	37(45.7)	2(2.5)	81 (100.0)
피고인측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36(44.4)	27(33.3)	16(19.8)	2(2.5)	81 (100.0)
피해자가 처한 상황	6(7.4)	23(28.4)	41(50.6)	11(13.6)	81 (100.0)
장시간 재판으로 인한 피로감	25(30.9)	17(21.0)	31(38.3)	8(9.9)	81 (100.0)

나. 양형 토의과정에 대한 이해 및 평가

1) 양형 토의과정에 대한 이해도

배심원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참여한 판사에게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판사와 함께 양형에 대해 함께 토의한다. 배심원의 형량 토의과정에서 판사의 설명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 결과 <표 2-105>에서 나타나듯이 ‘충분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05 양형토의 시작시 판사설명에 대한 이해도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부족	약간 부족	비교적 충분	매우 충분	전체
형량 토의에 대한 판사의 설명에 대한 이해	3 (3.8)	6 (10.3)	36 (46.2)	31 (39.7)	76 (100.0)

2) 양형 토의과정에서의 의견 변화

앞서 살펴본 바대로 배심원의 형량의견과 최종선고 형량이 유사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재판부와 배심원의 형량토의를 함께한 결과로 보인다(표 2-63 참고). 이에 과연 형량 토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의견과 최종 형량을 결정된 후의 의견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에 양형토의 과정에서는 판사와 함께 토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판사 의견의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판사와의 의견 일치도 정도를 살펴본 결과, 처음부터 판사의견과 동일하다는 의견이 전체 50.7%, 판사의견과 계속 다르다는 의견이 22.7%, 판사의견과 동일했다가 달라졌다는 의견, 판사의견과 달랐다가 동일해졌다는 의견이 각 13.3%로 나타났다(표 2-106 참고). 즉, 최종 형량 판단에 있어서 배심원의 의견이 판사와 동일하다는 응답이 64%, 판사와 의견이 다른 경우가 36%이다. 양형 토의의 경우 판사의 설명을 우선적으로 듣고 배심원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판사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표 2-106 양형 토의 최초의견이 최종의견과 판사의견과의 차이

(단위 : 명, %)

구분	최초부터 판사의견과 동일	판사의견과 동일했다가 달라짐	판사의견과 달랐다가 동일	판사의견과 계속 다름	전체
최초의견과 최종의견의 변화	38 (50.7)	10 (13.3)	10 (13.3)	17 (22.7)	75 (100.0)

3) 양형 토의과정에서의 의견개진 정도 및 상호토론 정도

양형 토의과정에서의 의견개진 정도를 살펴보면 ‘충분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07 참고). 하지만 앞서 살펴본 <표 2-100>에서처럼 유·무죄 평의과정에서의 의견개진정도가 ‘매우 충분했다’는 응답이 58.0%인데 반해 양형 토의과정에서의 응답은 41.0%에 그치고 있어 양형 토의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유·무죄 평의과정에서 보다 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상호토론 정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표 2-107 양형 토의과정에서 의견개진 정도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부족	약간 부족	약간 충분	매우 충분	전체
형량 토의과정에서 의견개진정도	-	7 (9.0)	39 (50.0)	32 (41.0)	78 (100.0)

〈표 2-108〉에서 나타나듯이 양형 토의과정에서 상호토론이 ‘충분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75.6%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유·무죄 평의과정에서의 상호토론정도(86.5%)에 비해 낮다(표 2-101 참고). 이는 배심원의 입장에서 형량토의 과정이 유·무죄 평의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2-108 양형 토의과정에서 상호토론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부족	약간 부족	약간 충분	매우 충분	전체
형량 토의과정에서 상호토론정도	-	19 (24.4)	44 (56.4)	15 (19.2)	78 (100.0)

4) 양형에 대한 최종판단의 어려움

실제로 형량토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09 참고). 이 수치는 앞서 살펴본 유·무죄 최종 결정의 어려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배심원은 상대적으로 양형 결정을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102 참고).

표 2-109 양형에 대한 최종판단의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전체
형량 최종결정의 어려움	4 (5.1)	28 (35.9)	33 (42.3)	13 (16.7)	78 (100.0)

유·무죄 평의과정에서의 최종결정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형량 결정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성별이나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¹⁵⁷⁾ 한편, 사건죄명별로 살펴본 결과 <표 2-110>에서 나타나듯이 앞서 살펴본 <표 2-103>와 마찬가지로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형량 결정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많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2-110 사건죄명별 ‘양형 판단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 차이

(단위 : 명, %)

구분	사건죄명					(df) χ^2
	살인 등	상해치사 등	강도 등	성범죄	기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어려웠다	2 (8.3)	3 (37.5)	-	7 (35.8)	1 (8.3)	(df=12) 18.635 n.s.
약간 어려웠다	9 (37.5)	1 (12.5)	9 (60.0)	7 (36.8)	7 (58.3)	
별로 어렵지 않았다	12 (50.0)	3 (37.5)	5 (33.3)	4 (21.1)	4 (33.3)	
전혀 어렵지 않았다	1 (4.2)	1 (12.5)	1 (6.7)	1 (5.3)	-	
전체	24 (100.0)	8 (100.0)	15 (100.0)	19 (100.0)	12 (100.0)	

n.s.=not significant

157) 성별에 따른 유·무죄 판단의 어려움 인식의 차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무죄 판단의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기는 했지만 그 차이가 .05수준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df=3, $\chi^2=3.824$). 또한 연령별로 살펴보면 2,30대보다는 40대 이상이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df=12, $\chi^2=10.745$). 최종확력간 차이에 있어서는 대졸 이상인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어려웠다는 응답이 많기는 했지만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df=6, $\chi^2=10.386$).

5) 양형에 대한 최종판단의 결정요인

배심원을 대상으로 형량의 최종판단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각 요인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물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111>과 같다.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법률기준이 89.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배심원의견과 토의내용(79.2%), 판사의 의견(75.3%), 피해자가 처한 상황(60.0%) 등의 순이었다. 즉, 배심원의 형량 판단기준에 있어서 법률기준, 배심원의견과 토의내용, 판사의 의견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배심원의견과 토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앞으로 평의 및 형량토의가 보다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의·평결 및 양형토의 과정에 대한 모의 영화를 제작하여 보여주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2-111 양형 최종판단의 결정요인

(단위 : 명, %)

구분	전혀 영향없음	별로 영향없음	약간 영향있음	매우 영향 큼	전체
법률기준	2(2.6)	6(7.8)	25(32.5)	44(57.1)	77(100.0)
배심원의견과 토의내용	—	16(20.8)	50(64.9)	11(14.3)	77(100.0)
배심원 중 주도적 주장	20(26.0)	35(45.5)	18(23.4)	4(5.2)	77(100.0)
판사의 의견	7(9.1)	12(15.6)	41(53.2)	17(22.1)	77(100.0)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	13(17.1)	24(31.6)	36(47.4)	3(3.9)	76(100.0)
피고인 측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35(45.5)	28(36.4)	13(16.9)	1(1.3)	77(100.0)
피해자가 처한 상황	8(10.7)	22(29.3)	37(49.3)	8(10.7)	75(100.0)
장시간 재판으로 인한 피로감	23(29.9)	22(28.6)	25(32.5)	7(9.1)	77(100.0)

4. 배심원으로서 어려움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대해 사실인정 뿐 아니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고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박미숙 외, 2008). 배심원은 심리도중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는 그 장소를 떠날 수 없는 등과 같은 배심원의 의무와 권한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 할 수 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로 어려워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 결과는 <표 2-112>와 같다.

표 2-112 ‘배심원으로서 어려움’에 대한 응답분포

(단위 : 명, %)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법률지식 및 이해 관련 어려움	25 (27.8)	54 (60.0)	9 (10.2)	-	88(100.0)
배심원 역할에 대한 부담	22 (24.4)	53 (57.8)	15 (16.7)	-	90(100.0)
배심원 출석관련 어려움	29 (32.2)	42 (46.7)	17 (18.9)	2 (2.2)	90(100.0)
공판참여 힘들	11 (12.2)	37 (41.1)	35 (38.9)	7 (7.8)	90(100.0)

<표 2-112>에서 나타나듯이 ‘공판참여 힘들’을 제외하고는 어렵지 않았다는 의견이 70% 이상을 차지하여 배심원으로서 어려움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심리 중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거나 장시간 진행 등의 ‘공판참여 힘들’의 경우 어려웠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았고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하거나 참여로 인한 생계 부담 등의 ‘배심원 출석관련 어려움’(21.1%), 그 다음으로 ‘배심원 역할에 대한 부담’(16.7%), ‘법률지식 및 이해 관련 어려움’(10.2%)의 순이다. 한편, 배심원으로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있어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다른지 살펴본 결과, ‘배심원 역할에 대한 부담’에서는 성별차이(df=2 $\chi^2=9.561^*$)가 ‘법률지식

및 이해관련 어려움'에서는 연령(df=2 $\chi^2=18.219^*$) 학력(df=2 $\chi^2=11.075^*$)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피고인과의 직접대면이나 유·무죄 및 양형 판단 등의 배심원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에 있어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법률지식 및 이해관련 어려움'에서는 중졸 이하의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이해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심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심원 설명서에 법률용어나 증거판단 기준 등과 같은 설명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하여 배심원의 충분한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제4절 소결

지금까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배심원의 인식 및 태도, 배심원(후보)으로서 참여한 국민참여재판 운용과정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효과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재판의 공정성 향상', '재판의 투명성 향상', '재판결과 신뢰성 향상', '피고인 인권보장', '국민 법지식 향상',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약 90.0% 이상을 차지했다(표 2-66 참고). 한편, 배심원이 배심원후보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아 배심원의 경우 공판과 평의·평결 및 양형토의과정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를 직접 경험한 결과로 보인다(표 2-67 참고).

두 번째, 배심원이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할 때 사실관계보다는 학연이나 지연, 정치적 요인, 여론의 향배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이 배심원후보가 배심원에 비해 더 높았다(표 2-69 참고).

세 번째, 배심원의 유·무죄판단과 양형판단이 최종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배심원후보와 배심원 모두 배심원 의견을 참고만 하는 지금의 국민참여재판제도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71 참고). 특히 유·무죄판단보다 양형판단에 있어서 '배심원 의견은 참고만 하면된다'의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형량 판단은 유·무죄판단보다 전문성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네 번째, 배심원에게 지급되는 하루 일당 금액에 대해서는 배심원이 배심원후보에 비해 '적다'는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는 했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2-74 참고).

다섯 번째, '다음에 또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싶냐'의 질문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전체의 78% 이상을 차지하였다(표 2-75 참고). 한편, 통계적으로 응답의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배심원후보가 배심원보다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배심원 선정기일에서 기피대상으로 되어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다음 기회에는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표 2-76 참고).

여섯 번째,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심원후보가 배심원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많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표 2-83, 표 2-84 참고).

이처럼 배심원후보와 배심원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 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리과정과 평의·평결 및 양형토의과정을 경험한 배심원과 배심원 선정기일에만 참여한 배심원후보간의 견해와 시각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효과에 대한 기대와 배심원판단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배심원이 배심원후보에 비해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배심원의 국민참여재판과정에 대한 이해 및 평가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배심원 선정기일 출석 동기를 보면 '재판에 대한 호기심이나 궁금증 때문에'라는 응답이 89.6%로 다른 요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국민으로서 권리의식 때문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등의 순이다(표 2-85 참고). 앞으로는 배심원으로서의 참여가 새로운 재판형식에 대한 호기심 수준을 넘어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공판과정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특히, '사건에 대한 판사의 설명'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였다'는 응답이 71.1%로 가장 높았고 '변호인의 변론내용'이 34.8%로 가장 낮았다(표 2-89 참고).

세 번째, 판사·검사·변호사의 '재판을 위한 사전준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역할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많지만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90, 표 2-91, 표 2-92 참고).

네 번째, 유·무죄 평의과정에서 판사의 법률적 의견제시의 필요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필요없다'는 의견이 전체의 66% 이상을 차지하였고 실제 유·무죄 평의 중 판사개입 경험에 있는 경우가 판사의 의견 제시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판사개입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표 2-97, 표 2-98 참고).

다섯 번째, 유·무죄 평의과정에서 의견개진 정도와 상호토론 정도에 대해 충분하였다는 응답이 각 95.0%와 86.5%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음을 예상할 수 있다(표 2-100, 표 2-101 참고).

여섯 번째, 유·무죄판단이 어렵지 않았는지 물어보았더니 '어렵지 않았다'는 의견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표 2-102 참고). 한편, 유·무죄 판단시 영향을 준 요인을 살펴본 결과 '제출된 증거'와 '배심원의 의견과 토의내용',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표 2-104 참고).

일곱 번째, 양형토의과정에서 의견개진이 '충분했다'는 의견이 전체의 90% 이상이었고 상호토론이 충분했다는 의견은 70% 이상을 차지하여 앞서 살펴본 유·무죄 평의과정보다 의견개진 정도와 상호토론 정도가 원활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표 2-100, 표 2-101, 표 2-107, 표 2-108 참고).

여덟 번째, 양형판단이 어렵지 않았는지 물어본 결과 '어려웠다'는 의견이 50% 이상을 차지하여 유·무죄판단보다는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102 2-109 참고). 한편 양형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법률기준', '배심원 의견과 토의내용', '판사의 의견' 등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표 2-111 참고).

이처럼 배심원의 국민참여재판과정에 대한 이해 및 평가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재판제도는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가 높고 양형판단에 대한 부담이

유·무죄 판단보다 상대적으로 크기는 하지만 평의·평결 및 양형토의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역할수행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적능력이 우수한 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경우가 많으나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하지만 여러 사람이 서로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올바른 결론으로 도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선행 연구결과¹⁵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의·평결 및 양형토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심원으로서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겠다. 즉,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로 어려워하는지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배심원으로서 어려움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보면 심리 중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거나 장시간 진행 등의 ‘공판참여 힘들’의 경우 어려웠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참관재판의 일반적 특성에서 공판종료시간이 저녁 8시 이후가 전체의 60% 이상로 배심원 선정기일이 당일 오전 9시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11시간 동안 계속되는 배심원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그림 2-8 참고). 현행 제도의 공판진행방식이 과연 효율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배심원으로서 어려움의 요인 그 다음으로는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하거나 참여로 인한 생계 부담 등의 ‘배심원 출석관련 어려움’(21.1%), 그 다음으로 ‘배심원 역할에 대한 부담’(16.7%), ‘법률지식 및 이해 관련 어려움’(10.2%)의 순이다(표 2-112 참고). 특히, ‘법률지식 및 이해관련 어려움’의 경우에는 학력별,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 배심원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배심원 설명서를 제작하거나 공판 과정과 평의 및 양형토의 과정에 대한 모의 영화를 제작하여 보여주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배심원의 충분한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 배심원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좋은

158) Dean, C. Bamlund, "A Comparative Study of Individual, Majority and Group Judgement", Ab & Soc. Psych., 1959, p.55 ; Richard Lempert, "Undercovering Nondiscernable Differences: Empirical Research and Jury-Size Cases", 73 Mich.L. Rev 1975, pp 642-708.; 오기두, “배심원의 판단능력-과연 그 능력을 의심해서 배심제 도입을 부정할 것인가?”, 저스티스 통권 제96호, 2007, 130면 재인용.

의견을 직접 적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70% 이상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그 밖에도 배심원 선정기일 전에 1차 스크리닝 작업을 통해 배심원 선정기일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자발적인 배심원 신청제도로 참여의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평의 및 양형 토의과정에서의 불성실한 배심원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앞으로 보다 발전된 형태의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4장

피고인 대상 조사결과 분석

피고인 대상 조사결과 분석

이 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경험한 재판내용과 과정, 결과 등을 알아보면서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과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 간의 의견 및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¹⁵⁹⁾

먼저,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과 비경험 피고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죄명, 형량, 그리고 과거 복역경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표 2-113>에서 나타나듯이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간의 연령대와 최종학력, 그리고 근로조건에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두 집단간의 비교분석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 해석할 것이다.¹⁶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의 경우 30대가 전체의 2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25.1%), 50대(21.1%), 20대(14.3%) 등의 순이며, 비경험 피고인의 경우 역시 30대가 전체의 31.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0대(28.4%), 40대(20.0%),

159)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집단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가 법원의 배제결정으로 일반형사재판을 통해 선고를 받은 경우(55건)가 포함되어 있음. 본 조사는 국민참여재판 경험 여부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보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경험 피고인집단으로 구분됨.

160)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는 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집단의 비교대상으로 죄명 뿐 아니라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표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판단됨.

50대(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는 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집단에서는 중졸 이하가 전체의 47.7%로 가장 많았고, 비경험 피고인집단에서는 고졸 이하가 전체의 43.9%로 가장 많았다. 한편, 근로조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의 경우 자영업이 전체의 27.7%, 비경험 피고인의 경우는 정규직이 22.8%로 가장 많았다.

표 2-113 국민참여재판 경험여부에 따른 일반적인 성격(피고인) (단위 : 명, %)

		피고인		
		경험 피고인	비경험 피고인	(df) χ^2
성별	남성	171(97.7)	185(97.4)	(df=1)
	여성	4(2.3)	5(2.6)	.045 n.s.
연령대	10대	4(2.3)	3(1.6)	(df=5) 14.520*
	20대	25(14.3)	54(28.4)	
	30대	51(29.1)	59(31.1)	
	40대	44(25.1)	38(20.0)	
	50대	37(21.1)	29(15.3)	
	60대 이상	14(8.0)	7(3.7)	
최종학력	중졸 이하	83(47.7)	76(40.2)	(df=2) 6.576*
	고졸	78(44.8)	83(43.9)	
	대졸 이상	13(7.5)	30(15.9)	
직업	관리 및 전문직	10(5.7)	22(11.6)	(df=9) 15.000 n.s.
	사무직	12(6.9)	5(2.6)	
	서비스판매직	41(23.4)	45(23.8)	
	농/어/임업	13(7.4)	12(6.3)	
	기술/기능직	42(24.0)	52(27.5)	
	단순노무직	33(18.9)	21(11.1)	
	전업주부	0(0.0)	1(0.5)	
	학생	4(2.3)	6(3.2)	
	기타	2(1.1)	7(3.7)	
	무직	18(10.3)	18(9.5)	
근로조건	정규직	27(15.6)	43(22.8)	(df=6) 14.944*
	비정규직	21(12.1)	25(13.2)	
	자영업	48(27.7)	33(17.5)	
	자유직(프리랜서)	19(11.0)	30(15.9)	
	일용(임시)직	34(19.7)	24(12.7)	
	기타	2(1.2)	9(4.8)	
	해당없음 ¹⁶¹⁾	22(12.7)	25(13.2)	

		피고인		
		경험 피고인	비경험 피고인	(df) χ^2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2(21.2)	18(10.9)	(df=5) 8.626 n.s.
	100-200만원 미만	31(20.5)	44(26.7)	
	200-300만원 미만	36(23.8)	38(23.0)	
	300-400만원 미만	19(12.6)	20(12.1)	
	400-500만원 미만	10(6.6)	19(11.5)	
	500만원 미만	23(15.2)	26(15.8)	

* $p < .05$ n.s.=not significant

사건죄명별 분포를 보면 경험 피고인의 경우에는 살인 등(37.1%), 특가법위반 절도(24.0%), 강도 등(18.9%), 성범죄(16.0%), 상해치사 등(4.0%)의 순이며, 비경험 피고인의 경우는 특가법위반절도가 31.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성범죄(24.7%), 살인 등(20.0%), 강도 등(19.5%), 상해치사 등(4.2%)의 순이다(표 2-114 참고).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의 죄명별 분포가 법원행정처에서 발표한 범죄유형별 국민참여재판 진행 건수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본 연구에서는 수용 시설내 있는 자들로 무죄선고를 받았거나 집행유예, 혹은 가석방된 자들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¹⁶²⁾ 또한 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과 비경험 피고인간의 죄명별 분포가 다른 것은 국민참여재판 비경험 피고인을 표집할 때 경험 피고인의 죄명을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험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수용시설 내에 동일한 죄명으로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161) ‘해당없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하지 않거나 전업주부, 학생을 의미함

162) 『2008-2010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에 따르면 살인 등 34.3%, 강도 등이 27.7%, 성범죄가 17.1%, 특가법위반 등의 기타가 13.1%, 상해치사 등이 7.8%의 순임(법원행정처, 2011).

표 2-114 국민참여재판제도 경험여부에 따른 죄명 분포

(단위 : 명, %)

사건죄명	조사대상		(df) χ^2
	경험 피고인	비경험 피고인	
살인 등	65(37.1)	38(20.0)	(df=4) 14.771**
상해치사·폭행치사	7(4.0)	8(4.2)	
강도 등	33(18.9)	37(19.5)	
성범죄	28(16.0)	47(24.7)	
특가법위반(절도)	42(24.0)	60(31.6)	
전체	175(100.0)	190(100.0)	

** p<.01

한편, 형량별 분포를 보면 <표 2-115>에서 나타나듯이 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의 경우 5년 이상의 경우가 전체의 46.8%로 가장 많았고, 비경험 피고인의 경우에는 2년에서 5년 미만이 47.8%로 가장 많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115 국민참여재판제도 경험여부에 따른 형량별 분포

(단위 : 명, %)

사건죄명	조사대상		(df) χ^2
	경험 피고인	비경험 피고인	
2년 미만	12(7.0)	20(11.2)	(df=2) 2.400
2년~5년 미만	79(46.2)	85(47.8)	
5년 이상	80(46.8)	73(41.0)	
전체	171(100.0)	178(100.0)	

과거 복역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 가운데 과거 복역 경험이 있는 경우는 58.3%로 많았고, 비경험 피고인 중에는 과거 복역 경험이 없는 경우가 55.3%로 많았다(표 2-116 참고). 본 조사는 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 복역 경험에 대해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복역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개연성이 높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표 2-116 국민참여재판제도 경험여부에 따른 과거 복역 경험

(단위 : 명, %)

사건죄명	조사대상		(df) χ^2
	경험 피고인	비경험 피고인	
과거 복역 경험 있다	102(58.3)	85(44.7)	(df=1) 6.693*
과거 복역 경험 없다	73(41.7)	105(55.3)	
전체	175(100.0)	190(100.0)	

* $p < .05$

제1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 법관에 대한 신뢰

실제 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의 경우 법관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2-117>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법관의 능력과 지식에 대한 신뢰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78.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대한 충분한 검토’(60.1%), ‘금품제공 등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55.2%), ‘판결에 대한 신뢰’(52.2%) 등의 순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일반국민의 법관에 대한 신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표 2-12 참고). 이에 법관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일반국민과 피고인간의 차이가 있는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118>와 같다.

표 2-117 ‘법관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응답 분포(피고인)

(단위 : 명, %)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비교적 그렇다	정말 그렇다	전체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판결	62(17.2)	147(40.7)	136(37.7)	16(4.4)	361 (100.0)
금품제공 등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음	51(14.2)	110(30.6)	150(41.8)	48(13.4)	359 (100.0)
정치권이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음	65(18.2)	133(37.3)	126(35.3)	33(9.2)	357 (100.0)
사회적 여론에 흔들리지 않음	64(17.0)	132(36.9)	128(35.8)	34(9.5)	358 (100.0)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대한 충분한 검토	34(9.5)	109(30.4)	162(45.1)	54(15.0)	359 (100.0)
법관의 충분한 지식과 능력	19(5.3)	58(16.2)	208(57.9)	74(20.6)	359 (100.0)
판결에 대한 신뢰	32(9.0)	138(38.8)	156(43.8)	30(8.4)	356 (100.0)

표 2-118 일반국민과 피고인의 ‘법관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응답 차이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 χ^2
		일반국민		피고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판결	전혀 아니다	98	7.5	37	21.4	(df=3) 37.722***
	별로 아니다	551	42.4	64	37.0	
	비교적 그렇다	585	45.0	60	34.7	
	정말 그렇다	66	5.1	12	6.9	
전체		1,300	100.0	173	100.0	
금품제공 유혹에 흔들리지 않음	전혀 아니다	160	12.3	33	19.3	(df=3) 15.635*
	별로 아니다	554	42.6	50	29.2	
	비교적 그렇다	458	35.2	63	36.8	
	정말 그렇다	128	9.8	25	14.6	
전체		1,300	100.0	171	100.0	

구분		조사대상				(df) χ^2
		일반국민		피고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정치권외부 압력 흔들리지 않음	전혀 아니다	254	19.5	36	21.1	(df=3) 6.603 n.s
	별로 아니다	596	45.8	62	36.3	
	비교적 그렇다	328	25.2	56	32.7	
	정말 그렇다	122	9.4	17	9.9	
전체		1,300	100.0	171	100.0	
사회적 여론에 흔들리지 않음	전혀 아니다	113	8.7	40	23.4	(df=3) 36.668***
	별로 아니다	569	43.8	56	32.7	
	비교적 그렇다	497	38.2	63	36.8	
	정말 그렇다	121	9.3	12	7.0	
전체		1,300	100.0	171	100.0	
증거 증인 진술 충분한 검토	전혀 아니다	64	4.9	23	13.5	(df=3) 21.789***
	별로 아니다	404	31.1	56	32.7	
	비교적 그렇다	663	51.0	70	40.9	
	정말 그렇다	169	13.0	22	12.9	
전체		1,300	100.0	171	100.0	
법관의 충분한 지식과 능력	전혀 아니다	35	2.7	14	8.1	(df=3) 14.858*
	별로 아니다	285	21.9	31	18.0	
	비교적 그렇다	758	58.3	96	55.8	
	정말 그렇다	222	17.1	31	18.0	
전체		1,300	100.0	172	100.0	
판결에 대한 신뢰	전혀 아니다	40	3.1	23	13.5	(df=3) 52.625*
	별로 아니다	465	35.8	71	41.5	
	비교적 그렇다	723	55.6	62	36.3	
	정말 그렇다	72	5.5	15	8.8	
전체		1,300	100.0	171	100.0	

* $p < .05$ *** $p < .001$ n.s=not significant

〈표 2-118〉에서 나타나듯이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판결한다’, ‘사회적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다’, ‘증거와 증인의 진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다’, ‘법관의 충분한 지식과 능력’, ‘판결에 대한 신뢰’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의 경우 피고인이 일반국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품제공 등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참여재판 경험여부별로 ‘법관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2-119>와 같다. 즉,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판결’, ‘금품유혹에 흔들리지 않음’, ‘사회적 여론에 흔들리지 않음’,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판결에 대한 신뢰’라는 항목에서 두 집단간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전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집단의 법관에 대한 신뢰가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법관에 대한 신뢰가 낮았던 피고인들이 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에 의한 재판을 선택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119 국민참여재판제도 경험별 ‘법관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성별				(df) χ^2
		경험 피고인		비경험 피고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판결	전혀 아니다	37	21.4	25	13.3	(df=3) 10.055*
	별로 아니다	64	37.0	83	44.1	
	비교적 그렇다	60	34.7	76	40.4	
	정말 그렇다	12	6.9	4	2.1	
전체		173	100.0	188	100.0	
금품제공 유혹에 흔들리지 않음	전혀 아니다	33	19.3	18	9.6	(df=3) 8.458*
	별로 아니다	50	29.2	60	31.9	
	비교적 그렇다	63	36.8	87	46.3	
	정말 그렇다	25	14.6	23	12.2	
전체		171	100.0	188	100.0	
정치권외부 압력 흔들리지 않음	전혀 아니다	36	21.1	29	15.6	(df=3) 2.323 n.s
	별로 아니다	62	36.3	71	38.2	
	비교적 그렇다	56	32.7	70	37.6	
	정말 그렇다	17	9.9	16	8.6	
전체		171	100.0	186	100.0	
사회적 여론에 흔들리지 않음	전혀 아니다	40	23.4	24	12.8	(df=3) 9.306*
	별로 아니다	56	32.7	76	40.6	

구분		성별				(df) χ^2
		경험 피고인		비경험 피고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비교적 그렇다	63	36.8	65	34.8	
	정말 그렇다	12	7.0	22	11.8	
전체		171	100.0	187	100.0	
증거 증인 진술 충분한 검토	전혀 아니다	23	13.5	11	5.9	(df=3) 8.371*
	별로 아니다	56	32.7	53	28.2	
	비교적 그렇다	70	40.9	92	48.9	
	정말 그렇다	22	12.9	32	17.0	
전체		171	100.0	188	100.0	
법관의 충분한 지식과 능력	전혀 아니다	14	8.1	5	2.7	(df=3) 7.101 n.s.
	별로 아니다	31	18.0	27	14.4	
	비교적 그렇다	96	55.8	112	59.9	
	정말 그렇다	31	18.0	43	23.0	
전체		172	100.0	187	100.0	
판결에 대한 신뢰	전혀 아니다	23	13.5	9	4.9	(df=3) 12.273*
	별로 아니다	71	41.5	67	36.2	
	비교적 그렇다	62	36.3	94	50.8	
	정말 그렇다	15	8.8	15	8.1	
전체		171	100.0	185	100.0	

* $p < .05$ n.s.=not significant

2.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인지경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표 2-120>에서 나타나듯이 ‘대강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35.2%로 가장 많기는 했지만 ‘전혀 모른다’의 응답이 28.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이름만 들어본 적 있다’(26.4%),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9.6%)의 순이다.

표 2-120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피고인)

(단위 : 명, %)

응답 범주	빈도	백분율
전혀 모른다	105	28.8
이름만 들어본 적 있다	96	26.4
대강 알고 있다	128	35.2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	35	9.6
전체	364	100.0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국민참여재판 경험여부에 따라 다른지 살펴본 결과 <표 2-121>에서 나타나듯이 경험 피고인의 경우가 ‘전혀 모른다’의 비율이 37.7%로 비경험 피고인(20.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¹⁶³⁾ 물론, 국민참여재판 비경험 피고인이 경험 피고인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국민참여재판 비경험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제도 신청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표 2-121 국민참여재판제도 경험유무에 따른 인지도에 대한 응답 차이

(단위 : 명, %)

구분	국민참여재판제도 경험여부				(df)χ ²
	경험 피고인		비경험 피고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모른다	66	37.7	39	20.6	(df=3) 13.562 [*]
이름만 들어본 적 있다	43	24.6	53	28.0	
대강 알고 있다	53	30.3	75	39.7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	13	7.4	22	11.6	
전체	175	100.0	189	100.0	

* $p < .05$

163)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하였다가 철회하였거나, 신청하였지만 법원에서 배제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경로는 <표 2-122>에서 나타나듯이 국민참여재판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 ‘TV나 신문 등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26.8%로 가장 많았고, ‘공소장부분 송달시, 영장실질심사시’라는 응답이 21.4%, ‘경찰서나 구치소의 홍보물을 보고’의 응답이 14.5%, ‘수감생활 전 주변사람들로부터’라는 응답이 13.7% 등의 순이다.

표 2-122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경로(피고인 - 중복응답허용)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TV나 신문 등 언론보도를 통해	162	26.8
라디오나 지하철의 광고를 통해	16	2.6
인터넷 검색을 통해	16	2.6
수감생활전 주변사람들로부터	83	13.7
변호사를 통해	71	11.7
공소장부분 송달시, 영장실질심사시	129	21.4
경찰서나 구치소의 홍보물을 보고	88	14.5
경찰로부터 이야기 듣고	9	1.5
검찰로부터 이야기 듣고	19	3.1
수감생활 중 재소자들로 부터	13	2.1
전체	606	100.0

3.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

피고인이 생각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 결과, 아래의 <표 2-123>에서 나타나듯이 국민참여재판의 효과에 대한 피고인의 긍정적 응답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큼을 알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민참여재판이 ‘국민의 법지식 향상’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84.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79.7%), ‘재판의 공정성 향상’(77.9%), ‘재판의 투명성 향상’(77.4%), ‘재판결과 신뢰성 향상’(75.5%)의

순으로 나타났고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 인권보장’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가장 낮았다(70.9%).

표 2-123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에 대한 응답분포(피고인)

(단위 : 명, %)

구분	전혀 아님	별로 아님	약간 맞음	매우 맞음	전체
재판의 공정성 향상	27 (7.4)	53 (14.6)	166 (45.7)	117 (32.2)	363 (100.0)
재판의 투명성 향상	22 (6.1)	56 (15.3)	168 (46.5)	115 (31.9)	361 (100.0)
재판결과 신뢰성 향상	28 (7.8)	60 (16.7)	160 (44.4)	112 (31.1)	360 (100.0)
피고인 인권 보장	46 (12.8)	58 (16.2)	139 (38.8)	115 (32.1)	358 (100.0)
국민의 법지식 향상	25 (6.9)	33 (9.1)	160 (44.0)	146 (40.1)	364 (100.0)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	26 (7.2)	47 (13.0)	177 (49.0)	111 (30.7)	361 (100.0)

한편, 국민참여재판 경험여부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효과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지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 2-124>와 같다. 즉, 국민참여재판의 효과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비경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에 비해 보다 긍정적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특히, ‘피고인 인권 보장’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국민참여재판 비경험 피고인은 80.8%이고 경험 피고인은 60.3%로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경험한 피고인의 경우 공판 과정에서 일반형사재판에 비해 피고인 인권 보장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⁶⁴⁾ 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피고인 인권 보장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164)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배심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사의 편파진행, 인권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을 진행 중 인 경우도 있음(2010헌바379)

표 2-124 국민참여재판제도 경험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국민참여재판제도 경험여부				(df)χ ²
		경험 피고인		비경험 피고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재판의 공정성 향상	전혀 아님	22	12.6	5	2.7	(df=3) 18.968***
	별로 아님	31	17.7	22	11.7	
	약간 맞음	66	37.7	100	53.2	
	매우 맞음	56	32.0	61	32.4	
전체		175	100.0	188	100.0	
재판의 투명성 향상	전혀 아님	21	12.1	1	.5	(df=3) 31.859***
	별로 아님	34	19.5	22	11.8	
	약간 맞음	62	35.6	106	56.7	
	매우 맞음	57	32.8	58	31.0	
전체		174	100.0	187	100.0	
재판결과 신뢰성 향상	전혀 아님	23	13.3	5	2.7	(df=3) 15.914*
	별로 아님	31	17.9	29	15.5	
	약간 맞음	73	42.2	87	46.5	
	매우 맞음	46	26.6	66	35.3	
전체		173	100.0	187	100.0	
피고인 인권 보장	전혀 아님	35	20.5	11	5.9	(df=3) 22.382***
	별로 아님	33	19.3	25	13.4	
	약간 맞음	54	31.6	85	45.5	
	매우 맞음	49	28.7	66	35.3	
전체		171	100.0	187	100.0	
국민의 법지식 향상	전혀 아님	20	11.5	5	2.6	(df=3) 14.192*
	별로 아님	18	10.3	15	7.9	
	약간 맞음	77	44.3	83	43.7	
	매우 맞음	59	33.9	87	45.6	
전체		174	100.0	190	100.0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	전혀 아님	20	11.5	6	3.2	(df=3) 9.898*
	별로 아님	24	13.8	23	12.3	
	약간 맞음	81	46.6	96	51.3	
	매우 맞음	49	28.2	62	33.2	
전체		174	100.0	187	100.0	

* p<.05 *** p<.001

4.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를 살펴본 결과, <표 2-125>에서 나타나듯이 배심원이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을 결정할 때, ‘학연이나 지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45.8%, ‘금전적 혹은 정치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41.5%, ‘여론의 향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61.7%, ‘개인적 편견 등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52.6%이다. 즉, 배심원 판단에 ‘여론의 향배’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개인적(종교적) 편견이나 선입견’, ‘학연이나 지연’, ‘금전적 혹은 정치적 영향’의 순이다.

표 2-125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피고인)

(단위 : 명, %)

구분	전혀 영향없음	별로 영향없음	약간 영향있음	많이 영향있음	전체
학연이나 지연	74 (20.7)	120 (33.5)	134 (37.4)	30 (8.4)	358 (100.0)
금전적 혹은 정치적 영향	82 (22.8)	128 (35.7)	111 (30.9)	38 (10.6)	359 (100.0)
여론의 향배	45 (12.7)	91 (25.6)	143 (40.3)	76 (21.4)	355 (100.0)
개인적(종교적) 편견이나 선입견	76 (21.2)	94 (26.2)	139 (38.7)	50 (13.9)	359 (100.0)

한편,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가 국민참여재판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비경험 피고인의 경우 경험 피고인에 비해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26 참고). 특히, ‘학연이나 지연’, ‘금전적 혹은 정치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국민참여재판 경험 여부에 따라 그 응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배심원 판단에 학연이나 지연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국민참여재판 비경험 피고인의 경우에는 53.8%, 경험 피고인의 경우는 37.2%로 나타났고 금전적 혹은 정치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의 경우는 비경험 피고인은 44.1%,

경험 피고인은 38.6%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의 경우 배심원 판단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표 2-126 국민참여재판 경험별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 χ^2
		경험 피고인		비경험 피고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연이나 지연	전혀 없음	44	25.6	30	16.1	(df=3) 11.412*
	별로 없음	64	37.2	16,1	30,1	
	약간 있음	50	29.1	30,1	45.2	
	매우 큼	14	8.1	45.2	8.6	
전체		172	100.0	8.6	100.0	
금전적 혹은 정치적 영향	전혀 없음	51	29.8	31	16.5	(df=3) 9.351*
	별로 없음	54	31.6	74	39.4	
	약간 있음	48	28.1	63	33.5	
	매우 큼	18	10.5	20	10.6	
전체		171	100.0	188	100.0	
여론의 향배	전혀 없음	25	14.7	20	10.8	(df=3) 2.648 n.s.
	별로 없음	40	23.5	51	27.6	
	약간 있음	65	38.2	78	42.2	
	매우 큼	40	23.5	36	19.5	
전체		170	100.0	185	100.0	
개인적 종교적 편견	전혀 없음	38	22.1	38	20.3	(df=3) .257 n.s.
	별로 없음	44	25.6	50	26.7	
	약간 있음	67	39.0	72	38.5	
	매우 큼	23	13.4	27	14.4	
전체		172	100.0	187	100.0	

* p<.05 n.s=not significant

5. 배심원 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

현행 참여재판법률이 배심원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현행방식과는 달리 ‘배심원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무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4.2%를 차지하고, 양형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49.3%를 차지하고 있다(표 2-127 참고). 즉, 이는 배심원 판단에 대한 피고인의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표 2-127 배심원 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피고인)

(단위 : 명, %)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		형량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배심원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	128	35.6	149	41.0
배심원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195	54.2	179	49.3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이어야 한다	37	10.3	35	9.6
전체	360	100.0	363	100.0

한편, 배심원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에 있어서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과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간의 의견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128> <표 2-129>와 같다. 먼저, 배심원의 유·무죄판단에 대한 기속력에 있어서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05수준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128 참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경험 피고인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선고를 받은 경험 피고인의 경우 ‘배심원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7.9%, ‘배심원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가 28.7%,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이어야 한다’가 13.5%이다.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는 ‘배심원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0.8%, ‘배심원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가 41.8%,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이어야 한다’가 7.4%이다. 즉,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할 때 배심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이 더 높지만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기속력을 부여해야 하는 의견은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8 국민참여재판 경험별 ‘배심원의 유·무죄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 χ^2
	경험 피고인		비경험 피고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배심원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	49	28.7	79	41.8	(df=2) 8.388*
배심원 의견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99	57.9	96	50.8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이어야 한다	23	13.5	14	7.4	
전체	171	100.0	189	100.0	

* $p < .05$

배심원의 양형 판단에 대한 기속력에 있어서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 2-129>에서 나타나듯이 .05수준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의 경우 배심원의 양형 판단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고만 하면 된다는 36.4%,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이어야 한다는 13.3%의 순이다. 비경험 피고인의 경우에는 ‘배심원 의견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가 48.4%, ‘배심원의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가 45.3%,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이어야 한다’가 6.3%이다. 즉, 앞서 살펴본 <표 2-128>과 같이 배심원의 유·무죄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에 대한 집단별 차이와 마찬가지로 배심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식은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이 더 높지만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기속력을 부여해야 하는 의견은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9 국민참여재판 경험별 ‘배심원의 양형 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 χ^2
	경험 피고인		비경험 피고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배심원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	63	36.4	86	45.3	(df=2) 6.365*
배심원 의견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87	50.3	92	48.4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이어야 한다	23	13.3	12	6.3	
전체	173	100.0	190	100.0	

* $p < .05$

6.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선호도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의 선호도를 살펴보기 위해 “다른 재소자에게 국민참여 재판제도를 권하겠느냐?”의 질문에 있어서 ‘국민참여재판을 다른 재소자에게 권하겠다’는 응답이 전체 피고인 364명 가운데 219명으로 60.2%를 차지하였다(표 2-130 참고).

표 2-130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선호도’에 대한 응답분포

(단위 : 명, %)

	빈도	백분율
다른 재소자에게 권하겠다	219	60.2
다른 재소자에게 권하지 않겠다	145	39.8
전체	364	100.0

한편,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비경험 피고인의 경우에는 ‘다른 재소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권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70.0%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의 경우에는 ‘다른 재소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권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31 참고). 이는 앞서 살펴본 <표 2-124>에서와 같이 경험 피고인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았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의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표 2-131 국민참여재판제도 경험 피고인과 비경험 피고인의 선호도 차이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 χ^2
	경험 피고인		비경험 피고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국민참여재판을 권하겠다	86	49.4	133	70.0	(df=2) 16.042***
국민참여재판을 권하지 않겠다	88	50.6	57	30.0	
전체	174	100.0	190	100.0	

*** p<.001

이에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피고인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이유가 선고받은 형량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 피고인이 받은 형량을 구분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선호도를 다시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2-132>에서 나타나듯이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의 경우 형량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형량이 높을수록 다른 재소자에게 권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2년 미만’의 형량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다른 재소자에게 권하지 않겠다는 비율인 16.7%에 불과하였지만 ‘2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는 50.6%, ‘5년 이상’인 경우는 56.2%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형사재판을 통해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경우에는 형량수준에 상관없이 국민참여재판을 권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즉, 이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신청한 피고인의 경우 배심원의 낮은 형량을 기대하였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제도 신청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표 2-132 형량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선호도 차이

(단위 : 명, %)

피고인 구분		형량						(df)χ ²
		2년 미만		2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경험	권하겠다	10	83.3	39	49.4	35	43.8	(df=2) 6.545***
	권하지 않겠다	2	16.7	40	50.6	45	56.2	
	전체	12	100.0	79	100.0	80	100.0	
비경험	권하겠다	13	65.0	57	67.1	56	76.7	(df=2) 2.135
	권하지 않겠다	7	35.0	28	32.9	17	23.3	
	전체	20	100.0	85	100.0	73	100.0	

*** p<.001

7.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

피고인을 대상으로 향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49.8%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아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가 피고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표 2-133 참고).

표 2-133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한 응답분포(피고인)

(단위 : 명, %)

응답 범주	빈도	백분율
가능성이 아주 낮다	42	11.5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141	38.6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152	41.6
가능성이 아주 높다	30	8.2
전체	365	100.0

한편, <표 2-134>에서 나타나듯이 국민참여재판 비경험 피고인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55.8%로 경험 피고인(43.4%)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지금까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관련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다.

표 2-134 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과 비경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한 응답 차이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 χ^2
	경험 피고인		비경험 피고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능성이 아주 낮다	31	17.7	11	5.8	(df=3) 22.983***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68	38.9	73	38.4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56	32.0	96	50.5	
가능성이 아주 높다	20	11.4	10	5.3	
전체	175	100.0	190	100.0	

*** $p < .001$

제2절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용 절차에 대한 이해 및 평가

1. 국민참여재판 신청단계에 대한 이해 및 평가

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이유 및 신청하지 않은 이유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표 2-135>에서 나타나듯이 ‘재판이 공정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35.5%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던 응답은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량을 낮출 수 있어서’(22.6%)이고 그 다음으로는 ‘피고인의 권리가 잘 보호될 것 같아서’(17.9%), ‘변호사의 권유로’(10.8%), ‘같은 재소자들의 권유로’(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¹⁶⁵⁾

표 2-135 국민참여재판제도 신청이유(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 중복응답허용)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량을 낮출 수 있어서	63	22.6
피고인의 권리가 잘 보호될 것 같아서	50	17.9
재판이 공정할 것 같아서	99	35.5
변호사의 권유로	30	10.8
같은 재소자들의 권유로	23	8.2
기타	14	5.0
전체	279	100.0

이처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 것 같아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도입취지 및 목적에 상응하는 것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표 2-119〉에서 나타나듯이 ‘법원에 대한 신뢰’가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피고인에 비해 낮았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전문법원에 대한 낮은 신뢰는 배심원 참여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재판형식에 대한 기대를 갖고 신청하였지만 실제 재판운용 방식이 피고인의 기대수준에 못 미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즉, 앞서 살펴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효과’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선호도’, ‘향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있어서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이 그렇지

165)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홍보물과 홍보영상을 보고’, ‘판사나 교도관 주변 지인의 권유’ 등이 있었음.

않은 피고인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적었다(〈표 2-124〉, 〈표 2-131〉, 〈표 2-134〉참고).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용상의 한 축인 피고인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136 국민참여재판제도 신청하지 않았거나 철회이유(국민참여재판 비경험 피고인 중복응답허용)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유죄가 되거나 형량이 더 높게 나올까봐	23	13.6
배심원 판결을 믿을 수가 없어서	8	4.7
변호사의 만류로	14	8.3
동료 재소자들이 좋지 않다고 해서	13	7.7
관련업무자들의 업무 부담으로 불이익이 있을까봐	12	7.1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 앞에서 재판받기 싫어서	26	15.4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잘 몰라서	71	42.0
기타	2	1.2
전체	169	100.0

피고인 신청제로 이루어지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에게 조사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철회하라는 검찰의 압박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서울경제, 2011.8.1). 이에 국민참여재판재판을 신청하였다가 철회한 이유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위의 〈표 2-136〉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이유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잘 몰라서’가 전체의 4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 앞에서 재판받기 싫어서’가 15.4%, ‘유죄가 되거나 형량이 더 높게 나올까봐’가 13.6%, ‘변호사의 만류로’가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¹⁶⁶⁾ 즉,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잘 몰라서’, ‘배심원 앞에서 재판받기 싫어서’ 등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철회

166) 기타 의견으로는 ‘그냥(2건)이 있었음.

하였다는 응답이 많았고 본 조사결과에서는 ‘업무 관련자의 철회 강요’ 등의 이유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변호사의 만류’(8.3%)와 ‘관련 업무자들의 업무부담으로 불이익이 있을까봐’(7.1%)와 같은 사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국민참여재판제도 경험 유무에 따른 인지도를 보면 국민참여재판 비경험 피고인의 인지도가 경험 피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표 2-121 참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취지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이에 피고인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참여법률에서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야만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배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이 신청제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원의 배제결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¹⁶⁷⁾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배제된 경우 법원 배제결정에 대한 의견과 대응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2-137>에서 나타나듯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해 ‘아무 상관없다’가 49.1%로 가장 많기는 하지만 배제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25.5%)도 나타나 법원의 배제결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적어도 법원의 배제결정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2-137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배제결정은 부당하다	14	25.5
배제결정은 당연하다	14	25.5
아무 상관없다	27	49.1
전체	55	100.0

167) 안성수, “국민참여 재판제도 시행과 인권옹호 - 지정토론요자”, 저스티스 통권 제 102호, 2008, 38면.

또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원의 배제결정을 통보받은 뒤 즉시항소를 하였는지 물어본 결과, 배제결정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였다(표 2-138 참고). 한편, 법원행정처의 『2008-2009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과 『2008-2010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을 재구성하여 살펴본 결과, 2009년에 비해 2010년도의 배제율이 23.9%에서 17.2%로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본 조사결과 법원의 배제결정이 난 사건의 경우 즉시항소를 통해 다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실시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신청에 대한 신중한 법원의 배제결정이 요구된다.

표 2-138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소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해 즉시 항소하였다	13	26.0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37	74.0
전체	50	100.0

2. 재판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해 및 평가

가. 사선변호사 선임/국선변호사 선정 비율

사선변호사 선임 비율과 국선변호사 선정 비율을 살펴보면, 국민참여재판을 경험 피고인의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78.9%로 비경험 피고인(69.3%)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표 2-139 참고).

표 2-139 국민참여재판 경험별 사선변호사 선임/국선변호사 선정 비율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 χ^2
	경험 피고인		비경험 피고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사선변호사	37	21.1	56	29.6	(df=2) 5.534 n.s
국선변호사	138	78.9	131	69.3	
변호사없이	—	—	2	1.1	
전체	175	100.0	189	100.0	

n.s.=not significant

나. 변호사의 도움 및 상의정도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피고인에 비해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고 상의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표 2-140 참고). 즉, 재판과정에서의 변호사의 도움정도에서 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의 경우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의 응답이(35.8%), 비경험 피고인은 ‘별로 도움이 안되었다’는 응답이(36.0%)가 가장 많았다. 변호사와의 상의정도에서는 경험 피고인의 경우 ‘어느 정도 상의했다’는 응답이(35.4%), 비경험 피고인은 ‘별로 상의하지 못했다’(47.1%)로 가장 많았다. 이는 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이 그렇지 않은 피고인에 비해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변호사와의 상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피고인의 주장과 입장을 증명함에 있어서는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40 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과 비경험 피고인의 변호사의 도움 및 상의정도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 χ^2
		경험 피고인		비경험 피고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되었다	21	12.1	44	23.3	(df=3) 38.341***
	별로 도움 안되었다	35	20.2	68	36.0	
	어느 정도 도움되었다	55	31.8	56	29.6	
	많은 도움되었다	62	35.8	21	11.1	
전체		173	100.0	189	100.0	
상의 정도	전혀 상의하지 못했다	11	6.3	15	7.9	(df=3) 32.951***
	별로 상의하지 못했다	41	23.4	89	47.1	
	어느 정도 상의했다	62	35.4	60	31.7	
	충분히 상의했다	61	34.9	25	13.2	
전체		175	100.0	189	100.0	

*** $p < .001$

다. 1심 판결에 대한 승복 및 형량수준에 대한 인식

1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과 경험한 피고인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표 2-141 참고). 즉, 1심 판결의 유죄선고에 대한 승복정도는 국민참여재판 비경험 피고인이 63.5%로 경험 피고인(60.8%)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의 형량수준에 대한 승복정도 역시 국민참여재판 비경험 피고인이(53.5%) 경험 피고인(49.4%)에 비해 높았지만 그 차이는 .05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1심 판결에 대한 형량수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비경험 피고인의 경우 82.8%가 높다고 응답하였고 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의 경우에는 82.6%가 높다고 응답하여 그 응답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는 배심원의 판단이 법관의 최종판결에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경험간의 응답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두 집단 모두 법관판결에 대한 승복과 형량수준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이다.

표 2-141 국민참여재판 경험별 '1심 판결에 대한 승복 및 형량수준'에 대한 응답차이

구분		조사대상				(df) χ^2
		경험 피고인		비경험 피고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유죄선고에 대한 승복	전혀 승복 못한다	35	20.0	32	17.2	(df=3) 1.691 n.s.
	어느 정도 승복 못한다	32	18.3	36	19.4	
	어느 정도 승복한다	61	34.9	58	31.2	
	전적으로 승복한다	47	26.9	60	32.3	
전체		175	100.0	186	100.0	
형량수준에 대한 승복	전혀 승복 못한다	44	25.3	42	22.5	(df=3) .654 n.s.
	어느 정도 승복 못한다	44	25.3	45	24.1	
	어느 정도 승복한다	51	29.3	60	32.1	
	전적으로 승복한다	35	20.1	40	21.4	
전체		174	100.0	187	100.0	
형량수준에 대한 인식	지나치게 낮다	3	1.7	—	—	(df=3) 3.383 n.s.
	대체로 낮은 편이다	27	15.6	32	17.2	
	대체로 높은 편이다	103	59.5	112	60.2	
	지나치게 높다	40	23.1	42	22.6	
전체		173	100.0	186	100.0	

n.s. = not significant

라. 일반형사재판을 받았다면/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면

재판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살펴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에게 ‘일반형사재판을 받았다면 재판 결과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라는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해 보았다. 그 결과 <표 2-142>에서 나타나듯이 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의 경우 ‘지금보다는 가벼운 형을 받았을 것이다’는 응답이 전체의 4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을 것이다’(30.4%), ‘지금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22.6%) 등의 순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표 2-135>의 결과에서처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무죄나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란 응답이 많았던 것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무죄나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을꺼란 기대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경우 ‘지금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였을 것이고, 최종선고가 자신의 예상과 일치하였을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하여 ‘지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을 것이다’는 응답이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42 일반형사재판을 받았다면(국민참여재판경험 피고인)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무죄로 풀려났을 것이다	11	6.5
지금보다는 가벼운 형을 받았을 것이다	68	40.5
지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을 것이다	51	30.4
지금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38	22.6
전체	168	100.0

한편, 국민참여재판 비경험 피고인을 대상으로 ‘만약, 일반형사재판이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라고 물어보았더니 ‘지금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는 응답이 전체의 45.3%로 가장 많았고 ‘지금보다는 가벼운 형을 받았을 것이다’가 40.2%로 나타났다. 이는 <표 2-121>에서 나타나듯이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경험 피고인에 비해 높아 아마도 배심원 판단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더라도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금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을 것이다’는 응답도 40% 이상을 차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에도 배심원의 판단이 법관의 판단보다는 유연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43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면(국민참여재판 비경험 피고인)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무죄로 풀려났을 것이다	11	6.1
지금보다는 가벼운 형을 받았을 것이다	72	40.2
지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을 것이다	15	8.4
지금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81	45.3
전체	179	100.0

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144>에서처럼 경험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변호사)측에서 항소했다’의 응답이 6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경험 피고인의 경우는 73.9%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2-144 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과 비경험 피고인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 χ^2
	경험 피고인		비경험 피고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피고인(변호사)측에서 항소했다	112	64.0	136	73.9	(df=2) 7.831 n.s.
검사측에서 항소했다	14	8.0	9	4.9	
쌍방 모두 항소했다	30	17.1	16	8.7	
어느 쪽에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19	10.9	23	12.5	
전체	175	100.0	184	100.0	

n.s.= not significant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 재판내용과 과정, 결과에 있어서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태도이다.

첫 번째, 법원에 대한 신뢰정도를 국민참여재판경험 여부별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집단의 법원에 대한 신뢰가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19 참고).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효과에 있어서 피고인의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큼을 알 수 있었다(표 2-123 참고).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이 일반형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제도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24 참고).

세 번째, 배심원이 유·무죄 및 양형 판단시 ‘학연이나 지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경험한 피고인에 비해 컸다(표 2-126 참고).

네 번째, 배심원의 판단에 대한 지속력 문제에 있어서는 ‘배심원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는 54.2%, 양형판단에 있어서는 49.3%를 차지하였다(표 2-127 참고). 한편, 배심원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경험한 피고인이 그렇지 않은 피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표 2-128, 표 2-129 참고).

다섯 번째,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다른 재소자에게 권하겠느냐고 물어본 결과, ‘다른 재소자에게 권하겠다’는 응답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경험한 피고인(49.4%)보다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70.0%)이 더 많았다(표 2-131 참고).

여섯 번째,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이(55.8%)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보다(43.4%)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34 참고).

다음은 국민참여재판 신청단계, 재판과정, 그리고 재판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 및 평가를 살펴보겠다.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신청이유로는 ‘재판이 공정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35.5%로 가장 많이 나타나 낮은 법관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 새로운 재판형식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드러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는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량을 낮출 수 있어서’(22.6%), ‘피고인의 권리가 잘 보호될 것 같아서’(17.9%), ‘변호사의 권유로’(10.8%), ‘같은 재소자들의 권유로’(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135 참고). 한편,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이유로는 ‘잘 몰라서’가 전체의 4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 앞에서 재판받기 싫어서’가 15.4%, ‘유죄가 되거나 형량이 더 높게 나올까봐’가 13.6%, ‘변호사의 만류로’가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136 참고).

두 번째, 재판과정 중 변호사의 도움이나 상의정도에 있어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경험한 피고인이 그렇지 않은 피고인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표 2-140 참고).

세 번째, 국민참여제도를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경험한 피고인보다는 1심 판결의 유·무죄 및 형량 선고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큰 편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표 2-141 참고).

네 번째,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경험한 피고인에게 “일반형사재판을 받았다면 재판 결과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라고 물어본 결과 ‘지금보다는 가벼운 형을 받았을 것이다’는 응답이 전체의 4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을 것이다’(30.4%), ‘지금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22.6%) 등의 순이다(표 2-142 참고). 반면, 일반형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면 재판 결과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라고 물어보았더니 ‘지금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는 응답이 전체의 45.3%로 가장 많았고 ‘지금보다는 가벼운 형을 받았을 것이다’가 40.2%로 나타났다(표 2-143 참고).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지 않고 일반형사재판제도를 경험한 피고인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효과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으며 국민

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의 경우 배심원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대한 우려가 적고 앞으로 배심원 판단에 기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뿐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신청하는 주된 이유가 ‘재판이 공정할 것 같아서’이고 재판과정 중 변호사와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발전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피고인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 목적, 운용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고 제도운영상에서 피고인의 입장과 견해가 무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긍정적 시각으로의 전환이 우선 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피고인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5장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조사분석 결과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조사분석 결과

제1절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일반적 사항

1.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참여한 경험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진행한 경험이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참여재판을 진행한 경험을 통해서 현실적인 참여재판제도 시행목적에의 부합 여부, 각 세부적인 절차에서 발견되는 법제도적인 흠결 내지 문제점, 참여재판진행에 관여하는 각 전문가 직역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제고, 재판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의해서 법률전문가들 각자의 관점에서 참여재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과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가. 국민참여재판 담당 횟수

법률전문가들이 2008년부터 2011년 조사 당일 현재까지 참여재판을 담당한 횟수를 조사한 결과·판사·검사·변호사 모두 “5회 이상·10회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판사의 경우에는 39.6%에 해당하는 19명이, 검사의 경우에는 65.2%에 해당하는 43명이, 변호사의 경우에는 45%에 해당하는 27명이 “5회 이상 - 10회 이하”의 참여재판 진행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1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21.8%로, 직역간 차이가 거의 없이 판사 22.9%(11명), 검사 21.2%(14명), 변호사 21.7%(13명)로 나타났다. 한편 21회 이상 참여재판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판사 1명, 변호사 4명이었다. 변호사의 경우 주된 조사대상이 되었던 국선전담변호사 가운데는 참여재판만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수의 참여재판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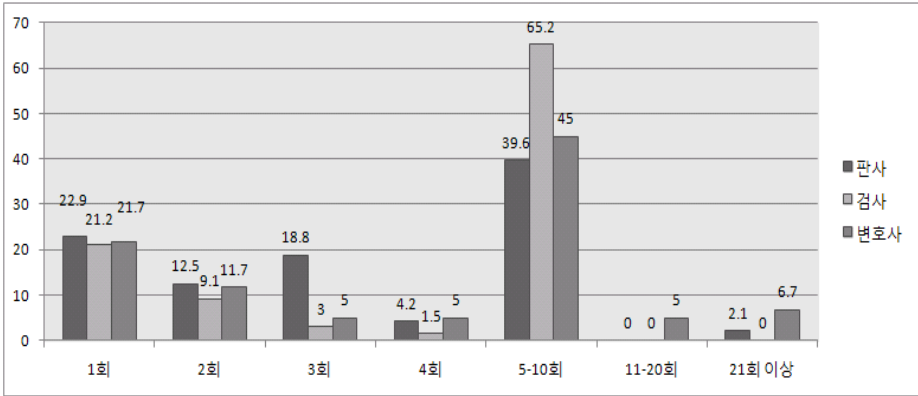


그림 2-10 국민참여재판 진행경험 횟수 (단위: %)

표 2-145 국민참여재판 진행경험 횟수 (단위: 명, %)

	1회	2회	3회	4회	5-10회	11-20회	21회 이상	계	χ^2
판사	11 (22.9)	6 (12.5)	9 (18.8)	2 (4.2)	19 (39.6)	0 (0.0)	1 (2.1)	48 (100.0)	$\chi^2=26.111$ $df=4$ $p=n.s.$
검사	14 (21.2)	6 (9.1)	2 (3.0)	1 (1.5)	43 (65.2)	0 (0.0)	0 (0.0)	66 (100.0)	
변호사	13 (21.7)	7 (11.7)	3 (5.0)	3 (5.0)	27 (45.0)	3 (5.0)	4 (6.7)	60 (100.0)	
계	38 (21.8)	19 (10.9)	14 (8.0)	6 (3.4)	89 (51.1)	3 (1.7)	5 (2.9)	174 (100.0)	

* 무응답 : 2명

나. 국민참여재판 담당 사건의 범죄유형과 횟수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실제 어떠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참여재판을 진행했는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의 경우에는 성범죄가 27.6%, 2009년도에는 살인이 34.6%, 2010년과 2011년도에는 기타 범죄가 26.7%,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인 전문가 직역군별로 매년 참여재판을 진행한 경험 횟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판사의 경우 2008년에는 3건에 불과했는데, 2009년에는 11건, 2010년에는 64건, 2011년에는 161건으로 약 3년 반 동안 5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검사의 경우에는 판사의 증가율에는 못 미치지만 2008년에 5건, 2009년도 8건, 2010년 27건, 2011년 45건으로 동 기간 동안 9배 가까이 참여재판 진행건수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변호사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22건으로 다른 전문가 집단보다 참여재판을 진행한 빈도가 높았지만, 2009년 57건, 2010년 108건으로 늘었다가 2011년에 87건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1년의 경우에는 조사 현재일까지의 통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반기에 진행한 참여재판만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참여재판 진행건수는 여기서 제시한 수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경우에도 정확히는 참여재판 진행건수가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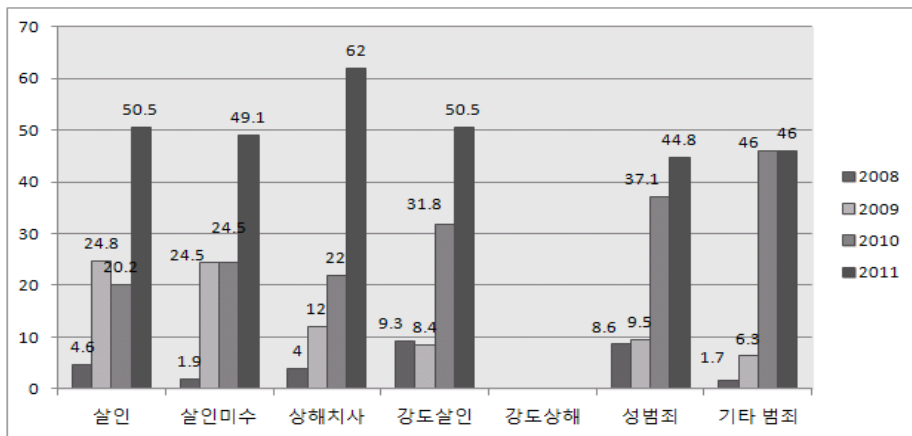


그림 2-11 연도별/범죄유형별 참여재판 진행경험 횟수

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전문가 직역을 구분하여 연도별/범죄유형별 참여재판 진행경험 횟수를 조사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146 국민참여재판 담당 사건의 죄명과 횟수

(단위 : 명, %)

	직업별	2008	2009	2010	2011	계
살인	판사	·	5(12.5)	2(5.0)	33(82.5)	40(100.0)
	검사	·	2(12.5)	5(31.3)	9(56.3)	16(100.0)
	변호사	5(9.4)	20(37.7)	15(28.3)	13(24.5)	53(100.0)
	전체	5(4.6)	27(24.8)	22(20.2)	55(50.5)	109(100.0)
살인미수	판사	0(0.0)	2(18.2)	1(9.1)	8(72.7)	11(100.0)
	검사	0(0.0)	3(42.9)	0(0.0)	4(57.1)	7(100.0)
	변호사	1(2.9)	8(22.9)	12(34.3)	14(40.0)	35(100.0)
	전체	1(1.9)	13(24.5)	13(24.5)	26(49.1)	53(100.0)
상해치사	판사	·	1(3.7)	3(11.1)	23(85.2)	27(100.0)
	검사	·	·	1(25.0)	3(75.0)	4(100.0)
	변호사	2(10.5)	5(26.3)	7(36.8)	5(26.3)	19(100.0)
	전체	2(4.0)	6(12.0)	11(22.0)	31(62.0)	50(100.0)
강도살인 강도상해	판사	2(6.9)	1(3.4)	4(13.8)	22(75.9)	29(100.0)
	검사	1(4.5)	1(4.5)	9(40.9)	11(50.0)	22(100.0)
	변호사	7(12.5)	7(12.5)	21(37.5)	21(37.5)	56(100.0)
	전체	10(9.3)	9(8.4)	34(31.8)	54(50.5)	107(100.0)
성범죄	판사	1(2.6)	2(5.1)	4(10.3)	32(82.1)	39(100.0)
	검사	2(11.8)	1(5.9)	10(58.8)	4(23.5)	17(100.0)
	변호사	6(12.2)	7(14.3)	25(51.0)	11(22.4)	49(100.0)
	전체	9(8.6)	10(9.5)	39(37.1)	47(44.8)	105(100.0)
기타	판사	·	·	50(53.8)	43(46.2)	93(100.0)
	검사	2(10.5)	1(5.3)	2(10.5)	14(73.7)	19(100.0)
	변호사	1(1.6)	10(16.1)	28(45.2)	23(37.1)	62(100.0)
	전체	3(1.7)	11(6.3)	80(46.0)	80(46.0)	174(100.0)
총계		30(5.0)	76(12.7)	199(33.3)	293(49.0)	598(100.0)

다. 참여재판을 위한 각 사법기관의 노력

참여재판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원 혹은 검찰의 내부적인 변화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으로 참여할 일반시민과 참여재판 신청권을 갖고 있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를 독려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법원과 검찰은 시행초기 각 기관에 참여재판 전담부서를 두고 참여재판에 집중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참여재판제도를 일반국민과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제 조사결과에 조사대상 전문가들이 소속된 기관 내에 전담부서가 설치된 경우를 보면, 해당 소속법원 혹은 소속지검 내에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가 판사는 75%였으며, 검찰은 58.1%였다. 다만 법원의 경우 처음에는 참여재판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점차 이를 폐지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참여재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담당 사건을 참여재판 전담부서로 이전하기 보다는 바로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여 참여재판 진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검찰의 경우 참여재판 전담부서가 있기 보다는 공판송무과내에 참여재판 전담검사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워낙 검사 1명당 사건수가 많기 때문에 참여재판 사건이 적은 지검에서는 다른 사건도 함께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담부서 설치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홍보와 관련하여서는 판사들의 경우 해당 소속 법원에서 직접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5.2%로 나타난데 비해, 검사들의 경우 소속 지검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7.5%로 검찰의 경우 참여재판의 홍보에 상당히 미온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고 보여졌다. 한편 참여재판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수단에 대해서는 법원과 검찰 모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텔레비전과 라디오 홍보방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4.2%, 60%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효과적인 홍보수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판사와 검사 간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판사의 경우 “참여재판 대상 피고인들에 대한 홍보책자 배부”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9%이고, 검사의 경우에는 “초, 중, 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참여재판 홍보교육 및 재판참관 기회제공”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로 나타났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양 사법기관의 참여재판 홍보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71.2%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이러한 홍보방식과 내용이 참여재판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65%로 나타났다.

2.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목적 및 시행경과에 대한 인식

가. 참여재판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한 인식

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간의 관료적 사법의 폐해와 그로 인한 국민의 사법 불신이 참여재판제도 도입의 기저에 존재했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참여재판의 목적과 도입취지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으며, 참여재판이 실제로 그러한 목적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사법에 대한 신뢰구축”, “국민의 법의식 향상”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전체적으로 ‘대체로 기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각 45.7%, 41.4%, 47.7%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대해서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147 참여재판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항목	직업	매우 기여한다	대체로 기여한다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계	χ^2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판사	21 (43.8)	21 (43.8)	5 (10.4)	1 (2.1)	48 (100)	$\chi^2=41.028$ df=6 P<.001
	검사	4 (6.0)	30 (44.8)	26 (38.8)	7 (10.4)	67 (100)	
	변호사	24 (40.0)	29 (48.3)	5 (8.3)	2 (3.3)	60 (100)	
	계	49 (28.0)	80 (45.7)	36 (20.6)	10 (5.7)	175 (100)	

항목	직업	매우 기여한다	대체로 기여한다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계	χ^2
사법에 대한 신뢰도 구축	판사	24 (50.0)	20 (41.7)	3 (6.3)	1 (2.1)	48 (100)	$\chi^2=54.748$ df=6 P<.001
	검사	3 (4.5)	27 (40.9)	29 (43.9)	7 (10.6)	66 (100)	
	변호사	27 (45.0)	25 (41.7)	8 (13.3)	0 (0.0)	60 (100)	
	계	54 (31.0)	72 (41.4)	40 (23.0)	8 (4.6)	174 (100)	
피고인의 인권보장	판사	6 (12.8)	25 (53.2)	12 (25.5)	4 (8.5)	47 (100)	$\chi^2=38.846$ df=6 P<.001
	검사	2 (3.0)	18 (27.3)	41 (62.1)	5 (7.6)	66 (100)	
	변호사	20 (33.3)	20 (33.3)	20 (33.3)	0 (0.0)	60 (100)	
	계	28 (16.2)	63 (36.4)	73 (42.2)	9 (5.2)	173 (100)	
국민 법의식 향상 및 법교육	판사	20 (41.7)	24 (50.0)	3 (6.3)	1 (2.1)	48 (100)	$\chi^2=$ df=6 P<.001
	검사	6 (9.1)	32 (48.5)	20 (30.3)	8 (12.1)	66 (100)	
	변호사	24 (40.0)	27 (45.0)	9 (15.0)	0 (0.0)	60 (100)	
	계	50 (28.7)	83 (47.7)	32 (18.4)	9 (5.2)	174 (100)	

하지만 법률전문가 집단별 응답 평균을 비교해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참여재판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기여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전문가 직역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8 참여재판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 평균

항목 ¹⁶⁸⁾	집단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판사	48	1.71	.743	23.646***
	검사	67	2.54	.765	
	변호사	60	1.75	.751	
사법에 대한 신뢰도 구축	판사	48	1.60	.707	36.593***
	검사	66	2.61	.742	
	변호사	60	1.68	.701	
피고인의 인권보장	판사	47	2.30	.805	15.516***
	검사	66	2.74	.640	
	변호사	60	2.00	.823	
국민 법의식 향상 및 법교육	판사	48	1.69	.689	19.675***
	검사	66	2.45	.826	
	변호사	60	1.75	.704	

즉, 참여재판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사법에 대한 신뢰구축”, “피고인의 인권보장”, “국민 법의식 향상 및 법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판사와 변호사 집단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제외하고는 평균값이 2 이하로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반면에, 검사 집단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검사들은 현행 참여재판이 본래의 도입취지와 목적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법률전문가들의 복무기간에 따라 현행 참여재판이 본래의 도입목적과 취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분석해 볼 결과, 특히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의 기여와 관련한 문항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현직업 복무기간이 3년 미만인 법률전문가들은 참여재판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매우 기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 미만인데 비해서, 복무기간이 10년 이상인 법률전문가들은 ‘매우 기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9 복무기간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목적 및 도입취지_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단위 : 명, %)

	매우 기여한다	대체로 기여한다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계	χ^2
1년 미만	2	7	—	2	11	$\chi^2=27.299$ df=12 p<.01
	(18.2)	(63.6)	—	(18.2)	(100.0)	
1년 이상- 3년 미만	8	29	8	1	46	
	(17.4)	(63.0)	(17.4)	(2.2)	(100.0)	
3년 이상- 5년 미만	12	8	7	1	28	
	(42.9)	(28.6)	(25.0)	(3.6)	(100.0)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9	15	4	48	
	(20.8)	(39.6)	(31.3)	(8.3)	(100.0)	
10년 이상	16	16	4	1	37	
	(43.2)	(43.2)	(10.8)	(2.7)	(100.0)	
계	48	79	34	9	170	
	(28.2)	(46.5)	(20.0)	(5.3)	(100.0)	

168) 각 항목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참여재판이 현행 사법체제에 적합한 재판방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판사의 경우 68.8%, 변호사의 경우 63.4%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 검사의 경우에는 83.6%가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정적인 견해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150 참여재판이 현 사법체제에 적합한 재판방식인가

(단위 : 명, %)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χ^2
판사	6	27	12	3	48	$\chi^2=50.343$ $df=6$ $p<.001$
	(12.5)	(56.3)	(25.0)	(6.3)	(100.0)	
검사	1	10	36	20	67	
	(1.5)	(14.9)	(53.7)	(29.9)	(100.0)	
변호사	4	34	21	1	60	
	(6.7)	(56.7)	(35.0)	(1.7)	(100.0)	
계	11	71	69	24	175	
	(6.3)	(40.6)	(39.4)	(13.7)	(100.0)	

전문가 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직역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판사 집단의 평균은 2.25, 검사 집단은 3.12, 변호사 집단의 평균은 2.32로, 검사 집단이 다른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참여재판이 현 사법체제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1 참여재판이 현 사법체제에 적합한 방식인가 여부 평균

항목 ¹⁶⁹⁾	집단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참여재판이 현 사법체제에 적합한 방식인가	판사	48	2.25	.758	29.796***
	검사	67	3.12	.708	
	변호사	60	2.32	.624	

169) 각 항목은 4점 척도로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

나. 참여재판의 시행과정에 대한 일반적 인식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난 현재, 초반의 시행착오를 조금씩 수정해나가면서 법원도, 검사도, 변호사도 새로운 재판제도의 운영에 적응해나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참여재판을 진행하면서 참여재판의 전반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참여재판 시행경과에 대하여 전문가 직역별로 평가의 변화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 사법시스템에 국민참여재판이 제대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시행초기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증가했다”, “배심원들이 재판과정에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시행초기에 비해 일반시민의 배심원 참여도가 높아졌다”, “시행초기에 비해 배심원들의 참여재판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질문을 구성했다. 이에 대한 법률전문가 집단별 평균값을 보면,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검사 집단간에 인식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판사와 변호사 집단의 경우 모든 문항에 있어서 평균값이 2.5 이하로 나타난데 비하여, 검사 집단의 경우에는 모든 문항에 있어서 평균값이 2.5 이상으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참여재판의 시행경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우리 사법시스템에 참여재판이 제대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시행초기에 비해 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증가했다”고 하는 2개의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각각 2.97과 3.06으로 검사 집단은 다른 두 전문가 직역군에 비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전문가 집단 전체적으로는 “시행초기에 비해 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증가했다”고 하는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2.63으로 다른 문항에 비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정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재판 시행 초기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발히 행해졌던 홍보활동이 점차 줄어들면서 참여재판이 점점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지 않다”로 구성되었다.

표 2-152 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인식 평균

항목	집단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우리 사법시스템에 참여재판이 제대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판사	47	2.17	.564	28.380***
	검사	65	2.97	.585	
	변호사	60	2.32	.676	
시행초기에 비해 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증가했다	판사	47	2.34	.700	24.300***
	검사	65	3.06	.556	
	변호사	60	2.38	.666	
배심원들이 재판과정에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판사	46	2.15	.729	9.507***
	검사	61	2.66	.680	
	변호사	58	2.19	.661	
시행초기에 비해 일반시민의 배심원 참여도가 높아졌다	판사	46	2.44	.659	5.812**
	검사	62	2.79	.631	
	변호사	58	2.45	.597	
시행초기에 비해 배심원들의 참여재판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다	판사	45	2.22	.599	10.643***
	검사	61	2.72	.686	
	변호사	58	2.29	.562	

***p<0.001, **p<0.01

한편 법률전문가들의 복무기간에 따른 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배심원들이 재판과정에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문항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위 문항에 대하여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법률전문가들은 60%가 ‘별로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에, 복무기간이 10년 이상인 법률전문가들에 있어서는 62.2%가 ‘대체로 그렇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오랫동안 재판업무에 종사해온 법률전문가들이 이제 갓 법조생활을 시작한 전문가들에 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의 참여도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53 복무기간별 국민참여재판 시행경과에 대한 인식_배심원들이 재판과정에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단위 : 명, %)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χ^2
1년 미만	2	2	6	—	10	$\chi^2=25.329$ $df=12$ $p < .05$
	(20.0)	(20.0)	(60.0)		(100.0)	
1년 이상- 3년 미만	—	29	11	2	42	
		(69.0)	(26.2)	(4.8)	(100.0)	
3년 이상- 5년 미만	4	7	14	2	27	
	(14.8)	(25.9)	(51.9)	(7.4)	(100.0)	
5년 이상- 10년 미만	4	21	17	2	44	
	(9.1)	(47.7)	(38.6)	(4.5)	(100.0)	
10년 이상	6	23	7	1	37	
	(16.2)	(62.2)	(18.9)	(2.7)	(100.0)	
계	16	82	55	7	160	
	(10.0)	(51.3)	(34.4)	(4.4)	(100.0)	

또한 법률전문가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참여재판이 현 사법체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 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판사 집단의 경우 2.21, 검사 집단의 경우 3.01, 변호사 집단의 경우 2.30으로, 검사 집단이 다른 두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사 집단의 경우 현 참여재판이 우리의 현행 사법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154 현 사법체제에 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정착 가능성에 대한 인식 평균

항목 ¹⁷⁰⁾	집단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현 사법체제에 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	판사	48	2.21	.683	30.367***
	검사	67	3.01	.590	
	변호사	60	2.30	.619	

다. 배심원의 공판절차 참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참여재판에 관하여 법률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마지막 문항으로서, 일반시민인 배심원들이 법률전문가들만의 고유영역이었던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자신들과 함께 재판을 진행해 나가는데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일반시민인 배심원이 유무죄 판단절차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판사의 경우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62.5%로 가장 높았지만 변호사의 경우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검사의 경우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8.5%로 가장 많았다. 즉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절차 참여에 대하여 판사와 변호사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검사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심원이 양형판단절차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50%와 42.2%,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여부와 관련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유무죄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사와 검사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7%,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변호사의 경우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형평결의 기속력 부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판사와 검사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6.3%와 43.9%로 가장 높은 반면, 변호사의 경우에는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배심원의 공판절차 참여필요성에 대해서는 검사가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부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170) 각 항목은 4점 척도로 “(1) 매우 필요하다 (2) 대체로 필요하다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로 구성되었다.

표 2-155 직업별 일반시민배심원의 공판절차 참여범위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

	직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계	χ^2
유무죄 판단절차 참여	판사	13	30	3	2	48	$\chi^2=49.091$ df=6 $p < .001$
		(27.1)	(62.5)	(6.3)	(4.2)	(100.0)	
	검사	7	20	32	7	66	
		(10.6)	(30.3)	(48.5)	(10.6)	(100.0)	
	변호사	27	22	8	2	59	
		(45.8)	(37.3)	(13.6)	(3.4)	(100.0)	
양형판단절차 참여	판사	9	24	12	3	48	$\chi^2=30.352$ df=6 $p < .001$
		(18.8)	(50.0)	(25.0)	(6.3)	(100.0)	
	검사	3	28	23	12	66	
		(4.5)	(42.4)	(34.8)	(18.2)	(100.0)	
	변호사	20	28	11	0	59	
		(33.9)	(47.5)	(18.6)	(0.0)	(100.0)	
유무죄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	판사	5	15	20	8	48	$\chi^2=26.934$ df=6 $p < .001$
		(10.4)	(31.3)	(41.7)	(16.7)	(100.0)	
	검사	7	18	25	16	66	
		(10.6)	(27.3)	(37.9)	(24.2)	(100.0)	
	변호사	22	21	14	2	59	
		(37.3)	(35.6)	(23.7)	(3.4)	(100.0)	
양형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	판사	34	54	59	26	173	$\chi^2=35.768$ df=6 $p < .001$
		(19.7)	(31.2)	(34.1)	(15.0)	(100.0)	
	판사	2	9	27	10	48	
		(4.2)	(18.8)	(56.3)	(20.8)	(100.0)	
	검사	4	18	29	15	66	
		(6.1)	(27.3)	(43.9)	(22.7)	(100.0)	
양형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	변호사	9	35	13	2	59	$\chi^2=35.768$ df=6 $p < .001$
		(15.3)	(59.3)	(22.0)	(3.4)	(100.0)	
	계	15	62	69	27	173	
		(8.7)	(35.8)	(39.9)	(15.6)	(100.0)	

배심원의 공판절차 참여와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부여의 필요성에 대하여 법률전문가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배심원 유무죄 판단절차 참여”와 “배심원의 양형판단절차 참여” 2개의 문항에 대해서는 판사와 변호사 집단의 평균값은 모두 2.5 미만인데 비하여, 검사 집단의 평균값은 2.5 이상으로 검사 집단이 다른 두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배심원의 공판절차 참여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배심원 유무죄평결에 기속력 부여”와 “배심원 양형평결에 기속력 부여” 2개 문항에 대해서는 판사와 검사 집단의 평균값이 2.5 이상인데 비하여 변호사 집단의 평균값은 2.5 미만으로 나타났다. 즉 배심원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변호사 집단이 다른 두 전문가 집단에 대하여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판사와 검사가 여전히 일반시민이 재판에 관여하고, 그에 의한 시민의 판단에 법률전문가인 자신들이 따라야 하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표 2-156 일반시민배심원의 공판절차 참여 및 평결기속력 부여에 대한 인식 평균

항목	집단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절차 참여 필요성	판사	48	1.88	.703	20.562***
	검사	66	2.59	.822	
	변호사	59	1.75	.822	
배심원의 양형판단절차 참여 필요성	판사	48	2.19	.816	17.066***
	검사	66	2.67	.829	
	변호사	59	1.85	.715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 필요성	판사	48	2.65	.887	14.633***
	검사	66	2.76	.946	
	변호사	59	1.93	.868	
배심원의 양형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 필요성	판사	48	2.94	.755	17.913**
	검사	66	2.83	.852	
	변호사	59	2.14	.706	

***p<0.001, **p<0.01

제2절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

1. 국민참여재판에 따른 업무부담

국민참여재판은 통상의 형사재판 진행방식과는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법률적 지식이 없는 배심원들에 대하여 어떻게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한 변론주장을 하며, 전문가들도 수년에 걸쳐서 배우고 익힌 전문적인 법률용어와 형사법 관련 법리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재판의 중심이 배심원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의 재판진행절차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고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들은 참여재판에 필요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고, 배심원들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법을 배우고, 배심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풀어쓰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스란히 그들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미 시행 3년 반이 지난 현재 참여재판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이 갖는 업무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참여재판이 어느 정도 법률전문가들에게 체화되어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참여재판이 통상 공판절차에 비하여 갖는 업무부담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문항에 대하여, ‘전혀 부담이 안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판사·검사·변호사 중 단 한명도 없었다. 그에 비해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판사 51.1%, 검사 83.1%, 변호사 71.7%로 나타났다. 즉 참여재판이 재판을 진행하는 법률전문가들에게는 상당히 버거운 업무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참여재판업무를 기피하고자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우려되는 수준의 업무부담이라고 할 것이다.

표 2-157 통상 공판절차에 비해 참여재판에 대한 업무부담

(단위 : 명, %)

직업	매우 부담된다	약간 부담된다	거의 부담 안된다	전혀 부담 안된다	계	χ^2
판사	24	21	2	.	47	$\chi^2=16.694$ $df=4$ $p < .01$
	(51.1)	(44.7)	(4.3)	.	(100.0)	
검사	54	11	0	.	65	
	(83.1)	(16.9)	(0.0)	.	(100.0)	
변호사	43	17	0	.	60	
	(71.7)	(28.3)	(0.0)	.	(100.0)	
계	121	49	2	.	172	
	(70.3)	(28.5)	(1.2)	.	(100.0)	

그러면 참여재판의 절차 가운데 특히 법률전문가들이 업무부담을 느끼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공판준비절차·배심원 선정절차·배심원 설명자료준비·장시간 재판진행·법률용어 설명·변론문의 작성·증거자료의 입수 등 사전절차 각각에 대한 업무부담의 정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판사·검사·변호사 세 집단 모두 ‘매우 부담이 된다’고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장시간의 재판”이었다. 그 다음이 “배심원 설명자료 준비”로 나타났다.

먼저 “공판준비절차”에 있어서 판사는 ‘별로 부담이 안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8.3%로 가장 높았던데 비해, 검사는 ‘매우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8%로 가장 높았고, 변호사는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46.7%로 가장 높았다. “배심원 선정절차”에 있어서는 판사와 검사·변호사 모두 ‘약간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4.2%, 54.7%,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심원 설명자료 준비”와 관련하여서는 판사의 경우 ‘약간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인데 비해, 검사와 변호사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2.3%,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시간 재판진행”에 대해서는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판사 64.6%, 검사 75.4%, 변호사 55%로 나타났다. “법률용어의 설명”과 관련하여서는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약간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비율은 47.9%, 53.1%, 45%로 나타났다.

이 외에 법률전문가 직역별로 고유한 업무에 속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부담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판사에 대해서는 “배심원 평의절차”, 검사에 대해서는

“논고문 작성”,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론문 작성”과 “증거자료 입수 등 사전절차” 등의 변수를 측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판사의 경우 “배심원 평의절차”에 대해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로 가장 높았고, 검사의 경우에도 “논고문 작성”에 대해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49.9%로 가장 많았으며, 변호사의 경우도 “변론문 작성”과 “증거자료 입수 등 사전절차” 모두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9.2%와 5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여재판 절차 가운데 판사는 공판준비절차가 가장 업무부담이 적다고 응답한 경우가 5명이었고, 변호사는 법률용어의 설명이 가장 업무부담이 적다고 응답한 경우가 3명, 장시간 재판이 2명이었다. 이에 비해 검사는 모든 참여재판 절차에 대해서 업무부담이 가장 적다고 응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표 2-158 직업별 국민참여재판 절차상 업무부담

(단위 : 명, %)

	직업	매우 부담된다	약간 부담된다	별로 부담 안된다	전혀 부담 안된다	계	χ^2
공판준비절차	판사	5	10	28	5	48	$\chi^2=49.165$ df=6 $p < .001$
		(10.4)	(20.8)	(58.3)	(10.4)	(100.0)	
	검사	33	23	9	0	65	
		(50.8)	(35.4)	(13.8)	(0.0)	(100.0)	
	변호사	18	28	13	1	60	
		(30.0)	(46.7)	(21.7)	(1.7)	(100.0)	
배심원 선정절차	판사	56	61	50	6	173	$\chi^2=13.163$ df=6 $p < .05$
		(32.4)	(35.3)	(28.9)	(3.5)	(100.0)	
	판사	4	26	17	1	48	
		(8.3)	(54.2)	(35.4)	(2.1)	(100.0)	
	검사	17	35	12	0	64	
		(26.6)	(54.7)	(18.8)	(0.0)	(100.0)	
배심원 설명자료 준비	변호사	17	33	10	0	60	$\chi^2=9.721$ df=4 $p < .05$
		(28.3)	(55.0)	(16.7)	(0.0)	(100.0)	
	계	38	94	39	1	172	
		(22.1)	(54.7)	(22.7)	(0.6)	(100.0)	
	판사	22	24	2		48	
		(45.8)	(50.0)	(4.2)		(100.0)	
배심원 설명자료 준비	검사	47	17	1		65	$\chi^2=9.721$ df=4 $p < .05$
		(72.3)	(26.2)	(1.5)		(100.0)	
	변호사	34	22	4		60	
		(56.7)	(36.7)	(6.7)		(100.0)	
	계	103	63	7		173	
		(59.5)	(36.4)	(4.0)		(100.0)	

	직업	매우 부담된다	약간 부담된다	별로 부담 안된다	전혀 부담 안된다	계	χ^2
장시간 재판	판사	31	15	1	1	48	$\chi^2=8.912$ df=6 $p=n.s.$
		(64.6)	(31.3)	(2.1)	(2.1)	(100.0)	
	검사	49	16	0	0	65	
		(75.4)	(24.6)	(0.0)	(0.0)	(100.0)	
	변호사	33	22	3	2	60	
		(55.0)	(36.7)	(5.0)	(3.3)	(100.0)	
	계	113	53	4	3	173	
		(65.3)	(30.6)	(2.3)	(1.7)	(100.0)	
법률용어의 설명	판사	7	23	18	0	48	$\chi^2=18.347$ df=6 $p < .01$
		(14.6)	(47.9)	(37.5)	(0.0)	(100.0)	
	검사	20	34	10	0	64	
		(31.3)	(53.1)	(15.6)	(0.0)	(100.0)	
	변호사	8	27	22	3	60	
		(13.3)	(45.0)	(36.7)	(5.0)	(100.0)	
	계	35	84	50	3	172	
		(20.3)	(48.8)	(29.1)	(1.7)	(100.0)	
배심원 평의절차	판사	3	25	20	0	48	
		(6.3)	(52.1)	(41.7)	(0.0)	(100.0)	
논고문 작성	검사	22	32	10	0	64	
		(34.4)	(50.0)	(15.6)	(0.0)	(100.0)	
변론문의 작성	변호사	15	30	14	1	60	
		(25.0)	(50.0)	(23.3)	(1.7)	(100.0)	
증거자료 입수 등 사전절차		15	33	10	1	59	
		(25.4)	(55.9)	(16.9)	(1.7)	(100.0)	

이처럼 참여재판의 각 절차에 대해 법률전문가 집단이 느끼는 업무부담의 정도를 평균값으로 비교해 보면, 업무부담을 느끼는 절차가 각 직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공판준비절차”와 “배심원 선정절차”에 있어서는 검사 집단과 변호사 집단의 응답 평균이 각각 1.63과 1.95, 1.88과 1.92로 모두 2 미만인데 비하여, 판사 집단의 응답 평균은 2.69와 2.31로 나타난 것을 볼 때, 판사의 경우 다른 두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공판준비절차와 배심원 선정절차에 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배심원 설명자료 준비”, “장시간 재판”에 대해서는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응답 평균값이 1.5 이하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검사의 경우 두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값이 1.29와 1.25로 다른 두 전문가 집단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법률용어의 설명”에 대해서는 검사 집단과 변호사

집단의 응답 평균값이 1.81과 2.02인데 비하여 판사 집단의 응답 평균값은 2.35로, 판사들이 다른 두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배심원에게 법률용어를 설명하는데 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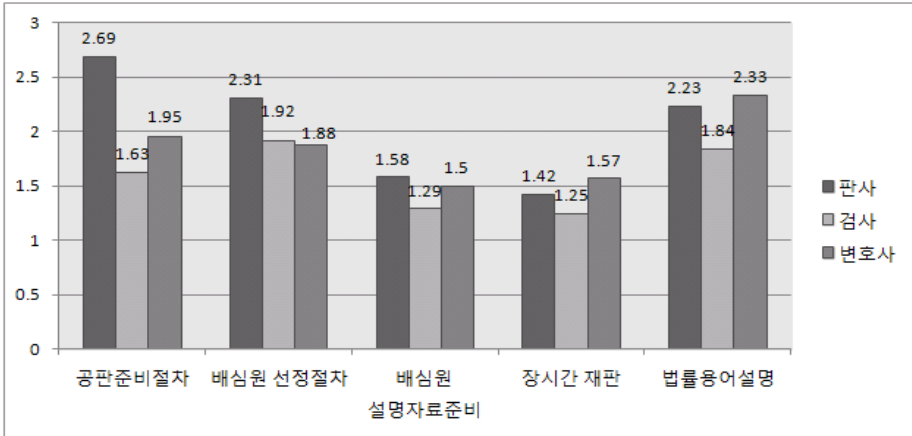


그림 2-12 참여재판 절차에 따른 업무부담에 대한 인식 평균

법률전문가 집단 가운데 참여재판에 대한 업무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검사의 경우, 특히 어떠한 점이 참여재판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가를 질문한 결과, “법률지식이 없는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한 입증자료 준비”가 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고, “변호인의 감정적 변론에 의한 배심원 영향력 차단”이 26.6%, “증거자료의 중요 정도에 대한 배심원 설득의 어려움”이 15.6%, “참여재판에 적합한 표준적인 입증자료 작성방식 미비”가 6.3%로 나타났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검사의 경우 “배심원 설명자료 준비”에 가장 큰 업무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과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재판에 생소한 배심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 감정의 편향성을 배제한 - 사실을 판단하게 할 것인가가 참여재판 진행 검사들의 최대 고민이 아닌가 한다.

표 2-159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어려운 점_검사

	N	%
법률지식이 없는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한 입증자료 준비	32	50.0
참여재판에 적합한 표준적인 입증자료 작성방식 미비	4	6.3
증거자료의 중요 정도에 대한 배심원 설득의 어려움	10	15.6
변호인의 감정적 변론에 의한 배심원 영향력 차단	17	26.6
기타	1	1.6
계	64	100.0

무응답 : 4명

한편, 변호사를 제외한 판사와 검사에 대하여 현행 참여재판 시행에 있어서 인적·물적·경제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가를 살펴본 결과, 판사의 경우 “참여재판 공판정 확보”, “참여재판 전담부서 확보”, “참여재판 시행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모두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0%, 61.7%,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참여재판 준비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검사의 경우에는 “참여재판의 공판정 확보”에 대해서만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재판 전담부서 확보”, “참여재판 시행예산 확보”, “참여재판 준비인력 확보” 모두에 대해서 ‘약간 미흡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3.8%, 54.1%,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160 참여재판 시행 준비상황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직업	매우 미흡	미흡	충분	매우 충분	계
참여재판 공판정 확보	판사	2	13	24	9	48
		(4.2)	(27.1)	(50.0)	(18.8)	(100.0)
	검사	10	24	29	1	64
		(15.6)	(37.5)	(45.3)	(1.6)	(100.0)

	직업	매우 미흡	미흡	충분	매우 충분	계
참여재판 전담부서 확보	판사	5	10	29	3	47
		(10.6)	(21.3)	(61.7)	(6.4)	(100.0)
	검사	20	28	16	—	64
		(31.3)	(43.8)	(25.0)	—	(100.0)
참여재판 시행예산 확보	판사	7	16	20	3	46
		(15.2)	(34.8)	(43.5)	(6.5)	(100.0)
	검사	11	33	16	1	61
		(18.0)	(54.1)	(26.2)	(1.6)	(100.0)
참여재판 준비인력 확보	판사	8	25	12	2	47
		(17.0)	(53.2)	(25.5)	(4.3)	(100.0)
	검사	25	30	9	—	64
		(39.1)	(46.9)	(14.1)	—	(100.0)

2.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법률상 규정요건에 대한 인식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참여재판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동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해야 하고, 설령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에 의한 배제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상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참여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시범실시 단계라는 이유때문이기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운영되는 참여재판의 제한요건들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 참여재판 절차상 제한적 규정에 대한 인식

현행 참여재판 절차상 제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범위”, “피고인의 참여재판 신청제도”, “법률상 참여재판 배제사유”, “항소심에 대한 참여재판 배제” 등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절차적 제한규정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면, 대체적

으로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률상 참여재판 배제사유”에 대해서는 전체 법률전문가 집단의 73.6%가 ‘대체로 타당하다’고 하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체 법률전문가 집단의 64.4%가 ‘대체로 타당하다’고 하는 응답률을 나타냈다. 다만 “항소심에 대한 참여재판 배제”에 대해서는 판사와 변호사 집단의 경우에는 ‘대체로 타당하다’는 응답이 64.6%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난데 비해, 변호사 집단의 경우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응답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16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절차적 규정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직업	매우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별로 타당하지 않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계	χ^2
참여재판 대상사건 제한	판사	1	37	10	0	48	$\chi^2=40.566$ df=6 $p < .001$
		(2.1)	(77.1)	(20.8)	(0.0)	(100.0)	
	검사	20	39	6	1	66	
		(30.3)	(59.1)	(9.1)	(1.5)	(100.0)	
	변호사	1	37	19	4	61	
		(1.6)	(60.7)	(31.1)	(6.6)	(100.0)	
피고인의 참여재판 신청제도	판사	22	113	35	5	175	$\chi^2=13.091$ df=6 $p < .05$
		(12.6)	(64.6)	(20.0)	(2.9)	(100.0)	
	검사	1	35	11	0	47	
		(2.1)	(74.5)	(23.4)	(0.0)	(100.0)	
	변호사	9	36	15	6	66	
		(13.6)	(54.5)	(22.7)	(9.1)	(100.0)	
법률상 참여재판 배제사유	판사	3	39	17	2	61	$\chi^2=22.677$ df=6 $p < .001$
		(4.9)	(63.9)	(27.9)	(3.3)	(100.0)	
	검사	13	110	43	8	174	
		(7.5)	(63.2)	(24.7)	(4.6)	(100.0)	
	변호사	2	42	4	0	48	
		(4.2)	(87.5)	(8.3)	(0.0)	(100.0)	
법률상 참여재판 배제사유	판사	10	48	6	2	66	$\chi^2=22.677$ df=6 $p < .001$
		(15.2)	(72.7)	(9.1)	(3.0)	(100.0)	
	변호사	2	38	19	1	60	
		(3.3)	(63.3)	(31.7)	(1.7)	(100.0)	
	계	14	128	29	3	174	
		(8.0)	(73.6)	(16.7)	(1.7)	(100.0)	

	직업	매우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별로 타당하지 않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계	χ^2
항소심에 대한 참여재판 배제	판사	8	31	9	0	48	$\chi^2=21.154$ df=6 $p < .01$
		(16.7)	(64.6)	(18.8)	(0.0)	(100.0)	
	검사	18	36	8	4	66	
		(27.3)	(54.5)	(12.1)	(6.1)	(100.0)	
	변호사	9	23	24	5	61	
		(14.8)	(37.7)	(39.3)	(8.2)	(100.0)	
	계	35	90	41	9	175	
		(20.0)	(51.4)	(23.4)	(5.1)	(100.0)	

하지만, 이와 같은 참여재판 절차상 제한적 규정에 대한 법률전문가 집단별 응답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피고인의 참여재판 신청제도”에 대해서는 판사·검사·변호사 집단의 응답평균이 각각 2.21, 2.27, 2.30으로 직역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참여재판 대상사건 범위제한”에 대해서는 검사 집단의 응답평균이 1.82로 다른 두 전문가 집단인 판사와 변호사의 응답평균인 2.19와 2.43와 비교해 볼 때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법률상 참여재판 배제사유”에 대해서는 검사 집단과 판사 집단의 응답평균이 2.0과 2.04인데 비하여 변호사 집단의 응답 평균은 2.32로, 변호사의 경우가 다른 두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참여재판에 대한 법률상 배제사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항소심에 대한 참여재판 배제”에 대해서도 판사 집단과 검사 집단의 응답평균이 1.97과 2.02로 나타난데 비해 변호사 집단의 응답평균은 2.41로, 변호사들이 동 문항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직역에 비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한 법률전문가 직역간 차이는 “피고인의 참여재판 신청제도”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62 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인식 평균

항목	집단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참여재판 대상사건 제한	판사	48	2.19	.445	16.533***
	검사	66	1.82	.654	
	변호사	61	2.43	.644	
피고인의 참여재판 신청제도	판사	47	2.21	.463	0.212 n.s
	검사	66	2.27	.814	
	변호사	59	2.30	.615	
법률상 참여재판 배제사유	판사	48	2.04	.355	6.234*
	검사	66	2.00	.608	
	변호사	60	2.32	.567	
항소심에 대한 참여재판 배제	판사	48	2.02	.601	5.951*
	검사	66	1.97	.803	
	변호사	61	2.41	.844	

***p<0.001, **p<0.01, *p<0.05, n.s. = non significant

나.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현행 참여재판 법률에 의하면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유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률에 의해 대상사건을 한정함으로써 오히려 초기에 참여재판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인식이 있어서 참여재판 규칙을 통해 대상사건을 법제정 당시보다는 약간 확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참여재판 대상사건 이외의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의한 위헌소송제기가 이어지고 있고, 학계에 있어서도 참여재판 대상사건을 지금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본 결과, “현행 법상 참여재판 대상범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17.8%에 그쳤으며, 오히려 “현행법상 참여재판 대상범죄를 일부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전문가 직역군별로 비교해 보면, 판사의 경우에는 “현행유지”의견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변호사의 경우 “일부 확대”의견이 55.7%로 가장 많았고, 검사는 “대폭 축소” 의견이 30.8%로 가장 많았다.

표 2-163 직업별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 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직업	대폭 축소	일부 축소	일부 확대	전면 확대	현행 유지	계	χ^2
판사	1	7	17	2	21	48	$\chi^2=82.460$ df=8 $p < .001$
	(2.1)	(14.6)	(35.4)	(4.2)	(43.8)	(100.0)	
검사	20	18	9	18	0	65	
	(30.8)	(27.7)	(13.8)	(27.7)	(0.0)	(100.0)	
변호사	4	6	34	7	10	61	
	(6.6)	(9.8)	(55.7)	(11.5)	(16.4)	(100.0)	
계	25	31	60	27	31	174	
	(14.4)	(17.8)	(34.5)	(15.5)	(17.8)	(100.0)	

한편 참여재판 대상범죄 확대 여부에 대한 법률전문가 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판사 집단과 변호사 집단의 응답 평균은 3.73과 3.21로 나타나며, 검사 집단의 응답 평균은 2.38로 다른 두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참여재판 대상범죄 확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판사와 변호사의 경우에는 응답 평균이 모두 3 이상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현행 참여재판 대상범죄를 보다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2-164 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범위확대여부에 대한 인식 평균

항목	집단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범위확대여부	판사	48	3.73	1.233	19.608***
	검사	65	2.38	1.195	
	변호사	61	3.21	1.051	

*** $p < 0.001$

다음으로 법률전문가들이 현재 참여재판 대상은 아니지만 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어떠한 범죄유형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현재 참여재판 대상사건이지만 참여재판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범죄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판사 집단은 현행 참여재판 대상사건 가운데 참여재판에 부적합한 범죄유형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2.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뇌물범죄”라고 응답한 비율이 20%였다. 변호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행법에 규정된 참여재판 대상사건 가운데 참여재판에 부적합한 범죄유형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4.2%로 가장 높았으며, “성범죄”가 16.9%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검사의 경우 대상사건 가운데 참여재판에 부적합한 유형은 “성범죄”라고 응답한 비율이 2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환경범죄”로 18.6%였다.

그리고 현행법상 참여재판 대상사건은 아니지만 앞으로 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범죄유형에 대해, 판사와 검사는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4.4%와 52.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음란물 관련범죄”로 각각 15.6%와 15.7%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변호사의 경우에는 비대상사건 가운데 참여재판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범죄유형은 “교통”, “횡령 및 배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동일하게 1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위증 및 무고범죄”로 1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다. 피고인 신청주의

현행 참여재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될 때 참여재판 신청서를 함께 발부하여 7일 이내에 참여재판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참여재판 개시요건으로서 피고인 신청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참여재판이 현행법상 규정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제시된 것이 피고인 신청주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참여재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피고인 신청에 의한 참여재판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이 나중에 철회하는 비율이 지난 3년간 40%를 상회하는 등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도, 피고인들이 신청 당시에는 참여재판이 뭔지 모르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변호사 또는 동료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철회한 경우가 상당수라는 것을 보면, 피고인 신청에 의존하는 참여재판의 운영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표 2-165 피고인 신청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방안

(단위 : 명, %)

직업	현행대로	일정 범죄 의무화, 나머지 대상범죄는 현행대로	원칙적인 의무화, 피고인에게 포기권 부여	신청권자를 검사와 재판부로 확대	계	χ^2
판사	24	7	5	11	47	$\chi^2=18.345$ df=6 $p < .01$
	(51.1)	(14.9)	(10.6)	(23.4)	(100.0)	
검사	32	7	1	24	64	
	(50.0)	(10.9)	(1.6)	(37.5)	(100.0)	
변호사	29	13	11	8	61	
	(47.5)	(21.3)	(18.0)	(13.1)	(100.0)	
계	85	27	17	43	172	
	(49.4)	(15.7)	(9.9)	(25.0)	(100.0)	

이와 같은 참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 신청주의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현행대로 피고인 신청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9.4%로 가장 높았으며, “현행법상 참여재판 신청권자를 피고인에서 검사와 재판부로 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25%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판사와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변호사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피고인 신청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기는 했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은 판사, 검사와는 달리 “일정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참여재판 실시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대상범죄는 현행대로 피고인 신청에 의한다”로 21.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즉 법률전문가들은 참여재판에 대한 위헌논의 여지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참여재판에 대한 시범적인 운영방식이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현행과 같은 피고인 신청주의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참여재판 배제결정제도

현행 참여재판법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참여재판에 대한 배제

결정을 내리고 통상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참여재판의 특성상 피고인, 피해자, 증인 등이 모두 일반국민에게 공개되어지고, 배심원 역시 당사자들에게 모두 공개되어지기 때문에, 공개로 인한 어떠한 위협이나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만 한다. 즉 배심원이 피고인측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우려도 있고, 피해사실의 노출로 인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야기될 우려를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은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배제사유 가운데 “그 밖에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는 일반적, 포괄적 사유가 존재함으로써 인해 참여재판 시행 첫해부터 배제율이 20%를 상회하여 참여재판의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대법원 예규를 통해 일반적 배제사유를 구체화하는 형태로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정신이상의 의심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현저한 절차지연 등으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명시했고, 이로 인해 2010년 들어 배제율이 약간 낮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참여재판 배제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들은 현행 참여재판 배제사유에 대하여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현행방식이 적절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38.4%의 응답률을 보인 반면, “현행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판단은 예규의 3가지 요건(추가기소, 정신이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외에 다른 사유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47.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 2-166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제도 개선방안

(단위 : 명, %)

직업	현행방식 유지	예규상 3가지 요건 외에 다른 배제판단사유 필요	배제판단사유는 예규에 의한 3가지 요건에 제한	배제결정제도 폐지, 신청사건에 대해 참여재판 의무화	계	χ^2
판사	19	25	1	3	48	$\chi^2=4.731$
	(39.6)	(52.1)	(2.1)	(6.3)	(100.0)	df=6 $p=n.s.$

직업	현행방식 유지	예규상 3가지 요건 외에 다른 배제판단사유 필요	배제판단사유는 예규에 의한 3가지 요건에 제한	배제결정제도 폐지, 신청사건에 대해 참여재판 의무화	계	χ^2
검사	27	28	3	5	63	
	(42.9)	(44.4)	(4.8)	(7.9)	(100.0)	
변호사	20	28	5	8	61	
	(32.8)	(45.9)	(8.2)	(13.1)	(100.0)	
계	66	81	9	16	172	
	(38.4)	(47.1)	(5.2)	(9.3)	(100.0)	

한편 판사·검사·변호사 각각에 대해 참여재판 배제결정과 관련한 경험여부, 즉 배제결정을 한 경험이 있는지, 배제결정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신청사건에 대해 배제결정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배제결정사유는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참여재판 실무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사유로 배제결정이 이루어지고, 참여재판 관련자가 직접 체감하는 배제율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판사의 경우 직접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6%였으며, 검사의 경우 “참여재판 배제결정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6.6%였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의뢰인인 피고인이 신청한 참여재판이 배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2.2%였으며,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8.3%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법률전문가 집단의 참여재판 배제결정 체감률은 공식통계에 나타난 배제율 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판사·검사·변호사가 경험한 배제결정사유를 보면, “기타 사유”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저한 절차지연”이 20명, “공동피고인 일부가 원하지 않음”이 16명이었다. 한편 “기타 사유”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사건이 복잡하고 수개의 범행이 연관되어 배심원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성범죄 피해자가 청소년이어서”,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하루 종일 재판정에 출석해 있는 것이 어려워서”, “성범죄 피해자가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이 예상되어서” 등이 제시되었다.

표 2-167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사유(중복응답)

참여재판 배제사유	응답빈도
배심원 후보자 등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침해우려	1
공동피고인 일부가 원하지 않음	16
추가 기소 예상	12
피고인에게 정신이상 의심됨	6
현저한 절차지연 예상	20
피고인의 태도불량	2
친족간 범행	.
자백사건	10
범행의 잔혹성(잔인성)	1
기타 사유	27

마. 참여재판에 대한 항소

현행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통상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항소가 허용되고 있으며, 항소율은 통상 공판절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율이 높은 것은 참여재판의 무죄율이 8.7%로 일반 형사재판 1심 무죄율 3.1%보다 3배 가량 높아서 검찰의 항소율이 특히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항소율은 높지만 실제 원심과 기율은 24.1%로 일반 고등법원 원심과 기율인 40.6%보다는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참여재판의 항소와 관련한 쟁점은 일반시민의 대표인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항소심에서 번복하게 되면, 배심제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고 하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참여재판에 대한 항소 여부의 문제는 실 무계와 학계에서 빈번하게 논의되는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참여재판을 직접 진행하는 판사·검사·변호사는 항소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법률전문가 직역간 차이 없이 모두 현행대로 항소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72.3%로 나타났다. 다만 판사와 변호사의 경우 무죄판결에 대해서만 항소를 배제하고, 양형에 대해서는 항소를 허용하자고 하는 절충적인 개선방향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33.3%와 32.8%로 나타났다.

표 2-168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

직업	항소배제	무죄판결만 항소 배제, 양형은 항소 허용	현행대로 항소 허용	계	χ^2
판사	1	16	31	48	$\chi^2=24.999$ df=4 $p < .001$
	(2.1)	(33.3)	(64.6)	(100.0)	
검사	6	1	57	64	
	(9.4)	(1.6)	(89.1)	(100.0)	
변호사	4	20	37	61	
	(6.6)	(32.8)	(60.7)	(100.0)	
계	11	37	125	173	
	(6.4)	(21.4)	(72.3)	(100.0)	

이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를 허용하는 것이 참여재판제도의 정착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별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응답이 각각 56.3%, 51.6%, 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판사와 변호사는 항소허용이 참여재판 정착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보는 비율도 적지 않았다. 즉 판사의 경우에는 20.8%, 변호사의 경우에는 23%가 이 문항에 대하여 ‘대체로 그렇다’라고 하는 응답을 나타냈다. 이에 비하여 검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응답이 28.1%였다.

표 2-169 항소 허용으로 인한 참여재판제도 정착 저해 가능성

(단위 : 명, %)

직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χ^2
판사	4	10	27	7	48	$\chi^2=9.824$ df=6 p=n.s.
	(8.3)	(20.8)	(56.3)	(14.6)	(100.0)	
검사	3	10	33	18	64	
	(4.7)	(15.6)	(51.6)	(28.1)	(100.0)	
변호사	6	14	36	5	61	
	(9.8)	(23.0)	(59.0)	(8.2)	(100.0)	
계	13	34	96	30	173	
	(7.5)	(19.7)	(55.5)	(17.3)	(100.0)	

하지만 법률전문가 집단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세 집단 모두 평균이 2.5 이상으로, 항소허용이 참여재판의 정착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검사 집단의 응답 평균이 3.03으로 다른 두 집단의 응답평균 2.77과 2.66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검사의 경우 참여재판에 대한 항소허용에 대하여 다른 직업에 비하여 훨씬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제 참여재판에 있어서 검사의 항소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도 연관성을 갖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표 2-170 항소허용으로 인한 참여재판 정착 저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 평균

항목	집단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항소허용이 참여재판 정착을 방해하는 요소인가	판사	48	2.77	.805	3.691*
	검사	64	3.03	.796	
	변호사	61	2.66	.266	

*p<0.05

한편 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심 역시 참여재판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판사와 검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2.5%,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변호사는 ‘필요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171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실시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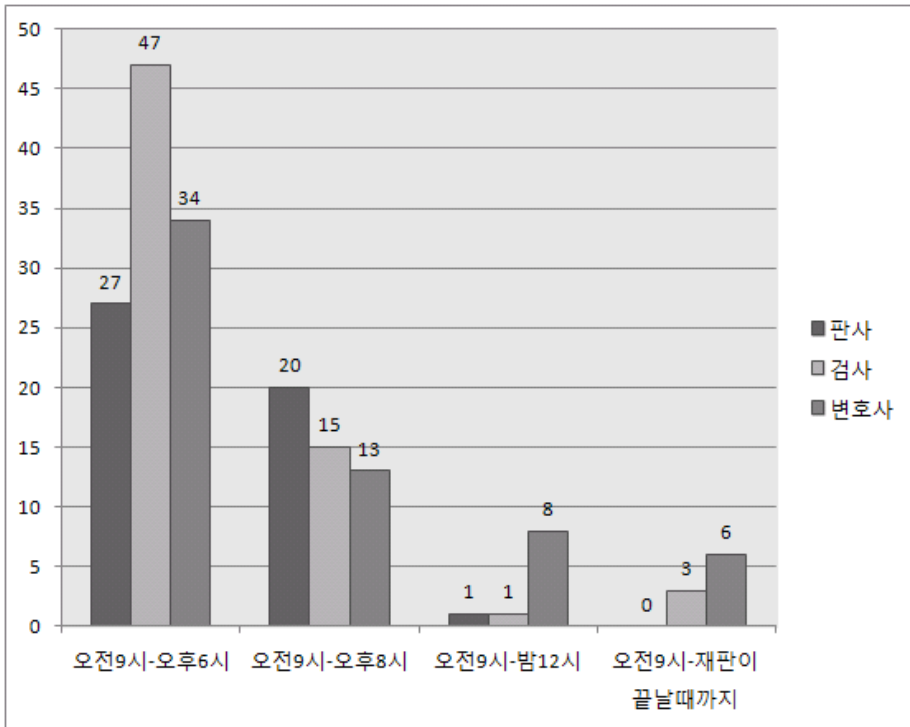
(단위 : 명, %)

직업	매우 필요하다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전혀 필요없다	계	χ^2
판사	0 (0.0)	7 (14.6)	30 (62.5)	11 (22.9)	48 (100.0)	$\chi^2=20.151$ $df=6$ $p < .01$
검사	3 (4.6)	10 (15.4)	34 (52.3)	18 (27.7)	65 (100.0)	
변호사	4 (6.6)	25 (41.0)	24 (39.3)	8 (13.1)	61 (100.0)	
계	7 (4.0)	42 (24.1)	88 (50.6)	37 (21.3)	174 (100.0)	

바. 참여재판 진행시간

현행 참여재판은 배심원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가능한 한 1일 내에 혹은 늦어도 2일 이내에 재판을 종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쟁점이 단순한 사건이라 해도 하루 만에 배심원 선정부터 최종 형선고까지 마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참여재판의 진행시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밤10시를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배심원들이 늦더라도 하루 만에 종결하기를 바란다는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검사·변호사 그리고 배심원 본인들도 하루 종일 법정에 앉아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본 조사에서도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장시간 재판이 참여재판에서 가장 부담되는 일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도 이와 같은 참여재판의 과도한 진행시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률전문가들은 참여재판 진행시간으로 어느 정도를 적정하다고 보는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1일 기준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이 재판진행 시간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통상적인 근무시간 내에 일단 재판이 종료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함께 보면, 늦어도 저녁 8시 이전에는 재판이 종료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90%로, 대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이 참여재판 진행시간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저녁 8시라고 보여진다. 한편 변호사는 밤 12시까지도 가능하다는 응답과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고 하는 응답을 합친 비율이 22.9%로 5% 미만인 판사나 검사의 응답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위: 명)

그림 2-13 참여재판 진행 적정시간

또한 참여재판을 1일 이내에 종결해야 하는가 아니면 2일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사건의 성격 또는 내용에 따라 2일 이내 연속 개정”이 적정하다고 하는 응답이 전체의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사건의 성격 또는 내용에 따라 3일 이상 연속 개정”이 적정하다고 하는 응답은 전체의 21.1%, “사건의 성격 또는 내용에 따라 별도 기일을 지정하여 여러 차례 재판진행”이 적정하다고 하는 응답은 20%로 나타났다. 반면에 현재 대다수의 참여재판이 진행되는 방식인 “사건의 성격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1일 이내”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18.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172 참여재판 진행 적정 기간

(단위 : 명, %)

직업	1일 이내	2일 이내 연속 개정	3일 이상 연속 개정	별도 기일 지정 여러 차례 진행	계	χ^2
판사	9	25	8	6	48	$\chi^2=11.079$ $df=6$ $p<.n.s.$
	(18.8)	(52.1)	(16.7)	(12.5)	(100.0)	
검사	17	19	17	13	66	
	(25.8)	(28.8)	(25.8)	(19.7)	(100.0)	
변호사	7	26	12	16	61	
	(11.5)	(42.6)	(19.7)	(26.2)	(100.0)	
계	33	70	37	35	175	
	(18.9)	(40.0)	(21.1)	(20.0)	(100.0)	

이와 같이 참여재판이 신속하게 종결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실제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비록 공판전 준비절차를 거치면서 쟁점을 명확히 하고, 입증자료와 증인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도 범행사실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자로 갠 듯 명확히 맞추어지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주장과 반론을 통해 새로이 밝혀지는 진실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1일 혹은 2일 이내로 제한된 시간 내에 재판을 종결해야 한다는 강박적 상황이 실제적 진실에 눈을 감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은 모두 참여재판의 신속종결로 인해 실제적 진실의 발견이 저해되지는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1일 혹은 2일에 집중하여 참여재판을 신속히 종결하는 현행 재판방식이 실제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6%, 40.9%,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판사의 경우 25.5%, 검사의 경우 39.4%, 변호사의 경우 32.8%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실제적 진실 발견의 저해를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173 참여재판의 신속 종결로 인한 실제적 진실발견의 저해 가능성

(단위 : 명, %)

직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χ^2
판사	0	12	31	4	47	$\chi^2=12.951$ $df=6$ $p < .05$
	(0.0)	(25.5)	(66.0)	(8.5)	(100.0)	
검사	10	26	27	3	66	
	(15.2)	(39.4)	(40.9)	(4.5)	(100.0)	
변호사	5	20	32	4	61	
	(8.2)	(32.8)	(52.5)	(6.6)	(100.0)	
계	15	58	90	11	174	
	(8.6)	(33.3)	(51.7)	(6.3)	(100.0)	

사. 현행 참여재판절차 개선에 대한 인식

위에서는 참여재판의 각 절차적 규정내용들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각 절차에 따라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전문가 직역간 이해관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덧붙여 참여재판의 전체적인 절차, 즉 공판준비절차, 배심원 선정절차, 모두절차, 증거조사절차, 검사의 입증절차, 변호사의 변론절차, 배심원 평의절차 각각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대한 인식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법률전문가 전체적으로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 ‘별로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각 절차에 따라 전문가 직역간 약간의 차이는 보였는데, 먼저 공판준비절차와 배심원 선정절차에 있어서 판사와 변호사는 ‘별로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77.1%와 60%로 가장 많았던데 비해, 검사는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에 대한 응답률이 45%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증거조사절차에 있어서는 판사와 검사의 경우 ‘별로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약간 높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률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변호사 변론절차와 배심원 평의 절차에 있어서도 판사와 변호사는 ‘별로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데 비해 검사는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2-174 참여재판절차의 개선 필요성

(단위 : 명, %)

	직업	반드시 개선 필요	어느 정도 개선 필요	별로 개선 불필요	전혀 개선 불필요	계	χ^2
공판전 준비절차	판사	0	7	37	4	48	$\chi^2=25.710$ df=6 $p < .001$
		(0.0)	(14.6)	(77.1)	(8.3)	(100.0)	
	검사	8	27	21	4	60	
		(13.3)	(45.0)	(35.0)	(6.7)	(100.0)	
	변호사	3	15	36	6	60	
		(5.0)	(25.0)	(60.0)	(10.0)	(100.0)	
배심원 선정절차	판사	11	49	94	14	168	$\chi^2=11.673$ df=6 $p=n.s.$
		(6.5)	(29.2)	(56.0)	(8.3)	(100.0)	
	검사	0	15	28	5	48	
		(0.0)	(31.3)	(58.3)	(10.4)	(100.0)	
	변호사	6	29	20	4	59	
		(10.2)	(49.2)	(33.9)	(6.8)	(100.0)	
모두절차	판사	7	22	26	5	60	$\chi^2=23.767$ df=6 $p < .01$
		(11.7)	(36.7)	(43.3)	(8.3)	(100.0)	
	검사	13	66	74	14	167	
		(7.8)	(39.5)	(44.3)	(8.4)	(100.0)	
	변호사	0	4	38	6	48	
		(0.0)	(8.3)	(79.2)	(12.5)	(100.0)	
증거조사 절차	판사	4	25	27	3	59	$\chi^2=7.175$ df=6 $p=n.s.$
		(6.8)	(42.4)	(45.8)	(5.1)	(100.0)	
	검사	1	13	40	5	59	
		(1.7)	(22.0)	(67.8)	(8.5)	(100.0)	
	변호사	5	42	105	14	166	
		(3.0)	(25.3)	(63.3)	(8.4)	(100.0)	
검사의 입증절차	판사	1	20	23	4	48	$\chi^2=6.156$ df=6 $p=n.s.$
		(2.1)	(41.7)	(47.9)	(8.3)	(100.0)	
	검사	8	24	25	2	59	
		(13.6)	(40.7)	(42.4)	(3.4)	(100.0)	
	변호사	6	18	32	4	60	
		(10.0)	(30.0)	(53.3)	(6.7)	(100.0)	
변호사 변론절차	판사	15	62	80	10	167	$\chi^2=17.105$ df=6 $p < .01$
		(9.0)	(37.1)	(47.9)	(6.0)	(100.0)	
	검사	2	15	27	4	48	
		(4.2)	(31.3)	(56.3)	(8.3)	(100.0)	
	변호사	8	23	26	2	59	
		(13.6)	(39.0)	(44.1)	(3.4)	(100.0)	
배심원 평의절차	판사	6	16	34	4	60	$\chi^2=18.390$ df=6 $p < .01$
		(10.0)	(26.7)	(56.7)	(6.7)	(100.0)	
	검사	16	54	87	10	167	
		(9.6)	(32.3)	(52.1)	(6.0)	(100.0)	
	변호사	1	16	27	4	48	
		(2.1)	(33.3)	(56.3)	(8.3)	(100.0)	

하지만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 직역별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공판전 준비절차, 배심원 선정절차, 모두절차, 증거조사절차, 검사의 입증절차, 변호사의 변론절차, 배심원 평의절차의 개선필요성에 대한 검사 집단의 응답 평균값은 모두 2.5 미만인데 비하여, 판사와 변호사 집단의 응답 평균값은 2.5 이상¹⁷¹⁾으로 검사가 판사나 변호사보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참여재판 절차 가운데 공판전준비절차, 배심원 선정절차, 모두절차, 변호사 변론절차, 배심원 평의절차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만 법률전문가 직역간 차이가 통계상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2-175 참여재판절차 개선필요성에 대한 인식 평균

항목	집단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공판전 준비절차	판사	48	2.94	.480	10.561***
	검사	60	2.35	.799	
	변호사	60	2.75	.704	
배심원 선정절차	판사	48	2.79	.617	4.405*
	검사	59	2.37	.763	
	변호사	60	2.48	.813	
모두절차	판사	48	3.04	.459	11.518***
	검사	59	2.49	.704	
	변호사	59	2.83	.592	
증거조사절차	판사	48	2.63	.672	2.014n.s.
	검사	59	2.36	.760	
	변호사	60	2.57	.767	
검사의 입증절차	판사	48	2.69	.689	2.613n.s.
	검사	59	2.37	.763	
	변호사	60	2.60	.764	
변호사의 변론절차	판사	48	2.77	.651	7.772***
	검사	59	2.32	.706	
	변호사	60	2.71	.621	
배심원 평의절차	판사	48	2.79	.617	7.769***
	검사	59	2.27	.784	
	변호사	61	2.62	.687	

*** $p < 0.001$, ** $p < 0.01$, * $p < 0.05$, n.s. = non significant

171) 배심원 선정절차의 개선필요성에 대한 변호사 집단의 응답평균값만 2.5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재판 절차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와 함께, 참여재판에 있어서 사실심 심리와 양형심리의 분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함께 살펴보았다. 범죄사실에 대한 쟁점이 명확한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심 심리가 거의 양형심리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형자료와 범죄사실 입증자료가 함께 논의됨으로 인해 행위요소가 아닌 행위자적 책임요소가 유무죄판단시 함께 고려될 우려를 배제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전문법관이 아닌 일반 배심원에 대해 이를 명확히 구분해서 법적 판단자료로 이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들 역시 사실심 심리와 양형심리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분석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참여재판에 있어서 사실심 심리와 양형심리를 분리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판사의 경우 45.8%, 검사의 경우 50%, 변호사의 경우 50%가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 보다 약 20%정도 낮게 나타났다.

표 2-176 사실심 심리와 양형 심리 분리 운영 필요성

(단위 : 명, %)

직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χ^2
판사	5	22	17	4	48	$\chi^2=5.151$ df=6 $p=n.s.$
	(10.4)	(45.8)	(35.4)	(8.3)	(100.0)	
검사	12	33	19	2	66	
	(18.2)	(50.0)	(28.8)	(3.0)	(100.0)	
변호사	13	30	15	2	60	
	(21.7)	(50.0)	(25.0)	(3.3)	(100.0)	
계	30	85	51	8	174	
	(17.2)	(48.9)	(29.3)	(4.6)	(100.0)	

제3절 배심원 선정 및 평결

1. 배심원 선정절차

참여재판은 일반시민들 가운데 배심원을 선정하는 일정한 절차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배심원을 확정하게 된다. 이 일련의 과정들의 시작은 공판기일 이전부터 진행된다. 즉 참여재판 선정기일이 지정되면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추출¹⁷²⁾한 후 선정기일을 통지하면서 질문표를 함께 송부하며, 이를 제출하게 하여 검사와 변호사에게 교부하여 선정기일 질문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사전에 질문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기일 당일 그 자리에서 질문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즉시 질문표를 복사하여 변호사와 검사에게 교부한다.¹⁷³⁾ 배심원 질문표에는 참여재판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 제18조의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20조의 면제사유 외에 직업, 학력, 가족관계, 가족 포함 지인중에 법집행공무원이 있는지 여부, 가족이나 지인 중 범죄 및 범죄피해경험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선정기일에서는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하여 일정수의 배심원후보자를 호명하여 배심원석에 착석하게 한 후, 양 당사자로 하여금 배심원 후보자들이 제출한 질문표 또는 공판준비기일에서 합의된 추가질문표를 토대로 질문을 하게 된다. 질문에 대한 배심원후보자의 답변을 통해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양당사자의 기피신청에 의해 불선정결정을 한다. 당사자의 기피신청은 이유부 기피신청과 무이유부 기피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을 거쳐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한다.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예비배심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다.¹⁷⁴⁾

172) 배심원 배제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추출대상에서 제외한다.

173)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업무편람, 35면.

174)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업무편람에 제시된 배심원 선정절차 개요는 다음과 같다.
선정절차개시⇒선정절차안내⇒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일반질문⇒배심원후보자 무작위선정⇒진실의

가. 배심원 선정절차의 필요성과 공정성 기여에 대한 인식

참여재판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수의 배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각각의 절차가 배심원 선정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가, 그리고 이러한 선정절차를 통한 배심원확보방식이 참여재판의 공정성에 기여하는가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먼저 배심원 선정절차와 절차진행방식 전반에 대해서 법률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배심원후보자의 질문표 작성”,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검사와 변호사의 기피신청 질문”, “무이유부 기피신청”, “이유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순차기피방식”,¹⁷⁵⁾ “혼합방식”¹⁷⁶⁾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에 대하여 각 전문가 집단별 응답 평균값을 비교해본 결과, “배심원후보자의 질문표 작성”,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검사와 변호사의 기피신청 질문”, “무이유부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 집단의 응답 평균이 2 미만으로 절차로서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¹⁷⁷⁾ 그리고 “이유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에 대해서는 판사의 경우 응답 평균이

무고자⇒사건, 피고인, 피해자 등에 대한 질문⇒사법관련 지식, 경험 및 태도에 대한 질문⇒다른 배심원 후보자들과의 관계⇒검사와 변호인의 추가질문⇒선정결정 및 불선정결정⇒예비배심원과 배심원 선정⇒종결선언

175) 순차기피방식은 배심원 선정방식 가운데 하나로, 먼저 배심원 후보자군에서 무작위추첨에 의해 필요한 배심원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정한 후,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과 기피신청을 거쳐 배제한 후, 다시 추가 배심원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176) 혼합방식은 예규에 의해 추가로 규정된 배심원 선정방식으로, 법원은 순차기피 혹은 혼합방식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혼합방식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선정방식을 달리 지칭하는 용어가 없어서 연구진간의 논의를 거쳐 혼합방식으로 기술하기로 하였다. 혼합방식은 먼저 배심원후보군 전체에 대한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질문을 통해 일부 배심원후보자를 배제한 후, 순차기피방식과 마찬가지로 무작위추첨에 의해 배심원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선정하고, 다시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과 기피신청을 거쳐 추가 배심원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혼합방식이 도입된 이유는 순차기피에 의하는 경우 배심원후보자 가운데 의무감을 갖고 법정에 나왔는데 질문한번도 못 받고 그냥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데 대한 항의가 제기되었는바, 이러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자 전체에 대한 질문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177) 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한 질문 문항은 4점 척도로 “(1) 매우 필요하다 (2)대체로 필요하다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4)전혀 필요하지 않다”로 구성하였다.

1.90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낸데 비해, 검사와 변호사는 각각 응답 평균이 2.41, 2.01로 판사에 비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직역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순차기피방식”에 대해서는 판사, 검사의 경우에는 응답 평균이 2.17과 2.20으로 나타낸데 비하여 변호사는 평균이 1.90으로, 앞의 두 전문가 집단에 비해 순차기피방식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문항에 있어서도 각 직역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이와 같은 배심원 선정절차를 통한 배심원 선정이 참여재판의 공정성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가¹⁷⁸⁾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배심원후보자의 질문표 작성”,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검사와 변호사의 기피신청 질문”에 대해서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응답 평균값이 2 미만으로, 이러한 절차들이 참여재판의 공정성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이유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에 대해서는 판사와 변호사 집단의 응답 평균값은 2.0과 2.11로 나타낸데 비해 검사 집단의 응답 평균값은 2.35로, 검사가 다른 두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이유부 기피신청 기각절차가 참여재판의 공정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좀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이유부 기피신청”과 “순차기피방식”이 참여재판의 공정성에 기여하는가에 대해서 변호사 집단의 응답 평균값은 각각 1.75와 1.98로 나타낸데 비해, 검사와 판사 집단의 응답 평균값은 모두 2 이상으로 나타난 바, 변호사에 비하여 판사와 검사들이 무이유부 기피신청과 순차기피방식이 참여재판의 공정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좀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8) 본 문항은 4점 척도로 “(1) 매우 기여한다 (2) 대체로 기여한다 (3)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4)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로 구성하였다.

표 2-177 배심원 선정절차의 필요성과 공정성 기여에 대한 인식 평균

	항목	집단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배심원 선정절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배심원후보자의 질문표 작성	판사	48	1.79	.504	1,376n.s.
		검사	63	1.90	.665	
		변호사	61	1.74	.513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기피신청 질문	판사	48	1.73	.449	0,466n.s.
		검사	63	1.71	.580	
		변호사	61	1.64	.549	
	무이유부 기피신청	판사	48	1.79	.504	1,414n.s.
		검사	63	1.76	.530	
		변호사	61	1.62	.662	
	이유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판사	48	1.90	.515	9,640***
		검사	66	2.41	.761	
		변호사	61	2.03	.605	
	순차기피방식	판사	48	2.17	.559	4,693**
		검사	66	2.20	.632	
		변호사	61	1.90	.543	
	혼합방식	판사	47	2.09	.626	1,128n.s.
		검사	66	2.08	.696	
		변호사	59	2.25	.704	
참여재판의 공정성 기여에 대한 인식	배심원후보자의 질문표 작성	판사	48	1.98	.437	2,492n.s.
		검사	66	1.95	.607	
		변호사	60	1.77	.560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기피신청 질문	판사	48	1.90	.425	2,496n.s.
		검사	66	1.92	.482	
		변호사	61	1.74	.545	
	무이유부 기피신청	판사	48	2.04	.459	4,428*
		검사	66	2.00	.508	
		변호사	60	1.75	.675	
	이유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판사	48	2.11	.429	6,675**
		검사	66	2.35	.630	
		변호사	61	2.00	.548	
	순차기피방식	판사	48	2.15	.470	3,225**
		검사	66	2.23	.593	
		변호사	60	1.98	.562	
	혼합방식	판사	48	2.11	.532	1,296n.s.
		검사	66	2.28	.640	
		변호사	61	2.30	.720	

***P<0.001, **P<0.01, *P<0.005 n.s.=non significant

나. 배심원 선정절차 진행내용

참여재판에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을 공판기일 오전에 이루어지는 선정기일 내에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판사는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배심원을 질문표의 내용과 추가 질문을 통해 가려내야만 한다. 따라서 질문표는 배심원 후보자의 선입견, 심각한 판단 장애를 가리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가치관과 판단, 사생활 영역까지 연계되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재판진행과정중에 배심원의 불가피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선정한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예비라는 사실을 배심원 평의 절차전까지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배심원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련의 배심원 선정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사안들이 적정한 것 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법률전문가들에게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인식의 정도¹⁷⁹⁾를 분석한 결과, “배심원의 개인적 사항을 이용한 질문”에 대한 판사 집단의 응답 평균값은 2.21로 검사와 변호사 집단의 응답 평균값인 1.97, 1.92 보다 약간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심원후보자 질문표 구성내용”에 대해서는 판사와 검사 집단의 평균은 각각 2.02와 2.03인데 비해 변호사의 평균은 1.97로 그 차이가 극미하기는 하지만 판사와 검사에 비해서는 변호사가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예비배심원 선정 불고지”에 대해서는 판사와 변호사 집단의 평균이 각각 1.81, 1.97인데 비해 검사 집단의 평균이 2.03으로 검사 집단의 인식이 약간 다른 전문가 직역군에 비해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179)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1) 매우 타당하다 (2) 대체로 타당하다 (3) 별로 타당하지 않다 (4) 전혀 타당하지 않다”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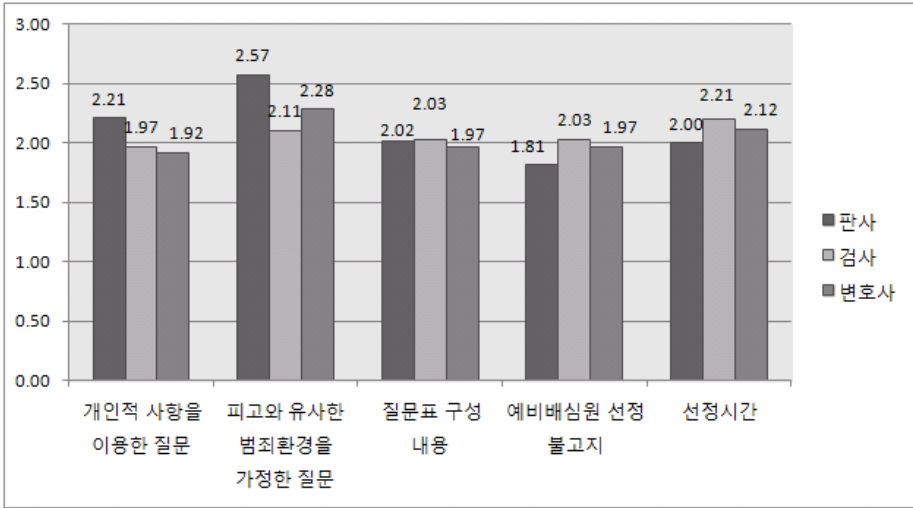


그림 2-14 배심원 선정절차 진행내용에 대한 인식 평균

다. 배심원 선정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앞에서 제시한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 선정절차에 대한 법률전문가들 대부분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현행 배심원 선정절차 가운데 참여재판의 진행에 관여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현행 배심원 선정절차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전체 조사대상자의 58%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검사의 경우 62.9%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응답했다. 즉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현행 배심원 선정절차가 무리는 없지만 개선되어야 할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표 2-178 배심원 선정절차 중 개선이 필요한 절차의 유무

(단위 : 명, %)

직업	있다	없다	계	χ^2
판사	25(52.1)	23(47.9)	48(100.0)	$\chi^2=1.305$ $df=2$ $p=n.s.$
검사	39(62.9)	23(37.1)	62(100.0)	
변호사	34(57.6)	25(42.4)	59(100.0)	
계	98(58.0)	71(42.0)	169(100.0)	

그렇다면 현행 배심원 선정절차 가운데 개선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순차기피방식에 의한 중복질문”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5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배심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질문방식”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49.1%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이유부 기피신청에 의한 기피사유의 불명확성”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77.9%가 개선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비배심원 선정불고지”에 대해서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71.6%가 개선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2-179 배심원 선정절차상 개선을 요하는 문제점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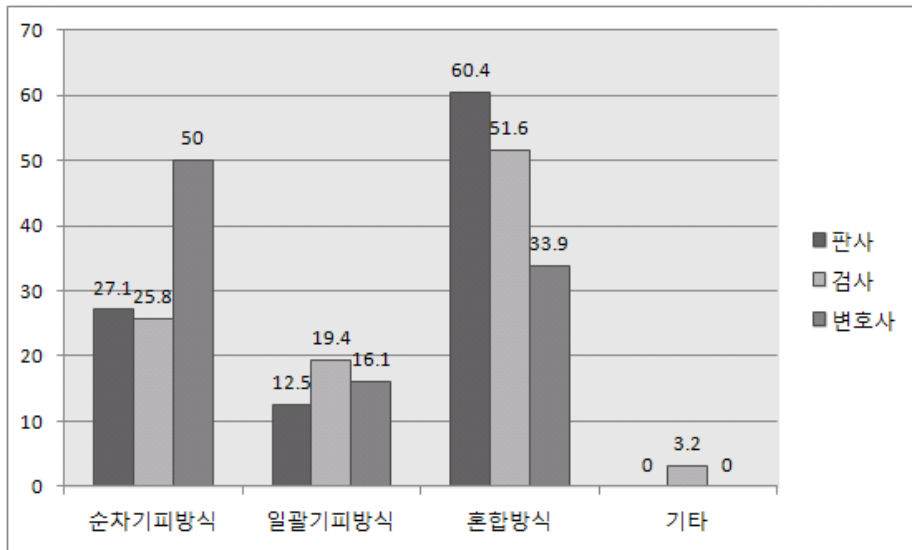
	직업	반드시 개선 필요	대체로 개선 필요	별로 개선 불필요	전혀 개선 불필요	계	χ^2
무이유부 기피신청에 의한 기피사유의 불명확성	판사	0	4	38	5	47	$\chi^2=19.157$ $df=6$ $p < .01$
		(0.0)	(8.5)	(80.9)	(10.6)	(100.0)	
	검사	3	21	33	4	61	
		(4.9)	(34.4)	(54.1)	(6.6)	(100.0)	
	변호사	2	6	39	8	55	
		(3.6)	(10.9)	(70.9)	(14.5)	(100.0)	
	계	5	31	110	17	163	
		(3.1)	(19.0)	(67.5)	(10.4)	(100.0)	
배심원의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는 질문방식	판사	3	26	18	0	47	$\chi^2=4.888$ $df=6$ $p=n.s.$
		(6.4)	(55.3)	(38.3)	(0.0)	(100.0)	
	검사	3	31	24	3	61	
		(4.9)	(50.8)	(39.3)	(4.9)	(100.0)	

	직업	반드시 개선 필요	대체로 개선 필요	별로 개선 불필요	전혀 개선 불필요	계	χ^2
	변호사	6	23	24	2	55	
		(10.9)	(41.8)	(43.6)	(3.6)	(100.0)	
	계	12	80	66	5	163	
		(7.4)	(49.1)	(40.5)	(3.1)	(100.0)	
순차기피방식에 의한 중복질문	판사	6	26	15	0	47	$\chi^2=6.091$ df=6 $p=n.s.$
		(12.8)	(55.3)	(31.9)	(0.0)	(100.0)	
	검사	5	33	22	3	63	
		(7.9)	(52.4)	(34.9)	(4.8)	(100.0)	
	변호사	11	27	18	1	57	
		(19.3)	(47.4)	(31.6)	(1.8)	(100.0)	
예비배심원 선정 불고지	판사	22	86	55	4	167	$\chi^2=12.573$ df=6 $p < .001$
		(13.2)	(51.5)	(32.9)	(2.4)	(100.0)	
	검사	0	6	31	10	47	
		(0.0)	(12.8)	(66.0)	(21.3)	(100.0)	
	변호사	2	22	31	5	60	
		(3.3)	(36.7)	(51.7)	(8.3)	(100.0)	
배심원 선정시간의 불충분성	판사	3	13	31	8	55	$\chi^2=27.122$ df=6 $p < .05$
		(5.5)	(23.6)	(56.4)	(14.5)	(100.0)	
	검사	5	41	93	23	162	
		(3.1)	(25.3)	(57.4)	(14.2)	(100.0)	
	변호사	1	8	35	3	47	
		(2.1)	(17.0)	(74.5)	(6.4)	(100.0)	
배심원 선정시간의 불충분성	판사	5	36	21	1	63	$\chi^2=27.122$ df=6 $p < .05$
		(7.9)	(57.1)	(33.3)	(1.6)	(100.0)	
	변호사	7	18	27	4	56	
		(12.5)	(32.1)	(48.2)	(7.1)	(100.0)	
	계	13	62	83	8	166	
		(7.8)	(37.3)	(50.0)	(4.8)	(100.0)	

한편 법률전문가 직역군별로 배심원 선정방식에 대한 선호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하여 현행과 같은 배심원 선정방식 외에 일괄기피 방식¹⁸⁰⁾을 포함하여 어느 방식이 참여재판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판사와 검사는 현행 규정에 따른 “혼합방식”이 효과적이

180) 일괄기피방식이란 모든 배심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질문과 기피신청의 반복을 통해 최종적으로 필요한 수만큼 배심원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0.4%와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변호사는 “순차기피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심원 선정방식에 있어서도 법률전문가 직역군별로 선호도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위 : %)

그림 2-15 참여재판에 효과적인 배심원 선정방식

마지막으로 현행 배심원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판사 95.8%, 검사 82.5%, 변호사 86%가 현행 배심원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함께 참여재판에 필요한 배심원수의 최소, 최대 몇 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알아본 결과, 법률전문가의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최소 7.4명, 최대 12.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배심원수는 최소 5명에서 최대 9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전문가들은 최소 7명에서 최대 12명까지 배심원수를 확보하는 것이 참여재판에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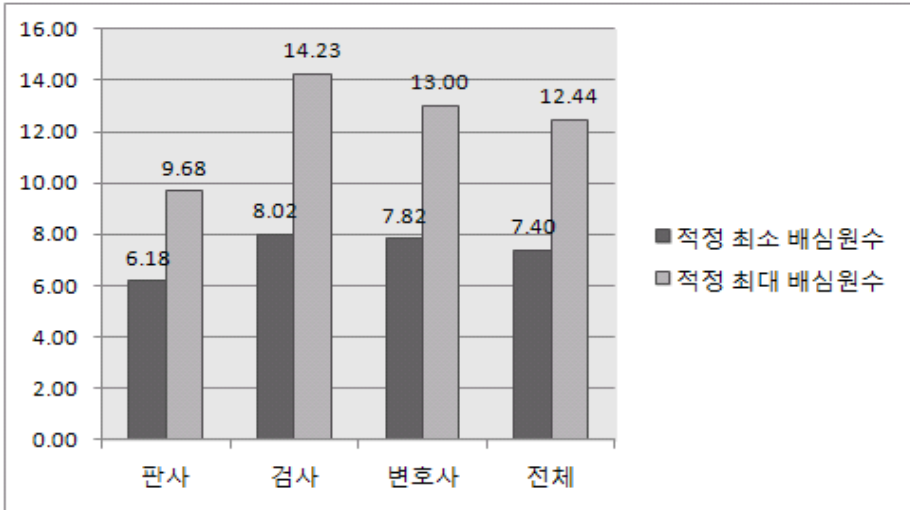


그림 2-16 적정 배심원수(최소인원, 최대인원)

2. 배심원 평결절차

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 선정절차를 거쳐 집중심리 형태의 공판절차에서 최종변론이 종결되면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최종 정리하는 재판장 최종 설명을 거쳐¹⁸¹⁾ 배심원 평의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평의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배심원 대표를 선출하고 유무죄 평의를 하여 의견이 만장일치된 경우 유무죄 평결을 하고 양형토의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 판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단순 다수결 방식의 평의를 거쳐 유무죄 평결에 이르게 된다.

가. 현행 배심원 평결절차에 대한 인식

앞에서 기술한 바와 현행법상 배심원 평결은 1차 평의시 법관의 관여 없는 만장일치 방식으로 진행되며, 만장일치가 안되어 2차 평의에 들어가게 되면 법관이

181) 법원행정처, 형사재판장 매뉴얼, 2008. 58면

의견을 개진한 후 단순다수결 방식으로 평결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나온 배심원 평결에 대해서 법관은 구속되지 않으며, 배심원 평결에 따른 판결에 대해 항소가 허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심원 평결절차 내지 평결방식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1차 평의시 법관의 관여 없는 만장일치 평결 방식”에 대해서는 판사와 변호사 집단의 응답 평균값이 각각 1.79와 1.91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검사 집단의 응답 평균값은 2.15로 다른 두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약간 더 많았다. 그리고 “2차 평의시 법관의견 개진후 단순다수결 평결 방식”에 대해서는 판사 집단의 응답 평균값은 1.83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 반면에, 검사와 변호사 집단의 응답 평균값은 각각 2.32와 2.31로 판사에 비하여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배제”에 대한 판사와 검사 집단의 응답 평균값은 2.04와 2.38인데 비하여 변호사 집단의 응답 평균값은 2.86으로 나타난 바, 변호사의 경우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기속력을 배제하고 있는 현행 참여재판 절차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변호사의 입장에서 배심원을 대상으로 열심히 변론하고 설득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평결을 이끌어낸다고 해도, 사실상 평결에 대해 법관이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배심원 평결이 법관에 의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 허용”에 대해서는 판사와 검사 집단의 응답 평균값은 2.03, 2.04인데 비하여 변호사 집단의 응답 평균값은 2.37로, 앞의 두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 허용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이는 변호사의 경우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배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과 동일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표 2-180 배심원 평결절차의 타당성 인식 평균

항목	집단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1차 평의시 법관의 관여없는 만장일치 평결방식	판사	47	1.79	.508	4.525*
	검사	62	2.15	.674	
	변호사	58	1.91	.683	
2차 평의시 법관의견 개진후 단순다수결 평결방식	판사	48	1.83	.559	9.880***
	검사	63	2.32	.618	
	변호사	58	2.31	.706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배제	판사	47	2.04	.721	13.908***
	검사	64	2.38	.917	
	변호사	59	2.86	.753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허용	판사	47	2.04	.721	3.554*
	검사	63	2.03	.761	
	변호사	59	2.37	.849	

나. 배심원 유무죄 및 양형판단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

현행 참여재판은 배심제적 성격과 참심제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을 모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전문한 배심원들이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뿐만 아니라 법관의 고유영역에 속했던 양형에 대한 판단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3년 반 동안 참여재판이 진행되어 오면서 배심원 평결과 법관의 판결 일치도가 대단히 높게 형성됨으로써,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도 배심원 판단에 대하여 신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배심원의 유무죄판단과 양형판단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배심원 유무죄 및 양형판단의 합리성의 정도에 있어서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라는 응답만 있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을 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배심원 유무죄 및 양형판단의 합리성 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법률전문가

집단의 평균을 비교해 보아도 각 집단 모두 응답 평균값이 2 미만으로 배심원의 판단이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만큼 배심원 판단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표 2-181 배심원 유무죄 및 양형판단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 평균

항목	집단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배심원 유무죄판단의 합리성여부	판사	47	1.10	.309	29.282
	검사	62	1.63	.487	
	변호사	60	1.17	.376	
배심원 양형판단의 합리성 여부	판사	48	1.13	.334	24.702
	검사	62	1.68	.471	
	변호사	60	1.28	.454	

배심원의 판단의 합리성 정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양형평결결과로 나온 형량 수준에 대해서 법률전문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 전체적으로는 배심원들이 결정한 형량수준이 ‘낮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판사와 변호사의 경우에는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9.5%와 46.3%로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데 비하여 검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나치게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22%로 나타난 것을 볼 때, 형량에 대한 법률전문가 직역간 인식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182 배심원 평결 형량수준의 적정성 인식

(단위 : 명, %)

직업	지나치게 높다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지나치게 낮다	계	χ^2
판사	0 (0.0)	15 (39.5)	22 (57.9)	1 (2.6)	38 (100.0)	$\chi^2=31.333$ $df=6$ $p < .001$
	0 (0.0)	7 (11.9)	39 (66.1)	13 (22.0)	59 (100.0)	
변호사	2 (3.7)	25 (46.3)	26 (48.1)	1 (1.9)	54 (100.0)	
	2 (1.3)	47 (31.1)	87 (57.6)	15 (9.9)	151 (100.0)	
계	2 (1.3)	47 (31.1)	87 (57.6)	15 (9.9)	151 (100.0)	
	2 (1.3)	47 (31.1)	87 (57.6)	15 (9.9)	151 (100.0)	

또한 배심원들이 결정한 형량의 적정성 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법률전문가 집단의 응답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판사와 검사 집단의 경우 응답 평균값이 2.63, 3.10으로 대체적으로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형량수준이 낮다는 인식이 많은 반면에 변호사 집단의 경우에는 응답 평균값이 2.48로 오히려 높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183 배심원 평결 형량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 평균

항목	집단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배심원 평결 형량수준의 적정성 여부	판사	38	2.63	.541	17.421***
	검사	59	3.10	.578	
	변호사	54	2.48	.606	

이와 같은 배심원들의 평결결과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판사의 66%와 변호사의 55.4%가 ‘아니오’라고 응답한 반면에 검사의 90.3%는 ‘예’라고 응답함으로써 검사들의 경우에는 배심원들이 제시하는 형량수준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검사의 높은 항소율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184 배심원 양형평결과 범죄결과의 불부합 여부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직업	예	아니오	계	χ^2
판사	16 (34.0)	31 (66.0)	47 (100.0)	$\chi^2=41.952$ df=2 $p < .001$
검사	56 (90.3)	6 (9.7)	62 (100.0)	
변호사	25 (44.6)	31 (55.4)	56 (100.0)	
계	97 (58.8)	68 (41.2)	165 (100.0)	

한편, 그와 같이 배심원들의 양형평결 결과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웠던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배심원들이 객관적인 증거 보다는 감성에 의지해 평결을 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61.6%였으며, “재판과정을 통해 주입된 검사나 변호사의 주장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21%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경향에 있어서 전문가 직역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 2-185 직업별 배심원 평결결과의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

직업	객관적 증거 보다는 감성에 의지해 평결했기 때문에	재판과정을 통해 주입된 검사나 변호사의 주장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접 증거만을 유죄 증거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타	계	χ^2
판사	22(61.1)	7(19.4)	1(2.8)	6(16.7)	36(100)	$\chi^2=8.840$ df=6 $p=n.s.$
검사	40(66.7)	14(23.3)	4(6.7)	2(3.3)	60(100)	
변호사	23(54.8)	8(19.0)	2(4.8)	9(21.4)	42(100)	
계	85(61.6)	29(21.0)	7(5.1)	17(12.3)	138(100)	

다. 배심원 평결과 법관 판결의 일치여부

법률전문가의 조사대상 가운데 판사들에 대해서만 배심원 평결과 판결의 일치여부에 대한 경험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배심원 평결과 법관 본인판단의 불일치 경험을 한 판사는 전체 48명 가운데 25명으로 52.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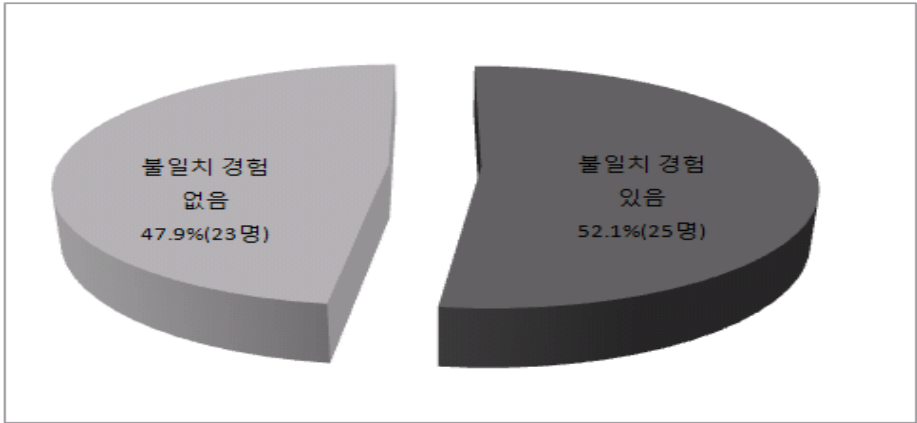


그림 2-17 배심원 평결과 법관 판단 불일치 경험 유무

그리고 이와 같이 배심원 평결과 불일치시 법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판결을 한 경우가 64.2%, 본인의 판단을 배제하고 배심원 평결을 존중한 경우가 35.8%였다.¹⁸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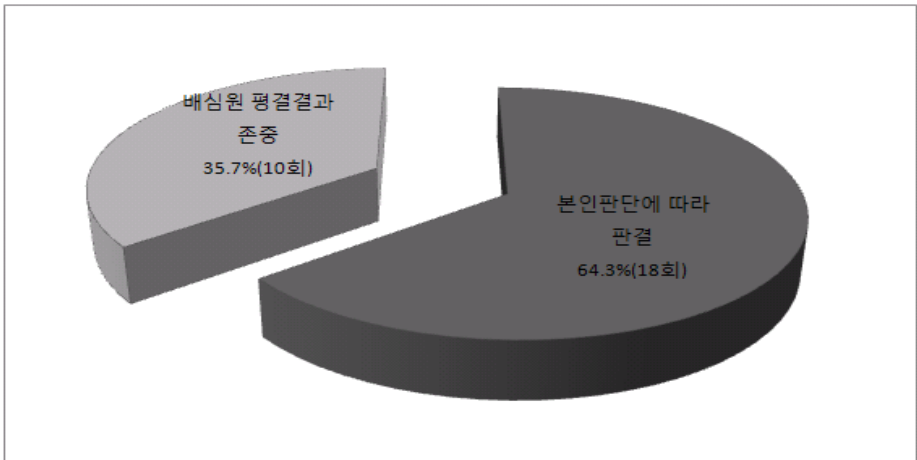


그림 2-18 배심원 평결과 불일치시 판결 선택 여부

182) 그림 2-17은 배심원 평결과 불일치한 경험을 한 판사의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림 2-18은 불일치 경험을 한 판사가 최종 형선고시 자신의 판단을 따른 횟수와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여 그대로 형선고한 횟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편, 판사 본인이 판단하기에 유죄(혹은 무죄)로 판단되는 사건을 배심원이 정반대의 무죄(혹은 유죄)로 평결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를 살펴본 결과, 72.7%의 판사가 “법관인 본인의 판단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7.3%의 판사는 “배심원 평결에 따라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판사들의 입장에서 가능한 배심원의 판단은 존중하되, 자신의 판단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전문 법관인 본인의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보여졌다.

라. 배심원 평결절차 개선방안

2008년 참여재판이 시행된 이래, 참여재판을 도입하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논란의 쟁점이 되어왔던 내용들이 바로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 항소허용, 단순다수결에 의한 평결방식 등이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던 내용들에 대하여 참여재판을 직접 진행하는 실무 법률전문가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에 대해서는 판사와 검사의 경우 ‘별로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각각 47.9%와 4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에 변호사의 경우에는 ‘대체로 타당하다’는 견해가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 제한”에 대해서는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별로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각각 56.3%, 47.5%,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 문항에 대해서 변호사의 경우 ‘대체로 타당하다’는 응답이 30.4%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무죄 평의시 중다수결(3/4 내지 2/3)로 일원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판사의 경우 ‘별로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68.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검사와 변호사의 경우 ‘대체로 타당하다’는 견해가 각각 59.7%와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유무죄 평의시 만장일치제로 일원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별로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46.8%, 60.3%,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문항에 대해 판사의 경우 ‘대체로 타당

하다'는 견해도 40.4%로 '별로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률과 큰 차이가 없었다.

즉 배심원 평결절차와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해 판사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검사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평결절차 개선안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유무죄 평의시 1차는 만장일치제, 2차(불일치시)는 단순다수결로 평결을 내리는 현재의 방식은 중다수결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변호사의 경우에는 판사와 검사에 비하여 평결절차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유무죄 평의시 중다수결 방식으로 일원화와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의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186 배심원 평결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문항	직업	매우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별로 타당하지 않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계	χ^2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	판사	3	12	23	10	48	$\chi^2=26.360$ df=6 $p < .001$
		(6.3)	(25.0)	(47.9)	(20.8)	(100.0)	
	검사	5	17	25	14	61	
		(8.2)	(27.9)	(41.0)	(23.0)	(100.0)	
	변호사	15	26	14	2	57	
		(26.3)	(45.6)	(24.6)	(3.5)	(100.0)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 제한	판사	23	55	62	26	166	$\chi^2=9.861$ df=6 $p=n.s.$
		(13.9)	(33.1)	(37.3)	(15.7)	(100.0)	
	판사	2	10	27	9	48	
		(4.2)	(20.8)	(56.3)	(18.8)	(100.0)	
	검사	3	11	29	18	61	
		(4.9)	(18.0)	(47.5)	(29.5)	(100.0)	
유무죄 평의시 중다수결 (3/4 내지 2/3)로 일원화	변호사	6	17	27	6	56	$\chi^2=22.574$ df=6 $p < .01$
		(10.7)	(30.4)	(48.2)	(10.7)	(100.0)	
	판사	11	38	83	33	165	
		(6.7)	(23.0)	(50.3)	(20.0)	(100.0)	
	판사	1	12	32	2	47	
		(2.1)	(25.5)	(68.1)	(4.3)	(100.0)	
유무죄 평의시 중다수결 (3/4 내지 2/3)로 일원화	검사	5	37	19	1	62	$\chi^2=22.574$ df=6 $p < .01$
		(8.1)	(59.7)	(30.6)	(1.6)	(100.0)	
	변호사	4	35	17	1	57	
		(7.0)	(61.4)	(29.8)	(1.8)	(100.0)	
	계	10	84	68	4	166	
		(6.0)	(50.6)	(41.0)	(2.4)	(100.0)	

문항	직업	매우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별로 타당하지 않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계	χ^2
유무죄 평의시 만장일치제로 일원화	판사	4	19	22	2	47	$\chi^2=5.523$ df=6 $p=n.s.$
		(8.5)	(40.4)	(46.8)	(4.3)	(100.0)	
	검사	2	17	35	4	58	
		(3.4)	(29.3)	(60.3)	(6.9)	(100.0)	
	변호사	7	19	26	3	55	
		(12.7)	(34.5)	(47.3)	(5.5)	(100.0)	
	계	13	55	83	9	160	
		(8.1)	(34.4)	(51.9)	(5.6)	(100.0)	

제4절 국민참여재판 정착을 위한 방안

1. 참여재판에 대한 배심원의 이해정도

현행 참여재판은 2012년 그 시범실시기간을 종료하게 되며, 이후 비로소 완성된 형태의 참여재판이 우리의 사법시스템에 도입되어질 예정에 있다. 이러한 참여재판이 우리의 사법시스템에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참여재판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참여재판에 맞게 기존의 우리의 사법시스템을 개선하는 일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 가운데서 특히 사법시스템을 운영하는 세 축 즉, 판사·검사·변호사들의 참여재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일반시민의 대표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참여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법률전문가들은 사실심 판단자인 배심원이 법률적 사실로서 범죄의 성립여부를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여 일반인의 수준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전문적인 법률지식의 축적에만 노력을 기울여왔던 각 법률전문가 직역별로 참여재판에 대한 충분한 공감형성을 위한 논의와 참여재판의 효과적 진행을 위한 법률외적인 교육 및 훈련, 일반인의 수준에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입증과 변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의 도입 및 개발 및 범죄유형별 절차 매뉴얼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실제 실무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참여재판을 위한 법률전문가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온 시점에서, 이들의 노력의 결과가 참여재판의 전체적인 진행과 관련하여 배심원들의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참여재판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어느 정도의 이해력을 보이는지를 측정해 보기 위해 “재판과정에 대한 판사의 설명”, “사건의 죄명 및 죄명의 내용”, “사건에 대한 판사의 설명”, “검사의 입증과 주장의 내용”, “변호인의 변론 내용”, “재판중 사용된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4점 척도로 하여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의 이해정도와 관련한 모든 문항에 대하여 판사 집단의 응답 평균이 2 이하로 나타났다. 즉 판사들은 배심원들의 참여재판에 대한 이해정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검사와 변호사는 모든 문항에 대해 응답 평균값이 2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참여재판의 진행과 관련한 배심원들의 전반적인 이해의 정도에 대해 판사 집단에 비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판중 사용된 법률용어”에 대해서는 검사 집단의 응답 평균값이 2.58로, 법률용어에 대한 배심원들의 이해정도에 대해 다른 두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도 본 연구원에서 수행한 참여재판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재판중 사용된 법률용어”에 대한 배심원의 이해정도에 대해 검사 집단의 경우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5%¹⁸³⁾였는데,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그 비율이 45%로 상당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참여재판에 대한 배심원들의 이해정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개선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결과라 생각된다.

183) 당시 연구결과로 제시된 내용에 있어서는 해당 문항에 대하여 검사의 응답분포만 제시되어 있어서 다른 법률전문가 집단의 인식정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었다.

표 2-187 참여재판에 대한 배심원들의 이해정도에 대한 인식 평균

항목	집단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재판과정에 대한 판사의 설명	판사	48	2.00	.206	7.196**
	검사	61	2.25	.505	
	변호사	60	2.05	.287	
사건의 죄명 및 죄명의 내용	판사	48	2.00	.206	10.088***
	검사	60	2.27	.482	
	변호사	60	2.03	.258	
사건에 대한 판사의 설명	판사	48	1.98	.144	12.834***
	검사	60	2.28	.490	
	변호사	60	2.02	.291	
검사의 입증과 주장 내용	판사	48	1.98	.144	9.812***
	검사	60	2.28	.490	
	변호사	60	2.07	.362	
변호인의 변론 내용	판사	48	1.96	.202	5.818**
	검사	60	2.18	.431	
	변호사	60	2.05	.341	
재판중 사용된 법률 용어	판사	48	2.27	.449	10.031***
	검사	60	2.58	.619	
	변호사	60	2.18	.431	

***p<0.001, **p<0.01, *p<0.05

2. 판사·검사·변호사의 참여재판 진행방식에 대한 상호 평가

참여재판의 진행에 관여하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에 대해 각각 판사의 재판진행방식, 검사의 입증방식, 변호사의 변론방식이 참여재판에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서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판사는 재판진행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양 당사자로서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볼 수 있고, 검사는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에서 반대 당사자인 변호사의 변론방식을 평가해 볼 수 있고, 판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재판을 이끌고 나가는지를 알 수도 있다. 변호사도 검사와 마찬가지로 검사와 판사의 재판진행방식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먼저, 판사에 대하여 검사의 입증방식과 변호사의 변론방식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를 보면, 검사에 대해서는 “참여재판에 부합하는 입증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이 62.5%로, 검사의 입증방식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호사에 대해서도 “참여재판에 부합하는 변론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이 60.4%로, 변호사의 변론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2-188 검사와 변호사의 재판진행방식에 대한 평가

	항목	N	%
검사	참여재판에 부합하는 입증방식 활용	8	16.7
	참여재판에 부합하는 입증 위한 상당한 노력	30	62.5
	참여재판에 부합하는 입증을 위해 별로 노력 하지 않음	10	20.8
	참여재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전의 입증방식 그대로 활용	0	-
	계	48	100.0
변호사	참여재판에 부합하는 변론방법 활용	13	27.1
	참여재판에 부합하는 변론 위한 상당한 노력	29	60.4
	참여재판에 부합하는 변론을 위해 별로 노력 하지 않음	5	10.4
	참여재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전의 변론방식 그대로 활용	1	2.1
	계	48	100.0

다음으로 검사에 대하여 판사의 참여재판 진행방식과 변호사의 변론방식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를 보면, 판사에 대해서는 “참여재판에 부합하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진행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이 61.9%로, 판사의 참여재판 진행방식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변호사에 대해서는 “참여재판에 부합하는 변론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이 54.8%로, 판사의 평가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변호사의 변론방식이 참여재판에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189 판사와 변호사의 재판진행방식에 대한 평가

	항목	N	%
판사	참여재판에 부합하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진행	4	6.3
	참여재판에 부합하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상당한 노력	39	61.9
	참여재판에 부합하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별로 노력 하지 않음	16	25.4
	참여재판에 부합하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음	4	6.3
	계	63	100
변호사	참여재판에 부합하는 변론방법 활용	5	8.1
	참여재판에 부합하는 변론 위한 상당한 노력	34	54.8
	참여재판에 부합하는 변론을 위해 별로 노력 하지 않음	16	25.8
	참여재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전의 변론방식 그대로 활용	7	11.3
	계	62	100

마지막으로 변호사에 대하여 판사의 재판진행방식과 검사의 입증방식이 참여 재판에 적절한가를 물어본 결과, 판사와 검사의 재판진행방식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판사에 대해서는 “참여재판에 부합하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진행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이 69%로 나타났으며, 검사에 대해서는 “참여재판에 부합하는 입증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이 71.9%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에 비추어 볼 때, 참여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진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참여 재판의 진행에 직접 관여하는 법률전문가들이 서로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참여재판이 보다 우리의 사법시스템에 깊이 뿌리내리는데 있어서 훌륭한 자양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입증 및 변론방식이 배심원에 대해 갖는 영향력

참여재판은 공개된 법정에서 배심원들에게 범죄사실의 입증 또는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배심원의 판단이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재판방식이다. 사실이 명확하고 쟁점이 별로 없는 사건인 경우에는 입증이나 변론의 내용이 배심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가 있지만, 범죄사실의 성립여부가 모호하거나 법적 쟁점이 다수 존재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증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증인으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을 설득력있게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그리고 반대 당사자의 주장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가에 따라 배심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검사는 참여재판에 적합한 입증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며, 변호사는 설득력 있는 변론방식을 터득하고자 애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검사의 입증방식에 의해 또는 변호사의 변론방식에 의해 실제로 배심원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판사·검사·변호사 대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검사의 입증 또는 변호인의 변론방식에 따라 배심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판사의 경우 93.7%, 검사는 93.8%, 변호사는 96.5%로 나타났다. 즉 참여재판에 있어서는 배심원에 대해 설득력있게 자신의 주장과 논거를 보여주고 설명하는데 중점이 두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가. 참여재판제도의 개선

앞에서 기술한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현행 참여재판제도는 제도 그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하지만 시범실시기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그동안의 시행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면 참여재판이 우리의 사법시스템에 정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법률전문가들의 관점에서 현행 참여재판제도의 내용 가운데 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수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법률전문가 직역군별로 현행 참여재판제도 가운데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된 내용을 보면, 1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은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였으며, 2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은 “공판전준비절차의 내실화”, 3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은 “배심원 선정절차의 개선”이었다.

표 2-190 참여재판이 사법시스템에 정착하기 위한 개선사항

(단위 : 명, %)

	1순위	2순위	3순위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	36(20.2)	13(10.4)	11(11.3)
공판전준비절차의 내실화	27(15.2)	25(20.0)	20(20.6)
국민참여재판 진행 일수	26(14.6)	19(15.2)	14(14.4)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 확대	22(12.4)	18(14.4)	13(13.4)
배심원을 위한 법률용어의 개선	20(11.2)	20(16.0)	9(9.3)
기타	20(11.2)	2(1.6)	-
배심원 선정절차 개선	17(9.6)	16(12.8)	22(22.7)
국민참여재판 배제사유의 축소	10(5.6)	12(9.6)	8(8.2)
계	178(100)	125(100)	97(100)

나. 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지난 3년 반 동안 참여재판이 진행되어오면서 가장 우려되었던 점은 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수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시행 첫해부터 당초 예상했던 참여재판 수의 절반정도에 그치는 등의 저조한 진행률을 나타내자 가능한 참여재판의 수를 늘리기 위해 대상사건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제사유를 제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참여재판 진행건수를 늘리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0년에는 처음보다 약 2.5배 정도 참여재판 진행건수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전체 형사재판에 있어서 참여재판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¹⁸⁴⁾

전체 형사재판에서 참여재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게 되면, 사법시스템 자체가 참여재판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환되어질 이유가 없게 되며, 더 나아가 참여재판진행에 관여하는 판사·검사·변호사도 몇 건 안되는 참여재판 보다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재판에 보다 치중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일반재판보다 몇 배 업무부담을 주는 참여재판을 위해 별도로 준비하고 교육받고,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해 애써 노력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참여재판은 그저 보여주기 위한 모델에 불과한 사법의 장식물로 전락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사법의 투명성, 사법권력의 민주화, 사법에 대한 신뢰회복이라고 참여재판 도입의 취지도 공허한 구호에 머무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참여재판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적어도 형사재판을 대표할 수 있는 재판방식으로 자리매김을 할 때 비로소 국민의 사법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사해본 결과를 보면, 판사와 변호사의 경우에는 “검사와 변호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이 각각 29.8%와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난데 비해, 검사의 경우에는 “일반국민에 대한 참여재판의 홍보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국 참여재판의 활성화는 어느 누구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재판진행에 참여하는 판사·검사·변호사뿐만 아니라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일반국민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사법시스템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184) 2008-2010년까지 지난 3년간 참여재판 대상사건 19,431건 가운데 참여재판이 진행된 건수는 321건으로 그 비율은 1.6%에 불과했으며, 전체 형사사건에서 참여재판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8-2010년까지 3년 동안 1심 합의부 공판사건(처리된 것만)의 합계는 58,338건으로 겨우 0.5%만이 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사법연감 2008,2009,2010 통계자료 참고

제6장

종합분석

제1절 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조사에 대한 종합분석

지금까지 국민참여재판제도 관계자-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를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 국민참여재판 운용 내용 등을 파악하였다. 이 장에서는 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재판제도 관계자간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반국민과 배심원의 배심원 일당에 대한 인식 차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참여했을 때 하루 일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수준에 대해 일반국민의 경우 ‘적당하다’의 응답이 전체의 71.8%, ‘적다’의 응답이 20.7%, ‘많다’의 응답이 7.5%인 반면, 배심원의 경우는 ‘적당하다’의 응답이 64.4%, ‘적다’의 응답이 34.4%, ‘많다’의 응답이 1.1%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표 2-191 참고). 즉, 배심원의 경우 아직 배심원으로서 참여경험이 없는 일반국민에 비해 배심원 일당(10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과 ‘많다’는 의견은 적고 ‘적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심원의 경우 장시간에 걸쳐 심리에 참여하고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어려움에 비해 배심원에게 지급되는 1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일반국민의 경우 배심원으로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인식의 차이일 것이다.

표 2-191 조사대상별 ‘배심원일당 수준’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조사대상				(df)χ ²
	일반국민		배심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적다	269	20.7	31	34.4	(df=2) 12.837 [*]
적당하다	934	71.8	58	64.4	
많다	97	7.5	1	1.1	
전체	1,300	100.0	90	100.0	

** p<.01

2. 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제도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에 대해 일반국민과 배심원 그리고 피고인간의 의견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배심원이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배심원으로서 경험이 없는 일반국민, 피고인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192 참고).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의 공정성 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배심원은 95.5%, 일반국민은 86.3%, 피고인은 85.0%이며 ‘재판의 투명성 향상’의 경우는 배심원이 95.6%, 일반인이 84.8%, 피고인이 68.4%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재판결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응답에서도 역시 배심원(92.2%)이 다른 집단(일반국민 87.5%, 피고인 68.8%)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배심원은 89.9% 일반국민은 79.5%, 피고인의 경우에는 60.3%로 나타났고 ‘국민법지식 향상’(배심원: 96.7%, 일반국민: 87.0%, 피고인: 78.2%)과 ‘국민 준법정신 함양’(배심원: 93.3%, 일반국민: 84.4%, 피고인: 74.8%) 항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효과성 인정에 있어서 배심원으로서의 경험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피고인으로서의 경험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표 2-192 조사대상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에 대한 응답 차이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 χ^2
		일반국민		배심원		경험 피고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재판의 공정성 향상	전혀 아님	4	0.3	1	1.1	22	1.7	(df=6) 219.663**
	별로 아님	174	13.4	3	3.3	31	13.3	
	약간 맞음	913	70.2	47	52.2	66	65.6	
	매우 맞음	209	16.1	39	43.3	56	19.4	
전체		1,300	100.0	90	100.0	175	100.0	
재판의 투명성 향상	전혀 아님	9	0.7	1	1.1	21	12.1	(df=6) 149.235***
	별로 아님	189	14.5	3	3.3	34	19.5	
	약간 맞음	723	55.6	34	37.8	62	35.6	
	매우 맞음	379	29.2	52	57.8	57	32.8	
전체		1,300	100.0	90	100.0	174	100.0	
재판결과 신뢰성 향상	전혀 아님	15	1.2	—	—	23	13.3	(df=6) 126.346***
	별로 아님	147	11.3	7	7.8	31	17.9	
	약간 맞음	745	57.3	36	40.0	73	42.2	
	매우 맞음	393	30.2	47	52.2	46	26.6	
전체		1,300	100.0	90	100.0	173	100.0	
피고인 인권 보장	전혀 아님	16	1.2	1	1.1	35	20.5	(df=6) 22.382***
	별로 아님	250	19.2	8	9.0	33	19.3	
	약간 맞음	696	53.5	43	48.3	54	31.6	
	매우 맞음	338	26.0	37	41.6	49	28.7	
전체		1,300	100.0	89	100.0	171	100.0	
국민의 법지식 향상	전혀 아님	14	1.1	—	—	20	11.5	(df=6) 129.662***
	별로 아님	155	11.9	3	3.3	18	10.3	
	약간 맞음	771	59.3	32	35.6	77	44.3	
	매우 맞음	360	27.7	55	61.1	59	33.9	
전체		1,300	100.0	90	100.0	174	100.0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	전혀 아님	11	0.8	—	—	20	11.5	(df=6) 134.122***
	별로 아님	192	14.8	6	6.7	24	13.8	
	약간 맞음	792	60.9	36	40.0	81	46.6	
	매우 맞음	305	23.5	48	53.3	49	28.2	
전체		1,300	100.0	90	100.0	174	100.0	

*** p<.001

3. 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의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 차이

이 연구의 조사대상에 따라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 정도가 다른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193>과 같다. 즉, 배심원이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할 때 ‘학연이나 지연’과 ‘금전적 혹은 정치적 요인’, 그리고 ‘개인적 편견이나 선입견’에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국민참여재판에 직접적인 참여경험이 없는 일반국민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국민참여재판 경험 피고인, 배심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론의 향배’에 따라 배심원의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는 응답은 피고인이 6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국민(58.4%), 배심원(24.4%)의 순이다. 이처럼 배심원으로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들의 경우 배심원판단에 대한 우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배심원으로서 직접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해왔기 때문에 사실관계 이외의 외부적 요인이 유·무죄와 양형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 2-193 조사대상별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 χ^2
		일반국민		배심원		경험 피고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연이나 지연	전혀 없음	140	10.8	64	71.1	44	25.6	(df=6) 260.104***
	별로 없음	407	31.3	19	21.1	64	37.2	
	약간 있음	640	49.2	7	7.8	50	29.1	
	매우 큼	113	8.7	—	—	14	8.1	
전체		1,300	100.0	90	100.0	172	100.0	
금전적 혹은 정치적 영향	전혀 없음	180	13.8	67	74.4	51	29.8	(df=6) 217.275***
	별로 없음	470	36.2	16	17.8	54	31.6	
	약간 있음	463	35.6	6	6.7	48	28.1	
	매우 큼	187	14.4	1	1.1	18	10.5	
전체		1,300	100.0	90	100.0	171	100.0	
여론의 향배	전혀 없음	125	9.6	47	52.2	25	14.7	(df=6) 174.399***
	별로 없음	415	31.9	21	23.3	40	23.5	
	약간 있음	632	48.6	20	22.2	65	38.2	
	매우 큼	128	9.8	2	2.2	40	23.5	
전체		1,300	100.0	90	100.0	170	100.0	

구분		조사대상						(df) χ^2
		일반국민		배심원		경험 피고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개인적 종교적 편견	전혀 없음	176	13.5	47	52.2	38	22.1	(df=6) 108.490***
	별로 없음	429	33.0	13	14.4	44	25.6	
	약간 있음	610	46.9	26	28.9	67	39.0	
	매우 큼	85	6.5	4	4.4	23	13.4	
전체		1,300	100.0	90	100.0	172	100.0	

*** p<.001

4. 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의 배심원 판단에 대한 기속력 부여에 대한 인식의 차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이 권고적 효력만을 지니는 것은 시민적 감각과 가치를 사법에 반영시켜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비교법적으로도 볼 때에도 배심원의 평결에 실질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금옥, 2008). 이에 과연 일반국민과 배심원, 피고인의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194>와 같다.

표 2-194 조사대상별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χ ²
	일반국민		배심원		경험 피고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배심원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	786	60.5	69	76.7	49	28.7	84.652***
배심원 의견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456	35.1	19	21.1	99	57.9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이어야 한다	58	4.5	2	2.2	23	13.5	
전체	1,300	100.0	90	100.0	171	100.0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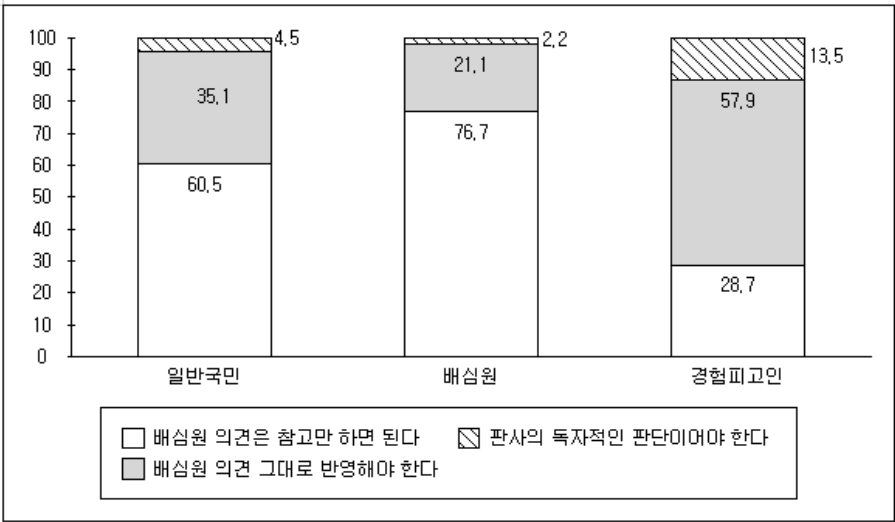


그림 2-19 조사대상별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

즉,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배심원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는 응답이 배심원은 76.7%, 일반국민은 60.5%였고 피고인의 경우는 28.7%로 나타났다. ‘배심원 의견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피고인이 57.9%로 가장 많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194, 그림 2-19 참고).

표 2-195 조사대상별 ‘배심원의 형량 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 χ^2
	일반국민 (n=1,300)		배심원 (n=90)		경험 피고인 (n=173)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배심원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	829	63.8	79	87.8	63	36.4	78.942***
배심원 의견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400	30.8	10	11.1	87	50.3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이어야 한다	71	5.5	1	1.1	23	13.3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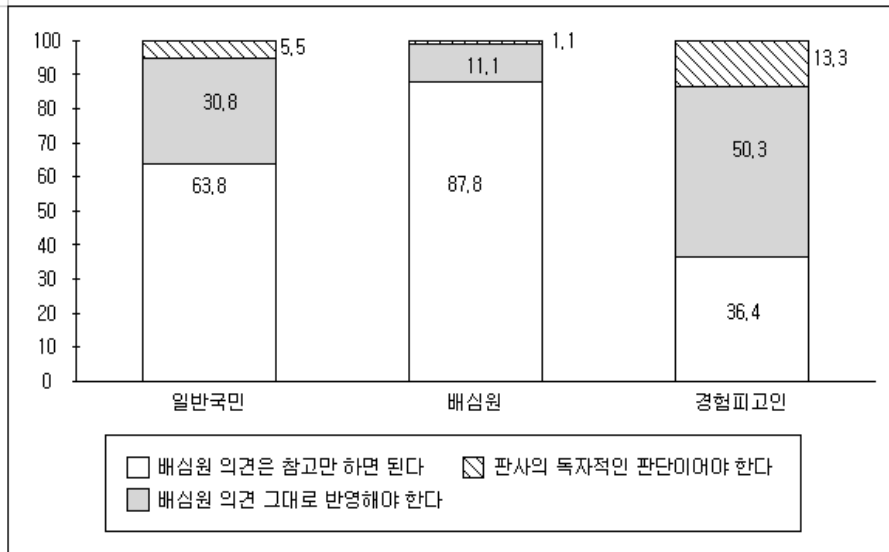


그림 2-20 조사대상별 ‘배심원의 형량 판단에 대한 기속력 여부’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대해서 역시 일반국민과 배심원의 경우는 ‘배심원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는 응답이 각 63.8%와 87.8%로 나타났고 피고인의 경우에는 ‘배심원 의견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50.3%로 나타났으며 그 응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2-195, 그림 2-20 참고).

이처럼 배심원의 유·무죄 및 양형판단에 대해 ‘배심원의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는 응답의 경우 배심원이 일반국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심원의 경우 유·무죄 평의평결 및 양형 토의에 직접 참여하면서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겪어본 결과 전문 법관 판단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 하겠다. 반면,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의 경우 ‘배심원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에서 나타나듯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배심원의 판단의 영향력이 커져야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표 2-195 참고).

5. 일반국민과 배심원의 향후 배심원으로서의 참여의사 차이

일반국민이 응답한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직접 참여해 본 배심원의 향후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196>과 같다. 즉, 배심원의 경우 ‘꼭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41.1%로 가장 높은 반면, 일반국민의 경우에는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1.5%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 배심원은 또 다시 배심원으로서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배심원으로서 경험이 없는 일반국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국민의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참여의사가 높았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표 2-44 참고). 또한 직접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경험한 배심원의 참여의사가 경험이 없는 일반국민에 비해 높게 나타남에 따라 현행 제도 운용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경험담 등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홍보방법을 다양화한다면 일반국민의 배심원으로서 참여의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표 2-196 조사대상별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참여의사’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 χ^2
	배심원	일반국민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3(3.3)	187(14.4)	(df=3) 136.405***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18(20.0)	539(41.5)	
가급적 참여하고 싶다	32(35.6)	492(37.8)	
꼭 참여하고 싶다	37(41.1)	82(6.3)	
전체	90(100.0)	1,300(100.0)	

*** p<.001

6. 일반국민과 배심원의 재판참여 가능 시간에 대한 인식차이

배심원으로서 재판 참여 가능 기간별 시간을 살펴보면 <표 2-197>에서 나타나듯이 통계적으로 응답의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일반국민의 경우 ‘하루만/오후 6시 정도’가 전체 응답의 29.4%로 가장 높았고 배심원의 경우는 ‘2일 정도/오후 8시 정도’가 전체 응답의 18.2%로 가장 많았다. 한편, 기간이나 시간에 상관없다는 의견도 일반국민은 8.9%이지만 배심원의 경우는 10.6%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2-197 조사대상별 ‘재판진행 참여 가능 기간별 종료시간’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조사대상				(df) χ^2
		일반인		배심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하루만	오후 6시 정도	169	29.4	9	13.6	(df=15) 18.354 n.s.
	오후 8시 정도	62	10.8	9	13.6	
	자정까지	11	1.9	2	3.0	
	시간에 상관없음	21	3.7	2	3.0	
2일 정도	오후 6시 정도	64	11.1	7	10.6	
	오후 8시 정도	60	10.5	12	18.2	
	자정까지	14	2.4	2	3.0	
	시간에 상관없음	28	4.9	3	4.5	
3일 정도	오후 6시 정도	23	4.0	0	0.0	
	오후 8시 정도	17	3.0	2	3.0	
	자정까지	4	0.7	1	1.5	
	시간에 상관없음	9	1.6	3	4.5	
기간에 상관없음	오후 6시 정도	17	3.0	4	6.1	
	오후 8시 정도	18	3.1	3	4.5	
	자정까지	6	1.0	0	0.0	
	시간에 상관없음	51	8.9	7	10.6	
합계		574	100.0	66	100.0	

n.s.=not significant

즉, 직접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배심원의 경우는 경험이 없는 일반국민에 비해 재판에 소요할 수 있는 기간과 시간이 보다 탄력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배심원의 경우 심리와 평의·평결 및 양형 토의에 소요되는 양적 시간 보다는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인 수준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7. 일반국민, 피고인, 배심원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한 인식 차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 정도를 일반국민, 배심원, 경험 피고인에 따라 얼마나 다른지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 2-198>과 같다. 즉, 조사대상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한 의견 차이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며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배심원의 경우가 74.5%로 가장 높았고 일반국민의 경우는 51.9%, 국민참여재판경험 피고인은 43.4%로 나타났다.

표 2-198 조사대상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한 응답차이

(단위 : 명, %)

구분	조사대상						(df)χ ²
	일반국민		배심원		경험 피고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능성이 아주 낮다	75	5.8	3	3.3	31	17.7	(df=6) 74.901***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551	42.4	20	22.2	68	38.9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62	47.7	60	66.7	56	32.0	
가능성이 아주 높다	54	4.2	7	7.8	20	11.4	
전체	1,300	100.0	90	100.0	175	100.0	

*** p<.001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국민참여재판의 효과에서 나타난 집단간 차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표 2-192 참고). 즉, 배심원으로서의 경험은 향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피고인으로서의 경험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용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웠던 요인들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여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8. 소결

이 연구는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평가하고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자-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일반국민과 배심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배심원의 경우 배심원의 경험이 없는 일반국민과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지니는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많았고(표 2-192 참고)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는 가장 적고(표 2-193 참고)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일반국민에 비해 많으며(표 2-196 참고)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98 참고).¹⁸⁵⁾ 한편, 피고인의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기여하는 측면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일반국민이나 배심원에 비해 가장 많았고(표 2-192 참고) 앞으로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표 2-198 참고).¹⁸⁶⁾

185) 배심원(후보) 대상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조사원 없이 자신이 기입하여 직접 설문지를 회수 봉투에 넣어 반송하는 우편회수방식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기 때문에 다소 편향된 표본이 될 가능성이 있음. 즉, 연구결과에서처럼 배심원의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던 것은 애초에 배심원으로서의 경험이 아주 만족스러웠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응답과 설문지 반송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음.

186) 피고인대상 조사의 경우에는 현재 수용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가석방으로 인하여 현재 수용생활을 하지 않는 대상자는 포함되지 않았음. 즉, 조사대상의 특성상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음.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배심원으로서의 참여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어떠한 홍보 효과보다도 높아 배심원의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실질적인 도입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한 반면, 피고인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앞서 제4장 피고인대상 조사결과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재판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와 맞물린 것으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 목적, 운용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여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과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제도운영 상에서 피고인의 입장과 견해가 무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배려와 통합의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피고인 조사의 경우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거나 집행유예, 혹은 가석방이나 형이 종료된 경우의 피고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피고인 전체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사법참여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세분화하고 극대화시키려는 노력과 배심원으로 참여한 사람의 경험담을 활용하거나 배심원 관련 모의영화제작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지속적인 홍보가 절실하다. 또한 배심원 집단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대상과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대안마련으로 배심원의 부담과 어려움을 줄여나가는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참여재판제도 관련자들에게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제도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다.

제2절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조사에 대한 종합분석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우리의 사법체계내로 들어오는 데는 8년여의 세월이 걸렸다. 2000년 5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의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긍정된 이래로, 2007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 1월 1일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제법 오랜 시간동안 참여재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이렇듯 참여재판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과거 관료 사법의 배타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주권자로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적인 절차적 통제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국민들에게 있어서 재판은 그들만의 것이었지 우리들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의 민주화의 확보 그리고 사법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 참여재판을 우리의 사법체계에 들어오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가 규명한 것이 실제적 진실이라면 평균적인 지적 역량을 가진 국민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납득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¹⁸⁷⁾

참여재판이 우리의 사법체계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참여재판 제도의 도입목적과 취지를 법조 각 직역들이 충분히 수용하여 새로운 재판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각자의 분야에서 충실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참여재판의 도입목적 및 취지에의 기여정도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인식에 비추어서 참여재판의 정착가능성 정도를 판단해 보고자 하였다.

참여재판의 도입 목적 및 취지로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사법에 대한 신뢰 구축”, “국민의 법의식 향상 및 법교육”에 대해서는 판사와 변호사의 경우 응답 평균값이 2 미만으로 대체적으로 현행 참여재판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검사의 경우에는 응답 평균값이 거의 2.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현행 참여재판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 다른 두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대해서는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응답 평균값이 2 이상으로 다른 문항에 비하여 특히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현행 참여재판이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있어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직역 구분 없이 법률전문가 전체에 대한 평균을 비교해 보면, 참여재판의 도입 목적 및 취지에의 기여정도에 대한 평균이 모두 2.5 미만으로¹⁸⁸⁾ 어느

187) 박광배, “국민을 믿지 못하세요?”, 국민의 사법참여, 2008, 7면

188)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전체 평균은 2.04, “사법에 대한 신뢰도 구축”에 대한 전체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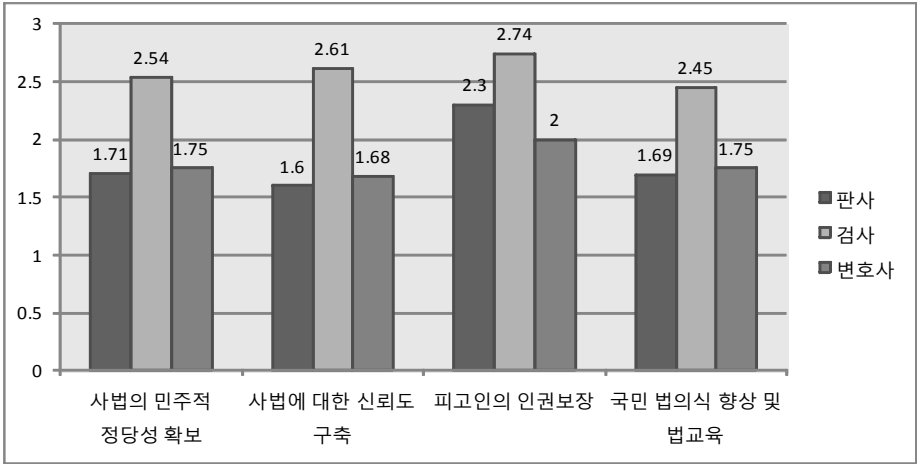


그림 2-21 참여재판의 도입 목적 및 취지에의 기여정도에 대한 인식 평균

법률전문가들은 또한 참여재판이 현행 사법체제에 적합한 재판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전체 법률전문가 집단의 응답 평균값이 2.61로 참여재판과 현 사법체제와의 부조화성에 대한 인식이 법조 직역 전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 결국 참여재판이 현 사법체제와 부합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가가 참여재판제도 정착여부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평균은 2.01,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대한 전체 평균은 2.36, “국민 법의식 향상 및 법교육”에 대한 전체 평균은 2.00으로 나타났다.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목적 및 도입 취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31.875	174	.000	2.040	1.91	2.17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목적 및 도입취지-사법에 대한 신뢰 구축	31.094	173	.000	2.011	1.88	2.14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목적 및 도입취지-피고인의 인권 보장	38.186	172	.000	2.364	2.24	2.49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목적 및 도입 취지- 국민 법의식 향상 및 법교육	31.944	173	.000	2.000	1.88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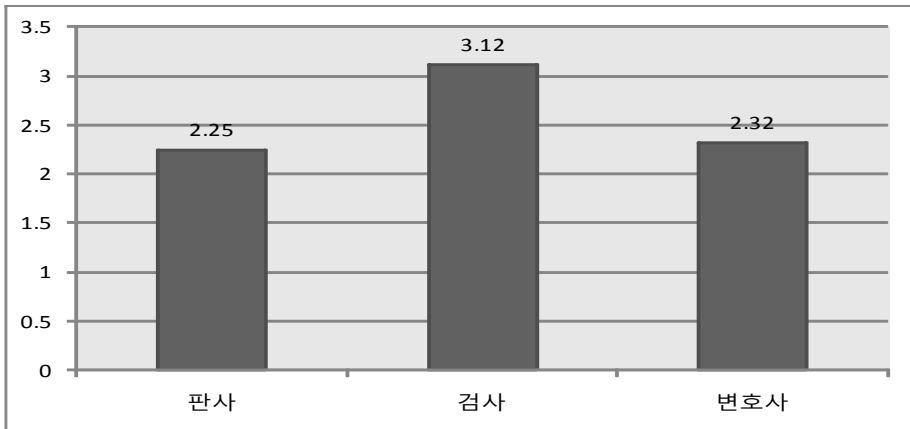


그림 2-22 참여재판이 현행 사법체제에 적합한 방식인가에 대한 인식 평균

2. 현행 참여재판의 시행과정에 대한 평가

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3년 반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참여재판이 어떻게 변화되어 오고 있는지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참여재판의 정착 정도, 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배심원의 참여도, 배심원으로서의 자부심 등이 참여재판을 시행되어 오면서 점차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본 결과, “참여재판의 정착 정도”, “배심원의 재판참여의 적극성”, “배심원의 재판참여에의 자부심” 등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5.9%, 50.3%, 5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참여재판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도”, “배심원으로서의 참여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0.6%와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법률전문가 직역별 응답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판사와 변호사 집단의 경우에는 모든 항목에 대한 응답 평균값이 2.5 미만인 반면에 검사 집단의 경우에는 모든 항목에 대한 응답 평균값이 2.5 이상으로 다른 두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참여재판의 시행성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참여재판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도와 배심원의 참여도에 대한 전체 응답 평균값이 2.5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낸 바, 참여재판의 현장에서 체감되는

일반국민과 배심원의 관심 및 참여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아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참여재판에 대한 일반국민과 배심원의 낮은 관심과 참여는 앞으로 완성된 참여재판제도가 우리의 사법체제에 제대로 자리잡는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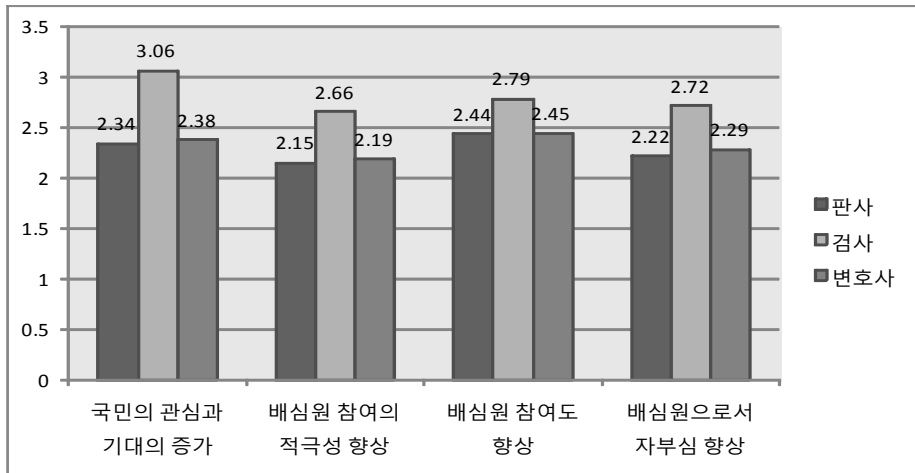


그림 2-23 참여재판 시행경과에 대한 평가 평균

3. 배심원의 공판절차 참여에 대한 인식

국민참여재판이 기존의 형사재판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을 전문 법관이 아닌 일반시민인 배심원이 한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법관에 대한 기속력이 없기는 하지만 그동안 법관의 고유영역으로 성역시 되어 왔던 유무죄와 양형절차에 배심원이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판사를 포함하여 전체 법조 직역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는 기속력이 없지만 앞으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의 필요성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인식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판사의 경우 유무죄 판단절차에 배심원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

(응답 평균 1.88)하고 있는 반면, 양형판단절차에의 참여 그리고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응답 평균 2.65, 2.94)을 나타냈다. 검사의 경우에는 배심원의 공판절차 참여뿐만 아니라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 전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 2.5 이상)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변호사의 경우에는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절차와 양형판단절차에의 참여(응답 평균 1.75, 1.85)와 유무죄 평결에 대한 기속력부여(1.93)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양형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응답 평균 2.14)에 대해서는 다른 문항에 비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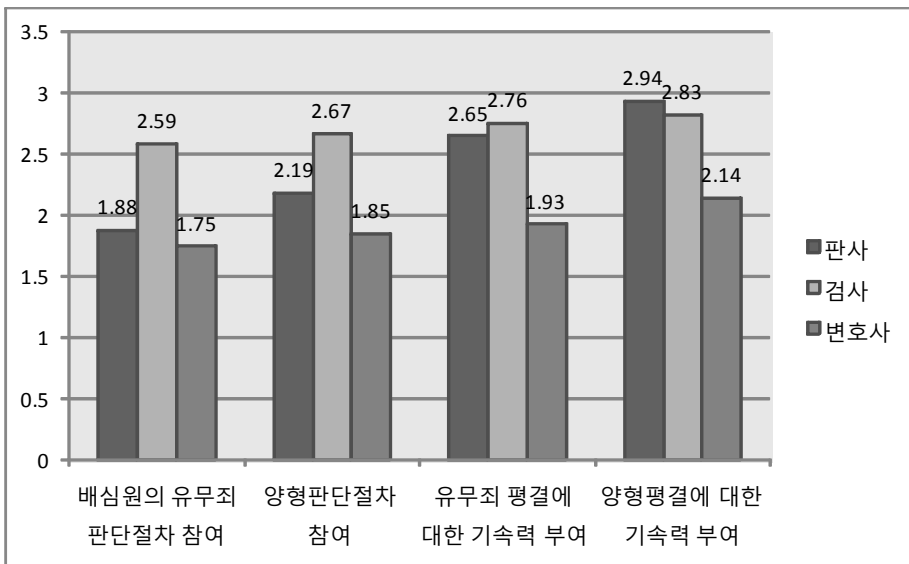


그림 2-24 배심원의 공판절차 참여 및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부여에 대한 인식 평균

4. 참여재판으로 인한 업무부담에 대한 인식

참여재판은 일반 재판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관여하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새로운 재판진행방식을 익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배심원들에 대하여 주장과 변론을 진행해야 하는 검사와 변호사의 업무부담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도 판사·검사·변호사 어느 직역에 있어서도 참여재판이 전혀 부담이 안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을 만큼 법조 전 직역에 있어서 큰 업무부담을 제공하는 재판형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들이 어느 절차를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가에 대해 살펴본 결과, 판사와 검사, 변호사 모두 “장시간의 재판”이 가장 부담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참여재판을 1일 또는 2일 이내에 종결하고자 하는 현행 참여재판 진행방식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생업을 접고 배심원으로 참여한 일반시민에 대한 배려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법률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배심원들의 판단 집중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진행방식으로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참여재판 진행에 적정한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이내”라는 응답이 전체의 61.7%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인 참여재판 진행기간으로는 “사건의 성격 또는 내용에 따라 2일 이내 연속 개정”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다. 즉 참여재판은 2일 이내로 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참여재판진행 적정 시간 및 기간에 있어서는 법률전문가 직역별로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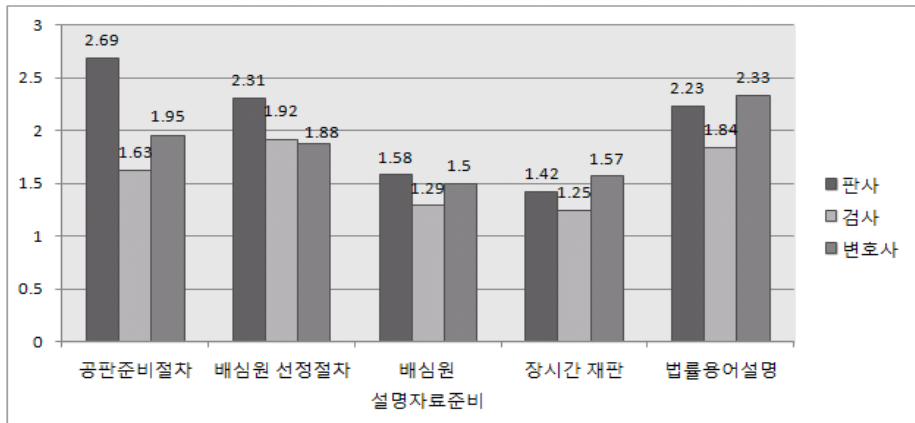


그림 2-25 참여재판 절차에 따른 업무부담에 대한 인식 평균

5. 참여재판제도 내용에 대한 인식

현행 참여재판제도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제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도이다. 즉 대상사건이 한정되어 있고, 피고인 신청에 의해서만 진행되며,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참여재판이 배제되며,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참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참여재판제도의 절차적 제한규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¹⁸⁹⁾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들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판사와 변호사의 경우 참여재판 제도의 절차적 제한규정들의 타당성에 대한 응답 평균값이 모두 2를 초과한 반면에 검사의 응답 평균값은 2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검사의 경우 다른 두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현행과 같은 참여재판제도의 절차적 제한규정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검사의 경우에는 “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범위제한”, “항소심에 대한 참여재판의 배제”의 두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 평균값이 1.82와 1.97로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참여재판 제도의 시범실시에 따른 법이론상 또는 실무상의 한계로 인하여 이와 같은 제한적 내용구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시범실시기간 동안 참여재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사위기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최종적인 참여재판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한적인 내용구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189)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1) 매우 타당하다 (2) 대체로 타당하다 (3) 별로 타당하지 않다 (4) 전혀 타당하지 않다”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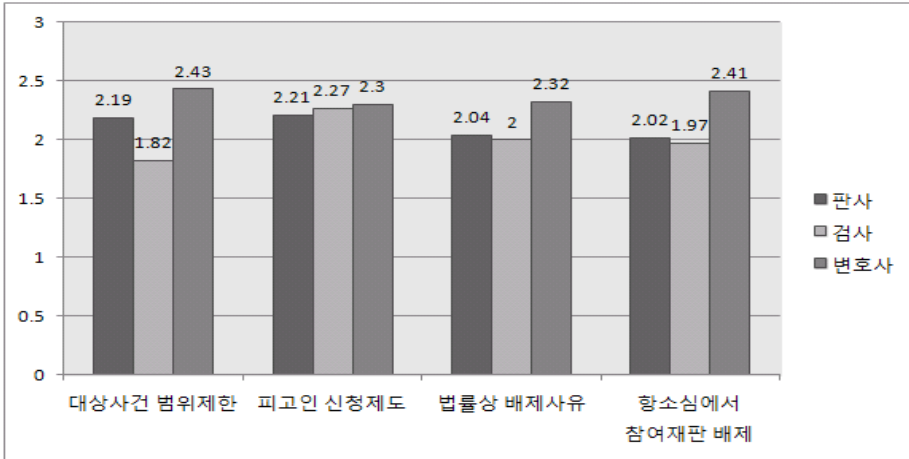


그림 2-26 참여재판제도 제한적 내용구성에 대한 인식 평균

한편 참여재판의 대상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전문가 직역간 견해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즉 판사의 경우에는 현행유지 의견이 43.8%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의 경우에는 대폭축소 의견이 30.8%, 변호사의 경우에는 일부확대 의견이 55.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참여재판 대상사건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하는 검사들의 의견은 참여재판에 대해서 검사들이 느끼는 업무부담과도 연관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원에 비하여 검찰은 참여재판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판검사는 참여재판 전담검사이지만, 참여재판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수사검사의 경우에는 전담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건과 함께 참여재판 사건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확대가 검사의 입장에서는 결코 반갑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참여재판에 대한 배제사유와 관련하여서는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현행법 제9조 제1항 제3호(기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예규의 3가지 요건(추가기소, 정신이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외에 다른 사유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52.1%, 44.4%, 45.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예규에 의한 배제사유 제한규정은 본법의 제한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참여재판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개정된 내용이다. 피고인이 신청한 참여재판을 법원의 결정에 의해 혹은 검사의 요청에 의해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들이 오히려 개정된 배제사유의 제한내용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 대한 재검토를 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절차가 될 수도 있지만, 그가 참여재판을 이용하거나 또는 피해자 및 증인 등에게 입증하기 어려운 새로운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 배심원 선정절차에 대한 인식

통상 참여재판 공판기일 오전에 배심원 선정기일이 열리며, 당일 무작위추첨에 의해 필요한 배심원 수만큼 배심원후보자를 선정한 후, 사전에 배심원후보자들이 작성한 질문표를 근거로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이 행해지고, 각기 자기에게 불리한 배심원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여 이를 배제하고 다시 다른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추첨하여 다시 질문과 기피를 반복하면서 최종 배심원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 선정절차이다. 이러한 배심원 선정절차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그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유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응답 평균이 2.41, “순차기피방식”에 대해서는 판사와 검사의 응답 평균이 각각 2.17과 2.20으로 그 필요성에 대하여 다른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¹⁹⁰⁾

한편 배심원 선정과정중에 배심원의 개인적 사정을 이용하여 질문을 하거나 피고인과 유사한 범죄환경에 있음을 가정하게 한 후 질문을 하는 등의 선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질문 내용들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판사 집단의 응답평균은 2.21과 2.57로 다른 두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한편 검사와 변호사 집단의 경우에는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범죄

190) 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한 항목은 모두 4점 척도로, “(1) 매우 필요하다 (2) 대체로 필요하다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에 있음을 가정하게 한 후 질문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응답평균이 2.11과 2.28로, 다른 문항에 대한 응답평균에 비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검사와 변호사의 경우에는 개인적 사정을 이용한 질문방식의 사용에 대해서는 응답평균이 1.97과 1.92로 타당하다고 보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가장 많이 지적된 내용을 보면 “배심원의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는 질문방식”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49.1%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배심원 기피를 위한 이와 같은 질문방식은 검사와 변호사에게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질문을 받는 배심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고, 때로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면에 호소함으로써 배심원의 객관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심원의 개인적 사정이 법정에서 공개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할 질문방식이 아닌가 한다.¹⁹¹⁾ 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내용과 질문방식에 대해서는 검사와 변호사 모두 좀 더 객관적이면서도 필요한 답변을 도출해낼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배심원 선정과정에 있어서 “순차기피방식에 의한 중복질문” 역시 개선되어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응답이 전체의 51.5%로 나타났다. 순차기피방식의 성격상 최종 배심원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질문을 지루하게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률전문가들은 배심원 선정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순차기피방식 보다는 새로 도입된 혼합방식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즉 전체 조사대상자의 48.2%가 혼합방식이 효과적인 참여재판 진행에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적정 배심원수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법률전문가들은 현행 규정에 따른 최소 5명 최대 9명 보다 많은 최소 7명 최대 12명이 참여재판 진행에 적정한 배심원수라고 응답하였다. 실제 참여재판에 있어서 5명이 선정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이 7명 내지 9명이 선정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해적재판에 있어서는 12명의 배심원(예비배심원 3명)이 선정되었듯이, 극히

191) 배심원 선정절차 참관과정에서 이와 같은 질문방식을 지켜보면서 참관인의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사적인 상황을 파고드는 불편한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요 재판에 있어서는 9명 보다 많은 수의 배심원이 선정될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배심원수에 대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7. 배심원 평결절차에 대한 인식

참여재판에 있어서 최종변론절차가 종료하고 나면 배심원 평의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배심원 평의에서는 법관의 참여 없이 유무죄에 대한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 결정이 나면 양형평결로 넘어가서 법관의 양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유무죄 평의절차에서 만장일치가 되지 못하면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단순다수결 방식으로 유무죄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1차 배심원 평의시 만장일치방식과 2차 평의시 단순다수결 방식에 대해서 판사들의 응답 평균은 1.79와 1.83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비해 검사는 2.15와 2.32로 판사들에 비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그리고 변호사는 1차 평의시 만장일치방식에 대해서는 응답평균이 1.91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데 비해, 2차 평의시 단순다수결 방식에 대해서는 2.31로 검사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판사에 비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만장일치로만 할 경우 배심원 평의가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고, 특정의견을 가진 사람에 의해 평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평의를 단순다수결 방식으로 한 것이지만,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평결이 단순다수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평결의 중요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만장일치방식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평결이 불가능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단순다수결 보다는 2/3 또는 3/4과 같은 중다수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나마 실제적 진실과 일반인의 법감정에 최대한 근접하는 방식이 아닐까 한다.

배심원 평결과 관련하여 가장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기속력 배제와 항소허용 문제에 대해서, 특히 변호사 집단의 응답평균이 2.86과 2.37로 다른 두 전문가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배제와 항소 허용은 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을 상대로 한

변호사의 변론노력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문항에 대하여 변호사 집단이 판사나 검사에 비하여 부정적인 응답 경향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배심원 평결기속력 배제와 항소 허용은 참여재판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학계에서도 비판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관료 사법에서 시민 사법으로의 전환을 위해 도입된 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이 법관판결의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을 부여하고 항소를 제한하는 등의 일반시민의 판단에 대한 존중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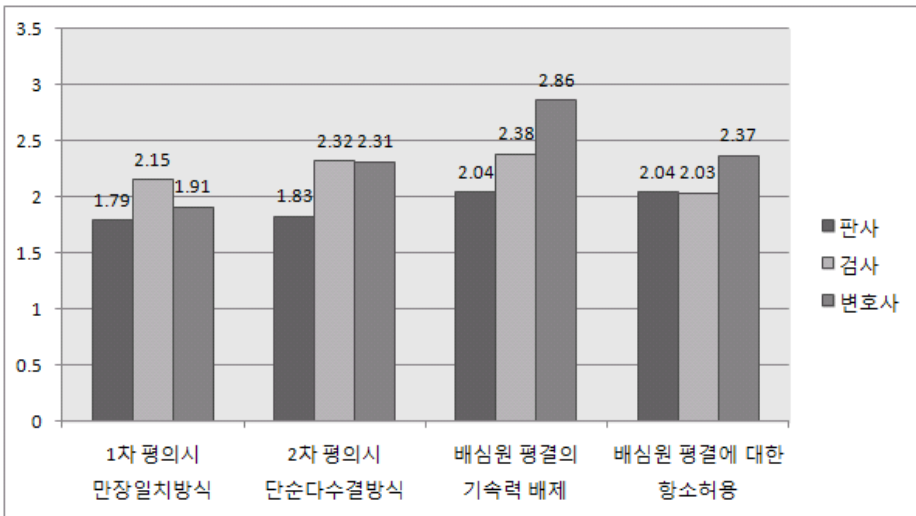


그림 2-27 배심원 평결절차에 대한 인식 평균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법률전문가들이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의 합리성에 대하여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에서 비롯될 수 있는 우려는 상당 부분 버려도 될 것으로 보여진다. 즉 배심원들의 유무죄 및 양형판단의 합리성여부에 대해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단 한명도 부정적인 응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배심원들이 제시한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전체의 57.6%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배심원들이 감성에 의지해 평결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응답률 61.6%). 이러한 응답 경향은 한국인의 감정 의존적인 정서가 배심원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8. 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한 방안

2008년 1월 1일 시작되어 이제 서서히 시범실시기간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있는 참여재판이 우리의 사법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법률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은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였으며, 그 다음이 “공판준비절차의 내실화”, “배심원 선정절차의 개선”순이었다.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는 참여재판을 시민사법의 초석으로 만드는데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것이며, 공판준비절차의 내실화는 집중심리 형태로 단기간에 종결되어야 하는 참여재판의 특성상 실제적 진실의 왜곡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배심원 선정절차의 개선은 얼마나 편견없이 공정한 배심원이 선정되느냐가 참여재판의 공정성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여재판을 도입하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참여재판을 보게 되면 앞으로 참여재판이 어떠한 형태로 정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분명하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전문가들이 현재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응답한 내용을 보면, 판사와 변호사의 경우에는 “검사와 변호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29.8%와 35.6%로 가장 많았고, 검사의 경우에는 “일반국민에 대한 참여재판의 홍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응답률이 25.8%로 가장 많았다. 결국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법조 각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자세와 홍보를 통해 앞으로 배심원으로 참여해야 할 일반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만이 참여재판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있다는 모범답안이 결국 실무에서 절감하는 현실적인 답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을 위한 평가 및 제언

탁희성

제1장

조사분석에서 나타난 참여재판 시행성과와 한계

조사분석에서 나타난 참여재판 시행성과와 한계

제1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성과

1. 참여재판제도 도입 취지의 실현 가능성 확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실현한 참여재판은 10여년의 긴 논의를 거쳐 도입된 만큼, 그 도입 필요성의 논거로서 주장되어 왔던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사법에 대한 신뢰 구축, 피고인의 인권보장, 국민의 법의식 향상 등이 실제 참여재판의 시행과정을 통해 실현되어야 비로소 제도의 도입 및 완성된 제도로써 정착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분석결과에 비추어 보면, 일반시민의 경우 참여재판이 “재판결과의 신뢰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응답률이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 향상”, “재판의 투명성 향상”, “국민의 법의식 향상”,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 등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응답률이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재판을 통해 사법의 변화를 바라는 일반 시민의 기대가 어느 정도 투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행히도 참여재판을 직접 경험한 배심원 및 배심원 후보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항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이 거의

모두 90%를 상회함으로써, 이와 같은 참여재판의 목적 실현에 대하여 일반시민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면서 참여재판을 통해 보여지고 인식되는 시민의 사법참여의 효과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참여재판의 목적실현의 가능성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재판의 목적실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배심원(배심원 후보자) 뿐만 아니라, 참여재판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법률전문가 집단인 판사·검사·변호사들 역시 현행 참여재판이 제도 도입의 목적인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사법에 대한 신뢰구축, 국민의 법의식 향상 및 법교육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전체 응답률이 70%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재판 목적실현에 대한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는 현행 참여재판이 기초 단계로서 어느 정도 성공적이며, 앞으로 보다 완전한 국민에 의한 사법참여제도로써 정착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형성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2. 일반시민의 배심원으로서의 의무감과 자부심 고취

본 연구의 조사분석 결과, 일반시민의 경우 배심원으로서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55.9%였는데 비해, 배심원 혹은 배심원 후보로 참여재판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경우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40.1%, ‘가급적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38.8%로 조사대상자의 78.9%가 다시 배심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의 경우 배심원으로서 참여가능한 시간이 어느 정도 인가에 대해서 “하루/오후 6시까지”로 응답한 비율이 29.4%로 가장 많았는데 비해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군은 “2일/오후 8시까지”가 19.8%로 가장 많았다. 또한 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하여도 일반시민의 경우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7.7%,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4.2%로 참여재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비율이 51.9%인데 비해, 배심원(배심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75.3%로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참여재판에 직접 참여한 경험 여부가 배심원으로서의 참여도뿐만 아니라 배심원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자세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시민의 경우 막연히 배심원으로 하루 동안 법정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선 들지만, 일단 배심원(배심원후보)으로 참여재판에 들어와서 배심원 선정절차부터 최종 평의과정까지 거치면서 느끼는 시민법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배심원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여진다.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에 의해 훼손된 사회의 정의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는 것¹⁹²⁾은 한사람의 국민으로서의 가치와 긍지를 부여 받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사법체험을 통해 주권자로서의 자각과 재판절차에 대한 존중감을 처음으로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가 배심원으로서의 참여경험은 참여재판이 새로운 형사재판의 모델로서 충분히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재판과정을 통해 인식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배심원(배심원 후보)으로서의 참여가 일반시민의 참여재판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배심원(배심원 후보)으로서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재판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여재판을 우리의 사법체제에 안정적으로 정착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배심원의 판단능력에 대한 우려 해소

참여재판이 시행되기 전에 일반시민의 재판참여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즉 법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이 어떻게 법률전문가인 판사와 동등한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연·학연·혈연 등에 얽매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우려, 사법판단을 위해 필요한 법원직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우려, 사법판단에 따르는 정의감과 책임이 부족

192) 박광배, “국민이 사법을 바꾸고, 사법체험이 국민을 바꾼다”, 시민의 사법참여, 2008, 52면

하다는 우려, 여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하여 참여재판 도입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본 연구조사에 있어서도 나타났는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배심원 평결시 학연이나 지연, 금전적 혹은 정치적 요인, 여론의 향배, 개인적 편견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 부정적인 응답률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참여재판을 경험한 배심원과 배심원 후보자들 스스로는 이와 같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영향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재판을 받았던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참여재판을 받지 않았던 피고인에 비해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로서 참여재판을 진행했던 법조 전문가들 역시 배심원의 유무죄 및 양형 평의의 합리성 수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한 사람이 한명도 없을 만큼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 평결과 판사판결의 일치율은 91%로 대단히 높은 수준의 일치 정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 참여재판을 진행한 법관들도 배심원들의 판단수준이 재판부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신뢰도를 갖고 있으며, 변론에서 나타난 증거들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⁹³⁾ 그리고 이러한 배심원의 평결과 판사의 판결의 일치율을 이용한 배심원 판단의 정확도 추정치를 연구한 결과¹⁹⁴⁾에 따르면, 배심원은 피고인 무죄가 잠재적 진실에 부합할 경우 판사보다 더 정확도가 높다¹⁹⁵⁾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미 참여재판 시행 이전 모의재판에서도 배심원의 평의과정 논의에 있어서 제시된 논리성과 합리성의 수준을 전문법관들이 인정한 바 있고, 배심원 평의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있어서도 모의배심원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193) 최재현, “국민참여재판의 운영현황과 평가”, 경기법조 제16호, 2009, 446면.

194) 김상준, “배심평결과 판사판결의 일치도 및 판단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사논문, 2011.

195) 김상준, 앞의 논문, 124면 : 이 논문에 의하면 “판사에 의한 유죄 오류비율 7-9%는 만일 배심원 평결에 지속력을 부여한다면 유죄오류비율을 2-3%로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자신과 다른 견해들을 진지하게 수용했고, 소신과 양심에 충실했으며, 법원직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 검증되었었다.

결국 참여재판 도입과정에서 법조계에서 제기했던 시민들의 오판가능성과 감성재판의 우려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적 수준과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기우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참여재판을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심원과 직업 법관 사이에 사실인정능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어졌을 뿐 아니라, 배심원들은 평의라고 하는 합리적인 토론 과정속에서 판사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법률적 지식의 이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칙을 근거로 사실인정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해 가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참여재판제도의 안착에 있어서 배심원의 판단능력을 문제로 삼을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국선변호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는 공판절차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변론능력에 따라서 피고인의 유무죄가 좌우될 수 있을 만큼 변호인이 커다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영미의 배심재판 경험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즉 참여재판에 있어서는 변호인이 일반시민인 배심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느냐가 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로 인해 참여재판 도입 당시 변호사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득을 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었다.¹⁹⁶⁾ 즉 참여재판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하여 배심제에 적합한 변론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참여재판은 피고인의 변호권 보장을 위해 필요적 국선변호로 규정되어 있으며,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96) 조국, “국민참여재판,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발판입니다”, 시민의 사법참여, 2008, 20면

하지만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의 소리가 높았던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즉 사선과 달리 거의 실비 수준의 수임료 밖에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변론준비가 불성실할 수밖에 없었고, 공판에 불출석하거나 공판정에서 즉시 선임되는 경우까지 있었기 때문에 성실한 변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국선변호인제도를 그대로 두고 참여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인제도가 신설되었고, 충분한 수임료와 사선변호인에 준하는 대우를 제공하면서 국선변호인에 대한 인식도 차츰 변화되어 가고 있고, 변호인들 사이에서도 국선전담변호인에 선정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다행이라 할 것이다.

현재 참여재판에 있어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비율은 82.6%로 일반 1심 형사합의 구속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임비율인 5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참여재판 대상 피고인들이 일반 공판사건 대상 피고인들에 비하여 경제적 자력이 빈곤해서라기보다는 사선변호인들이 참여재판을 기피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일반 공판사건에서는 직업법관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변론준비가 자신의 전문지식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반하여, 참여재판에 있어서는 일반시민인 배심원을 상대로 변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론내용, 입증방식 등이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한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은 다른 공판사건에 비하여 훨씬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수임료는 큰 차이가 없고, 설령 배심원을 설득하여 무죄를 받아내도 기속력이 없어 판사가 유죄로 선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는 배심원과 법관 양자를 상대로 변론을 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사선변호인으로서의 참여재판을 선뜻 맡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참여재판에 있어서 사선변호인의 공백을 국선변호인이 대신하고 있지만, 다행히 국선전담변호인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국선변호인의 변론능력이 크게 향상되어서 참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실질적 변호권을 충실히 보호해 주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조사에 있어서도 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들에 대해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결과를 보면, 참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던 피고인의 경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70.3%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던 피고인의 응답률인 54%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던 피고인 가운데 ‘무척 많이 도움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9.9%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참여재판에 있어서 국선변호인의 변론활동에 대하여 대단히 만족스러워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고 하는 부정적인 응답비율도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13.5%)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11.6%).

이와 같이 참여재판을 직접 경험한 피고인들이 국선변호인의 변론활동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여재판에 있어서 변호의 질과 그로 인한 실질적 변호권의 보장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참여재판의 관건은 당사자대등주의하에서 검사에 대응하여 변호활동의 반경을 확대하고 설득력있는 변론기법을 개발하여 피고인을 충실히 변론할 변호사 집단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2008년 9월부터는 참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충실한 변론을 제공하기 위해 2명의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도록 하여, 철저한 증거조사와 배심원 설득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고, 설령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선변호인이 1인인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 줌으로써 사선변호인의 변론을 돕도록 하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인들의 경우에는 참여재판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 워크숍을 하는 등 참여재판에 적합한 변론능력 배양에 노력을 하고 있다. 참여재판에 있어서 국선변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적인 변론활동은 국선변호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제2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한계

1. 참여재판에 대한 인지도 하락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가운데 참여재판을 대강이라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47.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참여재판법률이 통과되고 아직 시행 이전인 2007년도 본 연구원에서 실시한 참여재판에 관한 일반국민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로서 참여재판을 대강이라도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인 44.3%보다 약간 높아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참여재판이 시행된 직후인 2008년 법원에서 시행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참여재판 인지도, 즉 참여재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인 55%¹⁹⁷⁾에 비해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년 박민식 의원이 일반국민 700명(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참여재판 관련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참여재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인 55.3%¹⁹⁸⁾보다도 감소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참여재판에 대한 인지도 하락은 바로 참여재판에 대한 일반국민의 참여의사의 감소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즉 2003년 대법원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배심원 제도에 대한 참여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65.2%가 참여의사를 나타냈고,¹⁹⁹⁾ 2005년도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전국 20세 이상 1,97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있어서 배심원으로서의 참여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83.5%가 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을 나타냄으로써 오히려 참여재판 시행 이전에 일반국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행직전인 2007년도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원의 일반국민 대상 참여재판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응답률이 58%로 감소하였고, 올해 2011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44.1%로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기에서 제시된 각 조사연구들이 동일한 방식과

197) 대법원, 사법참여기확단 제9차 회의, 2010, 30면

198) 아시아경제 2008-10-21.

199) 법원행정처, 사법서비스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견조사, 2003, 293면

동일한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참여재판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경향성은 분명히 읽을 수가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참여재판이 시행초기에 비하여 오히려 일반국민의 관심으로 더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한다. 시행 직전과 시행초기에는 참여재판에 대한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참여재판에 대해 알 수 있었지만, 현재는 참여재판에 대한 홍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참여재판의 횟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국민들로서는 참여재판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체감할 기회가 없다는데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그 존립기반으로 하는 참여재판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 및 참여의지의 하락은 참여재판의 안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이다. 최근들어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참여재판이 실시되자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참여재판에 집중되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참여재판의 진행경과를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참여재판의 중요성과 의미를 각인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²⁰⁰⁾

2. 피고인 신청주의의 한계

현행 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참여재판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피하고자 한 것이었다. 하지만 피고인 신청주의가 참여재판의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의 참여재판 신청률 자체도 낮지만, 신청했다가 나중에 철회하는 비율이 40%를 상회함으로써 사실상 전체 대상사건의 1% 정도만이 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200) 물론 이 경우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상충되는 측면이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낮은 신청률의 원인이 단순히 피고인들이 “참여재판을 잘 몰라서” 또는 “신청기간이 짧아서” 내지는 “수사상 불이익을 우려해서” 라는 이유라면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재판을 홍보하고, 신청기간을 늘리고, 수사상 불이익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해명함으로써 낮은 신청률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방법으로는 낮은 신청률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질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다.

즉 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다른 재소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권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0.6%로, 참여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이 “다른 재소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권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70%로 나타난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더욱이 참여재판 경험 피고인의 선고형량이 높을수록 다른 재소자들에게 참여재판을 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응답률 역시 높아졌다. 즉 배심원에 의한 낮은 형량을 기대하고 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실망한 피고인들이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참여재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신청주의에 기반한 참여재판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이 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한 피고인들에 대해 철회이유를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도 30%의 피고인이 “동료 재소자들이 참여재판을 하면 좋지 않다고 해서” 신청을 철회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참여재판의 경험이 오히려 참여재판에 대한 기피원인을 제공함에 따라, 피고인 신청주의가 참여재판제도의 정착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의 경우 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에 대하여 56.6%가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참여재판의 시범실시단계에서는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기만 한 제도가 아닌 이상 피고인의 선택에 제도의 운영을 맡기게 되면 본격적인 실시단계에서 이에 걸맞은 수준의 실시율을 담보하는데 한계²⁰¹⁾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고비용 저효율의 비난에 밀려 시민의 사법참여의 염원은 요원해질 수도 있다.

201) 이동희,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평가와 개선방안”, 전북대 법학연구 통권 제30집, 2010, 242면

참여재판이 본질적으로 피고인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시민을 위한 제도라고 인정한다면, 완성된 형태의 참여재판이 시행되는 단계에 있어서는 참여재판 신장주의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3. 참여재판 진행시간의 부담

현행 참여재판은 거의 대부분 1일 내에 종결되며 길어야 2일 이내에 종결되고 있다. 비록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거쳐 불필요한 증거가 법정에서 현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집중심리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만, 재판과정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재판을 종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진실공방이 길어지는 경우 밤늦게 재판이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참여재판을 단기간 내에 종결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참여재판 기일이 길어지는 경우 배심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없고, 배심원들의 생업을 가능한 방해하지 않으려는 목적하에서 재판부뿐만 아니라 검사와 변호사도 무리를 해서라도 당일에 재판을 종결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밤늦게까지 무리하게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판사·검사·변호사뿐만 아니라 배심원들 본인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물어본 결과 “장시간 재판진행”,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했다. 오히려 가장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던 법률지식 및 이해와 관련된 “재판과정의 이해”, “증거판단”, “법률용어” 등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90% 가까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배심원들이 재판참여과정에서 장시간 재판으로 인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지 배심원들은 참여재판의 적정시간으로 “2일 정도/오후 8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기간에 상관없다는 응답도 20.5%나 되었다. 배심원을 위하고자 하는 진행방식이 오히려 배심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을 힘들게 하는 진행방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법조 전문가나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일반시민이나 모두

부담스러워하는 하는 과도한 집중심리 방식을 계속할 것인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여재판은 진행시간은 정상적인 출퇴근 시간의 범위내로 하 되, 불가피하다면 2일 이상 연속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제2장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와 개선노력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와 개선노력

제1절 국민참여재판의 법제도적 문제점

1. 피고인 선택제로 인한 저조한 신청률

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 보다 참여재판 성립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피고인의 신청률이 매우 낮다는 것에 있다. 참여재판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일반국민의 약 80%, 기결수의 약 80% 정도가 참여재판을 선호하는 것²⁰²⁾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까지 참여재판 대상사건 19,431건 가운데 5.2%에 불과한 10,006건만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접수되었고, 다시 그 가운데 31.9%인 321건만이 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²⁰³⁾ 결국 전체 참여재판 대상사건 가운데 1.6%만이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참여재판 진행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피고인에 의한 참여재판 신청주의라고 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신청주의를 취하여

202)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498면

203)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2008/2010, 2,4면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불희망을 표시하면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하면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하고²⁰⁴⁾, 만약 피고인이 이 기간 동안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참여재판을 원하는 않는 것으로 보며²⁰⁵⁾,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내에 그 의사의 철회를 허용하고 있다. 결국 현행법상 참여재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재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있어야만 한다.

이와 같이 현행법상 참여재판의 성패여부가 피고인의 신청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저조한 신청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본 조사연구에서는 참여재판 경험 피고인들에 의한 참여재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이 저조한 신청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기존의 연구에 있어서도 몇 가지의 저조한 신청률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참여재판에 대한 이해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²⁰⁶⁾ 대법원에서 지난 3년 동안 언론매체나 광고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피고인들 대부분은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²⁰⁷⁾ 둘째는 현행 참여재판 법률상 피고인의 신청기간이 너무 짧다는 데서 그

20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205) 동법률 제8조 제3항.

206) 법원행정처가 2009년 5월 피고인을 상대로 설문조한 결과에 의하면,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피고인 가운데 참여재판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0.3%, 어느 정도 알지만 자세히는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4.5%로 나타났다. 한편 모른다고 응답한 피고인의 16.7%는 참여재판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신청하였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인석, “국민참여재판의 동향과 양행”, 국민의 사법참여연구회, 2010년 4월 30일 학술토론회 자료집, 25면.

207) 본 조사연구의 결과에서도 피고인들이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철회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40%가 “참여재판제도를 잘 몰라서”라고 응답하였다.

원인을 찾고 있다. 즉 법률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분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하면 피고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참여재판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7일이라는 기간 동안 참여재판이 피고인 자신에게 불리할지 유리할지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기 때문에 참여재판 신청여부를 고민하다 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²⁰⁸⁾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2009년 대법원 결정²⁰⁹⁾에 의하여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참여재판 희망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기간상의 불이익으로 인한 참여재판의 불성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사실 실무상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권리로 이해되는 국민참여재판 시행여부를 법해석의 문제로 남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명확하게 법 규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8) 김태규,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4호, 2008, 6면

209) 대법원 2009.10. 23. 자 2009도1032 결정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서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경우 필요적으로 기일을 열어 피고인을 상대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국회심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사확인 절차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피고인의 필요적 소환으로 인한 절차지연을 방지할 목적으로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어 법이 제정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입법경과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취지를 위 기한이 지나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의사를 변경하여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게 되고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면 종전의 의사를 변경할 수 없게 되므로,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종전의 의사를 변경할 수 있는 피고인에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피고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도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더라도 재판이 지연되는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재판이 더욱 신속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현행 참여재판은 opt-in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동일법원내에서 재판부를 변경하여 참여재판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측 입장에서는 자신이 참여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오히려 검사 또는 판사에게 밉보여 형량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되고, 또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참여재판을 권유하여 신청하게 했다가 오히려 판결결과가 더 나빠져 피고인과 관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²¹⁰⁾ 따라서 이러한 opt-in 방식, 즉 신청에 의한 참여재판의 선택방식이 피고인에게 부여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참여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만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하는 opt-out 방식 또는 일정 대상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참여재판을 강제하고 다만 법원의 배제결정을 허용하는 강제주의 방식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opt-out 방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참여재판 포기의사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opt-in 방식과 다를 바가 없게 되고, 강제주의를 택할 경우에는 법원의 배제결정에 의해서만 참여재판 개정횟수가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재판의 활성화에 대한 모든 책임을 법원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²¹¹⁾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참여재판을 하고 싶지 않은 피고인의 의사를 배제함으로써 참여재판을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의무로 전환시켜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 신청원칙의 선택문제는 참여재판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권리보호라는 양자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2.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배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면서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인정한 이유는, 헌법 제27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210)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화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2008, 502면.

211) 대법원, 사법참여기획단 제11차 회의, 2010년 10월 29일 회의자료, 4-5면 참조.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헌법이 정하지 않은 배심원의 재판관여는 헌법위반이 아닌가 하는 위헌론의 시비를 불식하고자 하는데 있었다.²¹²⁾ 또한 일반국민에 대한 참여재판 교육이 미흡한 상태에서 평결의 구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오판의 위험성이 있음을 우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권리이지 반드시 법관에 의해서만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²¹³⁾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관의 주재 및 관여하에 진행되는 재판절차의 보장으로 이해하면 족하지 유무죄 부분만은 법관만이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의 천명으로 제한해석하는 것은 헌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다.²¹⁴⁾

또한 우리의 사법역사상 완전히 이질적인 배심제도를 단기간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배심원의 판단능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는 논거 역시 과연 합리적인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배심원의 판단능력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직업법관에 의한 사실인정능력이 우월하다는 전제에 서있다. 그러나 사실인정능력의 우월을 떠나 참여재판을 통해 구현해야 할,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는 법관의 직업적 편견의 위험으로부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배심원들 역시 판사와 마찬가지로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식과 경험칙, 그리고 합리적 토론에 의해 비합리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법관과 배심원의 판단능력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²¹⁵⁾ 오히려 배심이 제대로 기능하는지의 여부는 배심원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법관 및 변호인의 능력과 그들을 규제하는 소송절차 및 증거법칙이며, 특히 중요한 것은 법관의 소송지휘 및 설명이라는데 대해서 일선 법관들도 동의하고 있다.²¹⁶⁾

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08. 5면

213) 황병도, “국민참여재판 시행과정상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양법학 통권 제30집, 2010. 45면

214) 이동희,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평가와 개선방안”, 전북대 법학연구 통권 제30집, 2010. 245면

215) 오기두, “배심원 판단능력 과연 그 능력을 의심해서 배심제 도입을 부정할 것인가”, 저스티스 통권 제96호, 128, 138면

216) 최재현, “국민참여재판의 운영현황과 평가”, 경기법조 제16호, 2009,

물론 법률이 배심원의 평결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서 판사들이 배심원 평결을 배척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다. 즉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할 경우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설명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²¹⁷⁾ 이는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재판부가 선택할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법관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함부로 배심원의 평결을 배척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²¹⁸⁾

이와 같은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배제가 시범실시단계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실제 운영과정에서 사실상의 기속력을 인정하여 법원은 배심원 평결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검찰도 항소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참여재판이 시범단계를 종료하고 정식 제도로서 시행될 때는 배심원 평결에 권고적 효력이 아닌 실질적 기속력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만약 본격적인 실시단계에서 조차 배심원 평결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한다면 참여재판제도의 정당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명목상의 제도로 전락시켜 국민의 사법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배심원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최종적인 판단은 법관이 하고 자신들의 의견은 단순히 권고적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만장일치에 도달하기 위해 애써 토론과 논쟁을 할 필요성과 책임을 인식하기 어렵고, 다수결에 의한 의견제시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²¹⁹⁾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직접적인 사법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이고, 그러한 조건하에서는 사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배심원의 기능이 생산적으로 발휘될 수도 없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에도 배심제를 실시하는 미국, 영국 등의 국가나 참심제를 실시하는 독일 등의 국가 그리고 참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배심제적 요소를 가미한 재판원제도를 실시하는 일본에서도 참여시민이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217) 참여재판법률 제48조 제4항, 제49조 제2항.

218) 이금옥,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46면.

219) 김태명,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과제”, 인권과 정의 vol.379, 2008, 41면.

가지거나 참여시민의 평결이 법관을 구속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참여재판도 배심원 평결에 대한 실질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법정 배심원수의 불충분

현행 참여재판의 배심원수는 5인에서 9인이며, 법정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9인, 그 외는 7인이 원칙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각각 2인씩 줄일 수 있고, 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 인정시에는 5인으로 할 수 있다. 또한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지만 예비배심원은 배심원의 궐석시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평의 권한은 없다.

이와 같이 배심원의 수를 9명으로 하면 배심제에 가까워지고, 5명을 원칙으로 하면 참심제에 가까워진다는 이유로 배심제 지지 위원과 참심제 지지 위원 간의 타협의 산물인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의견반영과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²²⁰⁾ 그러나 5-9인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의견 반영 보다는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9인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의견이 참여재판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소수자의 의견 개진이 어려워 다수자의 은근한 압력상황에 놓이는 수도 많다는 지적이 있다.²²¹⁾ 더욱이 배심원이 5인인 경우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대변한다는 배심제도의 본질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무죄 평결시 만장일치가 되지 못하여 단순다수결에 의하는 경우 1명의 의견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좌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행법상 규정된 배심원 수의 불합리로 인해 실무상 5인의 배심원이 선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7인 이상의 배심원이 선정되어지고 있다.

220) 법원행정처,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해설, 2008, 28면 이하.

221) 안경환/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2005, 193면.

그리고 본 조사연구에서도 법조 전문가들의 경우 참여재판에 적정한 배심원 수는 최소 7인 이상 최대 12인 미만이라고 응답한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행법상 배심원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비교법적으로도 영국, 미연방, 러시아는 배심원수를 12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대부분의 주도 12명을 유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경죄사건의 경우에는 전원일치를 조건으로 6인, 피고인 동의시 12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²²²⁾

4. 비합리적인 배심원 평결방식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시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원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평결전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듣고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심원 평결에 있어서 전원일치제를 요구하는 것은 실체진실발견이 형사소송의 목적이고, 동시에 유죄로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는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고 따라서 평의에서 의견대립시 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되어서는 안되며, 평의의 진지성을 통해 다수든 소수든 합리적인 논거에 의한 주장을 제시하여 설득하고 의견수정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전원일치만을 요구하는 경우 평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평결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수결의 방식을 보완적으로 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참여재판이 택하고 있는 단순다수결 방식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입증에 이르지 못한 경우이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²²³⁾ 또한 단순다수결은 평의를 시작하는 순간 투표로서 평결에 이를 수도 있게 되어 배심원간 상호

222) 김태명,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과제”, 인권과 정의 2008, 38면.

223) 이재석, “형사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1호, 2006, 796면.

견해를 수정하고 학습하면서 합의를 얻어내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편견과 오관을 극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적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다.²²⁴⁾ 현대 민주주의가 다수의 결단에 의한 대의민주주의를 이념적 토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존재와 부존재의 판단을 하게 되는 유무죄의 영역에서 다수결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²²⁵⁾

그리고 단순다수결에 의한 평결결과에 대해서는 배심원들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들로서도 그러한 배심원 평결결과를 그대로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배심원의 다수결에 의한 평결결과가 판사 본인의 법적 판단과 불일치하는 경우, 불확실한 배심원 평결 보다는 자신의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경험을 우선시하게 되어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고, 이는 결국 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배심평결은 전원만장일치를 기본원칙으로 해야 하되, 특정소수로 인해 만장일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순다수결이 아니라 절대다수결(9명인 경우 8:1) 내지 중다수결 방식(2/3 내지 3/4)을 취하여 최대다수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배심원들도 평결을 도출해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도출된 평결이어야지 배심원 스스로도 자신의 판단결과에 대하여 확신과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판사도 이를 국민의 의견으로서 존중하게 될 것이다.

5. 무이유부 기피신청에 의한 차별적 기피

현행 참여재판법률에 의하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당해

224) 안경환/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2005, 52면.

225) 황병돈, “국민참여재판 시행과정상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양법학 제21권 제2집, 2010, 56면.

배심원 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인원수는 배심원이 9인인 경우에는 5인까지, 7인인 경우에는 4인까지, 5인인 경우에는 3인까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²²⁶⁾

무이유부 기피신청은 이유부 기피신청에 대한 구체수단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미국에서 일정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검사나 피고인측이 배제할 수 있는 권리로 발전했으나 1986년 *Batson* 판결²²⁷⁾ 이후 인종이나 성에 근거한 차별적 무이유부 기피는 위헌으로 보고 있다.

현 참여재판법률상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무이유부 기피신청에 대하여 재판부는 결정권한이 없다.²²⁸⁾ 이는 이 절차가 본질적으로 배심원 선정절차에서 법원의 목적이 아닌 당사자들의 목적에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선정절차가 무이유부 기피절차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선정되고 어떤 사람들이 배제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거나 왜곡된 선정절차가 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 무이유부 기피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이 절차가 사람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결과적으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문화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사회에 있어서 인종이나 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배심원 후보자들은 양당사자들 모두에게 불리한 혹은 유리하지 않은 후보자로 인식될 수도 있는데, 유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유부기피를 신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배심원후보자들이 당사자들의 무이유부 기피에 의해 불선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있다.²²⁹⁾ 이와 같이 비합리적인 의도에 기인하여 특정 배심원후보자를 무이유부 기피신청에 의해 배제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 이를 판단할 근거가 없고 따라서 이러한 기피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상 평등권, 국민의 참여재판에의 참여권의 해석상 차별적 무이유부 기피는 헌법적,

22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227) *Batson v. Kentucky*, 476 U.S. 79(1986)

22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229) 박광배/이수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절차의 운용 및 개선방안, 2009, 19면, 143면

내재적 한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차별적 무이유부 기피는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다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무이유부 기피신청에 대한 이의제기, 입증정도, 판단기준, 구제책 등의 상세한 내용이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²³⁰⁾

실제로 참여재판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배심원 선정을 위한 개별질문에서 자신의 생각을 편견 없이 명확하게 표명한 사람들일수록 가장 먼저 기피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무이유부 기피신청대상자였다. 물론 회수에 제한이 없는 이유부 기피신청에 비하여 그 회수에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무이유부 기피신청이 남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이 절차에 의해 배심원으로서 사법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6. 이유부 기피신청절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현행 참여재판법률에 배심원 선정절차상 이유부 기피신청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다만 동 법률 제28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당해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불선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유부 기피신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유부 기피신청률은 지난 3년 동안 321건 가운데 74건에 대해서만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유부 기피신청의 대부분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고 있으며,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라고 하는 엄격한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²³¹⁾ 이와 같이 배심원 선정절차에서 그 활용도가 무이유부 기피신청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고

230)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510면

231)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2010, 14-15면

있는 이유부 기피신청절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실무에서 제기되고 있다.²³²⁾

미국의 경우 특정 후보자를 명시적으로 기피하기 위해서는 이유의 구체성, 입증 가능성, 비차별성이 그 판단기준이 되는데, 우리의 참여재판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기피신청은 당연히 기각될 뿐만 아니라 그 요건들이 충족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각되는 이유부 기피신청이 대부분이다. 즉 우리 법원은 배심원 선정절차에 있어서 불공평하고 편파적인 배심원판단을 초래할 가능성과 재판에 집중하고 재판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이유부 기피신청을 허가할 수 있는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피 이유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기준이 결여되어 있고, 기피이유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에, 법원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자 할 수밖에 없어서 당사자들의 목적실현의 관점에서 그 이유를 배심원의 개인적인 사정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참여재판절차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자 하는데서 그 실효성의 저하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참여재판 실무운용상 제기되는 문제점

1. 피고인의 신청 기피 및 높은 철회율

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에 있어서 신청주의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외에 참여재판 대상 피고인들이 참여재판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즉 참여재판에 의할 경우 전체 재판기간(준비기간 포함)이 통상의 공판절차에 비하여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참여재판을 신청할 경우 법원이나 검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신청 자체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높은 철회율과 관련해서는 법원이나 검찰, 변호인의 참여재판에 대한 태도, 양형, 동료 재소자들의 의견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아직 상호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검증된 결과는 없다. 다만 참여재판

232) 박광배/이수정, 앞의 보고서, 144면

관련 실무상황에 있어서 보면, 검사의 경우 통상재판에 비해 배심원선택을 위한 입증준비나 공소유지 단계에서 상당한 업무부담이 있고, 변호사의 경우에도 종래 변호와는 다른 형태의 변론준비가 필요한데 비해 특별히 고액수임료를 받을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참여재판의 진행에 그다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법원에 따라 참여재판을 주관하는 법관의 의지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재판을 형식적으로만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 참여재판을 주도하는 법조삼륜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비롯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참여재판을 신청할 이유가 없는데 높은 참여재판 신청 철회율의 주된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이 실시한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설문조사(2010년 5월 17일~6월 4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응답자의 38.5%가 참여재판 미신청 이유로 ‘판사나 검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를 선택했으며, 응답자의 35.7%도 동일한 이유로 참여재판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에 의해 감지되는 참여재판 신청에 따른 불이익우려가 단순히 그들이 참여재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오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해온 철회율이 그 답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설령 실제로 피고인들이 잘 몰라서 오해한데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지난 3년이 훨씬 경과하는 동안 법원이나 검찰 어느 누구도 피고인들에게 참여재판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것이며, 그만큼 법조에 있어서는 참여재판의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약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재판의 개시권을 갖고 있는 피고인들이 외면하는 절차라고 한다면 일반시민들이 아무리 배심원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기회 자체가 차단되는 결과가 되고, 시민의 사법참여의 취지는 실현불가능해 질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로 하여금 참여재판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역할과 기능이 기존의 공판절차와 어떻게 다르며,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일반시민의 상식적인 판단수준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단순히 활자화된 책자형태로가 아니라 실제 다른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경험하게 하거나 동영상 등을 통해 간접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참여재판절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참여재판제도의 정착을 위한 급선무라 할 것이다.

2. 법원의 높은 배제율

참여재판법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이 판단하기에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에 일정한 배제사유를 규정하여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배제사유 가운데 포괄적 배제가 가능한 ‘그 밖에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근거로 한 배제결정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이러한 포괄적 배제사유의 존재로 말미암아 배제결정의 남용 내지는 자의적인 배제결정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졌다. 실제로 법원별 참여재판 배제율을 보면 대구지법의 경우 배제율(39.5%)이 철회율(17.6%)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²³³⁾을 볼 때, 배제사유에 대한 판단이 과연 합리적이었는가 하는데 의문이 들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사실상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참여재판에 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경우 부인사건이라는 이유로 참여재판 신청이 거부된다면 피고인들은 점차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 참여재판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²³⁴⁾

이와 같은 법원의 참여재판 배제결정은 법원이 직권주의적 소송구조를 참여재판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다만 법원의 참여재판 배제결정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참여재판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포괄적 배제사유를 3가지로 제한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법원의 참여재판 배제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참여재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행한 점이라 할 것이다.

233)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2010, 3면.

234) 김병수, “국민참여재판의 중간평가”,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3호, 2010, 339면.

3. 검찰의 높은 항소율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참여재판으로 진행한 321건 가운데 278건이 항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재판의 항소율이 86.6%로 일반 공판절차로 진행한 경우의 항소율인 66.9%에 비하여 20%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율은 쌍방항소를 포함해서 66.4%로 일반 공판절차로 진행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의 항소율 59.8%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데 비해서, 검사의 항소율은 쌍방 항소한 경우를 포함해서 53.6%로 일반 공판절차로 진행한 경우에 있어서 검사의 항소율 19.6%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³⁵⁾ 이와 같이 검사의 항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배심원들의 평결결과가 반영된 선고형량이 낮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항소율은 결국 항소심에 의한 참여재판 결과의 파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지게 됨으로써 일반 국민의 판단이 법원에 의해 다시 판단을 받게 되는 구조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한번 법관의 판단에 의해 다시 판단되어지는 평결결과를, 항소심에서 한 번 더 법관이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시민의 사법참여는 명목상의 지위로 전락하고 최종적으로는 법관의 판단만이 남게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1회기일 집중심리의 문제

현재 참여재판의 대부분에 있어서 공판기일은 1일로 종결된다. 2008년 -2010년에 행해진 참여재판 가운데 90%가 하루 만에 공판이 종료되었고, 10%만이 2일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1회 공판기일에 집중하여 재판을 종료하는 이유는 배심원들이 늦은 시각까지 재판을 하더라도 당일 재판을 끝내기를 원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사건의 성격상 증인이 많거나 복잡한 내용으로 장기간의

235)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2010, 20-21면.

공판기일이 예상되는 사건은 참여재판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또 다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대부분은 중죄사건이고,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법원이 배심원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1회공판기일에 절차를 종료하는 것은 피고인의 입장을 지나치게 배제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 증거자료의 모색과 수집,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할 여지가 있는 사건의 경우 합의를 위한 속행기일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²³⁶⁾에 무조건적으로 1회 공판기일에 집중하여 재판절차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법의 정의는 정확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있는데, 1회 기일에 집중심리하는 것을 고집하여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우려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고, 더욱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참여재판으로 인해 오히려 사법에 대한 신뢰가 더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다만 2일 이상 재판을 진행할 경우 배심원들이 출석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와 수일에 걸친 재판 도중 배심원 중 일부가 예비배심원의 수를 초과하여 불출석할 경우 재판진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다.

참여재판이 시범실시기간중이고, 배심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정착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배심원에 대한 배려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배심원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는 기일을 일과시간 중에 끝내고, 다음 기일을 속행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은 평균 4.5일 정도가 소요되고, 일본의 경우에도 최소 3일에서 평균 4.5일 정도가 소요될 것을 예정하고 재판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²³⁷⁾

236) 광병훈,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및 향후 시행방안”, 국민의 사법참여, 2008, 392면

237) 이동희,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평가와 개선방안”, 전북대 법학연구, 2010, 245면

5. 배심원 선정절차시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의한 사생활 침해 우려

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시 배심원예비후보자들에게 대한 질문을 통해 부적격 여부 또는 불공정한 판단 우려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참여재판법률 제24조 제3항은 “선정기일에서는 배심원 후보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배심원의 사생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문을 금지하고 허용할 것인지, 질문의 방식이나 태도 등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불가피하게 사생활에 관련된 민감한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법대로 와서 다른 사람이 들리지 않는 상태로 답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질문방법을 비공개 법대질문이라고 한다. 배심원 질문절차에 앞서 판사는 민감한 질문은 비공개로 법대에서 답변할 수 있음을 배심원 후보자에게 고지하고, 배심원에 관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또 어떻게 관리·보관·폐기되는지에 관하여도 알려주는 구체적인 명문화가 필요하다.²³⁸⁾ 또한 검사 또는 변호인의 질문내용이 배심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적 상황 또는 가족 사항 등을 이용하거나 배심원의 현 상황을 피고인의 입장에 대입시켜 질문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법관이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당해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질문 둘째,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치적·종교적 성향에 관한 질문, 셋째,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직접 묻거나 가정적 상황하에서 결론을 추론할 수 있는 질문²³⁹⁾, 넷째, 피고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배심원의 개인적 상황을 이용한 질문, 다섯째, 배심원의 가족상황이나 가족력과 관련한 질문 등은 금지하거나 질문내용을 변경하도록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38) 한상훈,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상 배심원 선정절차의 내용과 검토”, 형사정책, 2007, 84면

239)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과 인권옹호”, 저스티스 통권 제1002호, 16면

제3절 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노력

1. 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확대

2008년 1월 1일 법률 제8495호로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참여재판으로 할 수 있는 대상사건을 다음과 같이 각호로 규정하였다.

1. 「형법」 제144조 제2항 후단(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제164조 제2항 후단(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제172조 제2항 후단(폭발성물건파열 치사), 제172조의2 제2항 후단(가스·전기 등 방류치사), 제173조 제3항 후단(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 제177조 제2항 후단(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 제188조 후단(교통방해치사), 제194조 후단(음용수혼독치사),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9조(상해치사·존속상해치사), 제262조 중 제259조 부분(폭행치사), 제275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유기 등 치사), 제281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체포·감금 등 치사),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5조 중 제301조·제301조의2 부분(미성년자간음추행 상해·치상·살인·치사),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 제2항 및 제3항(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 제368조 제2항 후단(중손괴치사)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뇌물), 제4조의2 제2항(체포·감금 등의 치사), 제5조 제1호(국고 등 손실), 제5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약취·유인), 제5조의5(강도상해·치상·강도강간), 제5조의9 제1항·제3항(보복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배임수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3.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

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이 경우 동조 제3호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부정식품제조 등),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부정의약품제조 등의 처벌), 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오염물질불법배출),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호(마약)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동 법률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강력범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대법원 규칙에 의해 순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이러한 입법방법을 취한 이유는 첫째, 참여재판 시행초기 이를 위한 인적·물적 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연 100-200건 정도의 수준에서 참여재판의 실시를 예정하였기 때문에, 대상사건의 범위를 너무 확대하여 놓으면 시행초기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신청이 몰릴 수 있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였으며, 둘째, 참여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식이 없는 배심원을 위해 당해범죄의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 증거법칙 등에 대해 설명을 해야만 하는데, 대상사건을 처음부터 늘려놓게 되면 범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하여 모두 설명자료를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 그것이었다.²⁴⁰⁾

그런데 참여재판 시행 4년차에 들어선 현재 참여재판의 신청률이 애초의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상 제한하고 있는 대상사건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즉 2008년에는 64건, 2009년에는 95건, 2010년에는 162건으로 점차 증가하고는 있지만 애초에 예상했던 건수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참여재판 철회율과 배제율이 높은 것도 한 이유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참여재판 대상사건 피고인들의 신청률 자체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하면 피고인들의 신청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40)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화 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505면

또한 시행 초기에 우려했던 다양한 범죄의 구성요건, 정당방위, 알리바이, 심신장애, 증거법칙 등 여러 쟁점이 될 사항에 대해 이미 법관의 설명문안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모델로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²⁴¹⁾는 점에서 볼 때 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확대는 참여재판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237호) 제2조 제3호를 개정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동 규칙 제3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호(마약)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뇌물), 제5조의4 제2항, 제3항, 제6항(상습강도, 절도), 제5조의10 제2항(운전자 등 폭행치사상)을 포함시켰으며, 제4호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9조(준강간),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를 새로 대상사건에 포함시켰다.

2. 배심원 선정방식 수정

일반적으로 배심원 선정방식에는 배심원 후보자를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순차기피방식(Jury Box System)과 모든 배심원 후보자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문을 한 후 한꺼번에 기피권을 행사하여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일괄기피방식(Struck Jury System)이 있다. 우리의 경우 사개추위 법안성안과정에서 일괄기피방식은 출석한 후보자 모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일괄적으로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행사함으로써 후보자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 후보자 질문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 인종적·성적 소수자 집단이 모두 배제될 수 있어 공정한 배심원 구성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순차기피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은 시행 초기부터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당해 참여재판에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뽑고 이들을 대상으로 직권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 기피신청에 의한

241) 한상훈, 앞의 논문.

불선정결정을 하며, 이러한 불선정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수만큼 다시 절차를 반복하는 순차기피방식을 취하여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순차기피방식에 의하여 배심원을 선정하는 경우 배심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온 배심원 후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무런 질문도 받아보지 못하고 방청객석에 앉아 있다가 그냥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여비만 받아서 돌아가야 하는 배심원 후보자들 가운데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일종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에 나왔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데 대한 아쉬움과 불만을 표출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자,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대법원규칙 제1303호)”를 개정하여 기존의 배심원 선정방법 외에 모든 배심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한 후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들을 뽑아 그들에 대해서만 기피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신설하였다(예규 제24조 제2호). 이 방법에 의하여 배심원을 선정할 경우, 배심원이 방청석에 착석한 상태에서 질문절차를 진행한 후, 무작위 추첨을 거친 배심원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기피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방식은 순차기피방식도 아니고 일괄기피방식도 아니지만, 일괄기피방식의 일부를 가미한 순차기피방식이라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는 이를 혼합순차기피방식으로 명명하였다. 즉 모든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문을 하여 1차 기피권을 행사한 후, 나머지 배심원 후보자를 순차기피방식대로 무작위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수만큼 선정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질문과 기피신청에 의한 불선정결정을 하고 그 수만큼 다시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수가 충족될 때까지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모든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질문을 하고 기피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적어도 법정에 출석한 모든 참여 배심원후보자로 하여금 절차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다는 불만을 갖지 않도록 배려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배심원 선정방식을 순차기피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혼합순차기피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한 선정기준은 없으며, 해당 재판부의 선택에 따라 적용방식을 택할 수 있다. 즉 예규 제24조(배심원 선정방법)에 의하면 “재판장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선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건의 내용,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의 수,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참여재판 배제사유의 구체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공소제기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익일까지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법 제9조에 규정된 참여재판 배제결정사유로는 1.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원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배제결정을 하는 때에는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므로, 배제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배제결정의 필요성과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비교형량하되,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유무명실하게 되지 않도록 배제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²⁴²⁾

그런데 실무상 국민참여재판 시행과정에서 법원이 배제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 제시한 규정이 대부분 법 제9조 제1항 제3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8년 참여재판 시행이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행해진 전체 배제결정의 82%가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그 사유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법률 제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배제결정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권리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초기 예상했던 것보다도

242)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2007, 27면

훨씬 저조한 신청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높은 배제결정비율은 참여재판의 활성화를 막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참여재판 배제사유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1303호) 제6조 제4항 각 호에 의하여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배제결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가능한 제한적으로 운용하고자 하고 있다. 즉 1.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경우, 2. 피고인에게 정신이상의 의심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현저한 절차지연 등으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기타 배제사유를 구체화하여 필요최소한도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4. 단독사건으로의 확대 검토

참여재판의 신청률이 저조함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대상사건 확대를 위하여 전체 합의사건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사건수가 많은 주요 범죄를 추가하는 안, 그리고 단독사건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단독사건을 도입하는 경우 재판수를 크게 늘릴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민들이 쉽게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이 단독사건이고, 쟁점도 단순하고 한두 가지로 제한되기 때문에 배심원의 입장에서 판단이 용이해서 오히려 참여재판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배심원 평결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최종 판단권을 가지므로 합의부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배심원 평결에 구속력을 부여하게 되면 재판부의 역할은 재판진행을 지휘하고 양형평결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합의부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²⁴³⁾ 다만

243) 이인석, “국민참여재판 시행 2년의 현황 및 과제”, 한국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 26면

현행 참여재판법률이 합의부에 의한 참여재판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제3장

국민참여재판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국민참여재판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제1절 입법론적 제언

1.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

현행 참여재판제도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바로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이라 할 것이다. 현행 참여재판법률이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한 것은, 법률 제정당시 헌법상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위헌논란의 소지를 피하고, 일반국민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안된 상태에서 평결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경우 오판의 위험성이 있음을 우려한 결과였다.

하지만 참여재판의 시범실시기간을 거치면서 배심원 평결에 대한 우려는 거의 대부분 기우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배심원 평결과 판사 판결의 일치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조사에서도 배심원의 유무죄 및 양형판단의 합리성에 대한 법조 전문가들의 신뢰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전히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부여에 주저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거부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배심원의 평결은 판사의 판결에 비추어서 그것이 잘되었나 잘못되었나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왜 배심원의 평결이 판사의 판결과 다를 수밖에 없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사법에 대한 신뢰는 일반 국민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사고하에 도출된 결론과 일치할 때 더욱 높아질 수 있는데, 배심원의 평결은 바로 그와 같은 일반국민의 가치관과 정의감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직업적 전문지식에 편도되어 국민의 법적 가치관과 괴리되어 있는 간극을 메꾸어 줄 수 있는 보편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심원의 평결이 법적 판단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면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한 사법에 대한 신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기속력 배제로 인한 배심원 평결에 대한 번복가능성의 존재는 배심원들 스스로도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²⁴⁴⁾ 피고인들도 굳이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모두 드러내면서 평결을 받아봤자 판사가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참여재판을 신청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법제도적인 뒷받침 없이는 배심원 평결이 최종 판결선고에서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것 인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이 배심원의 평결이 법관의 판결에 의해 번복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참여재판이 된다면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한 사법 민주주의 실현에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률이 규정한 참여재판이 단순히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사법의 민주성이 확보되었다는 허울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을 신뢰하고 그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²⁴⁵⁾

244) 본 연구조사결과에 있어서 배심원들 스스로 평결효력을 권고적으로 하는 현행방식이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법관에 의한 번복가능성이 배심원들 스스로 평의를 거친 평결결과를 신뢰하기 보다는 법관의 판단에 그 신뢰를 위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었다.

2. 사실심리와 양형심리의 분리

기존의 형사소송법은 유무죄 심리와 양형심리를 절차적으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에 있어서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이 사실심리와 양형심리가 함께 진행되는 공판절차에 대해서는 기존의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의 경우에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참여재판이 시작되면서 사실심리와 양형심리의 통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보다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현행 참여재판은 사실인정을 위한 재판과 양형을 위한 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인정에 지나친 초점을 맞추어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충실한 양형심리는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재판장의 양형의견에 배심원들이 일방적으로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크고, 반대로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공판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재판에서 감정적인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자칫 사실인정이 왜곡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²⁴⁵⁾ 특히 유무죄 평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한 사정 즉 전과, 비행전력, 성행 등이 배심원들에게 제출되면서 배심원들로 하여금 유죄의 편견을 갖게 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지면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졌으며, 또한 피고인의 성장배경, 가정환경, 사회적 관계 등과 같은 양형사정들 역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유리 혹은 불리하게 작용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참여재판에 있어서는 사실인정을 위한 심리와 별개로 양형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참여재판으로 유무죄에 대한 사실인정절차를 먼저 진행하여 유무죄를 결정하게 한 후 양형을 위한 기일을 다시 열어 양형자료 심사와 평의를 진행한다면, 사실인정을 위한 절차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배심원들의 연일개정에 대한 부담감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에게도 양형단계에서 고려받을 수 있는 충분한 피해회복과 합의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참여재판제도를

245) 정진경,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 재판의 유의점”, 국민의 사법참여, 225면.

246) 황금천, “국민참여재판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민의 사법참여, 2008, 402면.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²⁴⁷⁾

3. 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제한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 구조는 사후심적 요소를 가진 속심이고, 참여재판의 경우에도 항소심 구조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과 증거조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참여재판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이 스스로 재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86.6%였으며, 항소제기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한 경우가 24.1%였다. 즉 참여재판 사건의 1/6이 항소심에서 반복되어진 것이다. 물론 현행 참여재판은 배심원 평결이 권고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판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항소를 허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합의를 통해 나온 법적 판단이 직업 법관으로 구성된 항소심에 의해 파기되어지는 현재의 구조는 참여재판의 존재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이 항소심에 의한 참여재판 판결결과의 반복이 계속되어지게 되면 앞으로 배심원 평결이 법적 구속력을 부여받는다 해도 법원에 의해 파기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는 결과가 되며, 이는 참여재판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참여재판에 대하여 항소를 허용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에 반하는 바, 참여재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배심재판에 의한 실체판단의 결과를 직업법관이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결에 의한 피고인의 구제라는 상소심 본래의 기능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배심원 전원이 무죄평결에 이르렀고 법원 또한 무죄선고를 했다면 검사의 범죄입증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247) 황금천, 앞의 논문, 403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고, 이러한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항소심의 오판 구제기능을 문제 삼을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²⁴⁸⁾ 또한 배심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유죄선고가 내려진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법적용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항소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적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²⁴⁹⁾

4. 참여재판 희망의사표시 기간의 수정

현행 참여재판법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된 이후에 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 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피고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도 재판지연이 중하지 않고, 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오히려 신속히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확인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전까지는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²⁵⁰⁾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였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참여재판 희망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7일

248)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배심원 의사의 절대성을 인정하면서 직업법관에 의해 뒤집어질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배심재판에 대한 항소는 인정하지 않으며, 법률위반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용하고 있다; 정웅석, “배심원 선정절차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2호, 2007, 120면

249) 김현석,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에 따른 공판절차의 변화”, 저스티스 통권 101호, 2007, 147면 ; 이은모,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한양대 법학논총, 2009, 420면

250) 대법원 2009.10.23. 자2009모1032결정.

이라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7일의 기간내에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받을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통상 피고인은 변호인과의 협의를 거쳐 참여재판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 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지기 때문에 정작 참여재판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미처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했다라도 나중에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 철회의사표시 내지 희망 의사표시로 처음의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절차의 불안정성이 유발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참여재판 신청기한을 7일 보다 좀 더 길게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참여재판법률 제8조 제2항 규정이 단지 피고인의 의사확인에 지나치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7일이라는 기간제한규정을 두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동조 항이 피고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법원의 해석에 의존하기 보다는 동조 제3항의 단서규정으로서 의사확인서의 미제출이 참여재판 불희망의사표시가 아니라 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서 미제출이 된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결정 내지 기일 이전까지 참여재판 희망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리행사의 시간적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5. 참여재판 배제사유의 축소수정

현행 참여재판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게 되면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배제결정의 필요성과 피고인의 권리를 상호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행해져야만 하고, 배제사유 역시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동조 항에 규정된 배제사유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법관의 재량에 의해 언제든지 참여재판에 대한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법원의 참여재판

배제결정이 20%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대법원재판예규를 개정하여 배제사유 가운데 특히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제3호의 사유를 보다 구체화시켜 명문화함으로써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배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하지만 예규의 규정방식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상적 사유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예규에 규정된 3가지 사유로만 한정해서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배제결정권한을 크게 제약하는 의미는 갖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배제결정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정,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가 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하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참여재판의 배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²⁵¹⁾ 하지만 이와 같은 법원의 배제결정은 참여재판으로 진행해서는 안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규정으로는 이러한 배제결정의 제한적·예외적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참여재판제도의 최종 형태가 결정되어지는 단계에 있어서는 참여재판에 대한 배제사유에 있어서 추상적·포괄적 사유는 삭제되어야 하며, 예외를 인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법률에 열거함으로써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배심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제2절 정책적 제언

1. 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 인식전환을 위한 작간접 참관방식 도입

현행 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 선택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251) 이와 같이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배제결정이 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참여재판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여 배심원과 피고인 그리고 방청객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된 상태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신청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사실상 참여재판의 안착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지난 4년여 동안 참여재판이 진행되어 오면서 피고인들에 의한 참여재판의 기피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참여재판을 신청하게 되면 판사, 검사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아서 자신에게 재판이 불리해질 것으로 생각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 참여재판의 정착은 요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일반 형사재판보다 훨씬 더 나은 변론이 가능해지고, 피고인 스스로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며, 참여재판 과정에 있어서 판사나 검사로부터 불이익은 생길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는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분 전달시 참여재판 홍보책자를 동봉하여 보내거나 구치소나 교도소에 참여재판 관련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일반시민들도 직접 참여재판을 참관하는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참여재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데, 하물며 자신의 생명과 자유 및 재산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단순히 책자만으로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참여재판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참여재판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보다 살아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 즉 다른 피고인에 대해 진행되는 참여재판을 직접 참관하게 하거나, 혹은 직접 참관이 보안이나 다른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방송되는 것을 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직접 전송의 경우 배심원의 노출로 인한 신변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잘 진행된 참여재판을 녹화하되 배심원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촬영하여 구치소 등에서 상영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최소한 간접적인 체험은 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한 참여재판의 직간접적인 체험은 피고인들로 하여금 참여재판에 대해 갖고 있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 참여재판 신청률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배심원 출석에 대한 부담감소를 위한 공가사유로 명시

현행 참여재판법률에 의하면 배심원으로 출석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규정²⁵²⁾을 두어 일반 시민의 배심원출석에 대한 법률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 의해서 배심원출석을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배심원으로 출석한다고 하는 경우 해고나 기타 불이익한 처우가 행해지는 것을 염려하기 보다는 직장인인 경우 자신의 휴가 즉 월차나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대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휴가일수가 극히 제한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배심원출석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신이 꼭 사용해야 할 휴가를 내지 못함으로 인해 간접적인 불이익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의 사정에 따라 무급휴가처리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²⁵³⁾

참여재판 시행초기에는 배심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호기심 내지 재판참여의 자부심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출석률이 담보되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동기만으로는 참여재판에 대한 배심원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과태료 규정을 들어 국민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참여재판 출석을 강제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선언적 규정을 두기 보다는 통상 단체협약 또는 복무규정상 연월차 휴가와 별도의 휴가로 구분되는 유급 휴가인 공가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유로서 배심원출석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통상 공가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라는 규정으로 포섭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적어도 병역법상의 동원훈련과 동등한 국민의 의무로서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참여재판에 배심원후보자로 출석통지를 받은 경우를 규정내에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일반 기업에 대해

252) 참여재판법률 제50조

253) 배심원 일당 10만원으로 보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배심원후보자로 출석하여 최종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5만원 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급휴가처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서도 공개규정에 배심원출석을 명시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참여재판전담 국선변호인제도 운용을 통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실질화

현재 법원은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운용함으로써 형사피고인의 실질적 변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현행 국선전담변호인은 참여재판 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국선변호업무까지 함께 병행하고 있다. 참여재판에 있어서의 변호업무는 일반 공판절차와 달리 공판준비절차단계에서 사건을 모두 파악하고 채택할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피고인과 면밀한 부분까지 협의를 해야만 하고, 공판기일에서는 모두진술과 최후진술을 통해 배심원들에게 설득력있는 주장을 하고, 변론시 배심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쟁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해야만 한다. 또한 사전 리허설을 통해 일반시민인 배심원을 설득시키고 쉽게 변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변론의 방식이나 변론기법 등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이 의도한 대로 차분하게 자신의 논리와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참여재판 외에 일반 국선변호업무까지 함께 병행하게 되면 참여재판에 필요한 변론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참여재판의 진행횟수보다 일반 형사재판의 진행횟수가 현저히 더 많은 현 상황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변론능력이 일반 형사재판에 보다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선전담변호사 가운데 참여재판 전담 국선변호사를 별도로 지정하여 참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실질적 변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선변호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참여재판을 신청하는 형사피고인의 대부분이 자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참여재판의 특성상 상당한 변론능력을 보유한 변호사가 없이는 실질적 변호가 행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참여재판을 전담하는

국선변호사의 존재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안착에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이미 실감하고 서울 남부지법과 창원지법의 경우 국선전담변호사 가운데 특히 오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사람을 참여재판 국선전담변호사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별도로 참여재판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재판에 투입하고 있다. 특히 이들 법원들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이미 선임되어 있더라도 참여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이를 참여재판 전담 국선변호사로 교체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선변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변호와 관련한 피고인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참여재판 전담 국선변호사제도가 보다 확대된다면 일반 형사재판보다 훨씬 양질의 변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재판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보다 훨씬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참여재판 진행시간의 적정성 확보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거의 대부분 하루안에 종결되거나 길어도 2일을 넘기지 않는다.²⁵⁴⁾ 그리고 재판진행시간도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가 넘어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과도한 집중심리로 진행되는 참여재판은 판사·검사·변호사뿐만 아니라 배심원과 피고인에게도 힘들고 부담되는 재판진행이 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본 연구조사결과에서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심원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장시간 재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검사·변호사도 장시간 재판이 가장 큰 업무부담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시간 재판은 가능한 한 하루 만에 재판을 끝나게 해달라고 하는 배심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하루 10시간 이상 법정에서 앉아서 어려운 재판진행에 집중한다는 것은 법조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인 만큼 배심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254) 다만 예외적으로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참여재판의 경우에는 2011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명의 피고인에 대하여 5일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참여재판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재판방식을 고수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여재판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심원 선정절차에서 배심원후보자들에게 재판이 2일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럼에도 참여의사를 밝힌 후보자 가운데 배심원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여재판 진행기일을 현재 진행방식 보다 좀 더 여유있게 하게 되면 재판 진행 시간도 일반 근로시간에 맞추어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재판 진행 관련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²⁵⁵⁾ 또한 참여재판 기일을 현재와 같이 1일 내지 2일로 집중하는 경우, 실제적 진실에 대한 심리 공방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잠재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로 접근할 수 있는 진실발견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참여재판 관련 절차적 매뉴얼 개발

현행 참여재판은 법률이 통과되고 제도로써 시행되기까지의 기간이 채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참여재판을 준비하는데 그만큼 충분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주어진 기간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기 때문에 참여재판이 어느 정도 시행의 궤도에 올라간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참여재판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부족함은 바로 법원에 따라 참여재판의 진행수준이 다르다는 점이었다. 이와 같이 참여재판에 있어서조차 법원간 수준 차이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검사·변호사의 능력과 열의가 어느 정도인가에도 있지만, 참여재판의 각 절차를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는 것도 그 이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먼저 배심원 선정절차에 있어서 배심원을 기피하기 위해 진행되는 질문의 대부분은

255) 일본 재판원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법원근로자의 법정근무시간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근로시간을 넘기지 않는다고 한다.

배심원들이 작성한 질문표의 내용에 의거한 것이다. 그런데 질문표 내용의 대부분은 배심원의 법률상 제척,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은 단순한 확인작업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배심원 질문을 통해 배심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사람인가 아니면 편견을 지닌 사람인가를 정확히 판단하는 일이다. 이 판단을 위한 질문을 하기 위한 내용이 배심원 질문표에는 없기 때문에 변호사나 검사가 나름 질문을 만들어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배심원 기피를 위한 질문에 관해서는 어떠한 지침도 없기 때문에 배심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필요한 개인적 사항을 노출시키는 질문들이 별다른 제지 없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내용이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배심원의 편견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인가 의심스러운 경우도 적지 않다. 즉 현재와 같은 배심원 질문내용과 방식은 공정한 배심원 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이 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을 무작위로 하기 보다는 보다 치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범죄유형별로 배심원들의 편견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질문유형을 만들어 사용한다면,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의 여지 없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심원을 선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필요한 절차상 매뉴얼은 배심원들에 대해 사건과 법리를 설명하기 위한 법리설명자료라고 보여진다. 현행 참여재판에 있어서는 재판부에서 배심원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는 있지만 당해 사건별 설명자료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와 같이 사건별 설명자료로 작성되는 경우 재판부의 설명방식이나 입장에 따라 배심원들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요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법원별로 어느 정도 성의있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배심원들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따라 참여재판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사건별 보다는 범죄유형별로 배심원들에게 설명되어야 할 법리나 기본원칙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자료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범죄유형별 법리설명자료가 만들어지게 되면, 법원의 참여재판 준비에 있어서 상당한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결과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입증절차 매뉴얼의 필요성도 지적할 수 있다. 검사가 입증

하고자 하는 법적 쟁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전체적인 계획과 세부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배심원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관성있게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법원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이와 같은 입증관련 설명자료 준비가 공판검사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관계로, 어느 참여재판에서는 단순 나열식으로 정리된 파워포인트는 화면에 띄어놓기만 해놓고는 그와 상관없이 말로만 설명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듣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는 반면, 어느 참여재판에서는 도표로 명확한 입증쟁점과 입증계획, 증거자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시함으로써 검사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검사 개개인의 능력에 맡기기 보다는 전체 공판검사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입증설명양식을 만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참여재판 진행에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자숙, 2005,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김병수, “국민참여재판의 중간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3호, 2010.
- _____,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회의 -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5년의 성과와 향후과제, 2011.
- 김봉수,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회의 -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5년의 성과와 향후과제, 2011.
- 김상준, 배심평결과 판사판결의 일치도 및 판단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1.2.
- 김영민, “국민참여재판이 던진 과제”, 인터넷 법률신문 The Lawtimes 특별기고, 2010. 02.
- 김용찬, “국민참여재판 회부시까지의 절차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116호, 2010.
- 김현석,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에 따른 공판절차의 변화”, 저스티스 통권 101호, 2007.
- 김현수,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111호, 2009.
- 김희균,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대질신문권”, 서울대학교 법학, 2010.
- 남현우, “변호인의 입장에서 본 국민참여재판”, 인터넷 법률신문 The Lawtimes 특별기고, 2010. 02.
- 단성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국민참여재판의 주요 쟁점: 배심재판에서의 법관, 검사, 변호인의 지위 및 역할변화”, 비교형사법연구, 2007.
- 대검찰청, 국민참여재판 수사·공판업무, 2007.

- _____,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업무, 2008.
- 도중진, “개정 형사소송법과 국민참여재판의 주요 쟁점: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비교형사법연구, 2007.
- 박광배, “국민참여재판의 중복판단(배심평결과 재판부판결)이 판결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2009.
- 박미숙 외,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Ⅱ)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관 및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박미숙,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성과와 향후과제”,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2호(통권 제82호), 2010.
- 배용찬, “미국 배심재판제도에서의 배심원 선정방법”, 형사법의 신통향통권 제28호, 2010.
- 법원행정처, 「사법서비스·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 2003.
- _____, 사법연감, 2010.
- _____, 형사재판장 매뉴얼, 2008.
- _____, 국민참여재판 업무편람, 2008.
- _____, 국민참여재판백서 제1권 - 제10권.
- 부산지방법원, “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 설문조사 분석”, 2008.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중죄형사피고인과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선호도 연구, 2005.
- _____,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2005.
- 심희기, “시민의 관점에서 본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전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
- 안성수, “국민참여 재판제도 시행과 인권옹호 - 지정토론요지”, 저스티스 통권 제102호, 2008.
- 오기두, “배심원의 판단능력-과연 그 능력을 의심해서 배심제 도입을 부정할 것인가?”, 저스티스 통권 제96호, 2007.
- 오준근, “국민참여재판제도 정착 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2008.
- 이금옥,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2008.
- 이동희,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평가와 개선방안”,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통권 제30집, 2010.

- _____,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상황 분석과 나아갈 방향: 최종모델 결정에 있어서의 주요쟁점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회의 -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5년의 성과와 향후과제, 2011.
- 이발래, “헌정 60주년과 인권 보장; 제2부 헌정 60년과 인권: 국민의 사법참여와 인권”, 법과 사회, 2008.
- 이수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절차의 운용 및 개선방안, 법원행정처, 2009.
- 이완규, “국민참여재판제도 정착 방안 : 지정토론회요지 [1]”, 저스티스 통권 106호, 2008.
- 이은모,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일본의 재판원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09.
- 이인석, “국민참여재판 시행 2년의 현황 및 과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
- _____, “국민참여재판의 동향과 양형”, 국민의 사법참여연구회 학술토론회 자료집 10, 2010.4.30.
- 이재희,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실시”, 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6.
- 이정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축소사실인정”, 형사판례연구, 2010.
- 이춘화,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회의 -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5년의 성과와 향후과제, 2011.
- 장중식,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법학연구 제36집, 2009.
- 정웅석, “개정 형사소송법과 국민참여재판의 주요 쟁점; 배심원 선정절차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2007.
- 정진연, “국민참여재판에서 ‘작은 국민’으로서 배심원”, 법학논총 제21집, 2009.
- 정진경,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재판의 유의점”, 저스티스 통권 100호, 2007.
- 정진수 외,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Ⅰ) -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법서비스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진정호, “국민참여재판제도 정착 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2008.
- 차영민, 2011,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과제”, 2011년 한국범죄방지재판 세미나 발표집(2011년 5월 20일).
- 차정인, “항소심의 제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파기”, 법학연구 제51권 제1호(통권 제63호), 2010.
- 최인섭/황지태,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I) - 사법개혁과 형사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최재혁,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현황과 평가”, 경기법조 제16호, 2009.
- _____, “국민참여재판의 실무상 운영방안 및 주요 쟁점”, 형사재판의 쟁점과 과제, 2008.
- 표성수, “배심원의 선정절차와 그 타당성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1권 제2호, 2009.
- 한상훈,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상 배심원 선정절차의 내용과 검토 -2006. 4. 12. 사개추위 모의재판의 경험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 2007.
- _____, “국민참여 형사재판에서 배심원 선정절차의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6.
- _____,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 저스티스 통권 106호, 2008.
- _____, “미국배심제에서 배심원 선정절차”, 저스티스 통권 94호, 2006.
- 한인섭, “국민참여재판과 경찰역할의 변화”, 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6.
- _____, “한국의 배심원재판 -준비과정과 시행원년의 성과를 검토한다-”, 서울대학교 법학, 2009.
- 홍영기, “일반인의 범죄인식이 형사사법에 미치는 영향 - 특히 배심재판을 대상으로”, 고려법학 제57호, 2010.
- 황병돈, “국민참여재판 시행 과정상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21권 제2호, 2010.
- 황일호,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양법학, 2010.

Abstract

Studies on Criminal Justice Policies and Judicial Systems (V) **- Focused on Evaluation Research o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

Tak Hee Sung · Choi Soo Hyeong

Part I. Introduction o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1. The Act o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hat was passed at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on April 30, 2007 to be in force starting from January 1, 2008 was said to be the most remarkable change in the justice history in Korea and to play an important role at democratization of the justice.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s to be in force in trial five years, and it shall be final system based on outcome of the performance. When 5-years trial enforcement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s completed in 2012, political judgment shall be made to select a system among three alternatives; jury system, schoffengericht and the 3rd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of the Korean justice.

2. In 2008 whe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as firstly introduced, number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ccounted for 4,451 cases, 5.2%

of which were accepted to account for 233 cases. In 2009, number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as 7,047 cases, 4.8% of which were submitted to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o account for 336 cases. And, in 2010, number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as 7,933 cases, 5.5% of which were submitted to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o account for 437 cases. 1,006 cases were applied to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last three years, 40.1% of which were withdrawn to account for 404 cases to be the largest: And, 321 cases (31.9%) were judged at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nd 211 cases (21.0%) were decided to remove by the court. The jury conference judged as follow: The jury members had judged either guilty or not guilty unanimously (208 cases) to occupy 64.8% of all of 3-year cases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n other words, judgment of guilty accounted for 188 cases, while judgment of not guilty did 20 cases. On the other hand, judgment of either guilty or not guilty based on majority vote accounted for 48 cases (14.9%). The 3-years judgment of the jury coincided with that of the judge (91%) to be very much high. The coincidence rate of the judgement of both except for confession case accounted for 89.1% to have no great difference. 2008-2010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had sentencing to consist of actual imprisonment (74.8%), suspended prison sentence (15.0%) and not guilty (8.7%).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ppeal rate accounted for 86.6% to be much higher than 66.9% of appeal rate of common trial.

Part II. Survey o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1. The study examined not only cognition on system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but also operation of the system. The subject consisted of four groups: ① 1,300 citizens at Seoul and six metropolitan cities in South Korea who were 20 to 70 years old; ② 175 defendants who were sentenced at the

first trial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nd 190 defendants who were sentenced at common trial; ③ 58 candidate members of jury as well as 90 jury members who joined trial; ④ 48 judges, 67 prosecutors and 61 lawyers.

2. Citizens knew contents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47.1%) to be lower than half, and they said success possibility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51.9%). And, citizens said that they did not want to join jury as a member (55.9%), and they expected of difficulties at attending a jury because of shortage of time and having adverse influence upon living life. Candidate members of a jury considered to joi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nd had attitude and experienced operation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s a member of a jury: They thought of positive effects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90.0%). Not only jury members but also candidate members wanted to join a jury again (75.0%), and they thought of success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74.0%). The jury members had difficulties at repetition of same contents during hearing and long time trial when attending trial (46.7%) to be higher than other factors.

The defendants thought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he defendants who experienced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hought of its effects in negative way more than the ones who experienced common criminal trial did: The defendants who did not experienc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70.0%) said that they would recommend it to other prisoners, and they were more than the ones who experienced it (49.4%). And, the defendants who did not experienc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hought of success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affirmative way (55.8%): The ones who did not experience the trial (55.8%) were more than the ones who experienced it (43.4%). The defendants said that they applied to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because of fairness of the trial (35.5%) to be the highest, and they did not apply to civil participation or withdrew it because of 'Do not know it' (42.0%).

Law professionals such as judge, prosecutors and lawyers thought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he prosecutors thought that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as introduced to obtain democratic justification of the justice and to set up reliability upon the justice and to improve citizens' legal consciousness and to educate laws to be over 2.5 on average and to be higher than 2 of judge and prosecutor group on average and to think of it in negative way. The law professionals such as judge, prosecutors and lawyers thought that 'settlement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jury members' activeness i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nd 'jury member's pride of civil participation in the trial' were largely good (45.9%, 50.3%, 53% in order) to be high, and they thought that 'citizens' interest in civil participation in the trial' and 'jury member's participation in the trial' were not good (50.6% and 51.5% to be 2.5 that was higher than average): Therefor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both citizens and jury members were found to be low at time elapse. The judge and other judicial jobs thought of jury member's joining in guilty and sentencing procedure and being given effect of sentence: The judge said that jury members should join guilty judgment procedure (62.5%) and sentencing procedure (50%) would be largely needed, and that jury members' effect of sentence on guilty verdict (41.7%) and sentencing (56.3%) would not be necessary. The prosecutors said that jury members' participation in guilty judgment procedure would not be needed (48.5%) to be the highest, and that the member's participation in sentencing procedure would be largely needed (42.4%). The prosecutors said that guilty verdict (37.9%) and sentencing verdict (43.9%) were not needed at jury members' participation in verdict procedure. And, lawyers said that jury members' guilty judgment procedure (48.5%) and effects of sentence of guilty verdict (37.3%) were very much needed: And, lawyers said that jury members' participation in guilty judgment procedure (45.8%) and effect of sentence of guilty verdict (37.3%) were very much needed, and that participation in sentencing procedure (45.5%) and effects of sentence of sentencing verdict

(59.3%) were largely needed. The law professionals said that current participation in the trials should improve effect of sentence on jury members' verdict, followed by effects of sentence of jury members' verdict, internal stability of trial preparation procedure and reformation of jury member election procedure in order.

Part. III. Evaluation and Political Proposals o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1. Investigation into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had not only good result to a certain degree but also limitation at the stage of trial enforcement. At first, participation in the trial could produce good enforcement results; for instance, democratic justification of the justice, reliability on the justice, assurance of defendants' human rights, and citizens' better legal consciousness were thought to be affirmative by more than 80% of citizens, more than 90% of jury members (including candidate members) and more than 70% of law professional group such as judge, prosecutors and lawyers: So, they thought of participation in the trial in affirmative way. Current participation in the trial was successful to a certain degree at initial stage, and it is likely to be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justice to strengthen strong base and to have good result. The jury members' participation in the trial could elevate not only participation itself but also positive acceptance of their duties. In other words, citizens said that they did not want to participate in the trial as a jury member (55.9%), and jury members and/or candidate jury members said that they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trial again (78.9%). The jury members'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could play good role of new type of criminal trial to have affirmative possibility at trial process. The jury members' misjudgment that was expected at initial stage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was found to be no more than groundless fear. In this study, no law professional said jury members' rationality of guilty and sentencing verdict in negative way. Therefore,

jury members' judgment ability would not be of problem to establish system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And, enforcement of the system had very much affirmative influence upon court-appointed lawyer's quality and cognition on the defendants. In this study, defendants who experienced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were asked to reply to the question, "How much did your lawyer help you at trial?" The defendants who had court-appointed lawyer gave affirmative answer saying "The lawyer helped me" (70.3%), while the ones who had defendant-appointed lawyer gave less affirmative answer (54%). As such, defendants who experienced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thought of court-appointed lawyer's activities in affirmative way so that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needed not worry about lawyer's quality and defense right. I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lawyers shall expand defense activity against prosecutors in accordance with Prinzip der Parteigleichheit to develop defense technique and to defend defendants systematically by lawyer group: The court-appointed lawyers seemed to play role of the lawyer well. In this study, the system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had limitation at enforcement. At first, citizens' low cognition on the system prevented citizens from participating in the trial. And, defendants avoided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because of their experience of the trial so that defendants' application prevented the system from being established. In other words, at questionnaire survey on defendants who experienced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the defendants said, "I do not recommend other prisoners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50.6%); On the other hand, the ones who did not experienc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said, "I would like to recommend other prisoners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70%). In this study, current system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had the greatest difficulties at trial time. In other words, all of the parties, for instance, defendants, jury members, judge, prosecutor and lawyers had burden at the trial because of excessive and intensive hearing that considered jury members.

2. The system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completed 5-years trial enforcement to decide upon final type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justice, so that this study gave legislative and political suggestions based on the findings.

The legislative suggestions were; Firstly, jury members' verdict shall be given effect of sentence. Secondly, fact hearing shall be separated from sentencing hearing. Thirdly, the appeal to verdict of not guilty of the trial shall be given limitation. Fourthly, the trial's willenserklärung time shall make correction. Fifthly, reasons of removal of the trial shall be lessened.

On the other hand, political suggestions were: Firstly, defendants' watching system shall be introduced to let defendants make change of cognition on civil participation in the trial. Secondly, attendance in the trial can be a reason of public off-duty. Thirdly, court-appointed lawyer shall be separately nominated to assure defendants of actual defense rights, for which eligible court-appointed lawyers shall be trained. Fourthly, the trial time shall keep proper level to lessen burden of excessive and intensive hearing. Lastly, procedure manual of the trial shall be developed.

ID			
----	--	--	--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일반국민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현상 연구, 형사사법제도 연구 등 형사정책 수립에 기초와 근거가 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연구 목적이며 귀하의 의견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단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되며, 어떤 경우에도 귀하의 개인 신상이 밝혀지는 일이 없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5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 일 수 *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연구책임자 :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수형 ☎ 02-3460-5133 조사책임자 : (주)인포서치 조사연구본부장 엄동훈 ☎ 02-541-7601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 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응답자 성명		연락처	☎) -
거주지 광역시도	☐ ①서울 ☐ ②부산 ☐ ③대구 ☐ ④인천 ☐ ⑤광주 ☐ ⑥대전 ☐ ⑦울산		

SQ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 ☐① 10대 이하☞연접 중단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이상☞연접 중단

문1. 우선 법원에서 각종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관들에 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비교적 그렇다	정말 그렇다
문1-1. 우리나라 법관들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피고인들을 평등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문1-2. 우리나라 법관들은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1-3. 우리나라 법관들은 정치권이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1-4. 우리나라 법관들은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1-5. 우리나라 법관들은 증거나 증인들의 진술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결한다.	①	②	③	④
문1-6. 우리나라 법관들은 재판을 진행할 만한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1-7. 우리나라 법관들의 판결을 믿을 만하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문2. 현재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문2-1로 ☐② 대강 알고 있다.☞문2-1로
☐③ 이름만 들어 본적 있다.☞문2-1로 ☐④ 전혀 모른다.☞문2-5로

문2-1.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아시게 되셨습니까?

- ☐① TV나 신문 등 언론보도를 통해 ☐② 라디오나 지하철의 광고를 통해
☐③ 주변 사람들과 대화 중에 ☐④ 인터넷 검색을 통해
☐⑤ 기타 _____

문2-2.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문2-3. 귀하는 귀하가 배심원에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문2-4. 귀하는 만일 선정된 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서 통지한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문2-5.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알고 싶으십니까?

- ☐① 전혀 알고 싶지 않다 ☐② 별로 알고 싶지 않다.
☐③ 약간 더 알고 싶다. ☐④ 매우 많이 알고 싶다.

※ “국민참여재판제도”란

일반국민들이 재판과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 무죄나 죄에 따른 형량을 논의하여 결정하면, 판사가 이를 판결에 참고하는 제도입니다.

문3. 현재 '국민참여재판제도' 하에서는 배심원들은 유죄인가 무죄인가의 의견만을 제시하고, 판사가 이를 참고로 최종 평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가요?

- ☐① 현행 방식이 타당하다.
☐② 배심원들이 합의한 의견을 판사는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③ 판사는 배심원들이 합의한 의견을 고려할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평결해야 한다.

문4. 현재 배심원들이 적절한 형량을 제시하면, 판사는 이를 참고로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방식이 타당하다.
☐② 배심원들이 합의한 형량을 판사는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③ 판사는 배심원들이 합의한 형량을 고려할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

문5. 법원에서는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에게는 하루 일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의 일당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다 ☐② 적당하다 ☐③ 많다.

문6. 만약 귀하가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따라 특정 재판의 배심원으로 출석하라는 법원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문7로 ☐②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문7로
☐③ 가급적 참여하고 싶다.☞문6-1로 ☐④ 꼭 참여하고 싶다.☞문6-1로

문6-1. 만약 참여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동기들이 참여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해당되는 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약간 있음	매우 큼
문6-1a.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식	①	②	③	④
문6-1b. 민주시민으로서의 사명감	①	②	③	④
문6-1c. 불출석 시의 과태료에 대한 부담감	①	②	③	④
문6-1d. 재판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	①	②	③	④

문6-2. 간혹 재판이 밤늦게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만약 참여하신다면, 언제까지 재판진행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① 오후 6시 정도 ☐② 오후 8시 정도 ☐③ 자정까지 ☐④ 시간에 상관없다

문6-3. 간혹 재판이 하루에 끝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참여하신다면, 며칠이나 재판진행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① 하루만 ☐② 2일 정도 ☐③ 3일 정도 ☐④ 기간에 상관없다

문7. 만약 귀하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시기를 꺼리신다면, 다음의 이유들이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해당되는 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다	별로 크지 않다	약간 큰 편이다	매우 크다
문7-1.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어려운 일일 것 같아서	①	②	③	④
문7-2. 배심원출석으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	①	②	③	④
문7-3. 출석 그 자체가 힘들 것 같아서(없는 시간을 내서, 이른 시간 등)	①	②	③	④
문7-4. 재판내용이나 법률 용어 등이 어려울 것 같아서	①	②	③	④
문7-5. 재판부나 법원직원들의 권위적 태도로 불편할 것 같아서	①	②	③	④
문7-6.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될 것 같아서	①	②	③	④
문7-7.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①	②	③	④
문7-8. 피고인에 대한 유죄·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부담될 것 같아서	①	②	③	④
문7-9. 신변의 위험이나 보복가능성 등으로 두려울 것 같아서	①	②	③	④

문8.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의도한 내용들입니다. 귀하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달성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맞는 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절대 반대
문8-1.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재판이 보다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8-2.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재판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8-3.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재판 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8-4.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피고인의 인권이 더 잘 보장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8-5.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법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8-6.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더 높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9.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이 평결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약간 있음	매우 큼
문9-1. 학연이나 지연	①	②	③	④
문9-2. 금전적 혹은 정치적 영향	①	②	③	④
문9-3. 여론의 향배	①	②	③	④
문9-4. 개인적인(종교적) 편견이나 선입견	①	②	③	④

문10. 귀하의 생각에 이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
니까?

- ☐① 가능성이 아주 낮다 ☐②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③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④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문11. 혹시, 지금까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은행계좌번호나 개인정보를 알
려달라거나 혹은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DQ1로 ☐② 한두 번☞문11-1로 ☐③ 서너 번☞문11-1로 ☐④ 매우 자주☞문11-1로

문11-1. 그런 전화를 받으신 후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 ☐① 속아서 피해를 보았다. ☐② 속아서 피해를 볼 뻔했다.
☐③ 속지 않고 무시했다. ☐④ 속지 않고 법원이나 경찰 등에 신고했다.

※ 다음은 마지막으로 통계적 처리를 위한 질문들입니다.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DQ1.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이상

DQ2.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관리직 및 전문직 종사자 ☐② 사무직 종사자 ☐③ 판매 서비스직 종사자
☐④ 농/어/임업 종사자 ☐⑤ 기술/기능직 종사자 ☐⑥ 단순 노무직
☐⑦ 직업 군인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 ☐⑪ 기타_____

DQ3. 귀하는 현재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자영업
☐④ 자유직(프리랜서) ☐⑤ 일용(임시)직 ☐⑥ 기타_____
☐⑦ 해당없음(전업주부/학생/무직 등)

DQ4. 맥의 가족 모두의 소득을 합하면 월평균 대략 얼마나 됩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⑨ 모름/무응답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배심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현상 연구, 형사사법제도 연구 등 형사정책 수립에 기초와 근거가 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연구 목적이며 귀하의 의견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입니다. 현재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시범운영 단계이며 2013년부터는 완성된 형태로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직접 참여하신 배심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단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되며, 어떤 경우에도 귀하의 개인 신상이 밝혀지는 일이 없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함께 동봉한 반송용 봉투에 귀하가 작성하신 설문지를 넣어서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 일 수

*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연구책임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수형 ☎ 02-3460-5133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 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SQ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 우선 국민참여재판 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 귀하는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선정 통지를 받기 전에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 ☐①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② 대강 알고 있었다
☐③ 이름만 들어 보았다. ☐④ 전혀 알지 못했다.

문2.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의도한 내용들입니다. 귀하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맞는 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매우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절대 반대
문2-1.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재판이 보다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문2-2.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재판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문2-3.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재판 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문2-4.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피고인의 인권이 더 잘 보장되었다.	①	②	③	④
문2-5.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법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문2-6.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더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문3.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이 평결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 문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약간 있음	매우 큼
문3-1. 학연이나 지연	①	②	③	④
문3-2. 금전적 혹은 정치적 영향	①	②	③	④
문3-3. 여론의 향배	①	②	③	④
문3-4. 개인적인(종교적) 편견이나 선입견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가 참여하신 배심원 선정과정 관련 내용입니다.

문9.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귀하가 이번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려 결정하는 데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한 가지씩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약간 있음	매우 큼
문9-1.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식	①	②	③	④
문9-2. 민주시민으로서의 사명감	①	②	③	④
문9-3. 불출석 시의 과태료에 대한 부담감	①	②	③	④
문9-4. 재판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	①	②	③	④

문10. 귀하는 어떤 방식으로 이번 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되셨습니까?

- ☐① 우선 모인 사람 모두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하고 추첨을 통해 일정명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하여 기피신청이 되는 사람은 제외하고 다시 그 수만큼 뽑아서 질문하는 방식을 반복함.
- ☐② 우선 모인 사람 중에서 무작위추첨을 통해 뽑힌 일정명을 대상으로 질문과 대답을 하고 기피신청이 되는 사람은 제외하고 다시 그 수만큼 뽑아서 질문하는 방식을 반복함.

문11. 귀하가 배심원으로 선정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 ☐① 30분~1시간 미만 ☐② 1시간~1시간 30분 미만
- ☐③ 1시간 30분~2시간 미만 ☐④ 2시간~2시간 30분 미만
- ☐⑤ 2시간 30분~3시간 미만 ☐⑥ 3시간 이상

문12. 배심원 선정과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들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12-1. 선정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었다.	①	②	③	④
문12-2. 선정과정에서 검사나 변호사의 질문이 적절했다.	①	②	③	④
문12-3. 선정과정에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질문들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문12-4. 배심원 선정을 위해 너무 기다렸다.	①	②	③	④
문12-5. 배심원 선정과정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문12-6. 배심원 선정과정 자체가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었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가 참여하신 재판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 13. 판사나 검사 그리고 변호사 등의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귀하가 재판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였습니까?

	매우 부족	약간 부족	약간 충분	매우 충분
문 13-1. 재판 진행과 관련된 판사의 설명	①	②	③	④
문 13-2. 사건의 죄명이나 죄명의 내용에 대한 설명	①	②	③	④
문 13-3. 사건에 대한 판사의 설명	①	②	③	④
문 13-4. 검사의 입증과 주장	①	②	③	④
문 13-5. 변호인의 변론 내용	①	②	③	④
문 13-6. 재판 중 사용된 법률 용어에 대한 설명	①	②	③	④

문 14. 귀하는 이번 재판을 진행한 판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매우 부족	약간 부족	약간 충분	매우 충분
문 14-1. 재판을 위한 사전 준비	①	②	③	④
문 14-2.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등의 노력	①	②	③	④
문 14-3. 사건에 대한 중립적인 자세	①	②	③	④
문 14-4. 재판 시간의 효율적인 배분	①	②	③	④

문 15. 귀하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노력을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매우 부족	약간 부족	약간 충분	매우 충분
문 15-1. 재판을 위한 사전 준비	①	②	③	④
문 15-2. 배심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	①	②	③	④
문 15-3. 입증방식의 다양화 노력(시각자료 활용 등)	①	②	③	④

문 16. 귀하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의 노력을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매우 부족	약간 부족	약간 충분	매우 충분
문 16-1. 재판을 위한 사전 준비	①	②	③	④
문 16-2. 배심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	①	②	③	④
문 16-3. 입증방식의 다양화 노력(시각자료 활용 등)	①	②	③	④

문 17. 귀하는 재판 중 궁금한 점을 메모로 적어 판사에게 제시하거나 직접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다음은 귀하가 참여하신 유죄·무죄에 대한 평의·평결 관련 내용입니다.

문 18. 이번 재판에 평의·평결에 참여한 배심원이셨나요, 아니면 평의·평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예비배심원이셨나요?

- ☐① 평의·평결에 참여한 배심원이었다. → 문19로
☐② 평의·평결에 참여하지 않는 예비 배심원이었다. → 문38로

문 19. 이번 재판에서 유죄와 무죄에 대해 배심원들의 처음 의견은 어떠했습니까?

- ☐① 대부분 일치했다. ☐② 유, 무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문 20. 이번 재판에서 유죄·무죄에 대한 배심원들의 최종의견은 만장일치였습니까?

- ☐① 만장일치였다. → 문21로 ☐②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 문20-1로

문 20-1. 만장일치가 아니라 판사의 의견을 들었을 때, 판사의 의견은 어떠했습니까?

- ☐① 내 의견과 차이가 없었다. ☐② 내 의견과 차이가 있었다.

문 20-2. 판사의 의견이 귀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습니까?

- ☐①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②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③ 약간 영향을 주었다. ☐④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문 21. 귀하는 이번 재판의 유죄·무죄에 대한 평의·평결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밝히셨습니까?

- ☐① 전혀 밝히지 못했다. ☐② 별로 밝히지 못했다.
☐③ 어느 정도 밝혔다. ☐④ 아주 충분히 밝혔다.

문 22. 이번 재판의 유죄·무죄에 대한 평의·평결 과정에서 배심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했다. ☐② 약간 부족했다.
☐③ 비교적 충분했다. ☐④ 매우 충분했다.

문 22A. 유·무죄에 대한 귀하의 최종의견이 판사의 최종판결과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 ☐① 같았다. ☐② 달랐다.

문 23. 이번 재판에서 유죄·무죄를 결정하시기가 어떠하셨습니까?

- ☐① 매우 어려웠다. ☐② 약간 어려웠다.
☐③ 별로 어렵지 않았다. ☐④ 전혀 어렵지 않았다.

문 24.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평의하는 첫 단계부터 판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① 필요가 없다. ☐② 필요가 있다.

문 25. 귀하가 이번 재판에서 유, 무죄의 의견을 정하는 데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약간 있음	매우 큼
문 25-1. 제출된 증거	①	②	③	④
문 25-2. 배심원들의 의견과 토의 내용	①	②	③	④
문 25-3. 배심원 중 주도적인 특정인의 의견	①	②	③	④
문 25-4.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	①	②	③	④
문 25-5. 피고인 측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①	②	③	④
문 25-6. 피해자가 처한 상황	①	②	③	④
문 25-7. 장시간 재판으로 인한 피로감	①	②	③	④

문 26. 이번 재판에서 유죄·무죄에 대한 평결이 무죄였습니까, 유죄였습니까?

☐① 무죄였다 문36으로

☐② 유죄였다 문27로

※ 다음은 귀하가 참여하신 형량에 대한 토의 관련 내용입니다.

문 27. 적정 형량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판사의 설명이 귀하가 이해하시기에 충분하였습니까?

☐① 매우 부족했다.

☐② 약간 부족했다.

☐③ 비교적 충분했다.

☐④ 매우 충분했다.

문 28.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초기 토의에서 귀하의 의견과 판사의 의견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① 같았다.

☐② 달랐다.

문 29.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초기 토의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은 어떠했습니까?

☐① 대부분 일치했다.

☐② 의견이 많이 달랐다.

문 30. 이번 재판에서 내려진 배심원들의 최종 형량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까?

☐① 만장일치였다.

☐②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문 31. 귀하는 이번 재판의 형량을 정하는 배심원의 토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밝히셨습니까?

☐① 전혀 밝히지 못했다.

☐② 별로 밝히지 못했다.

☐③ 어느 정도 밝혔다.

☐④ 아주 충분히 밝혔다.

문 32. 이번 재판의 형량을 정하는 토의 과정에서 배심원들이 충분히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족했다.

☐② 약간 부족했다.

☐③ 비교적 충분했다.

☐④ 매우 충분했다.

문33. 형량에 대한 귀하의 최종의견이 판사의 최종판결과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① 같았다.

☐② 달랐다.

문34. 이번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하시기가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 어려웠다.

☐② 약간 어려웠다.

☐③ 별로 어렵지 않았다.

☐④ 전혀 어렵지 않았다.

문35. 귀하가 이번 재판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약간 있음	매우 큼
문35-1. 법률 기준	①	②	③	④
문35-2. 배심원들의 의견과 토의 내용	①	②	③	④
문35-3. 배심원 중 주도적인 특정인의 의견	①	②	③	④
문35-4. 판사의 의견	①	②	③	④
문35-5.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	①	②	③	④
문35-6. 피고인 측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①	②	③	④
문35-7 피해자가 처한 상황	①	②	③	④
문35-8. 장시간 재판으로 인한 피로감	①	②	③	④

문36. 귀하가 참여하신 평의·평결과 토의시간은 대략 얼마나 걸렸습니까?

☐① 30분~1시간 미만

☐② 1시간~1시간 30분 미만

☐③ 1시간 30분~2시간 미만

☐④ 2시간~2시간 30분 미만

☐⑤ 2시간 30분~3시간 미만

☐⑥ 3시간 이상

문37.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평의·평결과 토의시간이 어떠했습니까?

☐① 너무 길었다.

☐② 약간 긴 편이었다.

☐③ 그리 길지는 않았다.

☐④ 전혀 길지 않았다.

※ 다음은 이번 재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문 38. 이번 재판에 참여하시면서 전반적으로 다음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38-1. 직접 참가해 보니 재판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문 38-2. 배심원으로 참여하느라, 생업에 지장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문 38-3. 배심원으로 출석하기 위해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문 38-4. 재판 내용과 법률 용어들이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문 38-5.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증거가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문 38-6. 재판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문 38-7. 재판과정에서 똑같은 내용의 반복으로 지루했다.	①	②	③	④
문 38-8. 피고인과의 직접 대면이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문 38-9. 피고인의 유무죄나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①	②	③	④
문 38-10. 법원 직원들의 권위적 태도가 불쾌했다.	①	②	③	④
문 38-11. 재판과 관련된 보복이 있을 것 같아 불안했다.	①	②	③	④

문 39. 향후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적어주십시오.

※ 다음은 마지막으로 통계적 처리를 위한 질문들입니다.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DQ1.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이상

DQ2.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관리직 및 전문직 종사자

☐② 사무직 종사자

☐③ 판매 서비스직 종사자

☐④ 농/어/임업 종사자

☐⑤ 기술/기능직 종사자

☐⑥ 단순 노무직

☐⑦ 직업 군인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

☐⑪ 기타_____

DQ3. 귀하는 현재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자영업

☐④ 자유직(프리랜서)

☐⑤ 일용(임시)직

☐⑥ 기타_____

☐⑦ 해당없음(전업주부/학생/무직 등)

DQ4. 맥의 가족 모두의 소득을 합하면 월평균 대략 얼마나 됩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⑨ 모름/무응답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배심원후보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현상 연구, 형사사법제도 연구 등 형사정책 수립에 기초와 근거가 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후보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연구 목적이며 귀하의 의견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 제도입니다. 현재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시범운영 단계이며 2013년부터는 완성된 형태로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직접 참여하신 배심원 후보자 여러분의 의견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단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되며, 어떤 경우에도 귀하의 개인 신상이 밝혀지는 일이 없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함께 동봉한 반송용 봉투에 귀하가 작성하신 설문지를 넣어서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 일 수

*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연구책임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수형 ☎ 02-3460-5133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 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SQ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 우선 국민참여재판 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 귀하는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선정 통지를 받기 전에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 ☐①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② 대강 알고 있었다
☐③ 이름만 들어 보았다. ☐④ 전혀 알지 못했다.

문2. 귀하는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후보로 선정 절차에 참여하셨습니까?

- ☐① 예 (배심원 선정절차에 참여하여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질문에 답했다.)
☐② 아니오 (배심원 후보로 출석했으나 선정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문3.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의도한 내용들입니다. 귀하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맞는 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매우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절대 반대
문3-1.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재판이 보다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문3-2.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재판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문3-3.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재판 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문3-4.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피고인의 인권이 더 잘 보장되었다.	①	②	③	④
문3-5.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법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문3-6.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더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문4.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이 평결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약간 있음	매우 큼
문4-1. 학연이나 지연	①	②	③	④
문4-2. 금전적 혹은 정치적 영향	①	②	③	④
문4-3. 여론의 향배	①	②	③	④
문4-4. 개인적인(종교적) 편견이나 선입견	①	②	③	④

문5. 현재 국민참여재판제도 하에서는 배심원들은 유죄인가 무죄인가의 의견만을 제시하고, 판사가 이를 참고로 최종 평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가요?

- ☐① 현행 방식이 타당하다.
☐② 배심원들이 합의한 의견을 판사는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③ 판사는 배심원들이 합의한 의견을 고려할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평결해야 한다.

문6. 현재 배심원들이 적정한 형량을 제시하면, 판사는 이를 참고로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방식이 타당하다.
☐② 배심원들이 합의한 형량을 판사는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③ 판사는 배심원들이 합의한 형량을 고려할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

문7. 현재 국민참여재판제도 하에서는 배심원들의 일당을 하루 10만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배심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은 편이다. ☐② 적정하다. ☐③ 많은 편이다.

문8. 혹시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배심원으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문9로 ☐②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문9로
☐③ 약간 참여하고 싶다.☞문8-1로 ☐④ 꼭 참여하고 싶다.☞문8-1로

문8-1. 간혹 재판이 밤늦게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만약 참여하신다면, 언제까지 재판 진행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 ☐① 오후 6시 정도 ☐② 오후 8시 정도 ☐③ 자정까지 ☐④ 시간에 상관없다

문8-2. 간혹 재판이 하루에 끝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참여하신다면, 며칠 간이나 재판진행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 ☐① 하루만 ☐② 2일 정도
☐③ 3일 정도 ☐④ 기간에 상관없다

문9. 귀하의 생각에 이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 ☐① 아주 낮다 ☐② 낮은 편이다
☐③ 높은 편이다 ☐④ 아주 높다

※ 다음은 귀하가 배심원 선정방식과 귀하가 참여하신 동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10.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귀하가 이번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려 결정하는 데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한 가지씩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약간 있음	매우 큼
문10-1.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식	①	②	③	④
문10-2. 민주시민으로서의 사명감	①	②	③	④
문10-3. 불출석 시의 과태료에 대한 부담감	①	②	③	④
문10-4. 재판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	①	②	③	④

문11. 어떤 방식으로 배심원을 선정 하였습니다니까?

- ☐① 우선 모인 사람 모두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하고 추첨을 통해 일정명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하여 기피신청이 되는 사람은 제외하고 다시 그 수만큼 뽑아서 질문하는 방식을 반복함.
- ☐② 우선 모인 사람 중에서 무작위추첨을 통해 뽑힌 일정명을 대상으로 질문과 대답을 하고 기피신청이 되는 사람은 제외하고 다시 그 수만큼 뽑아서 질문하는 방식을 반복함.

문12. 배심원 선정과정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 ☐① 30분~1시간 미만 ☐② 1시간~1시간 30분 미만
- ☐③ 1시간 30분~2시간 미만 ☐④ 2시간~2시간 30분 미만
- ☐⑤ 2시간 30분~3시간 미만 ☐⑥ 3시간 이상

문13. 배심원 선정과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들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13-1. 선정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었다.	①	②	③	④
문13-2. 선정과정에서 검사나 변호사의 질문이 적절했다.	①	②	③	④
문13-3. 선정과정에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질문들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문13-4. 배심원 선정을 위해 너무 기다렸다.	①	②	③	④
문13-5. 배심원 선정과정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문13-6. 배심원 선정과정 자체가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었다.	①	②	③	④

문14. 향후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적어주십시오.

※ 다음은 마지막으로 통계적 처리를 위한 질문들입니다.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DQ1.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이상

DQ2.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관리직 및 전문직 종사자

☐② 사무직 종사자

☐③ 판매 서비스직 종사자

☐④ 농/어/임업 종사자

☐⑤ 기술/기능직 종사자

☐⑥ 단순 노무직

☐⑦ 직업 군인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

☐⑪ 기타_____

DQ3. 귀하는 현재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자영업

☐④ 자유직(프리랜서)

☐⑤ 일용(임시)직

☐⑥ 기타_____

☐⑦ 해당없음(전업주부/학생/무직 등)

DQ4. 맥의 가족 모두의 소득을 합하면 월평균 대략 얼마나 됩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⑨ 모름/무응답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ID	1		
----	---	--	--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의식조사 - 국민참여재판 경험자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현상 연구, 형사사법제도 연구 등 형사정책 수립에 기초와 근거가 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연구 목적이며 귀하의 의견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단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되며, 어떤 경우에도 귀하의 개인 신상이 밝혀지는 일이 없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5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 일 수

*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수형 ☎ 02-3460-5133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 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SQ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문1. 우선 법원에서 각종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관들에 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비교적 그렇다	정말 그렇다
문1-1. 우리나라 법관들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 없이 모든 피고인들을 평등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문1-2. 우리나라 법관들은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1-3. 우리나라 법관들은 정치권이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1-4. 우리나라 법관들은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1-5. 우리나라 법관들은 증거나 증인들의 진술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결한다.	①	②	③	④
문1-6. 우리나라 법관들은 재판을 진행할 만한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1-7. 우리나라 법관들의 판결을 믿을 만하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문2. 귀하는 현재 수감생활을 하게 된 사건의 공소장을 받기 전에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 ☐①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② 대강 알고 있었다.
☐③ 이름만 들어 보았다. ☐④ 전혀 알지 못했다.

문3.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어떻게 아시게 되셨습니까?(해당되는 것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TV나 신문 등 언론보도를 통해 ☐② 라디오나 지하철의 광고를 통해
☐③ 인터넷 검색을 통해 ☐④ 수감생활 전 주변사람들로부터
☐⑤ 변호사를 통하여 ☐⑥ 공소장부분 송달시, 영장실질심사시 안내서 보고
☐⑦ 경찰서나 구치소의 홍보물을 보고 ☐⑧ 경찰로부터 이야기 듣고
☐⑨ 검찰로부터 이야기 듣고 ☐⑩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
☐⑪ 기타 _____

※ “국민참여재판제도”란

일반국민들이 재판과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 무죄나 죄에 따른 형량을 논의하여 결정하면, 판사가 이를 판결에 참고하는 제도입니다.

문4.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의도한 내용들입니다. 귀하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달성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맞는 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절대 반대
문4-1.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재판이 보다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4-2.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재판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4-3.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재판 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4-4.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피고인의 인권이 더 잘 보장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4-5.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법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4-6.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더 높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5.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이 평결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약간 있음	매우 큼
문5-1. 학연이나 지연	①	②	③	④
문5-2. 금전적 혹은 정치적 영향	①	②	③	④
문5-3. 여론의 향배	①	②	③	④
문5-4. 개인적인(종교적) 편견이나 선입견	①	②	③	④

문6. 현재 ‘국민참여재판제도’ 하에서는 배심원들은 유죄인가 무죄인가의 의견만을 제시하고, 판사가 이를 참고로 최종 평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가요?

- ☐① 현행 방식이 타당하다.
☐② 배심원들이 합의한 의견을 판사는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③ 판사는 배심원들이 합의한 의견을 고려할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평결해야 한다.

문7. 현재 배심원들이 적절한 형량을 제시하면, 판사는 이를 참고로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방식이 타당하다.
☐② 배심원들이 합의한 형량을 판사는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③ 판사는 배심원들이 합의한 형량을 고려할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

문8. 귀하는 다른 재소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권하겠습니까?

- ☐① 예(국민참여재판을 권한다) ☐② 아니오(국민참여재판을 권하지 않는다)

문9. 귀하의 생각에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어떠한 것 같습니다?

- ☐① 아주 낮다 ☐② 낮은 편이다
☐③ 높은 편이다 ☐④ 아주 높다

※ 다음은 귀하가 경험한 재판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수감생활을 하게 된 재판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10. 귀하께서 현재 수감생활을 하게 된 재판을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2008년 ☐② 2009년 ☐③ 2010년 ☐④ 2011년

문11. 귀하가 현재 수감생활을 하게 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었습니까?

- ☐① 예(국민참여재판이었다) ⇨ 문12로 ☐② 아니오(일반형사재판이었다) ⇨ 문14로

문12. 귀하가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해당되는 것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량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서
☐② 피고인의 권리가 잘 보호될 것 같아서
☐③ 재판이 공정할 것 같아서
☐④ 변호사의 권유로
☐⑤ 같은 재소자들의 권유로
☐⑥ 기타 (기록: _____)

문13. 귀하가 만약 지난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고 일반형사재판을 받았다면 결과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 ☐① 무죄로 풀려났을 것이다
☐② 지금보다는 더 가벼운 형을 받았을 것이다
☐③ 지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을 것이다
☐④ 지금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문14. 귀하는 1심 판결로 재판을 마쳤습니까?

- ☐① 그렇다 ☐② 2심에서 마쳤다 ☐③ 대법원까지 갔다

문15. 귀하는 재판과정에서 변호사가 있었습니까?

- ☐① 사선변호사 ☐② 국선변호사 ☐③ 변호사없이 재판받았다

문16. 귀하는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얼마나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 ☐② 별로 도움이 안되었다
☐③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④ 무척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⑤ 변호사없이 재판받았다

문17. 귀하는 변호사와 어느 정도 상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상의하지 못했다 ☐② 별로 상의하지 못했다
☐③ 어느정도 상의했다 ☐④ 충분히 상의했다
☐⑤ 변호사없이 재판받았다

문18. 귀하는 1심 판결의 유죄선고에 승복하십니까?

- ☐① 전혀 승복하지 못한다 ☐② 어느정도 승복하지 못한다
☐③ 어느정도 승복한다 ☐④ 전적으로 승복한다

문19. 귀하는 1심 판결의 형량수준에 대해 승복하십니까?

- ☐① 전혀 승복하지 못한다 ☐② 어느정도 승복하지 못한다
☐③ 어느정도 승복한다 ☐④ 전적으로 승복한다

문20. 귀하는 1심 판결의 형량수준이 어떠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나치게 낮다 ☐② 대체로 낮은 편이다
☐③ 대체로 높은 편이다 ☐④ 지나치게 높다

문21. 귀하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였습니까?

- ☐① 항소했다 ☐② 검사측에서만 항소했다
☐③ 쌍방 모두 항소했다 ☐④ 어느쪽에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문22. 위 시기의 사건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살인 ☐② 살인미수
☐③ 상해치사 ☐④ 강도살인, 강도상해
☐⑤ 성범죄 ☐⑥ 기타 (기록:_____)

문23. 귀하께서 1심 판결에서 선고받은 형량은 얼마입니까? _____년 _____월

문24. (위의 수감건수를 제외하고) 귀하께서는 과거에 다른 죄로 복역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_____회) ☐② 없다

문25. (위의 수감건수를 제외하고) 귀하께서는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거나 검찰에 기소된 적은 있습니까?

- ☐① 있다(_____회) ☐② 없다

※ 다음은 마지막으로 통계적 처리를 위한 질문들입니다.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DQ1.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이상

DQ2. 귀하가 수감생활을 하기 전 직업은 무엇이었습니다?

- ☐① 관리직 및 전문직 종사자 ☐② 사무직 종사자 ☐③ 판매 서비스직 종사자
☐④ 농/어/임업 종사자 ☐⑤ 기술/기능직 종사자 ☐⑥ 단순 노무직
☐⑦ 직업 군인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 ☐⑪ 기타_____

DQ3. 귀하가 수감생활을 하기 전 어떤 조건에서 일하셨습니다?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자영업
☐④ 자유직(프리랜서) ☐⑤ 일용(임시)직 ☐⑥ 기타_____

☐⑦ 해당없음(전업주부/학생/무직 등)

DQ4. 귀하가 수감생활을 하기 전 귀하의 가족 모두의 소득을 합하면 월평균 대략 얼마나 됩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⑨ 모름/무응답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ID	2		
----	---	--	--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의식조사
-국민참여재판 비경험자용-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현상 연구, 형사사법제도 연구 등 형사정책 수립에 기초와 근거가 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연구 목적이며 귀하의 의견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단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되며, 어떤 경우에도 귀하의 개인 신상이 밝혀지는 일이 없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5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 일 수

*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수형 ☎ 02-3460-5133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 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SQ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문1. 우선 법원에서 각종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관들에 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비교적 그렇다	정말 그렇다
문1-1. 우리나라 법관들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피고인들을 평등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문1-2. 우리나라 법관들은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1-3. 우리나라 법관들은 정치권이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1-4. 우리나라 법관들은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1-5. 우리나라 법관들은 증거나 증인들의 진술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결한다.	①	②	③	④
문1-6. 우리나라 법관들은 재판을 진행할 만한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1-7. 우리나라 법관들의 판결을 믿을 만하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문2. 귀하는 현재 수감생활을 하게 된 사건의 공소장을 받기 전에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 ☐①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② 대강 알고 있었다.
☐③ 이름만 들어 보았다. ☐④ 전혀 알지 못했다.

문3.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어떻게 아시게 되셨습니까?(해당되는 것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TV나 신문 등 언론보도를 통해 ☐② 라디오나 지하철의 광고를 통해
☐③ 인터넷 검색을 통해 ☐④ 수감생활 전 주변사람들로부터
☐⑤ 변호사를 통하여 ☐⑥ 공소장부본 송달시, 영장실질심사시 안내서 보고
☐⑦ 경찰서나 구치소의 홍보물을 보고 ☐⑧ 경찰로부터 이야기 듣고
☐⑨ 검찰로부터 이야기 듣고 ☐⑩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
☐⑪ 기타_____

※ “국민참여재판제도”란

일반국민들이 재판과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 무죄나 죄에 따른 형량을 논의하여 결정하면, 판사가 이를 판결에 참고하는 제도입니다.

문4.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의도한 내용들입니다. 귀하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달성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맞는 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절대 반대
문4-1.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재판이 보다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4-2.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재판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4-3.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재판 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4-4.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피고인의 인권이 더 잘 보장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4-5.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법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4-6.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더 높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5.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이 평결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약간 있음	매우 큼
문5-1. 학연이나 지연	①	②	③	④
문5-2. 금전적 혹은 정치적 영향	①	②	③	④
문5-3. 여론의 향배	①	②	③	④
문5-4. 개인적인(종교적) 편견이나 선입견	①	②	③	④

문6. 현재 ‘국민참여재판제도’ 하에서는 배심원들은 유죄인가 무죄인가의 의견만을 제시하고, 판사가 이를 참고로 최종 평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가요?

- ☐① 현행 방식이 타당하다.
☐② 배심원들이 합의한 의견을 판사는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③ 판사는 배심원들이 합의한 의견을 고려할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평결해야 한다.

문7. 현재 배심원들이 적절한 형량을 제시하면, 판사는 이를 참고로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방식이 타당하다.
☐② 배심원들이 합의한 형량을 판사는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③ 판사는 배심원들이 합의한 형량을 고려할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

문8. 귀하는 다른 재소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권하겠습니까?

- ☐① 예(국민참여재판을 권한다) ☐② 아니오(국민참여재판을 권하지 않는다)

문9. 귀하의 생각에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어떠한 것 같습니다?

- ☐① 아주 낮다 ☐② 낮은 편이다
☐③ 높은 편이다 ☐④ 아주 높다

※ 다음은 귀하가 경험한 재판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수감생활을 하게 된 재판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10. 귀하께서 현재 수감생활을 하게 된 재판을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2008년 ☐② 2009년 ☐③ 2010년 ☐④ 2011년

문11. 귀하가 현재 수감생활을 하게 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었습니까?

- ☐① 예(국민참여재판이었다)☞문14로 ☐② 아니오(일반형사재판이었다)☞문12로

문12. 귀하는 현재 수감생활을 하게 된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았다 ☐②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가 철회하였다
☐③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에서 배제하였다

문12-1. 귀하의 국민참여재판신청에 대한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배제결정은 부당하다 ☐② 배제결정은 당연하다 ☐③ 아무상관없다

문12-2.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신청에 대한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해 즉시 항소했습니까? ☞문13로

- ☐① 예 ☐② 아니오

문12-3. 귀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하였다가 철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유죄가 되거나 형량이 더 높게 나올까봐
☐② 배심원 판결을 믿을 수 없어서
☐③ 변호사의 권유로
☐④ 동료 재소자들이 좋지 않다고 해서
☐⑤ 판사나 검사 등 관련업무자들의 업무 부담감 등으로 불이익이 있을까봐
☐⑥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 앞에서 재판받기 싫어서
☐⑦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잘 몰라서
☐⑧ 기타_____

문13. 귀하가 만약 지난 재판에서 일반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면 결과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다?

- ☐① 무죄로 풀려났을 것이다
☐② 지금보다는 더 가벼운 형을 받았을 것이다
☐③ 지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을 것이다
☐④ 지금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문14. 귀하는 1심 판결로 재판을 마쳤습니까?

- ☐① 그렇다 ☐② 2심에서 마쳤다 ☐③ 대법원까지 갔다

문15. 귀하는 재판과정에서 변호사가 있었습니까?

- ☐① 사선변호사 ☐② 국선변호사 ☐③ 변호사없이 재판받았다

문16. 귀하는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얼마나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 ☐② 별로 도움이 안되었다
☐③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④ 무척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⑤ 변호사없이 재판받았다

문17. 귀하는 변호사와 어느 정도 상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상의하지 못했다 ☐② 별로 상의하지 못했다
☐③ 어느정도 상의했다 ☐④ 충분히 상의했다
☐⑤ 변호사없이 재판받았다

문18. 귀하는 1심 판결의 유죄선고에 승복하십니까?

- ☐① 전혀 승복하지 못한다 ☐② 어느정도 승복하지 못한다
☐③ 어느정도 승복한다 ☐④ 전적으로 승복한다

문19. 귀하는 1심 판결의 형량수준에 대해 승복하십니까?

- ☐① 전혀 승복하지 못한다 ☐② 어느정도 승복하지 못한다
☐③ 어느정도 승복한다 ☐④ 전적으로 승복한다

문20. 귀하는 1심 판결의 형량수준이 어떠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나치게 낮다 ☐② 대체로 낮은 편이다
☐③ 대체로 높은 편이다 ☐④ 지나치게 높다

문21. 귀하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였습니까?

- ☐① 항소했다 ☐② 검사측에서만 항소했다
☐③ 쌍방 모두 항소했다 ☐④ 어느쪽에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문22. 위 시기의 사건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살인 ☐② 살인미수
☐③ 상해치사 ☐④ 강도살인, 강도상해
☐⑤ 성범죄 ☐⑥ 기타(기록:_____)

문23. 귀하께서 1심 판결에서 선고받은 형량은 얼마입니까? -----년 -----월

문 24. (위의 수감건수를 제외하고) 귀하께서는 과거에 다른 죄로 복역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_____회) ☐② 없다

문 25. (위의 수감건수를 제외하고) 귀하께서는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거나 검찰에 기소된 적은 있습니까?

- ☐① 있다(_____회) ☐② 없다

※ 다음은 마지막으로 통계적 처리를 위한 질문들입니다.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DQ1.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이상

DQ2. 귀하가 수감생활을 하기 전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관리직 및 전문직 종사자 ☐② 사무직 종사자 ☐③ 판매 서비스직 종사자
☐④ 농/어/임업 종사자 ☐⑤ 기술/기능직 종사자 ☐⑥ 단순 노무직
☐⑦ 직업 군인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 ☐⑪ 기타_____

DQ3. 귀하가 수감생활을 하기 전 어떤 조건에서 일하셨습니까?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자영업
☐④ 자유직(프리랜서) ☐⑤ 일용(임시)직 ☐⑥ 기타_____

☐⑦ 해당없음(전업주부/학생/무직 등)

DQ4. 귀하가 수감생활을 하기 전 귀댁의 가족 모두의 소득을 합하면 월평균 대략 얼마나 됩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⑨ 모름/무응답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판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정책수립에 기초와 근거가 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본 조사연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귀하가 제시해주시는 의견은 국민참여재판의 발전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귀하의 개인적인 정보가 밝혀지는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기꺼이 응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설문지는 함께 동봉한 반송용 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 일 수

*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연구자 : 탁희성 연구위원

전 화 : 02) 3460-5161

이 메 일 : heesung@kic.re.kr

1. 성 별	☐ ① 남성 ☐ ② 여성
2. 응답자 연령	만 _____ 세
3. 직장소재지	☐ ①서울 ☐ ②부산 ☐ ③대구 ☐ ④인천 ☐ ⑤광주 ☐ ⑥대전 ☐ ⑦울산 ☐ ⑧경기 ☐ ⑨강원 ☐ ⑩충북 ☐ ⑪충남 ☐ ⑫전북 ☐ ⑬전남 ☐ ⑭경북 ☐ ⑮경남 ☐ ⑯제주
4. 직 업	☐ ①판사 ☐ ②검사 ☐ ③변호사
5. 현직업 복무기간	약 _____ 년 _____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1. 귀하는 현재까지 국민참여재판을 몇 번 담당하셨습니까?
 ____ 1) 1회 ____ 2) 2회 ____ 3) 3회
 ____ 4) 4회 ____ 5) 5회 이상(____ 회) ____ 6) 없음 → 3번으로 가시오

2. 귀하가 그동안 담당했던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죄명과 횟수**를 기재해 주십시오.

대상범죄 \ 년도	2008	2009	2010	2011
살인	회	회	회	회
살인미수	회	회	회	회
상해치사	회	회	회	회
강도살인	회	회	회	회
강도상해	회	회	회	회
성범죄	회	회	회	회
기타	회	회	회	회

3. 귀하가 소속된 법원내에 **국민참여재판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____ 1) 예 ____ 2) 아니오
4. 귀하가 소속된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홍보활동**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____ 1) 예 ____ 2) 아니오
5.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 1) 일반국민 대상 텔레비전과 라디오 홍보방송
 ____ 2) 초,중,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참여재판 홍보교육 및 재판참관기회 제공
 ____ 3) 참여재판 대상 피고인들에 대한 홍보책자 배부
 ____ 4) 기타 (____)

6.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우리 사법체제에 적합한 재판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이 **현 사법체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8.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목적 및 도입취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기여한다	대체로 기여한다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8-1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8-2	사법에 대한 신뢰 구축				
8-3	피고인의 인권 보장				
8-4	국민 법의식 향상 및 법교육				

9. 다음은 **국민참여재판 시행경과**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9-1	우리 사법시스템에 국민참여재판이 제대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9-2	시행초기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증가했다				
9-3	배심원들이 재판과정에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9-4	시행초기에 비해 일반시민의 배심원 참여도(비율)가 높아졌다				
9-5	시행초기에 비해 배심원들의 재판참여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다				

10. 다음은 **일반시민배심원의 공판절차 참여**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1	유무죄 판단절차 참여				
10-2	양형판단절차 참여				

11. 다음은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1	유무죄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				
11-2	양형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				

공판준비절차 등 재판과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이 **통상 공판절차에 비하여 갖는 업무부담**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1) 매우 부담된다 ____ 2) 약간 부담된다
 ____ 3) 별로 부담 안된다 ____ 4) 전혀 부담 안된다
2. 다음은 **국민참여재판 절차상 업무부담**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부담된다	약간 부담된다	별로 부담 안된다	전혀 부담 안된다
2-1	공판준비절차				
2-2	배심원 선정절차				
2-3	배심원 설명자료 준비				
2-4	장시간 재판				
2-5	법률용어의 설명				
2-6	배심원 평의절차				

3.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과정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질문 문항	매우 미흡	미흡	충분	매우 충분
3-1	참여재판 공판정 확보				
3-2	참여재판 전담재판부 확보				
3-3	참여재판 시행예산 확보				
3-4	참여재판 준비 인력 확보				

4. 다음은 국민참여재판 절차와 관련한 문항들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별로 타당하지 않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4-1	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범위				
4-2	피고인의 참여재판 신청제도				
4-3	법률상 참여재판 배제사유				
4-4	항소심에 대한 참여재판 배제				

5.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의 범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 1) 현행법상 참여재판 대상범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대폭 축소)
☐ 2) 현행법상 참여재판 대상범죄를 일부 축소해야 한다(일부 축소)
☐ 3) 현행법상 참여재판 대상범죄 이외의 일부범죄를 대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일부확대)
☐ 4) 모든 형사범죄를 참여재판 대상범죄로 해야 한다(전면 확대)
☐ 5) 현행법상 참여재판 대상범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현행 유지)

6. 현행법에 규정된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 가운데 참여재판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범죄유형은 어느 것입니까? (해당사항 모두 표시)

- ☐ 1) 없다 ☐ 2) 성범죄 ☐ 3) 뇌물범죄
☐ 4) 보건의료범죄 ☐ 5) 환경범죄 ☐ 6) 살인범죄
☐ 7) 강도범죄 ☐ 8) 기타 ()

7. 현행법상 규정된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는 아니지만, 귀하가 생각하기에 참여재판 대상 사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범죄유형은 무엇입니까?(해당사항 모두 표시)

- ☐ 1) 없다 ☐ 2) 교통범죄 ☐ 3) 횡령 및 배임범죄
☐ 4) 위증 및 무고범죄 ☐ 5) 집시법위반범죄 ☐ 6) 음란물 관련 범죄
☐ 7) 기타 ()

8. 다음은 현행법상 피고인 신청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방안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 ___ 1) 현행대로 피고인 신청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___ 2) 일정 범죄유형(대형 경제사범 내지 뇌물범죄)에 대해서만 참여재판실시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대상범죄는 현행대로 피고인 신청에 의한다.
- ___ 3) 원칙적으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되, 피고인에게 참여재판 포기권을 부여한다
- ___ 4) 현행법상 참여재판신청권자를 피고인에서 검사와 재판부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9. 다음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 ___ 1) 현행방식이 적절하다
- ___ 2) 현행법 제9조 제1항 제3호(기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예규의 3가지 요건(추가기소, 정신이상,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침해) 외에 다른 사유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 ___ 3) 현행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참여재판배제사유의 판단은 예규에 의한 3가지 요건(추가기소, 정신이상,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에 제한되어야 한다
- ___ 4) 배제결정방식 자체를 폐지해야 하고,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참여재판을 의무화해야 한다

10.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 ___ 1) 국민참여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유무죄 선고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항소를 배제해야 한다
- ___ 2) 무죄판결에 대해서만 항소를 배제하고, 양형에 대해서는 항소를 허용해야 한다
- ___ 3) 현행대로 국민참여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유무죄 선고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항소를 허용해야 한다

11. 귀하는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전혀 필요없다

11-1. 귀하는 국민참여재판 판결에 대한 항소허용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절차의 개선**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반드시 개선 필요	어느 정도 개선 필요	별로 개선 불필요	전혀 개선 불필요
12-1	공판전 준비절차				
12-2	배심원 선정절차				
12-3	모두절차				
12-4	증거조사절차				
12-5	검사의 입증절차				
12-6	변호사 변론절차				
12-7	배심원 평의절차				

13. 귀하는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적절한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오전 9시 - 오후 6시 이내
☐ 2) 오전 9시 - 오후 8시 이내
☐ 3) 오전 9시 - 밤 12시(자정) 이내
☐ 4) 오전 9시 - 재판이 끝날때까지 계속 진행(밤 12시 넘어서도 가능)

13-1.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사건의 성격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1일 이내
☐ 2) 사건의 성격 또는 내용에 따라 2일 이내 연속 개정
☐ 3) 사건의 성격 또는 내용에 따라 3일 이상 연속 개정
☐ 4) 사건의 성격 또는 내용에 따라 별도 기일 지정하여 여러 차례 재판 진행

14. 귀하는 **1일(혹은 2일)에 집중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속히 종결**하는 현행 재판방식이 실제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5.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사실심 심리와 양형 심리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예 2) 아니오

사유		해당여부
17-1	배심원후보자 등의 생명,신체, 재산등에 대한 침해우려	
17-2	공동피고인 일부가 원하지 않음	
17-3	추가 기소 예상	
17-4	피고인에게 정신이상 의심됨	
17-5	현재한 절차지연 예상	
17-6	피고인의 태도불량	
17-7	친족간 범행	
17-8	자백사건	
17-9	범행의 잔혹성(잔인성)	
17-10	기타 (직접기입:)	

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문항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	배심원후보자의 질문표 작성				
1-2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기피신청 질문				
1-3	무이유부 기피신청				
1-4	이유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1-5	순차기피방식				
1-6	혼합방식				

2. 다음의 배심원 선정절차들이 **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기여한다	대체로 기여한다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2-1	배심원후보자의 질문표 작성				
2-2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기피신청 질문				
2-3	무이유부 기피신청				
2-4	이유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2-5	순차기피방식				
2-6	혼합방식				

3. 다음은 **배심원 선정과정**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별로 타당하지 않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3-1	배심원의 개인적 사항(가족, 직업, 학력 등)을 이용한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				
3-2	배심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유사한 범죄환경에 있음을 가정하게 한 후에 행하는 질문				
3-3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표의 구성 내용				
3-4	예비배심원 선정불고지				
3-5	배심원 선정시간				

4. 귀하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배심원 선정절차가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1) 예 ____ 2) 아니오

5. 현행 배심원 선정절차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1) 예 ____ 2) 아니오

6. 다음의 **배심원 선정절차 가운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반드시 개선 필요	대체로 개선필요	별로 개선 불필요	전혀 개선불필 요
6-1	무이유부 기피신청에 의한 기피사유의 불명확성				
6-2	배심원의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 는 질문방식				
6-3	순차기피방식에 의한 중복질문				
6-4	예비배심원 선정 불고지				
6-5	배심원 선정시간의 불충분성				

7. 귀하는 다음의 배심원 선정방식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참여재판을 시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순차기피방식
 ☐ 2) 일괄기피방식
☐ 3) 혼합방식(일괄질문후 순차기피 혼합)
 ☐ 4) 기타()

- ☐ 일괄기피방식 : 모든 배심원후보자를 대상으로 질문과 기피신청의 반복을 통해 최종적으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을 선정하는 방식

8.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공정하게 운영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심원 선정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대체로 그렇다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9. 귀하는 참여재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배심원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10.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에 필요한 배심원수로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최소 ()명, 최대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____ 1) 배심원들이 객관적 증거 보다는 감성에 의지해 판결했기 때문에
 ____ 2) 재판과정을 통해 주입된 김사나 변호사의 주장에 좌우되는 경향 때문에
 ____ 3) 직접 증거만을 유죄 증거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____ 4) 기타 ()

질문 문항		매우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별로 타당하지 않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8-1	유무죄 평의시 중다수결 (3/4 내지 2/3)로 일원화				
8-2	유무죄 평의시 만장일치제로 일원화				
8-3	배심원 평결에 대한 구속력 부여				
8-4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제한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1.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우리의 **사법시스템에 정착하기 위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 ___ 1)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 확대
 ___ 2) 국민참여재판 배제사유의 축소
 ___ 3) 공판전준비절차의 내실화
 ___ 4) 배심원 선정절차 개선
 ___ 5) 배심원을 위한 법률용어의 개선
 ___ 6)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
 ___ 7) 국민참여재판 진행 일수
 ___ 8) 기타 ()

2. 귀하는 다음의 내용들에 대한 **배심원들의 이해의 정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전부 이해	대체로 이해	거의 이해못함	전혀 이해못함
2-1	재판과정에 대한 판사의 설명				
2-2	사건의 죄명 및 죄명의 내용				
2-3	사건에 대한 판사의 설명				
2-4	검사의 입증과 주장내용				
2-5	변호인의 변론 내용				
2-6	재판중 사용된 법률 용어				
2-7	평의시 양형관련 설명				

3. 귀하는 현행 **검사의 입증방식**이 국민참여재판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1) 참여재판형식에 부합하는 입증방법을 활용한다
 ___ 2) 참여재판에 부합하는 입증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___ 3) 참여재판에 부합하는 입증을 하고자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___ 4) 전혀 참여재판에 부합하지 않는 이전의 입증방식을 그대로 활용한다

4. 귀하는 **변호인의 변론방식**이 국민참여재판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1) 참여재판형식에 부합한 변론방법을 활용한다
 ___ 2) 참여재판에 부합하는 변론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___ 3) 참여재판에 부합하는 변론을 하고자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___ 4) 전혀 참여재판에 부합하지 않는 이전의 변론방식을 그대로 활용한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___ 1) 국민참여재판의 횟수 확대
- ___ 2) 법원의 배제결정사유 축소
- ___ 3) 검사와 변호인의 적극적인 참여
- ___ 4) 일반국민에 대한 참여재판 홍보 확대
- ___ 5) 배심원 참여국민에 대한 보수 및 혜택 확대
- ___ 6) 기타 ()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 (제 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검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정책수립에 기초와 근거가 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본 조사연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귀하가 제시해주시는 의견은 국민참여재판의 발전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귀하의 개인적인 정보가 밝혀지는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기꺼이 응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설문지는 함께 동봉한 반송용 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일수

*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연구자 : 탁희성 연구위원

전화 : 02) 3460-5161

이메일 : heesung@kic.re.kr

1. 성별	☐ ① 남성 ☐ ② 여성
2. 응답자 연령	만 _____ 세
3. 직장소재지	☐ ①서울 ☐ ②부산 ☐ ③대구 ☐ ④인천 ☐ ⑤광주 ☐ ⑥대전 ☐ ⑦울산 ☐ ⑧경기 ☐ ⑨강원 ☐ ⑩충북 ☐ ⑪충남 ☐ ⑫전북 ☐ ⑬전남 ☐ ⑭경북 ☐ ⑮경남 ☐ ⑯제주
4. 직업	☐ ①판사 ☐ ②검사 ☐ ③변호사
5. 현직업 복무기간	약 _____ 년 _____ 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2. 귀하가 그동안 담당했던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죄명과 횟수를 기재해 주십시오.

대상범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살인	회	회	회	회
살인미수	회	회	회	회
상해치사	회	회	회	회
강도살인 강도상해	회	회	회	회
성범죄	회	회	회	회
기타	회	회	회	회

6.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우리 사법체제에 적합한 재판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이 현 사법체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8.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목적 및 도입취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각각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기여한다	대체로 기여한다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8-1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8-2	사법에 대한 신뢰 구축				
8-3	피고인의 인권 보장				
8-4	국민 법의식 향상 및 법교육				

9. 다음은 국민참여재판 시행경과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9-1	우리 사법시스템에 국민참여재판이 제대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9-2	시행초기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증가했다				
9-3	배심원들이 재판과정에서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9-4	시행초기에 비해 일반시민의 배심원참여도(비율)가 높아졌다				
9-5	시행초기에 비해 배심원들의 재판 참여에 대해 자부심이 높아졌다				

10. 다음은 일반시민배심원의 공판절차 참여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1	유무죄 판단절차 참여				
10-2	양형판단절차 참여				

11. 다음은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1	유무죄 판단에 대한 기속력 부여				
11-2	양형판단에 대한 기속력 부여				

공판준비절차 등 재판과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이 **통상 공판절차에 비하여 갖는 업무부담**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1) 매우 부담된다 _____ 2) 약간 부담된다
 _____ 3) 거의 부담 안된다 _____ 4) 전혀 부담 안된다
2. 다음은 **국민참여재판 절차상 업무부담**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부담된다	약간 부담된다	별로 부담 안된다	전혀 부담 안된다
2-1	공판준비절차				
2-2	배심원 선정절차				
2-3	배심원 설명자료 준비 (PPT 등)				
2-4	장시간 재판				
2-5	법률용어의 설명				
2-6	논고문의 작성				

3.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과정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질문 문항	매우 미흡	약간 미흡	충분	매우 충분
3-1	참여재판 공판정 확보				
3-2	참여재판 전담부서 확보				
3-3	참여재판 시행예산 확보				
3-4	참여재판 준비 인력 확보				

4. 다음은 **국민참여재판 절차**와 관련한 문항들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별로 타당하지 않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4-1	참여재판 대상사건 제한				
4-2	피고인의 참여재판 신청제도				
4-3	법률상 참여재판 배제사유				
4-4	항소심에 대한 참여재판 배제				

5.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의 범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_____ 1) 현행법상 참여재판 대상범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대폭 축소)
 _____ 2) 현행법상 참여재판 대상범죄를 일부 축소해야 한다(일부 축소)
 _____ 3) 현행법상 참여재판 대상범죄 이외의 일부범죄를 대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일부 확대)
 _____ 4) 현행법상 참여재판 대상범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현행 유지)
6.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 가운데 **참여재판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범죄유형**은 어느 것입니까? (해당사항 모두 표시)
 _____ 1) 없다 _____ 2) 성범죄 _____ 3) 뇌물범죄
 _____ 4) 보건범죄 _____ 5) 환경범죄 _____ 6) 살인범죄
 _____ 7) 강도범죄 _____ 8) 기타 ()
7. 현행법상 규정된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는 아니지만, 귀하가 생각하기에 **참여재판 대상 사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범죄유형**은 무엇입니까?
 _____ 1) 없다 _____ 2) 교통범죄 _____ 3) 횡령 및 배임범죄
 _____ 4) 위증 및 무고범죄 _____ 5) 집시법위반범죄 _____ 6) 음란물 관련 범죄
 _____ 7) 기타 ()
8. 다음은 현행법상 **피고인 신청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_____ 1) 현행대로 피고인 신청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_____ 2) 일정 범죄유형(대형 경제사범 내지 뇌물범죄)에 대해서만 참여재판 실시를 의 무화하고, 나머지 대상범죄는 현행대로 피고인 신청에 의한다.
 _____ 3) 원칙적으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되, 피고인 에게 참여재판 포기권을 부여한다.
 _____ 4) 현행법상 참여재판 신청권자를 피고인에서 검사와 재판부로 까지 확대해야 한다.

9. 다음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 ___ 1) 현행방식이 적절하다
 ___ 2) 현행법 제9조 제1항 제3호(기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예규의 3가지 요건(추가기소, 정신이상,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외에 다른 사유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___ 3) 현행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참여재판배제사유의 판단은 예규에 의한 3가지 요건(추가기소, 정신이상,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에 제한되어야 한다
 ___ 4) 배제결정방식 자체를 폐지해야 하고,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참여재판을 의무화해야 한다

10.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 ___ 1) 국민참여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유무죄 선고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항소를 배제해야 한다
 ___ 2) 무죄판결에 대해서만 항소를 배제하고, 양형에 대해서는 항소를 허용해야 한다
 ___ 3) 현행대로 국민참여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유무죄 선고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항소를 허용해야 한다

11. 귀하는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전혀 필요없다

11-1. 귀하는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허용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절차의 개선**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반드시 개선 필요	어느 정도 개선 필요	별로 개선 불필요	전혀 개선 불필요
12-1	공판전 준비절차				
12-2	배심원 선정절차				
12-3	모두절차				
12-4	증거조사절차				
12-5	검사의 입증절차				
12-6	변호사 변론절차				
12-7	배심원 평의절차				

13. 귀하는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적절한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1) 오전 9시 - 오후 6시 이내
 ___ 2) 오전 9시 - 오후 8시 이내
 ___ 3) 오전 9시 - 밤 12시(자정) 이내
 ___ 4) 오전 9시 - 재판이 끝날때까지 계속 진행(밤 12시 넘어서도 가능)

13-1.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1) 사건의 성격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1일 이내
 ___ 2) 사건의 성격 또는 내용에 따라 2일 이내 연속 개정
 ___ 3) 사건의 성격 또는 내용에 따라 3일 이상 연속 개정
 ___ 4) 사건의 성격 또는 내용에 따라 별도 기일 지정하여 여러 차례 재판 진행

14. 귀하는 1일(혹은 2일)에 집중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속히 종결하는 현행재판방식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5.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사실심 심리와 양형심리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6.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이 무엇입니까?

- ___ 1) 법률지식이 없는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한 입증자료 준비
 ___ 2) 참여재판에 적합한 표준적인 입증자료 작성방식 미비
 ___ 3) 증거자료의 중요 정도에 대한 배심원 설득의 어려움
 ___ 4) 변호인의 감정적 변론에 의한 배심원 영향력 차단
 ___ 5) 기타 ()

17. 귀하는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___ 1) 예 ___ 2) 아니오

18. 귀하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결정 요청의견서를 제출하신 이유**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해당란에 모두 ☒ 표시)

사유		해당여부
18-1	배심원후보자 등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침해우려	
18-2	공동피고인 일부가 원하지 않음	
18-3	추가 기소 예상	
18-4	피고인에게 정신이상 등이 의심됨	
18-5	현저한 절차지연 예상	
18-6	피고인의 태도불량	
18-7	친족간 범행	
18-8	자백사건	
18-9	범행의 잔혹성(잔인성)	
18-10	기타 (직접기입:)	

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현행 **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	배심원후보자의 질문표 작성				
1-2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기피신청 질문				
1-3	무이유부 기피신청				
1-4	이유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1-5	순차기피방식				
1-6	혼합방식				

- ☐ **순차기피방식** : 먼저 배심원 후보군에서 추첨에 의해 배심원수에 해당하는 시민들을 선정한 후,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과 기피신청을 거쳐 다시 추가 배심원을 선정하는 방식
- ☐ **혼합방식** : 먼저 배심원후보군 전체에 대한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질문을 통해 일부 배심원후보를 배제한 후, 추첨에 의해 배심원수에 해당하는 시민들을 선정하고 다시 검사, 변호사의 질문과 기피신청을 거쳐 추가 배심원을 선정하는 방식

2. 다음의 배심원 선정절차들이 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2-1	배심원후보자의 질문표 작성				
2-2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기피신청 질문				
2-3	무이유부 기피신청				
2-4	이유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2-5	순차기피방식				
2-6	혼합방식				

3. 다음은 배심원 선정과정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별로 타당하지 않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3-1	배심원의 개인적 사항(가족, 직업, 학력 등)을 이용한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				
3-2	배심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유사한 범죄환경에 있음을 가정하게 한 후에 행하는 질문				
3-3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표의 구성내용				
3-4	예비배심원 선정불고지				
3-5	배심원 선정시간				

4. 귀하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배심원 선정절차가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1) 예 ____ 2) 아니오

5. 현행 배심원 선정절차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1) 예 ____ 2) 아니오

	질문 문항	반드시 개선 필요	대체로 개선필요	별로 개선 불필요	전혀 개선불필요
6-1	무이유부 기피신청에 의한 기피사유의 불명확성				
6-2	배심원의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 는 질문방식				
6-3	순차기피방식에 의한 중복질문				
6-4	예비배심원 선정 불고지				
6-5	배심원 선정시간의 불충분성				

☐ 1) 순차기피방식 ☐ 2) 일괄기피방식
☐ 3) 혼합방식(일괄질문후 순차기피 혼합) ☐ 4) 기타()

☒ 일괄기피방식 : 모든 배심원후보자를 대상으로 질문과 기피신청의 반복을 통해 최종적으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을 선정하는 방식

___ 1) 매우 그렇다 ___ 2) 대체로 그렇다
___ 3) 별로 그렇지 않다 ___ 4) 전혀 그렇지 않다

____ 1) 예 ____ 2) 아니오

최소 ()명, 최대 ()명

배심원 평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현행 배심원 평결절차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별로 타당하지 않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1-1	1차 평의시 법관의 관여없는 만장일치 방식				
1-2	2차 평의시 법관의견 개진후 다수결 방식				
1-3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배제				
1-4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허용				

2. 귀하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판단이 합리적이라 생각하십니까?

___ 1) 예 ___ 2) 아니오

3. 귀하는 배심원들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이라 생각하십니까?

___ 1) 예 ___ 2) 아니오

4. 귀하는 배심원들이 결정한 형량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 1) 지나치게 높다 ___ 2) 높은 편이다
___ 3) 낮은 편이다 ___ 4) 지나치게 낮다

5. 귀하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___ 1) 매우 만족스럽다 ___ 2) 만족하는 편이다
___ 3)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___ 4) 매우 불만족스럽다

6. 귀하는 배심원들이 제시한 양형평결결과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___ 1) 예 ___ 2) 아니오

- 6-1. 배심원들의 평결결과가 불만족스러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 1) 배심원들이 객관적 증거 보다는 감성에 의지해 평결했기 때문에
___ 2) 재판과정을 통해 주입된 판사의 견해를 우선시 했기 때문에
___ 3) 직접 증거만을 유죄 증거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___ 4) 기타 ()

7. 다음은 **배심원 평결절차와 관련한 개선논의** 내용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별로 타당하지 않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7-1	유무죄 평의시 중다수결 (3/4 내지 2/3)로 일원화				
7-2	유무죄 평의시 만장일치제로 일원화				
7-3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				
7-4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제한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1.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우리의 **사법시스템에 정착하기 위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 ___ 1)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 확대
 ___ 2) 국민참여재판 배제사유의 축소
 ___ 3) 공판전준비절차의 내실화
 ___ 4) 배심원 선정절차 개선
 ___ 5) 배심원을 위한 법률용어의 개선
 ___ 6)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
 ___ 7) 국민참여재판 시행 일수
 ___ 8) 기타 ()
2. 귀하는 다음의 내용들에 대한 **배심원들의 이해의 정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전부 이해	대체로 이해	거의 이해못함	전혀 이해못함
2-1	재판과정에 대한 판사의 설명				
2-2	사건의 죄명 및 죄명의 내용				
2-3	사건에 대한 판사의 설명				
2-4	검사의 입증과 주장내용				
2-5	변호인의 변론 내용				
2-6	재판중 사용된 법률 용어				

3. 귀하는 **현행 판사의 재판진행방식**이 국민참여재판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1) 참여재판에 부합하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진행을 한다
- ___ 2) 참여재판에 부합하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진행을 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___ 3) 참여재판에 부합하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진행을 하기 위해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___ 4) 전혀 참여재판에 부합하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진행을 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4. 귀하는 **변호인의 변론방식**이 국민참여재판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1) 참여재판형식에 부합한 변론방법을 활용한다
- ___ 2) 참여재판에 부합하는 변론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___ 3) 참여재판에 부합하는 변론을 하고자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___ 4) 전혀 참여재판에 부합하지 않는 이전의 변론방식을 그대로 활용한다

5. 귀하는 **변호인의 변론의 방식**에 따라 배심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___ 1) 국민참여재판의 횟수 확대
- ___ 2) 법원의 배제결정사유 축소
- ___ 3) 검사와 변호인의 적극적인 참여
- ___ 4) 일반국민에 대한 참여재판 홍보 확대
- ___ 5) 배심원 참여국민에 대한 보수 및 혜택 확대
- ___ 6) 기타 ()

긴 설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저희 연구결과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 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정책수립에 기초와 근거가 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본 조사연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귀하가 제시해주시는 의견은 국민참여재판의 발전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귀하의 개인적인 정보가 밝혀지는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기꺼이 응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설문지는 함께 동봉한 반송용 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일수

*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연구자 : 탁희성 연구위원

전화 : 02) 3460-5161

이메일 : heesung@kic.re.kr

1. 성 별	☐ ① 남성 ☐ ② 여성
2. 응 답 자 연 령	만 _____ 세
3. 직 장 소 재 지	☐ ①서울 ☐ ②부산 ☐ ③대구 ☐ ④인천 ☐ ⑤광주 ☐ ⑥대전 ☐ ⑦울산 ☐ ⑧경기 ☐ ⑨강원 ☐ ⑩충북 ☐ ⑪충남 ☐ ⑫전북 ☐ ⑬전남 ☐ ⑭경북 ☐ ⑮경남 ☐ ⑯제주
4. 직 업	☐ ①법관 ☐ ②검사 ☐ ③변호사
5. 현 직 업 복 무 기 간	약 _____ 년 _____ 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1. 귀하는 현재까지 국민참여재판을 몇 번 담당하셨습니다?
 ___ 1) 1회 ___ 2) 2회 ___ 3) 3회
 ___ 4) 4회 ___ 5) 5회 이상(회) ___ 6) 없음⇒ 4번으로 가시오

2. 귀하가 그동안 담당했던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죄명과 횟수를 기재해 주십시오.

대상범죄 \ 년도	2008	2009	2010	2011
살인	회	회	회	회
살인미수	회	회	회	회
상해치사	회	회	회	회
강도살인 강도상해	회	회	회	회
성범죄	회	회	회	회
기타	회	회	회	회

3. 귀하는 어떤 지위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셨습니다?
 ___ 1) 사선변호인 ___ 2) 국선전담변호인
 ___ 3) 법률구조공단 국선변호인 ___ 4) 공익법무관 국선변호인
 ___ 5) 기타 국선변호인

4.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홍보를 접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___ 1) 매우 많다 ___ 2) 많은 편이다
 ___ 3) 별로 없다 ___ 4) 전혀 없다

5.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홍보내용이나 방식이 참여재판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목적 및 도입취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각각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기여한다	대체로 기여한다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6-1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6-2	사법에 대한 신뢰 구축				
6-3	피고인의 인권 보장				
6-4	국민 법의식 향상 및 법교육				

7. 다음은 **국민참여재판 시행경과**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1	우리 사법시스템에 국민참여재판이 제대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7-2	시행초기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증가했다				
7-3	배심원들이 재판과정에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7-4	시행초기에 비해 일반시민의 배심원 참여도(비율)가 높아졌다				
7-5	시행초기에 비해 배심원들의 재판참여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다				

8.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우리 사법체제에 적합한 재판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9.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이 **현 사법체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 다음은 일반시민배심원의 공판절차 참여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1	유무죄 판단절차 참여				
10-2	양형판단절차 참여				

11. 다음은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1	유무죄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				
11-2	양형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				

공판준비절차 등 재판과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이 통상 공판절차에 비하여 갖는 업무부담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 1) 매우 부담된다 ____ 2) 약간 부담된다
____ 3) 거의 부담 안된다 ____ 4) 전혀 부담 안된다

2. 다음은 국민참여재판 절차상 업무부담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부담된다	약간 부담된다	거의 부담안된다	전혀 부담안된다
2-1	공판준비절차				
2-2	배심원 선정절차				
2-3	배심원 설명자료 준비 (PPT 등)				
2-4	장시간 재판				
2-5	법률용어의 설명				
2-6	변론문의 작성				
2-7	증거자료 입수 등 사전절차				

3. 다음은 **국민참여재판 절차**와 관련한 문항들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별로 타당하지 않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3-1	참여재판 대상사건 범위				
3-2	피고인의 참여재판 신청제도				
3-3	법률상 참여재판 배제사유				
3-4	항소심에 대한 참여재판 배제				

4.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의 범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___ 1) 현행법상 참여재판 대상범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대폭 축소)
 ___ 2) 현행법상 참여재판 대상범죄를 일부 축소해야 한다(일부 축소)
 ___ 3) 현행법상 참여재판 대상범죄 이외의 일부범죄를 대상범위에 포함시켜야한다(일부확대)
 ___ 4) 모든 형사범죄를 참여재판 대상범죄로 해야 한다(전면 확대)
 ___ 5) 현행법상 참여재판 대상범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현행 유지)
5. 현행법에 규정된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 가운데 **참여재판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범죄유형**은 어느 것입니까? (해당사항 모두 표시)
 ___ 1) 없다 ___ 2) 성범죄 ___ 3) 뇌물범죄
 ___ 4) 보건의료범죄 ___ 5) 환경범죄 ___ 6) 살인범죄
 ___ 7) 강도범죄 ___ 8) 기타 ()
6. 현행법상 규정된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는 아니지만, 귀하가 생각하기에 **참여재판 대상 사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범죄유형**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 모두 표시)
 ___ 1) 없다 ___ 2) 교통범죄 ___ 3) 횡령 및 배임범죄
 ___ 4) 위증 및 무고범죄 ___ 5) 집시법위반범죄 ___ 6) 음란물 관련 범죄
 ___ 7) 기타 ()
7. 다음은 현행법상 **피고인 신청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방안**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___ 1) 현행대로 피고인 신청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___ 2) 일정 범죄유형(대형 경제사범 내지 뇌물범죄)에 대해서만 참여재판실시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대상범죄는 현행대로 피고인 신청에 의한다.
 ___ 3) 원칙적으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되, 피고인에게 참여재판 포기권을 부여한다
 ___ 4) 현행법상 참여재판 신청권자를 피고인에서 검사와 재판부로 까지 확대해야 한다.

8. 다음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 ☐ 1) 현행방식이 적절하다
- ☐ 2) 현행법 제9조 제1항 제3호(기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예규의 3가지 요건(추가기소, 정신이상,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침해)외에 다른 사유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 ☐ 3) 현행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참여재판배제사유의 판단은 예규에 의한 3가지 요건(추가기소, 정신이상,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에 제한되어야한다
- ☐ 4) 배제결정방식 자체를 폐지해야 하고,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참여재판을 의무화해야 한다

9.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 ☐ 1) 국민참여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유무죄 선고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항소를 배제해야 한다
- ☐ 2) 무죄판결에 대해서만 항소를 배제하고, 양형에 대해서는 항소를 허용해야 한다
- ☐ 3) 현행대로 국민참여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유무죄 선고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항소를 허용해야 한다

10. 귀하는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전혀 필요없다

11. 귀하는 국민참여재판 판결에 대한 항소허용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절차의 개선**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반드시 개선 필요	어느 정도 개선 필요	별로 개선 불필요	전혀 개선 불필요
12-1	공판전 준비절차				
12-2	배심원 선정절차				
12-3	모두절차				
12-4	증거조사절차				
12-5	검사의 입증절차				
12-6	변호사 변론절차				
12-7	배심원 평의절차				

13. 귀하는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적절한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오전 9시 - 오후 6시 이내
☐ 2) 오전 9시 - 오후 8시 이내
☐ 3) 오전 9시 - 밤 12시(자정) 이내
☐ 4) 오전 9시 -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밤 12시 넘어서도 가능)

- 13-1.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사건의 성격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1일 이내
☐ 2) 사건의 성격 또는 내용에 따라 2일 이내 연속 개정
☐ 3) 사건의 성격 또는 내용에 따라 3일 이상 연속 개정
☐ 4) 사건의 성격 또는 내용에 따라 별도 기일 지정하여 여러 차례 재판 진행

14. 귀하는 **1일(혹은 2일)에 집중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속히 종결**하는 현행 재판방식이 실제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5.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사실심 심리와 양형 심리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6. 귀하는 의뢰인인 피고인이 신청한 참여재판이 배제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____ 1) 예 ____ 2) 아니오

17. 귀하의 의뢰인인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원의 배제결정사유는 다음 중 어느 것이었습니까? (해당란에 모두 ✓ 표시)

사유		해당여부
17-1	배심원후보자 등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침해우려	
17-2	공동피고인 일부가 원하지 않음	
17-3	추가 기소 예상	
17-4	피고인에게 정신이상이가 의심됨	
17-5	현저한 절차지연 예상	
17-6	피고인의 태도불량	
17-7	친족간 범행	
17-8	자백사건	
17-9	범행의 잔혹성(잔인성)	
17-10	기타 (직접기입: _____)	

18. 귀하는 법원의 참여재판 배제결정이 타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1) 예 ____ 2) 아니오

19.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이 무엇입니까?
 ____ 1) 법률문외한인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한 입증자료 준비
 ____ 2) 참여재판에 적합한 표준적인 변론자료 작성방식 미비
 ____ 3) 증거자료의 중요 정도에 대한 배심원 설득의 어려움
 ____ 4) 검사의 우월적 증거자료 제시에 의한 영향력 차단
 ____ 5) 기타 (_____)

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현행 **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	배심원후보자의 질문표 작성				
1-2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기피신청 질문				
1-3	무이유부 기피신청				
1-4	이유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1-5	순차기피방식				
1-6	혼합방식				

- ☐ **순차기피방식** : 먼저 배심원 후보군에서 추첨에 의해 배심원수에 해당하는 시민들을 선정 한 후,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과 기피신청을 거쳐 다시 추가 배심원을 선정하는 방식
- ☐ **혼합방식** : 먼저 배심원후보군 전체에 대한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질문을 통해 일부 배심원후보를 배제한 후, 추첨에 의해 배심원수에 해당하는 시민들을 선정하고 다시 검사, 변호사의 질문과 기피신청을 거쳐 추가 배심원을 선정하는 방식

2. 다음의 배심원 선정절차들이 **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2-1	배심원후보자의 질문표 작성				
2-2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기피신청 질문				
2-3	무이유부 기피신청				
2-4	이유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2-5	순차기피방식				
2-6	혼합방식				

3. 다음은 **배심원 선정과정**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별로 타당하지 않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3-1	배심원의 개인적 사항(가족, 직업, 학력 등)을 이용한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				
3-2	배심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유사한 범죄환경에 있음을 가정하게 한 후에 행하는 질문				
3-3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표의 구성내용				
3-4	예비배심원 선정불고지				
3-5	배심원 선정시간				

4. 귀하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배심원 선정절차가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1) 예 ____ 2) 아니오

5. 현행 배심원 선정절차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1) 예 ____ 2) 아니오

6. 다음의 **배심원 선정절차 가운데 문제점**으로 고려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반드시 개선 필요	대체로 개선필요	별로 개선 불필요	전혀 개선불필요
6-1	무이유부 기피신청에 의한 기피사유의 불명확성				
6-2	배심원의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는 질문방식				
6-3	순차기피방식에 의한 중복질문				
6-4	예비배심원 선정 불고지				
6-5	배심원 선정시간의 부족				

- 배심원 평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 질문 문항 | | 매우
타당하다 | 대체로
타당하다 | 별로
타당하지
않다 | 전혀
타당하지
않다 |
|-------|----------------------------|------------|-------------|------------------|------------------|
| 1-1 | 1차 평의시 법관의 관여없는
만장일치 방식 | | | | |
| 1-2 | 2차 평의시 법관의견 개진후
다수결 방식 | | | | |
| 1-3 |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배제 | | | | |
| 1-4 |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 | | | | |

- 593

4. 귀하는 **배심원들이 결정한 형량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 1) 지나치게 높다 ___ 2) 높은 편이다
 ___ 3) 낮은 편이다 ___ 4) 지나치게 낮다
5. 귀하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___ 1) 매우 만족스럽다 ___ 2) 만족하는 편이다
 ___ 3)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___ 4) 매우 불만족스럽다
6. 귀하는 **배심원들이 제시한 양형평결결과**가 피고인의 행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
 신 적이 있습니까?
 ___ 1) 예 ___ 2) 아니오
7. 배심원들의 **평결결과가 불만족스러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 1) 배심원들이 객관적 증거 보다는 감성에 의지해 평결했기 때문에
 ___ 2) 재판과정을 통해 주입된 판사의 견해를 따랐기 때문에
 ___ 3) 직접 증거만을 유죄 증거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___ 4) 기타 ()
8. 다음은 **배심원 평결절차와 관련한 개선논의** 내용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별로 타당하지 않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8-1	유무죄 평의시 중다수결 (3/4 내지 2/3)로 일원화				
8-2	유무죄 평의시 만장일치제로 일원화				
8-3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부여				
8-4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제한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 | 질문 문항 | | 전부 이해 | 대체로 이해 | 거의 이해못함 | 전혀 이해못함 |
|-------|-----------------|-------|--------|---------|---------|
| 2-1 | 재판과정에 대한 판사의 설명 | | | | |
| 2-2 | 사건의 죄명 및 죄명의 내용 | | | | |
| 2-3 | 사건에 대한 판사의 설명 | | | | |
| 2-4 | 검사의 입증과 주장내용 | | | | |
| 2-5 | 변호인의 변론 내용 | | | | |
| 2-6 | 재판중 사용된 법률 용어 | | | | |

- 595

